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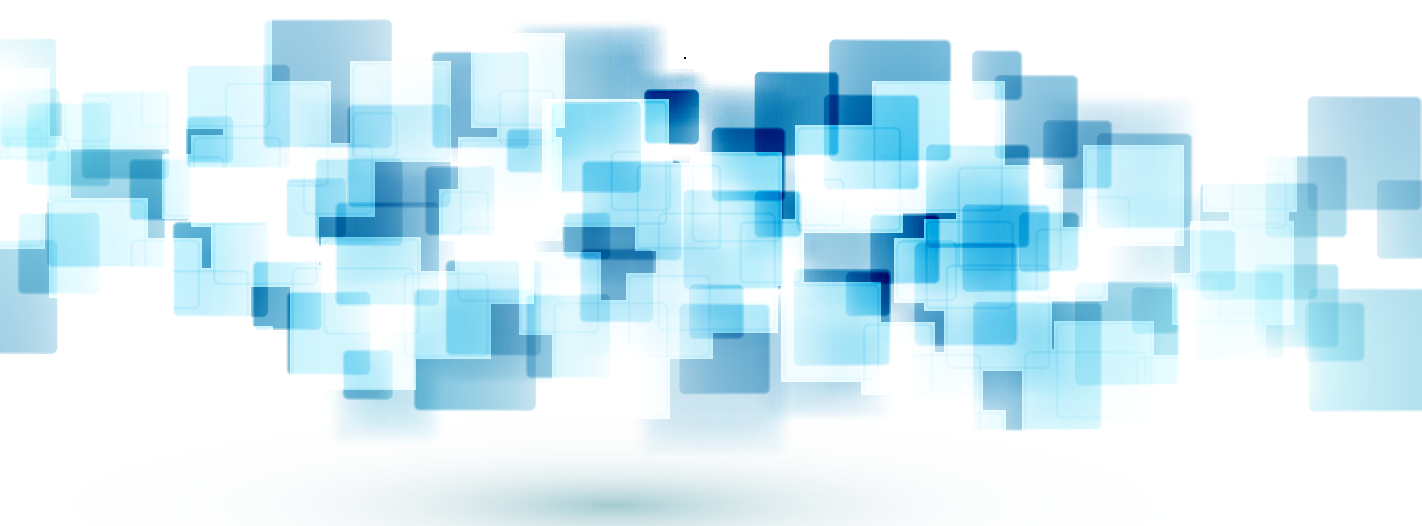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220000-000342-08



FTA TRADE REPORT

Vol.01 March 2016

FTA 무역 리포트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TRADE REPORT

Vol.01 March 2016

FTA 무역 리포트

CONTENTS

FTA FOCUS

- 004 한-중 FTA 시대, FTA 활용 시 유의점과 관세청의 지원 정책
김재일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FTA 최근 동향

- 008 관세청 FTA 동향
023 우리나라 FTA 동향
034 해외 FTA 동향
038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과 용어 이해하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FTA ANALYSIS

- 042 2015년 MTI 1단위 기준 주요 특혜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109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동향과 시사점
임병호 국제원산지 정보원 선임연구원

FTA EXPERT

- 140 한-미 FTA 주요내용과 기업의 활용방안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147 한-미 FTA 발효 4주년 성과와 시사점
박지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155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인한 수출부진 속에 발하는 한-미 FTA
고태진 한림 관세법인 관세사

FTA와 품목분류

- 167 부분품 품목분류 어떻게 하는가?
오수교 관세사 KPMG세정관세법인고문



FTA 활용 성공사례

- 186 FTA-PASS 활용을 통한 원산지관리 모델
- 190 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
- 195 자율점검 활용 검증위험 회피 모델
- 198 원산지 검증을 활용한 FTA 학습 모델
- 202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활용 모델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 204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 출제경향 분석(2012년~2015년)
국제원산지정보원
- 210 FTA 전문가로 꿈을 이루게 해준 원산지관리사
윤원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산 FTA이행지원팀
- 213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선택지를 준 원산지관리사
김미림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활용하기 쉬운 FTA-PASS

- 216 원산지관리 대행서비스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100% 활용하기

- 218 미국 통관행정과 우리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이진섭 다함관세법인 관세사

FTA 지도

- 232 지도로 보는 2015 FTA 특혜대상수출입실적(1~12월)

한-중 FTA 시대, FTA 활용 시 유의점과 관세청의 지원 정책



김재일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

1. FTA 체결 현황 및 지원 필요성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해왔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를 비롯해,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까지 발효되었다. 바야흐로 FTA가 우리 기업의 생존에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이르렀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15. 12월 기준)〉

구분	협정 발효 (14건, 51국)	협정 타결 (1건, 1국)	협상 진행 (4건, 22국)	여건 조성 (4건, 9국)
국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한-중-일, RCEP, 중미(6개국),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GCC, 일본
교역비중	67.3	0.2	7.9	9.3
누적비중	67.3	67.5	75.4	84.7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ASEAN, 한, 중, 일, 인도, 뉴질랜드, 호주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 중미 :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처럼,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FTA 체결에 노력해왔다. 그러나, FTA는 체결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실제 활용해 관세를 절감하거나, 경쟁 상대국 기업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활용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인력·정보·자금 부족 등 여러 사유로, 품목분류, 원산지관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아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FTA 활용 관련 주요 유의사항과 관세청의 FTA 활용지원 정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2. FTA 활용 주요 유의사항

대구에 소재한 A 기업은 FTA 활용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며, 관세청 FTA 활용 우수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상도 차지했다.

세관과 협업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처를 변경하고, 어려운 원산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도 구축했다. 원산지관리사를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역량 배양도 함께했다.

전략적으로 FTA를 활용한 결과, 작년 상반기에만 18억 원을 절감했고, 한-중 FTA 발효로, 향후 10년간 총 532억 원의 혜택까지 기대된다.

A 기업과 같이 FTA 활용에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자사 제품의 관세가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나 인하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우선 수출하려는 제품의 관세 인하 폭과 시기를 알려면 중국의 관세 양허표를, 반대로 수입 제품에 대해 알고 싶다면 한국의 관세 양허표를 확인하면 된다.

FTA를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발급받아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다.

수출업체는 우선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번호를 결정한 후 그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에는 역내에서 완전히 생산되었는지, 품목분류번호가 변경되었는지, 부분품의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이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부분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확인서를 각 협력업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즉,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출업체뿐 아니라 모든 협력업체까지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품목분류가 잘못되면 원산지 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FTA 통관심사 시 품목분류 정확성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어, 대(對)중국 수출기업의 유의가 필요하다. 품목분류와 원산지 결정기준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인장·서명, 수출자·생산자의 주소 등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특혜관세가 배제되거나 통관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서류들은 사후 원산지검 증대비를 위해서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3. 관세청의 FTA 지원 제도

FTA 활용에는 품목분류,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내용이 복잡해 처음부터 기업들 스스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다. 이에, FTA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여건과 세관현장에서 접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기업 지원 정책을 수립한다.

여러 지원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YES(Y: WHY, E: EASY, S: Simple) FTA'라는 브랜드도 도입했다. "FTA 활용 관련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기업별 FTA 활용 수준에 맞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기업이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의 전국 6대 본부 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집중적인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산지원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중소 수출기업에 'FTA-PASS'를 구축해주고, FTA 수출 활용 종합 컨설팅, FTA 계약상대국 세관당국이 실시하는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응 컨설팅, 기업의 생산 물품이 FTA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주는 컨설팅 중 기업이 선택한 취약분야를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

'FTA-PASS'는 국산 또는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되는 물품에 대해 관련 자료를 입력하면 원산지를 판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함께 개발하여, 13,296개 업체에 보급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했으며, 2015년에만 총 546개 기업이 컨설팅 혜택을 받았다. 546개 기업 중 472개 기업은 FTA 활용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 이 중 96%인 451개 기업이 컨설팅 이후 FTA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258개 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혜택도 받는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청이 원산지 증명·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여 지정한 수출자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및 2시간 이내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상담 버스)’도 운영한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는 상담을 받으러 세관을 방문하기 힘든 기업을 위해 농공·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FTA 수출 준비 단계인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까지 One-Stop으로 종합지원하는 이동형 상담 버스다. 작년 한 해 동안 3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대구 등 FTA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각지를 누비며 988개 업체를 찾아갔다.

또한,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구직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생·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상설 FTA 교육 프로그램인 ‘YES FTA 아카데미’를 6개 본부세관에 설치하여 FTA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인력과 기업 간 일자리 mismatch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취업박람회도 개최한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특별 지원도 하고 있는데, 한-중 FTA 지원 전담기구인 ‘YES FTA 차이나센터’를 전국 34개 세관에 설치했고, 공익관세사 105명을 배치했다. 이를 중심으로 FTA 활용 컨설팅·교육·홍보 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2만여 대(對)중국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한-중 FTA 즉문즉답’, ‘산업별 FTA 활용정보’ 등 생생한 정보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다. 메일링 서비스에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 사항부터 사후검증 대비 방법까지 FTA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또한, 기업의 CEO들이 수출확대 및 새로운 성장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FTA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세청 ‘YES FTA 포탈’에서도 볼 수 있다. 이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의 현장 상담 내용을 주로 하고 있어 수출입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FTA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어려운 FTA 활용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다. 특히, 5년, 10년, 15년, 20년 등 장기에 걸쳐 철폐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편익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품목일 수록 조기에 FTA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두고, 시장개척까지 준비하면 혜택은 더 커질 수 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세관 직원의 지원과 함께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전문가 지원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

FTA 최근 동향

I. 관세청 FTA 동향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 실시(2016.01.13.)

- 중소 수출기업의 한중 FTA 100% 활용 지원 위해 조기착수 -

관세청은 우리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도 YES FTA 컨설팅 사업'을 1월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 상담사가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구축해 준 뒤,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검증대응 컨설팅'과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중 하나를 각 기업이 선택하면 집중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 FTA-PASS(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활용부터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검증대비 사전진단, 사후관리 까지 활용 전반 지원

※※ 원산지 인증수출자: 세관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

올해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15. 12. 20.)에 따라, 기업들이 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작년('15년 3월)에 비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하였다.

※ '14년 기준: 대(對) 중국 교역비중(21.4%) ⇒ 대(對) 미국+대(對) EU 교역비중(20.9%)

올해 관세청은 대(對) 중국 수출기업 중 아직 FTA 활용 경험이 없거나, 활용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최우선 순위로 선정하였다고 전하였다.

특히, 한중 FTA 활용 시 관세 혜택 등 실익이 있는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원산지 사후검증에 따라 기업들이 관세추징 등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검증 대응방법 등도 지원한다.

다른 세부사항은 사업세관별(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평택 등 6개 세관)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세관별로 개최 예정인 사업 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인력·자금·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어려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YES FTA 컨설팅' 사업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별 「YES FTA 컨설팅 사업」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02-510-1371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8
부산경남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051-620-6951	부산 중구 총장대로 20
인천경기지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	032-452-3631	인천 중구 서해대로 339
대구경북지역 본부세관	FTA과	053-230-5250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광주전라지역 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1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길43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1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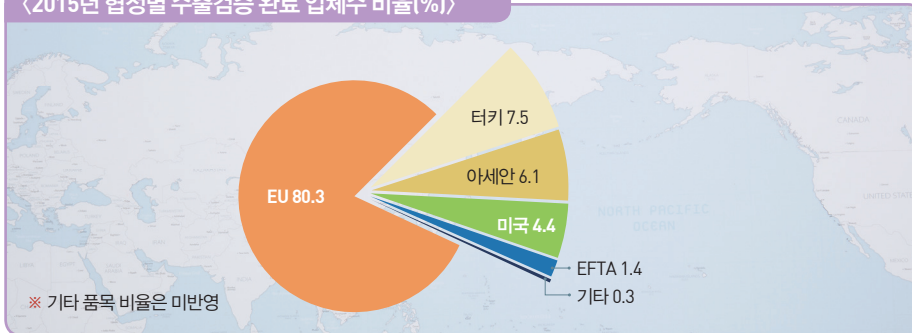
관세청 2016년 제1호 FTA원산지검증 동향 제공(2016.01.20.)

- 2015년 수출물품 검증 현황 한눈에 -

관세청은 지난 1월 20일 관세청 2016년 제1호 FTA 원산지검증동향을 발표하였다. 'Verification Statistics'에서는 검증 동향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2015년 수출물품 검증 현황에서는 협정별과 품목별로 나누었고, 수입물품 검증 현황은 협정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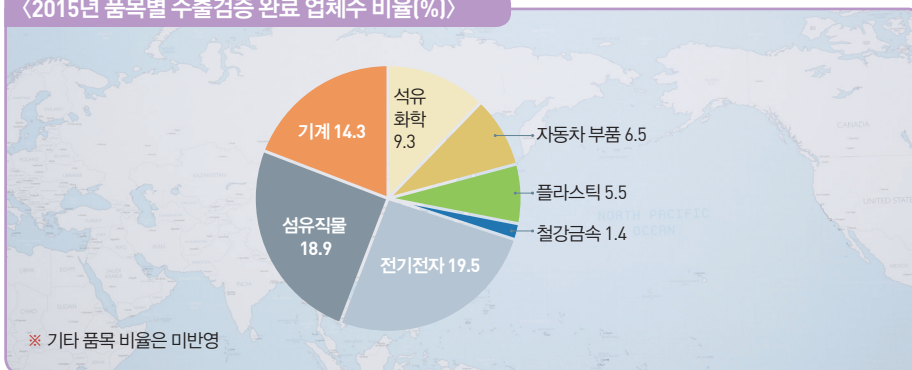
협정별로는 독일, 슬로바키아, 영국을 중심으로 EU에서 활발히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검증의 결과, 원산지 기준의 불충족, 인증수출자번호 위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회에 여러 수출건을 동시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바, 수출기업은 평소에 체계적인 원산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5년 협정별 수출검증 완료 업체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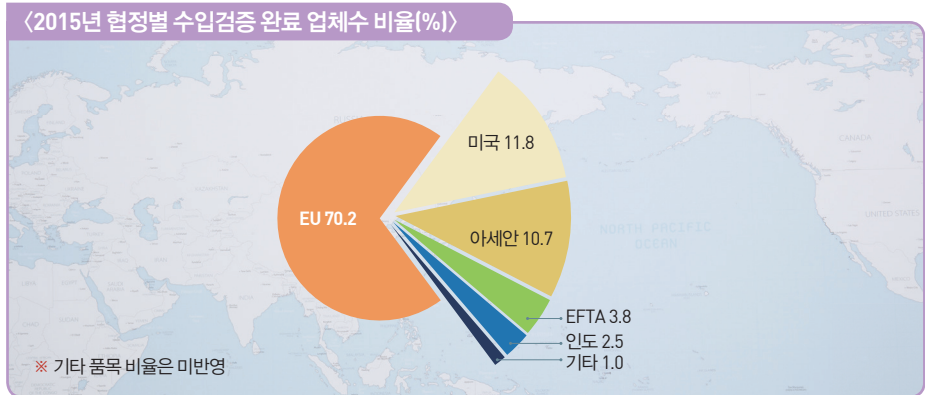
또한, 품목별 원산지검증의 결과, 전기·전자, 섬유·직물, 기계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검증이 요청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섬유·직물제품은 미국, 터키에서 검증요청 비율이 높은바, 관련 수출 기업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2015년 품목별 수출검증 완료 업체수 비율(%)〉



마지막으로 2015년 수입물품의 검증 현황을 살펴보면 EU, 미국, 아세안에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 물품의 경우 원산지검증 결과, 미인증수출자 또는 제3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특혜관세를 적용한 위반 비율이 높은바, 특혜세율 적용신청 시 원산지신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2015년 해외통관애로 해결로 기업비용 472억원 절감(2016.01.21.)

- 관세청, 수출기업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관세청은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통관 애로를 해결해 준 사례가 작년에만 401건에 이르고, 이를 통관비용·관세 등 기업비용으로 환산하면 472억 원이 절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이 분석한 '2015년 해외통관 애로 해소 현황'에 따르면, 통관 애로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세청이 이를 해결한 사례도 '13년 256건, '14년 358건에서 '15년에는 40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접수 / 해소] '13년 (395건 / 256건) → '14년 (407건 / 368건) → '15년 (444건 / 401건)

이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로 관세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통관 애로는 주로 문화적 차이나 상대국 통관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통관절차 (175건, 39.4%)와 FTA 특혜 원산지 불인정(158건, 35.6%)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도,

품목분류 분쟁사례(31건, 7%)와 신고한 과세가격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추정된 사례(16건, 3.6%) 등이 있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통관 애로는 수출경쟁력 약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년 1월 통관 애로 전담기관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고, '15년 9월에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브라질에 관세관을 파견하는 등 접수 및 해소 채널을 다양화했다.

또,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관세청장 회의를 확대하고 주요 의제로 상정하여 신속히 해결하고, 품목분류와 같은 제도적인 분쟁은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관세외교 채널을 총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정보부족으로 통관 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진출기업이 많고, 통관 애로가 빈번함에도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은 중국(칭다오·광저우),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에 관세관을 확대하고, 현지 세관당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해외통관 애로 해소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통관 애로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전년대비 증감률
접수 건수	395	407	444	+9.1%
해소 건수	356	368	401	+8.9%
비용 절감액	2,146억 원*	417억 원	472억 원	+13.2%

* 중국진출 우리 기업의 환급금(1,800억 원) 미지급 건을 한-중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해결(13.6)

〈유형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통관절차	127	32.2	99	24.3	175	39.4
FTA 원산지	98	24.8	167	41	158	35.6
품목분류	23	5.8	22	5.4	31	7.0
과세가격	50	12.7	51	12.5	16	3.6
통관지연	48	12.2	30	7.4	15	3.4
기타*	49	12.4	38	9.3	49	11.0
합계	395	100	407	100	444	100

※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상 애로 등 통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이 대다수

〈국가별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중국	107	27.1	103	25.3	110	24.8
미국	48	12.2	60	14.7	122	27.5
베트남	57	14.4	40	9.8	50	11.3
태국	21	5.3	42	10.3	44	9.9
인도네시아	74	18.7	71	17.4	33	7.4
EU	32	8.1	27	6.6	20	4.5
일본	4	1.0	7	1.7	14	3.2
기타	52	13.2	57	14.0	51	11.5
합계	395	100	407	100	444	100

'제34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2016.01.26.)

- '디지털 세관' 주제 아래 소통과 협력의 한마당 -

관세청은 1월 26일(화)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디지털 세관 : 더 나은 협력(Digital Customs: Progressive Engagement)'을 주제로 '제34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관세의 날'은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 제안하여 채택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WCO 창립일(1.26)에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고, 올해 행사에는 25개국 주한 외국 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관련 기관 대표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김낙희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이번 행사의 주제인 '디지털 세관'은 첨단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수출입·물류기업과 관련 기관이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세관 행정의 정확성·신속성·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글로벌 관세당국의 최우선 과제인 '안정적 세수 확보', '무역 원활화', '우범여행자 및 위험 물품 적발'을 위해 디지털 세관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 관세청이 개발하여 해외에 보급 중인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관세청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앞으로 전자정부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시스템으로 생산·수출품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기능 구현

한국 관세청은 지금까지 총 10개국과 3억3천6백만 불 상당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자정부 수출의 선두주자로서 우리의 선진 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관세청은 ‘국제관세의 날’ 행사를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성과와 활동 내역을 홍보하고, 주한 외교사절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대한 관세청의 기여와 역할을 적극 홍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소통과 협력 활동에 힘쓸 계획이다.

대(對) 중국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대비 적극 지원(2016.01.27.)

- '16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 개최 -

관세청은 1월 27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2016년 제1차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8일 자로 시행된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검증조직 재정비 방안,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검증대비 지원 및 '16년 원산지검증 추진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 원산지검증 분야 관계관 : 전국세관 원산지검증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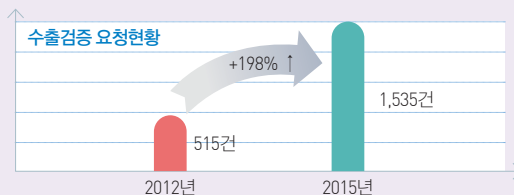
이번 회의는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확대로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한중 FTA 발효 2년 차인 올해 중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최되었다.

※ 전체 수출 간접검증 요청 현황 : '12년(515건) → '15년(1,535건, 198% ↑)

<협정별 수출검증 요청 현황>

• 협정별 수출검증 요청 현황

	EU	아세안	EFTA	미국	터키	기타	합계
12년	460	32	23	0	0	0	515
15년	1,396	26	5	13	89	6	1,535



관세청 관계자는 참석자들에게 한중 FTA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맞춤형 상담을 해주고, 기업·협회와의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낮아진 관세 혜택에 편승하여 부정·불법으로 관세 특혜를 적용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을 실시하여 탈루한 세수를 환수할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원산지검증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관세정책을 발굴·시행하고 FTA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2016.0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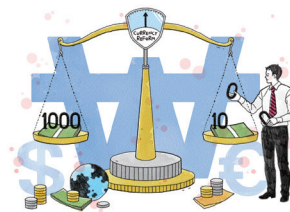
- 수출입 부진 가운데 FTA발효국과의 교역은 선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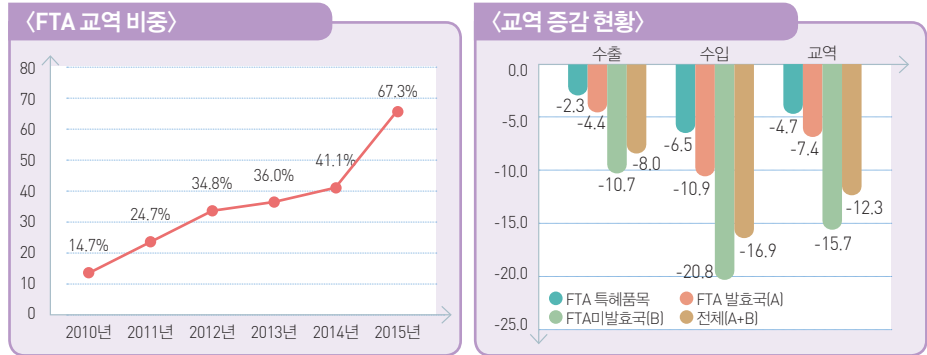
관세청이 발표한 2015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역이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7.4% 감소, FTA 미발효국과는 15.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15년 12월 20일 발효된 중국·뉴질랜드는 제외한 11개 협정, 49개국의 실적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은 2015년 12월 20일 중국 및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전체 교역의 67.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10년 14.7%에 불과하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FTA 확대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수출의 경우,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8%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4.4%, 미발효국과는 10.7% 감소했고, 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은 16.9%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는 10.9%, 미발효국과는 20.8% 감소했다.

- ※ [수출] 미국(△0.6%, 703 → 698억 불), EU(△6.9%, 517 → 481) 아세안(△11.5%, 846 → 749) 등
- ※ [수입] 미국(△2.8%, 453 → 440) EU(△8.4%, 624 → 572억 불), 아세안(△15.7%, 534 → 450) 등

특히,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수출 △2.3%, 수입 △6.5%)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5.6%, 수입 △16.8%)에 비해 작아,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 FTA 특혜관세 품목 : 수출입품목의 FTA 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아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

한편, '15년 FTA 수출활용률*은 71.9%로 '14년의 69.2%보다 2.7%p 증가하였으며, 협정별로는 EU(85.3%), 페루(83.6%), 미국(79.1%)과의 FTA는 높은 수출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42.5%), 인도(62.4%)는 낮게 나타났고, 수입활용률은 70.2%로 '14년 68.0%보다 2.2%p 증가하였다.

- ※ FTA 특혜관세 품목 중 수출신고서 상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신고된 품목 비중

관세청은 올해 한-중 FTA(2015년 12월 20일 발효)를 수출 활성화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對) 중국 수출기업에 대한 FTA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년차, '공익관세사' 본격 운영(2016.02.15.)

-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에 105명 배치 -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의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국관세사회와 협업하여, 2월 15일부터 공익관세사 105명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관세사는 전국 34개 세관 '한중 FTA 종합상담센터'(이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서울·부산·인천 등 지역별로 배치된 105명의 공익관세사는 주 1~2회 세관직원과 함께 FTA 활용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등을 찾아가 무료로 상담하고 있다.

해당 품목이 한중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관세인하율 등을 주로 상담해 주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상담해 주고 있다.

올해 집중 지원대상은 최근 발효된 한중 FTA 관세 혜택이 큰 품목인 기계류·철강·의류 관련 기업이다. 작년에 활동한 95명의 공익관세사는 352개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업체 지원과 함께 애로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도 발굴한 바 있다.

B 관세사의 경우 기존에 물김이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3-5종의 서류가 필요하던 것을, 수협이 발행한 물김 수매확인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한중 FTA 등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공익관세사를 적극 활용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YES FTA 차이나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 지역 ‘YES FTA 차이나센터’ 문의처〉

세관명	부서명	문의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2-510-1374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51-620-6956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032-452-3634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2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5
관세평가분류원(Quick-HS 차이나센터)	품목분류1과	042-714-7535

※ 지역별 자세한 문의처는 ‘차이나-Info’(http://china-info.customs.go.kr) ⇨ Q&A ⇨ YES FTA 차이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수출 APTA 원산지증명서, 단 하루만 발급이 늦어도 무효(2016.02.23.)

-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선적일로부터 3일 경과여부 확인 철저 -

관세청은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이하 APTA) 원산지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원산지증명서가 무효로 판정된 이유는 APTA가 정한 발급기한(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을 경과하여 발급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서는 원칙적인 발급기한과 이 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APTA 협정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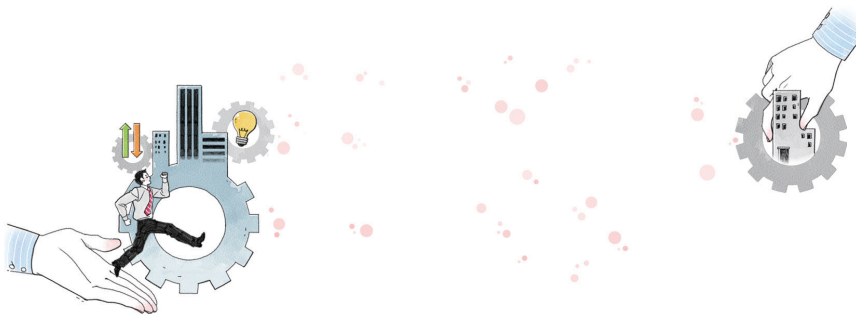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단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게 되므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은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준비를 마쳐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또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참고사항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이란 FTA와 같이 수출입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혜택을 주는 다자간 협정이다.
- 우리나라와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가 체결하여 지난 2006년 발효하였으며, 2015년 12월 4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중국의 경우 관세양허품목이 2,191개로 확대되었다.
-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한중 FTA와 같이 기관발급 제도를 채택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세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섬유수출기업 FTA 지원에 앞장선다.” (2016.02.26.)



관세청, “섬유수출기업 FTA지원에 앞장선다.”(2016.02.26.)

- 관세청장과 섬유 수출기업 CEO 간담회 개최 -

관세청은 1월 26일(금) 서울 더펠리스 호텔에서 섬유 수출기업 최고경영자(이하 CEO)와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현장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원사생산, 직물제조, 섬유제품 수출 분야 대표기업들과 관련 단체인 섬유산업연합회도 참석했으며, 관세청은 FTA 활용 수출확대 지원방안 및 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동향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은 섬유제품 검증(전체 대비 35% 차지)에 집중하고 있고, 위반비율이 58%가 될 정도로 매우 높아 우리 상품의 원산지 신인도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10여 개 섬유 기업을 불시 현장 방문하여 원사 생산자 및 제품 수출업체 모두에게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신속히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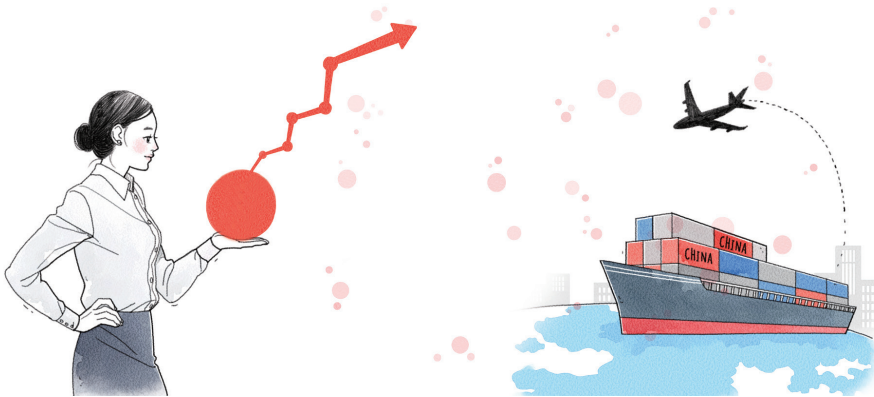
EU나 터키의 경우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작성오류 등을 이유로 특혜를 배제하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로가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섬유류의 원산지규정이 협정 별로 까다로워 수출기업 스스로가 원산지 관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이러한 애로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고, 섬유산업연합회는 섬유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했다.

관세청장은 “FTA 활용 효과를 100% 누리기 위해서 CEO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관심을 촉구하고, 특히 미국세관의 직접검증 시에는 생산자부터 수출기업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FTA 활용과 수출물품에 대한 외국세관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유일의 검증기관인 관세청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안내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검증방식에 따른 모의검증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맞춤형 상담,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검증 대응지원 등 FTA와 관련된 모든 애로사항을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관련 공청회 개최(2016.01.07.)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추진 관련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월 6일(수)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었다.

※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공청회 개최

공청회에서는 업계 및 일반인 약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이스라엘 FTA 경제적 효과 및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정부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상호보완적 산업구조이며, 첨단기술, 농식품, 서비스 등 이스라엘과 다각적인 산업협력으로 수출 증진의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수출 부진 타개를 위해 핵심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첨단기술에 바탕한 창업 국가로 잘 알려진 이스라엘과 FTA를 적극 검토할 시점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및 첨단산업·농식품·서비스 등 각 분야 협력으로 새로운 무역기반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주요수출 품목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등 완제품, 주요수입 품목 반도체제조용 장비, 집적회로 반도체 등 중간재 위주

특히, 농식품*, 서비스 등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기구축한 FTA 플랫폼 활용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 종자 개량, 점적관수(소량의 물로 수확량 증대) 등 수출을 염두한 농업 선진화

공청회 제1부에서는 “한-이스라엘 FTA의 경제적 영향”과 “한-이스라엘 FTA와 농식품 산업 분야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각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팀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박사가 발표했다.

연구 결과, 한-이스라엘 FTA 체결 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0.007~0.061%, 소비자후생 0.83~7.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물 부족 등 열악한 환경을 극복한 이스라엘 농식품 무역정책을 벤치마킹해 국내 농업의 수출화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청회 제2세션에서는 한-이스라엘 FTA 관련 각계 전문가들의 종합토론 및 방청객 대상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 참여자들은 FTA 체결로 인해 첨단산업 기술 협력, 투자환경 개선, 서비스업(금융, 소프트웨어, 정보기술(IT) 등) 활성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고, 전반적으로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이스라엘 FTA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일 FTA 제9차 수석대표협상 개최(2016.01.19.)

- 2016. 1. 18(월)~19(화), 일본 도쿄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수석대표협상이 1.18(월)~19(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우리 측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 측은 가오옌(高燕) 상무부 부부장을,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했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지금까지 9차례 협상을 진행하여 상품, 서비스, 투자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SPS, TBT, 경쟁, 지적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했다.

이번 수석대표협상에서는 지난 12월 개최된 실무협상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서비스 등 주요 분야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대상 범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1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한·중·일 FTA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바, 이번 9차 한중일 FTA 수석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은 중·일 협상단과 함께 한·중·일 FTA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기로 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중국 현지로부터 듣는 ‘한-중 FTA 발효 1개월’(2016.01.21.)

- KOTRA, 한-중 FTA 조기 정착 지원 위해 ‘일일 모니터링’ 진행 -
- ‘협정 관세 적용’은 무난, ‘통관 간소화’는 정착까지 시간 걸릴 듯 -

KOTRA(사장 김재홍)는 한-중 FTA 발효 직후부터 중국지역 17개 무역관을 통해 진행 중인 한-중 FTA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소개했다. 모니터링은 지역별 관세 적용의 적정성, 통관 효율화(신속 및 간소화) 이행 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우선 관세인하 적용과 관련, 우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국 내 지역별 편차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출품목의 2차년도 관세인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우리 기업이 미처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해 관세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경우 협정에 따라 선적일 기준 1년 이내의 소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퇴세(환급)’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중 FTA가 발효된 지난해 12월 20일 이전에 화물 운송이 진행되고 있었거나 보세창고 등에 보관 중인 경우에 한해 올해 3월 19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 신청할 경우 한-중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관 신속·간소화 이행의 경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는 통관 서류 완비를 전제로 대체적으로 48시간 통관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한 등 일부 지역에서는 48시간 통관이 준수되고 있다는 해관의 설명과 달리 실제 통관을 진행하고 있는 물류업체에서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못 느낀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우한의 후베이지에룽(湖北捷龍物流) 등 다수의 현지 물류업체들은 “지방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 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각종 통관 구비서류를 완비했다라도 일부 품목의 경우, 검역검사 절차에 따라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통관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진 지역인 상하이에서도 화장품, 식품, 영유아용품 등에 대한 검역검사가 강화되면서 평균 4~5일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자제품(가전 포함)의 경우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컨대, 한-중 FTA 협정 관세 적용과 통관 효율화는 큰 틀에서 비교적 무난하게 이행되고 있으나 지침 이해와 적용 등 운영 측면에서 지역별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정착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기업과 중국 해관의 교량 역할을 하는 현지 통관대행사와 수입 에이전트, 지방 해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중 FTA 실무 홍보와 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FTA 전담반을 총괄하고 있는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내 17개 무역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중 수출기업들이 발효 2년 차 혜택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현지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를 독려하여 통관, 검역, 인증 등 비관세 장벽과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와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OTRA는 한-중 FTA의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올해 1월부터 한-중 FTA 대응반을 구성, 한-중 FTA 활용지원센터, 중국지역본부와 협업하여 현지 해관 및 수출입기업, 물류기업을 통해 현지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오고 있다.

출처 : KOTRA 보도자료

산업부, 「메가 FTA 시대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2016.01.23.)

- 메가 FTA의 주요 내용 및 기업의 대응전략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됨에 따라 해외진출 확대 등 글로벌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1.22(금) 「메가 FTA 시대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메가 FTA’를 키워드로 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대한상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협회 담당자 및 기업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2개의 세션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 [1세션] 누적원산지 활용전략/메가 FTA 시대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방안
 [2세션] 무역기술장벽과 수출전략/메가 FTA 체결의 외투여건 개선 효과 및 전망

세미나는 메가 FTA의 원산지, 무역기술장벽 등 주요 규범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말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었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이하 TPP), 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이하 RCEP) 등 메가 FTA의 대두로 세계적인 무역규범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무역규범에 대한 선제적인 이해와 대응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대외경제연구원(KIEP) 서진교 실장은 「2016년 메가 FTA 동향과 활용」 발표를 통해 세계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 밸류체인)의 확산, 신무역 이슈(경쟁, 노동, 환경 등)의 대두가 메가 FTA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역내 물류이동에 유리한 통관제도,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공통 투자규범을 통한 무역·투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진병진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밸류체인과 누적원산지 활용전략」 발표에서 메가 FTA에서의 단일·누적원산지 도입은 기업의 FTA 활용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법인 율촌의 정동수 변호사와 리인터내셔널 이광현 실장은 각각 「메가 FTA 시대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방안」과 「메가 FTA 시대 무역기술장벽과 수출전략」 발표를 통해 메가 FTA의 새로운 투자규범에 따른 위험 관리와 기업들이 체감하는 주요 애로사항인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코트라(Invest Korea) 김연식 실장은 「메가 FTA 체결의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효과 및 전망」 발표를 통해, 메가 FTA 시대에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 증대 방안과 메가 FTA 활용 거점형 투자유치 전략을 소개하였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 기업들이 메가 FTA의 추세와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키워간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전문가·업계 의견을 검토해 앞으로 FTA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메가 FTA 전략 세미나」에 이어, 2월부터 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등 최근 발효된 FTA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업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구미(2월), 인천(3월), 창원(4월) 등에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SECA) 1차 협상 개최(2016.01.27.)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하 “한-에 SECA[※]”) 제1차 협상이 1.26(화)-1.28(목),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었다.

※ 에콰도르 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FTA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여 양측이 SECA라는 명칭에 합의(내용은 FTA와 동일)

우리 측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 에콰도르 측은 Humberto Jimenez(움베르토 히메네즈) 대외무역부 통상협상 차관보가 수석대표로서 협상을 이끌며,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총 37명의 협상단이 참석하였다.

양국은 지난 '15년 8월 25일 서울에서 한-에 SECA 협상개시 선언을 하였고, '15.12.10-11일간 예비 협의(뉴욕)를 통해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을 확인하는 세부 협상 운영방안에 합의한바 있다.

현지 시간으로 1.26(화) 오전, Diego Aulestia(디에고 아올레스티아)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장관 참석하에 개최된 한-에 SECA 제1차 협상 개최식에서 정승일 FTA 정책관은 개최사를 통해 “한-에 SECA를 통해 양국이 각각 역동적인 아시아 시장과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남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40년 전 에콰도르로 첫 수출된 포니 자동차가 한국인들에게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 주었듯이, 한-에 SECA가 양국 수출경쟁력 회복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원산지·통관·서비스·투자·무역구제·SPS·TBT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기본입장 교환 및 협의를 진행하였고, 양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SECA 협상과 병행하여 '무역·비즈니스 촉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기업환경 개선, 산업발전 경험 공유 및 양국 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

〈한·에콰도르 연도별 무역 현황(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수출	금액	438	887	887	857	920	812	641
	증가율	(△30.0)	(102.4)	(△0.1)	(△3.4)	(7.4)	(△11.8)	(△21.0)
수입	금액	10	12	31	40	48	342	262
	증가율	(△61.3)	(21.9)	(150.0)	(29.0)	(22.5)	(607.6)	(△23.6)
교역액		448	899	917	897	968	1,154	903
무역수지		428	875	856	817	872	470	378

〈2015년 한·에콰도르 주요 교역 품목(MTI 4단위기준, 백만불, %)〉

수출품목	금액	증감률	수입품목	금액	증감률
승용차	142	△25.9	원유	194	△30.5
자동차부품	109	△2.4	새우	48	14.5
휘발유	54	0.0	동괴및스크랩	9	△7.7
합성수지	45	△49.1	과실류	5	2,192.3
화물자동차	36	△29.5	어육	2	△23.5
소계	385	-	소계	256	-
전체	641	△21.0	전체	262	△23.6

〈한국의 對에콰도르 투자 현황(단위: 천불, ()는 신고건수)〉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월	누계
금액	272	0	23,234	25,992	765	2,464	25	106,671
건수	3	0	10	7	4	4	1	56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 FTA 지원사업 활용안내 설명회」 개최 (2016.01.30.)

- 한-중 FTA 활용안내 및 전문가 개별상담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주형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박성택)와 공동으로 1월 29일 (금) 14:30~16:30 서울 상암 중소기업 디엠씨(DMC)타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지원사업 활용안내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한-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15.12.28)」에 이어 관계부처·기관의 각종 지원사업을 통합 안내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는 「한-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종합설명, 6개 부처·기관별 활용지원사업 세부설명, 질의·응답, 개별상담의 순으로 진행했다.

※ 산업부, 관세청, 중기청, 코트라, 중진공, 차이나데스크 등 6개 기관

찾아가는 FTA 서비스, 현장 컨설팅, 원산지발급 제3자 확인 사업 등 각종 한-중 FTA 활용지원 사업과 차이나하이웨이, 중국인증 획득지원, 중국시장 유통망 진출지원 등 각종 마케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한-중 FTA라는 새로운 기회 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회복세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중미 FTA 제3차 협상 개최(2.22~26, 샌프란시스코) (2016.02.23.)

한-중미 FTA* 제3차 협상이 2.22(월)~26(금)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다.

※ 중미 6개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이며, '14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GDP규모 5위(2,098억 불), 인구규모 3위(4,350만 명)

우리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중미는 멜빈 E. 레돈도(Melvin E. Redondo) 온두라스 경제통합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중미 6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다.

※ 중미 측 수석대표 : 파나마산업통상부 차관 다이애나 살라사스, 과테말라(경제통합통상부 차관 엔리크 락스 팔로모), 엘살바도르(경제부 차관 루스 에스뜨렐야 로드리게스 데 수니가), 코스타리카(대외무역부 차관 존 폰세카), 니카라과(산업통상부 국장 크리스띠앙 로베르토 마르띠네스 모랄레스)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지난 11월까지 3차례 협상 (TOR 1회, 본협상 2회)을 진행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높은 수준으로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통관, 정부조달, 협력,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 (TBT), 총칙 등 주요 장(챕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3차 협상부터는 상품, 서비스·투자, 금융, 통신, 정부조달, 협력 분야 등에 대한 협의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노동·환경 챕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기업의 對중미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양해) 협상을 본격화함으로써,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과 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자유무역정책(FTA)정책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최근 감소 추세에 있는 對중미 교역의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최근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미시장에 대해 우리기업의 수출 및 투자진출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중미 FTA를 조속히 타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 (대對)중미 교역규모, 무역협회 '13년 56억 달러 → '14년 50억 달러 → '15년 41억 달러
- ※※ ('16년 경제성장 전망, 세계은행) 파나마 6.2%, 니카라과 4.2%, 코스타리카 4.0%, 과테말라 3.6%, 온두라스 3.4%, 엘살바도르 2.5%

〈중미 6개국 경제규모〉

구분	GDP(억불)	1인당 GDP(불)	인구(백만명)
과테말라	632.2	3,886.4	16.3
엘살바도르	256.5	4,022.5	6.4
온두라스	199.4	2,364.6	8.4
니카라과	123.2	1,965.0	6.3
코스타리카	516.2	10,671.6	4.8
파나마	474.7	11,849.7	4.0
SIECA(6개국)	합계:2,202.2	평균:5,793.3	합계: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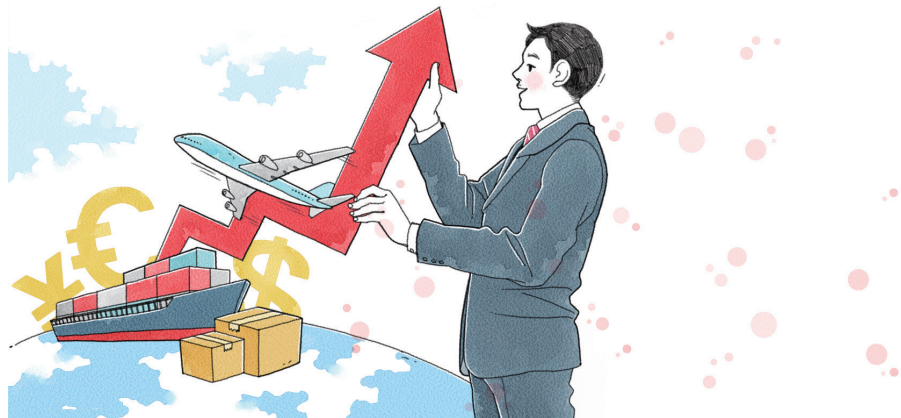
[출처: IMF, '15.10월 기준 예측치]

〈한-중미 6개국 교역현황〉

(단위: 백만불, 출처: 한국 무역협회)

국가	2014년			2015년		
	수출	수입	총교역	수출	수입	총교역
과테말라	320	321	641	398	162	560
엘살바도르	139	58	197	129	14	143
온두라스	115	51	166	117	55	172
니카라과	182	22	204	149	13	162
코스타리카	243	291	534	245	150	395
중미공동시장(5개국)	999	743	1,742	1,038	394	1,432
파나마	2,765	495	3,260	2,230	391	2,621
중미6개국	3,764	1,238	5,002	3,268	785	4,05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우크라이나와 EU의 FTA 발효 및 러시아의 보복 조치(2016.01.05.)

유럽과 경제통합 목적으로 '14년 체결된 우크라이나-EU FTA가 지난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른 러시아의 러-우 FTA 중단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의 FTA를 1년 동안 잠정 중단 선언했다.

구소련 국가 모임인 CIS*는 '11년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우크라이나-EU FTA 체결로 유럽상품이 유리한 조건으로 러시아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 : 구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의 정치 공동체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몰도바, 카자, 우즈벡,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등 12개국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필리핀, 올해 EU와 FTA 협상 개시 (2016.01.11.)

필리핀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상반기 중 유럽연합(EU)과도 FTA 협상 개시 선언하였다.

현재 필리핀은 아세안 10개국 중 5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전년도 EU와의 무역수지는 약 125억 유로이다.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베트남 FTA 추진 가속화(2016.01.11.)

베트남은 TPP를 포함하여 RCEP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칠레와 FTA 체결 등 양자 FTA도 가속화 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공장' 위상 강화를 위해 경제 개방이 필수라는 정부의 판단이 뒷받침으로 FTA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중국-GCC FTA 연내 마무리 합의 (2016.01.18.)

1.20(水)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여 GCC* 회원국들과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안에 양자 간 FTA 협상을 곧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Gulf Cooperation Council(걸프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자원이 풍부한 걸프 지역 수니파 왕정 6개국으로 구성

중국-GCC FTA는 협상이 개시된 지 10년 동안 진행과 중단을 반복하다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정책과 중국의 투자가 절실한 중동 국가들의 이해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

※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一帶)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 실크로드 (一路)를 의미하며 2049년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60개국을 포함하는 거대 경제권 형성 목표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미국-EU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올해 타결 예상 (2016.01.25.)

1.24(日) 폴란드를 방문 중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지난 3년간 이어진 TTIP*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와있으며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 세계 경제의 1위, 2위를 차지하는 EU와 미국의 무역협정으로 '13년 2월 협상 개시 선언, 한국은 미국 및 EU와 양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

출처 : 관세청 주간 FTA 동향



TPP 정식서명, 12개 가입국 국내 비준 절차 개시 (2016.02.15.)

2.2(火)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 회원국 경제·통상 장관이 참석하여 작년 10월 합의한 TPP 협정문에 공식 서명하고 신속한 국내 비준 절차 진행과 가입 희망국*에 대한 대응 방안을 협의 하였다.

※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대만, 태국, 필리핀 등 5개국 가입 희망

TPP는 서명 후 2년 내 회원국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60일 후 발효, 2년 이후 12개국 GDP 85%를 차지하는 6개국 이상 비준 절차 완료 시 60일 후 발효되므로 미국과 일본의 비준이 관건이며 미국 공화당은 11월 대선 이후 TPP 처리 방침 확정이다.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미국, ASEAN 회원국 TPP 참여 독려 (2016.02.15.)

2.15(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국-아세안 10개국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세안의 TPP 참여 독려를 통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강화 모색하였다.

※ 아세안 10개국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등 4개국이 TPP 참여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EU-미국 FTA TTIP 12차 라운드 협상 시작 (2016.02.29.)

2.22(月) 브뤼셀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FTA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12 라운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번 협상은 2.26(金)까지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및 관세 철폐, 공공조달 분야 참여를 위한 공동 규율방안을 협의하였다.

EU와 미국은 2013년 7월 TTIP 체결 1차 협상을 시작했으며 미국 대통령 임기 내(2017년 1월) 까지 협정을 마무리할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출처: 관세청 주간 FTA 동향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과 용어 이해하기

김수정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우리나라의 최초의 FTA인 '04년 한-칠레 FTA 이후 현재는 14개국 총 51개 국가와 FTA를 발효한 상태이다. 특히, '15년 한-중 FTA, 한-뉴질랜드 FTA, 한-베트남 FTA는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어 올해 2년 차에 접어들었다. 또한, 한-콜롬비아 FTA는 우리나라의 비준 완료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비준 절차가 지연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발효, 비준이라는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본문에서는 FTA 체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체결, 타결, 비준, 발효에 대한 용어의 설명과 함께, 우리나라 FTA 추진 동향, 향후동향과 함께 살펴본다.



주요 용어로 보는 우리나라 FTA 체결 과정

FTA는 체결 → 타결 → 비준 → 발효를 통해 협상이 시작되어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FTA 체결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양국가 간 FTA를 체결할 것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FTA가 양국 간 체결되면, 타결(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의미)과 국회의 확인절차(비준)를 거친다. 이때 FTA의 체결에서 발효까지 기간은 협정마다 각기 다르게 진행된다.

예를 들어, 한-중 FTA의 경우는 '14년 11월 베이징에서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15년 12월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반해 얼마 전 FTA 발효 4주년을 맞은 한-미 FTA의 경우 '07년 4월 공식 협상 발효 후 '12년 3월 FTA가 발효되었다. 한편,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 측의 FTA 비준을 위한 의회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대기 중이며, 연내 발효를 눈앞에 두고 있다.

〈표 1. FTA 용어설명〉

구분	용어 설명
체결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당사국에서 체결할 것에 서명한 것
타결	협정에 관한 내용 전부를 인정하여 시행을 준비하자는 것
비준	조약의 내용에 합의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한 조약을 국가원수(헌법상 조약체결권자)나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발효	위 조약을 본격시행하는 일자, 즉 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 법률이나 조약의 시행 공표일을 말함

우리나라 FTA 추진동향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전에는 전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서 살짝 비껴가 있었다. 이에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다발적,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상품관세 철폐, 서비스·투자·정부조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10년 이후 올해까지 매해 1건 이상의 FTA가 발효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중국, ASEAN과의 FTA는 완료된 상태이다.

〈표 2. 우리나라의 FTA 체결 현황〉

구분	상대국	발효시점(국회비준일)	의의
발효 (14건 51개국)	칠레	04.04.01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6.03.02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4개국)	06.09.01	유럽시장의 교두보
	ASEAN(10개국)	07.06.01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13년 기준)
	인도	10.01.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28개국)	11.07.01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페루	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12.03.15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13.05.01	유럽·중양아시아 진출 교두보
	호주	14.12.12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15.01.01	북미 선진시장
	뉴질랜드	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15.12.20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14.12월 기준)
중국	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14년 기준)	
타결(1건 1개국)	콜롬비아	14.04.29 국회비준(우리측)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 EFTA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아세안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EU :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우리나라 FTA 향후동향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FTA 추진 정책으로 수출입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존의 양자 간 FTA에서 RECP, 한-중-일 FTA 등 다자간 FTA와 신흥국가인 중미 FTA도 추진하고자 협상을 진행 중이다. OECD국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의 FTA 역시 지난 1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마무리된 상태이나, 우리나라 FTA 체결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수출 저변을 넓히려는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FTA 협상진행 및 협상재개 여건조성 국가〉

구분	상대국	진행현황	의의
협상진행	중·일	2012년 11월 20일 협상 개시 선언	동북아 경제 통합 기반 마련
	RCEP	2012년 11월 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협상 개시 선언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위상 제고
	중미 (6개국)	2015년 7월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선언	중미 신시장 진출
	에콰도르 SECA	2015년 2월 한-에콰도르 FTA 추진 가능성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협상재개 여건 조성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GCC		

※ 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RCEP: 중국,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10개국)



FTA ANALYSIS 산업별 FTA 이행 동향: 2015년 MTI 1단위 기준 주요 특혜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송경은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연구위원

I. 對FTA 교역동향

2015 對FTA 교역비중은 67.3%로 절반 이상이 FTA국과의 교역

2015년 우리나라의 교역은 9,634억 달러로 전년보다 12.3% 감소하였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가운데, 수입의 감소가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2015년 對FTA 교역 비중은 67.3%로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의 발효에 의한 것으로, 이로써 우리나라의 對FTA 교역은 절반 이상의 비중을 넘어섰다.

2015년은 한-캐나다 FTA의 발효로 시작하여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의 발효로 마무리되어, 2012년 한-미 FTA 이후 다소 소강상태에 있었던 FTA 교역이 대폭 확대되는 원년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말 기준 51개국과 14건의 FTA를 발효 중에 있다.



〈표 1. FTA 발효국*과의 교역 현황〉

(단위: 억불)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FTA 발효국	수출	406	711	1,457	1,925	2,163	2,417	3,741
	수입	385	597	1,204	1,598	1,710	1,993	2,738
	교역	791	1,308	2,662	3,523	3,873	4,411	6,480
전체	수출	3,635	4,664	5,552	5,480	5,596	5,727	5,268
	수입	3,231	4,252	5,244	5,196	5,156	5,255	4,365
	교역	6,866	8,916	10,796	10,676	10,752	10,982	9,634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		11.5%	14.7%	24.7%	33.0%	36.0%	40.2%	67.3

※ 연도말 발효국가 기준
 자료: 무역협회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표 1〉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총교역 대비 FTA 비중은 2014년 40.2%에서 2015년 67.3%로 무려 27.1%p. 증가하였다. 2015년 말 기준 FTA국과의 교역 중 수출은 전체의 71.0%, 수입이 62.7%가 FTA 발효국과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출 측면에서 FTA 국가의 비중이 보다 높은 것이 확인된다.

① 對FTA 수출

2015년 對FTA국 수출증감률은 -5.0%로, 전체 수출증감률 -8.0%을 상회

201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은 5,268억 불로 전년 대비 8.0% 감소하였다. 對FTA 체결국 수출은 3,741억 불로,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FTA 대상국으로의 수출은 對세계 수출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FTA 수출은 전체적인 수출 감소를 저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표 2〉와 같이 우리나라 2015년 對FTA 협정 기준 수출 증가는 호주(5.3%), EFTA(211.8%)로 나타나며, 개별 국가로는 ASEAN 회원국 베트남(24.2%), EU 회원국 영국(27.8%), 이탈리아(1.7%), 스페인(5.0%), 체코(12.6%), 그리스(25.2%)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FTA 체결국가와의 수출 실적〉

(단위: 억불)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국	1,453	-0.4	1,371	-5.6
ASEAN	846	3.1	748	-11.5
미국	703	13.3	698	-0.6
EU	517	5.7	481	-6.9
인도(인디아)	128	12.4	120	-5.9
호주	103	7.5	108	5.3
EFTA	20	-17.2	63	211.8
터키	67	17.8	62	-6.2
캐나다	49	-5.5	46	-6.0
칠레	21	-15.2	17	-16.4
뉴질랜드	17	16.1	13	-27.0
페루	14	-3.4	12	-12.5
소계	3,937	4.1	3,741	-5.0
총합계	5,727	2.3	5,268	-8.0

※ FTA 소계는 2015년말 발효 기준으로 작성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② 對FTA 수입

2015년 對FTA국 수입증감률은 -16.9%로, 전체 수입증감률 -7.6%보다 높은 수준

2015년 말 기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738억 불로, 전년 대비 7.6% 감소하였다. 對 세계 수입 감소율 16.9%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부문에서도 對FTA 체결 국과의 교역 감소폭이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對FTA 체결 협정 중 수입이 감소하지 않은 국가는 터키(20.5%), 중국(0.2%)이며 이외의 국가는 -2.8 ~ -26.8%로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개별 국가로는 ASEAN 회원국 베트남(22.7%), 캄보디아(11.6%), EU 회원국 슬로바키아(3.2%), 체코(3.4%), 덴마크(0.3%), 헝가리(42.7%), 포르투갈(12.1%), 아일랜드(7.6%)로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FTA 체결국가와의 수입 실적〉

(단위: 억불,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중국	901	8.5	903	0.2
EU	624	11	572	-8.3
ASEAN	534	0.1	450	-15.7
미국	453	9.1	440	-2.8
호주	204	-1.8	164	-19.5
EFTA	56	-12.1	51	-9.0
칠레	48	3.3	44	-8.5
인도(인디아)	53	-14.7	42	-19.6
캐나다	54	15.4	40	-26.8
뉴질랜드	15	9.4	12	-19.7
페루	14	-27.7	11	-20.7
터키	7	-5.3	8	20.5
소계	2,964	5.5	2,738	-7.6
총합계	5,255	1.9	4,365	-16.9

※ FTA 소계는 2015년말 발효 기준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③ 對FTA 수지

2015년 우리나라의 對세계 무역수지는 902.6억 불 흑자를 보이고 있다. 對FTA 무역수지는 1002.8억 불로 對세계 무역수지를 상회하고 있다. FTA 체결국 가운데 교역 흑자국은 중국, ASEAN, 미국, 인도, 터키, EFTA, 캐나다, 페루, 뉴질랜드 등 9개 협정이며, 적자국은 칠레, 호주, EU로 나타났다. 가장 적자규모가 큰 대상국은 EU이나, 그 규모는 2014년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2위 적자국인 호주는 2014년 12월에 FTA가 신규 발효된 국가로 EU와 마찬가지로 그 규모는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수출입이 동시에 둔화되면서, 수입이 수출 감소량보다 더 많이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계의 시장인 중국 경제 둔화, 저유가 지속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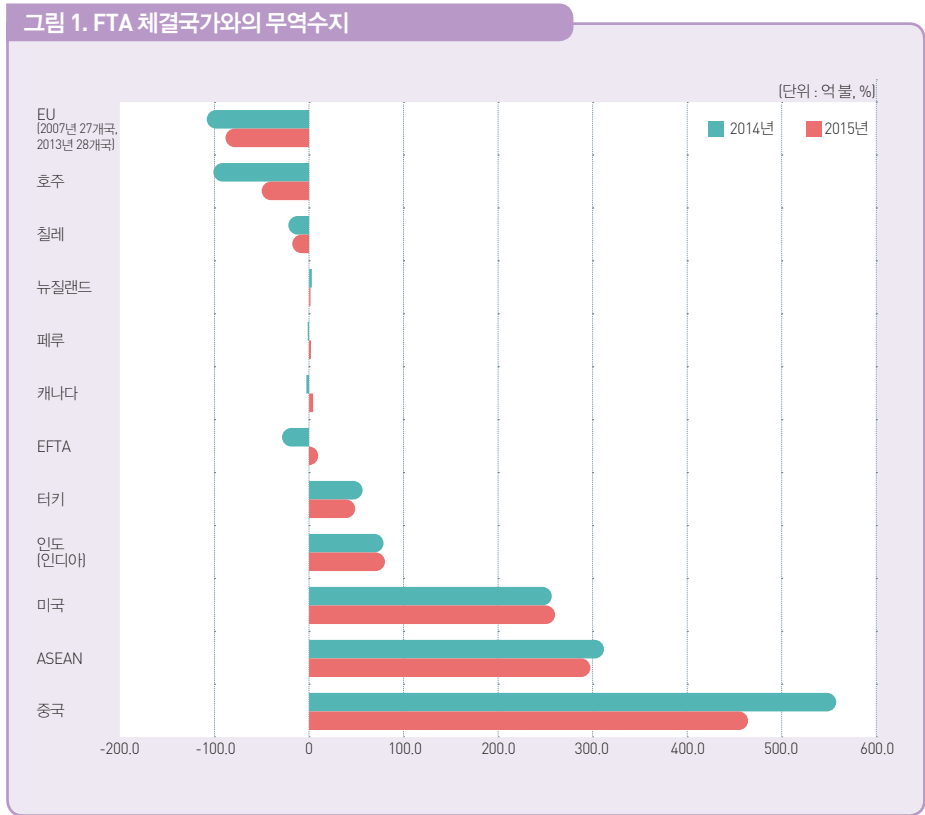
〈표 4.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단위: 억 불, %)

구분	2014년	2015년
중국	552.1	468.7
ASEAN	311.6	297.9
미국	250.0	258.1
인도(인디아)	75.1	77.9
터키	60.1	54.6
EFTA	-36.1	11.8
캐나다	-5.3	6.4
페루	-0.4	0.8
뉴질랜드	2.0	0.4
칠레	-27.3	-26.6
호주	-101.3	-56.1
EU	-107.4	-91.2
소계	973.2	1,002.8
총합계	471.5	902.6

※ FTA 소계는 2015년 발효 기준
자료: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직접 작성

그림 1. FTA 체결국가와의 무역수지



II. 對FTA 특혜 수출동향^①

2015년 FTA 특혜수출 실적은 50,190백만 달러 수준

〈표 5〉는 FTA 대상이 되는 품목 가운데 실제 C/O를 발급한 FTA 특혜수출 실적을 주요 품목군 (MTI 1단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對FTA 특혜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50,190백만 달러로 확인된다. 2015년 특혜 수출실적 증가분에는 기체결 FTA뿐만 아니라 신규 발효된 한-캐나다, 한-호주 FTA 실적도 포함되었다.

① 특혜수출실적은 칠레, EFTA, EU, 미국, 페루, 터키, 호주, 캐나다 등 8개 협정이다. 즉 기관발급인 아세안과 페루는 제외한 실적으로 해석상 주의를 요한다.

MTI 1단위 기준으로 분류한 주요 특혜 수출품목군은 기계류, 화학 공업제품, 전자전기제품이다. 상위 3개 품목군이 전체의 75.4%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품 등 기계류가 26,303백만 달러로 전체 특혜 수출의 절반 이상인 52.4%를 점유하고 있다. 2위 특혜수출 품목군은 화학공업제품으로, 특혜수출규모는 5,870백만 달러로 11.7%의 비중을 보인다.

이외 전자전기제품 11.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8.2%, 광산물 5.3%, 철강금속 5.3%, 섬유류 3.8%, 농림수산물 1.1%, 생활용품 0.7%, 잡제품 0.3% 순으로 점유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품목군의 구성 비중은 대체로 2014년과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 5. MTI 1단위 분류 10대 산업의 FTA 특혜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MTI 1단위	2015년	비중
기계류	26,303	52.4
화학공업제품	5,870	11.7
전자전기제품	5,655	11.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4,094	8.2
광산물	2,651	5.3
철강금속제품	2,648	5.3
섬유류	1,918	3.8
농림수산물	563	1.1
생활용품	357	0.7
잡제품	131	0.3
총합계	50,190	100.0

주: 특혜수출금액은 기관발급인 아세안 인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비중은 2014년도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FTA 특혜수출은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의 FTA 적용 C/O 발급금액을 의미함

FTA 특혜수출 활용률 : 전협정 평균 71.9%, 전년 대비 2.7%p. 증가

2015년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전협정 평균 71.9%로 도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7%p 증가한 수준이다.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FTA 대상이 되는 품목의 FTA 적용 C/O 발급금액의 비중을 의미한다. 국내 수출 세번 기준으로 FTA 대상 여부를 사전 분석한 뒤 도출한 수치이다. 이에 국내 수출 무역통계 기준 FTA 활용률은 추정치임을 유의해야 한다.

협정별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칠레, EFTA, EU, 페루 등이 80% 이상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인다. 이어 미국, 터키, 캐나다도 80%에 근접한 활용률을 시현하고 있다. 다만 최근 발효된 호주와 아시아권인 아세안·인도 등이 다소 낮은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평균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전년보다 2.7%p. 증가한 71.9%로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6. 협정별 FTA 활용률〉

[단위 : %]

FTA 발효국	2014년(A)		2015년(B)		증감폭(B-A)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칠레	80.5	98.3	80.7	98.8	0.2	0.5
EFTA	79.6	41.6	80.4	43.7	0.8	2.1
아세안	37.0	73.8	42.5	75.4	5.5	1.6
인도	56.3	67.0	62.4	73.1	6.1	6.1
EU	85.3	66.8	85.3	71.0	0	4.2
페루	90.5	89.2	83.6	90.6	△6.9	1.4
미국	76.2	66.0	79.1	67.5	2.9	1.5
터키	72.7	64.4	79.1	69.1	6.4	4.7
호주	-	-	69.7	63.5	-	-
캐나다	-	-	79.9	61.2	-	-
FTA 전체	69.2	68.0	71.9	70.2	2.7	2.2

자료 : 관세청 보도자료(2016. 2. 1)



Ⅲ. 산업별 FTA 특혜 수출 동향^②

① 기계류

2015년 기계류의 FTA 활용수출액^③의 협정별 점유율은 EU(43.7%) > 미국(32.4%) > 호주(7.4%) > 캐나다(6.8%) > 터키(4.3%) > 칠레(3.5%) > 페루(1.4%) > EFTA(0.5%)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76.1%로 두 개 국가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발효 1년 차를 맞는 호주와 캐나다의 점유율이 각각 7.4%, 6.8%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표 7. 기계류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률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12,011	52.5	11,488	43.7	-4.4
미국	8,112	35.4	8,522	32.4	5.1
호주	-	-	1,951	7.4	-
캐나다	-	-	1,794	6.8	-
터키	1,053	4.6	1,124	4.3	6.7
칠레	1,128	4.9	921	3.5	-18.4
페루	486	2.1	370	1.4	-23.8
EFTA	104	0.5	133	0.5	28.0
합계	22,894	100.0	26,303	100.0	14.9

② 기관발급인 아세안과 인도는 제외하고 분석함.

③ FTA 대상 C/O 발급 금액을 의미. 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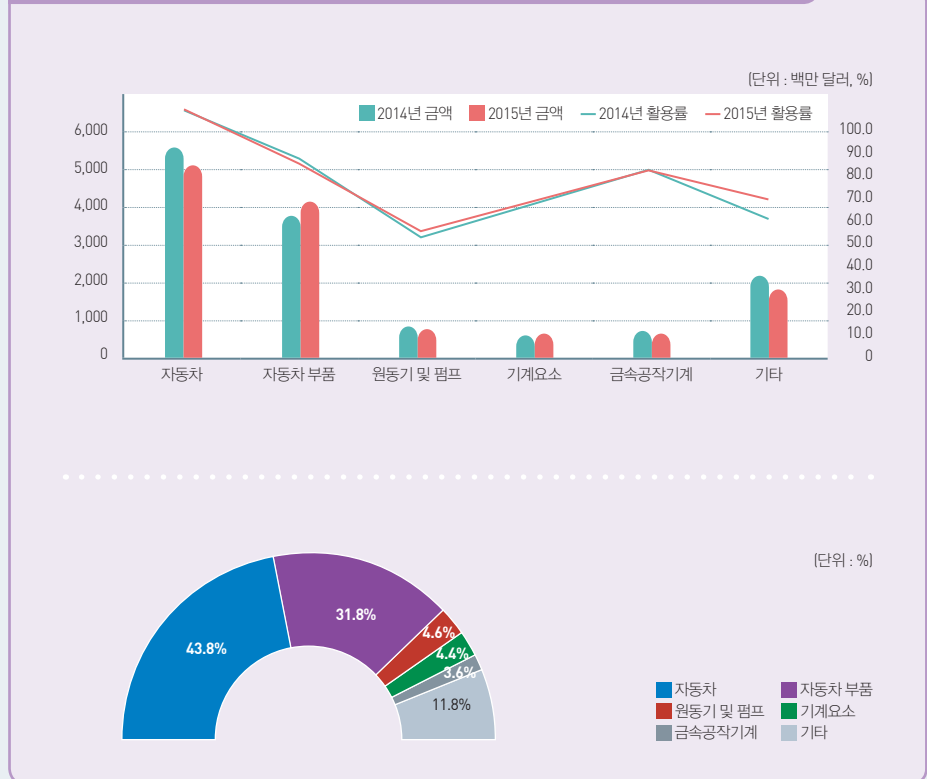
한-EU FTA : 기계류 FTA 활용률 88.0%로 다소 감소

기계류의 1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U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3.7%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4년 52.5%에서 점유율이 8.8%p. 감소한 수준이다. 점유율의 감소는 호주, 캐나다 등 신규 FTA의 발효,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다.

〈그림 2〉와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동기 및 펌프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43.8%) > 자동차부품(31.8%) > 원동기 및 펌프(4.6%) > 기계요소(4.4%) > 금속공작기계(3.6%) 순으로 나타났다.

對EU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8.0%로 전년 대비 -1.7%p. 감소하였으나, 90%에 가까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 기계류 상위 수출 품목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엔진 부분품(자동차 부품), 공기조절기 부분품(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기어·전기작동식 밸브 등(기계요소)으로 나타났다.

그림 2. 對EU (기계류의 품목별 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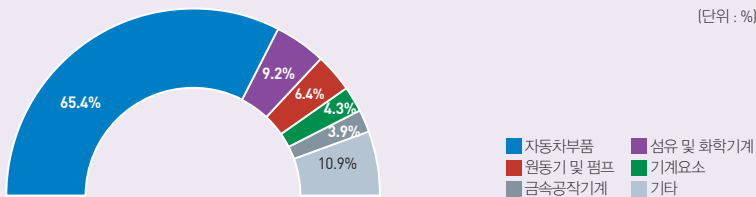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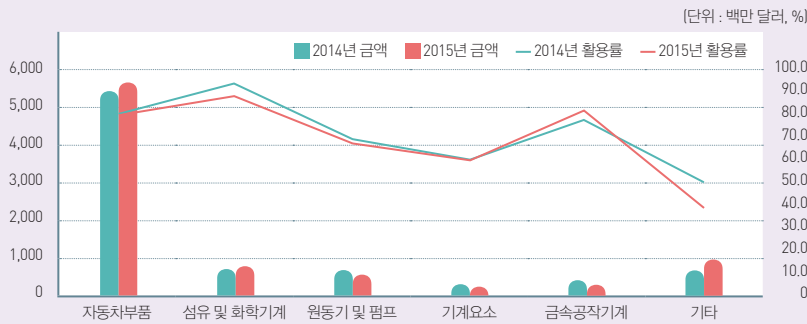
한-미 FTA : 기계류 FTA 활용 중 자동차 부품 점유 우세

기계류에서 규모 기준 2위 FTA 활용수출을 하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2.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4년 35.4%에서 점유율이 3.0%p. 감소한 수준이나, 금액은 5.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과 같이 對미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부품, 섬유 및 화학기계, 원동기 및 펌프, 기계요소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부품(65.4%) > 섬유 및 화학기계(9.2%) > 원동기 및 펌프(6.4%) > 기계요소(4.3%) > 금속공작기계(3.9%) 순으로 나타났다.

對미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0.1%로 전년 대비 2.8%p. 증가하였다. 2015년 기계류 FTA 활용률은 개별품목으로는 기계요소, 금속공작기계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섬유 및 화학기계, 자동차 부품, 원동기 및 펌프 등에서 활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섬유 및 화학기계는 2015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과 활용률이 동시에 상승한 품목이다.

그림 3. 對미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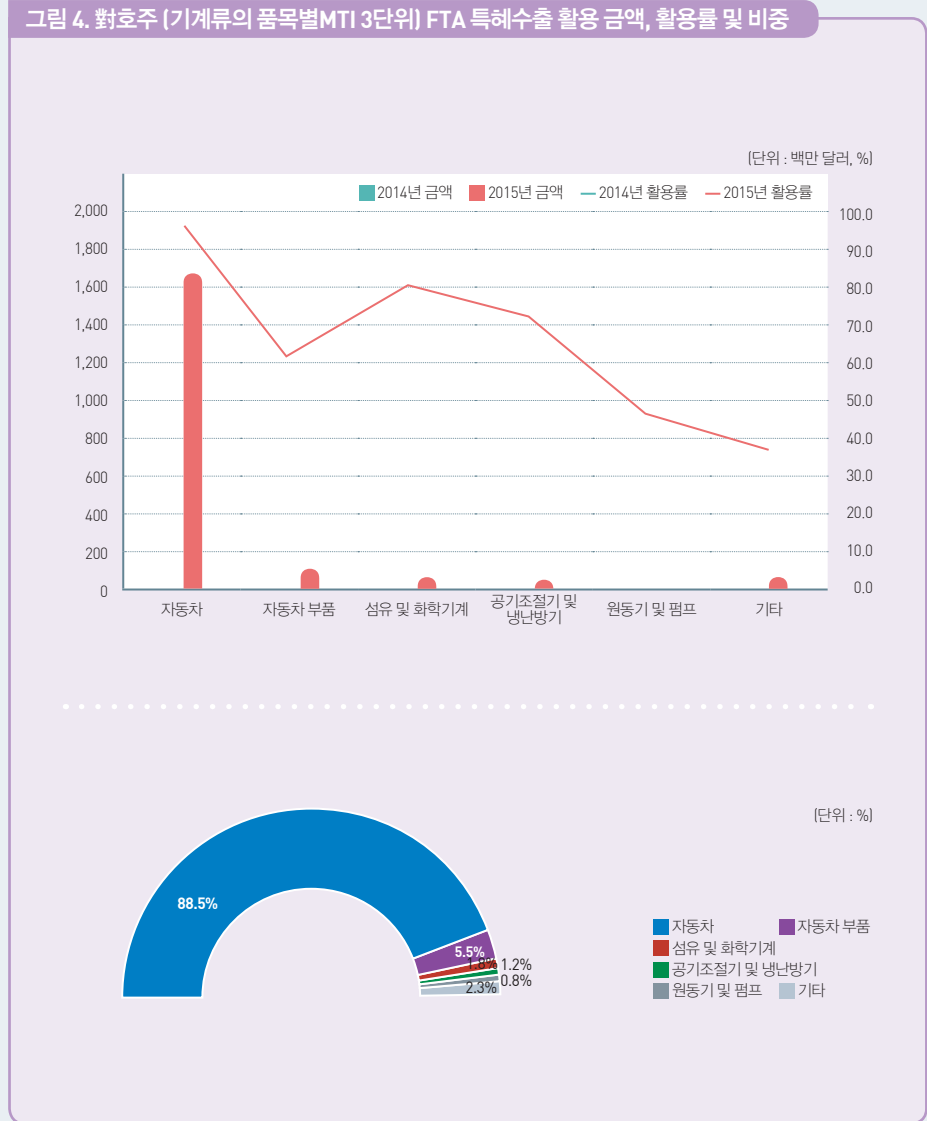


한-호주 FTA : 신규 발효 협정, 기계류 FTA 활용률 87%

기계류에서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호주 FTA 협정은 2014년 말에 발효된 신규 협정이다.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7.4%를 점유하고 있다.

對호주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두 품목에 94%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對호주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7.0%로 신규 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달성하고 있어 FTA 수출이 안정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對호주 (기계류의 품목별 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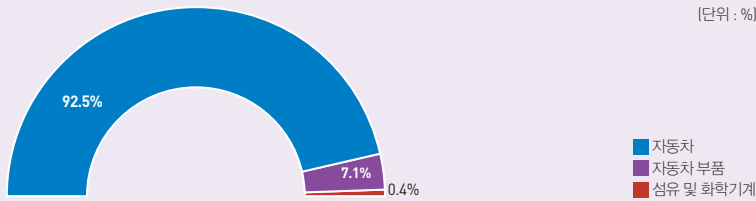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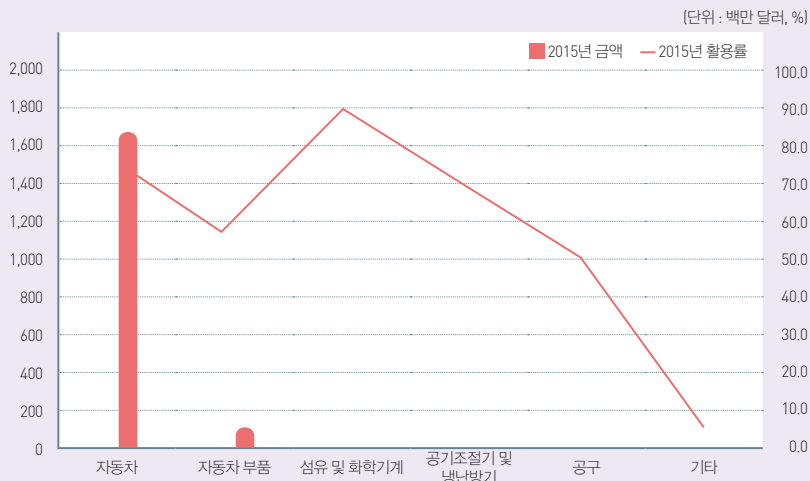


한-캐나다 FTA : 신규 발효 협정, 기계류 FTA 활용률 87%

기계류에서 5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 협정은 2015년 발효된 신규 협정이다.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6.8%를 점유하고 있다.

對캐나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두 품목에 99%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對캐나다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1.7%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가 가장 주요한 FTA의 특혜 수혜 품목이다.

그림 5. 對캐나다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한-터키 FTA : 기계류의 FTA 특혜수출 및 활용률 대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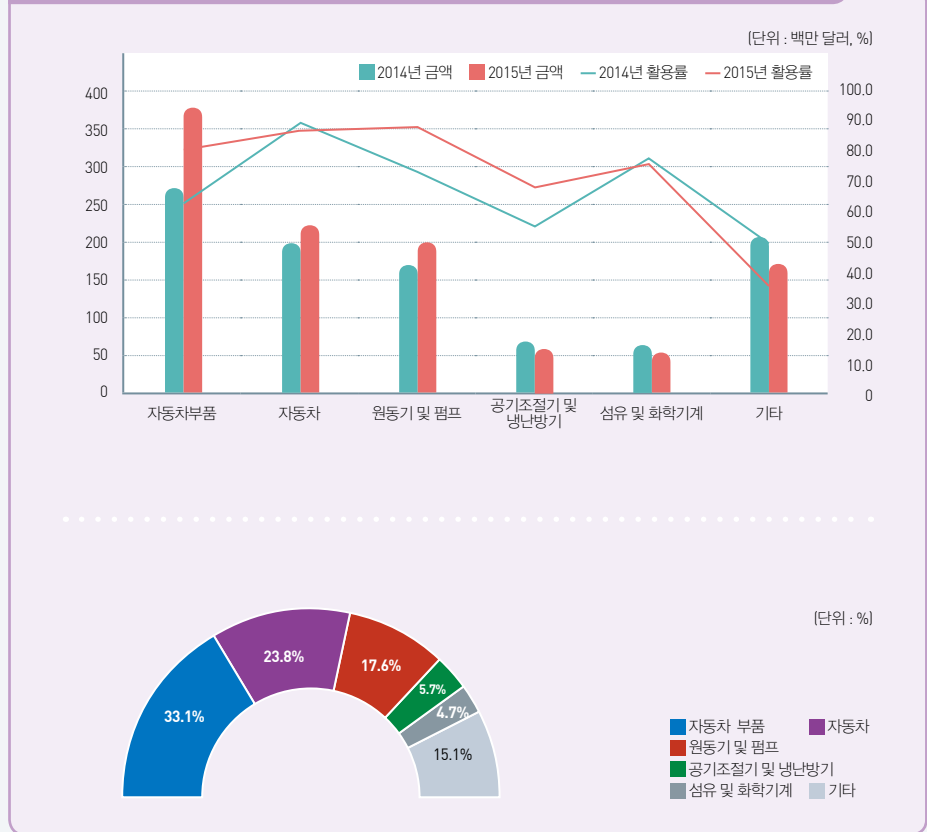
기계류에서 5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3%를 점유하고 있다. 전년 대비 활용수출액이 6.7%증가하였다.

〈그림 6〉과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 부품(33.1%) > 자동차(23.8%) > 원동기 및 펌프(17.6%) >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5.7%) > 섬유 및 화학기계(4.7%) 순으로 나타났다.

對터키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6.2%로, 전년 대비 17.1%p.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5년 기계류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자동차 부품(28.5%p.), 원동기 및 펌프(23.7%p.)로 나타났다.

기계류의 對터키 FTA 활용률은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6. 對터키 (기계류의 품목별 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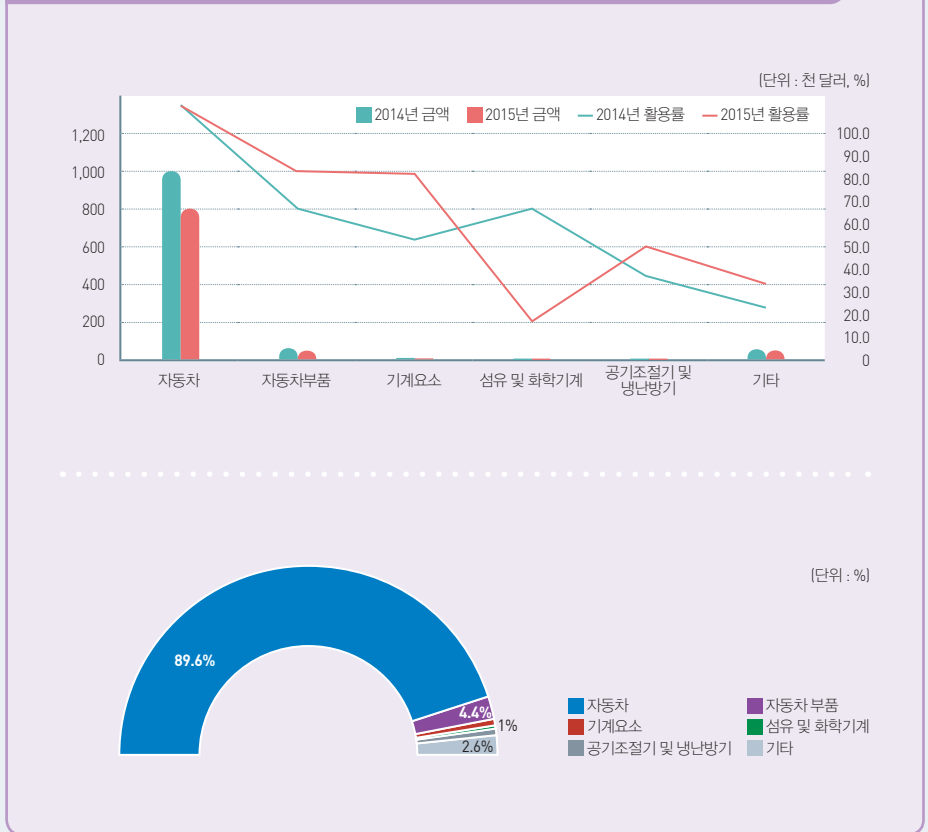
한-칠레 FTA : 자동차의 FTA 수출 활용률 증가

기계류에서 6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4년 4.9%에서 점유율이 1.4%p. 감소한 수준으로, 對칠레 수출은 2년 연속 특혜 수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그림 7〉과 같이 對칠레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89.6%) > 자동차부품(4.4%) > 기계요소(1.5%) > 섬유 및 화학기계(1.1%) >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0.9%)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5대 품목에 없었던 섬유 및 화학기계 가 신규로 포함되었다.

對칠레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6.6%로 이는 전년 대비 1.4%p. 감소한 수준이다. 2015년 기계류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섬유 및 화학기계로 전년 대비 50.1%p.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對칠레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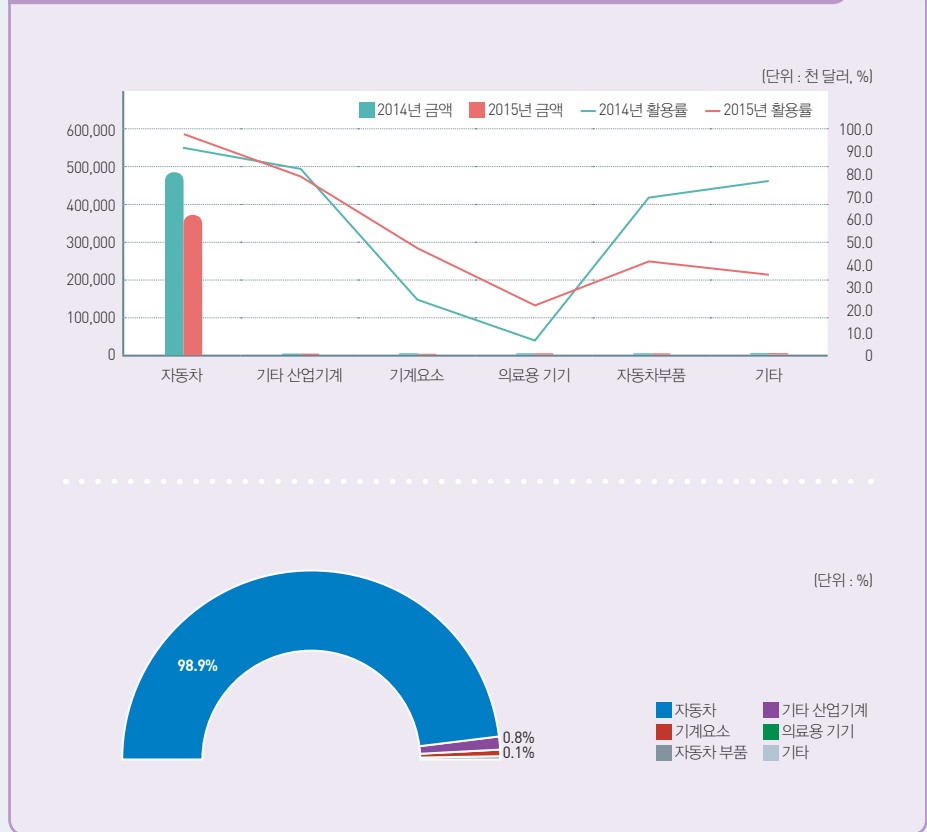
한-페루 FTA : 기계류의 FTA 활용 수출은 98.9% 자동차

기계류에서 7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페루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4%를 점유하고 있다. 칠레와 마찬가지로 FTA 특혜수출은 전년 대비 23.8%p. 감소하였다.

對페루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기타 산업기계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 (98.9%) > 기타 산업기계(0.8%)로 자동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對페루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1.4%로 전년대비 7.9%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FTA 특혜수출은 전년대비 24.4%p. 감소하였으나, 기타 산업기계, 기계요소, 의료용기기는 각각 전년대비 2.7배, 3.1배, 5.3배 증가하였다. 對페루 기계류는 금액 수준은 적지만, 자동차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출 및 FTA 활용이 동반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對페루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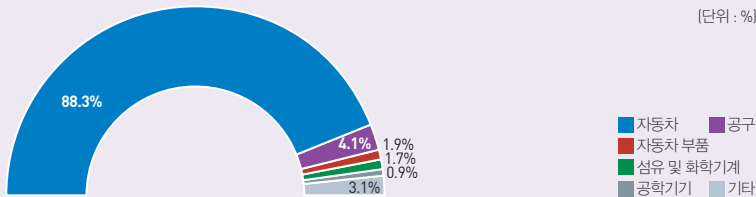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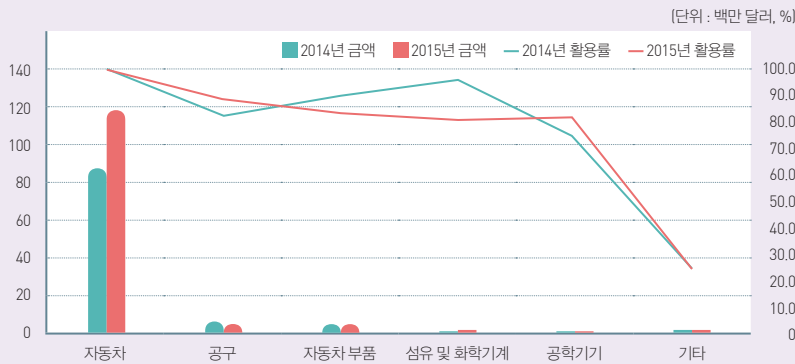
한-EFTA FTA : 자동차의 FTA 활용 수출 규모 증가

기계류에서 금액 기준 8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기계류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5%를 점유에 불과하나, 전체적인 규모는 2014년 대비 28.1% 증가하였다.

<그림 9>와 같이 對EFTA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자동차, 공구, 자동차부품 등이다. 그 비중은 자동차(88.3%) > 공구(4.1%) > 자동차부품(1.9%) > 섬유 및 화학기계(1.7%) > 광학기계(0.9%) 순으로 다른 협정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對EFTA 기계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1.0%로 전년 대비 3.6%p. 증가하였다. 한편 2015년 기계류 FTA 특혜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FTA 활용률은 섬유 및 화학기계,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품목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對EFTA 기계류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② 화학공업제품

2015년 제2위 FTA 활용 품목군인 화학공업제품의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EU(51.6%) > 미국(22.3%) > 터키(19.4%) > 칠레(2.8%) > 호주(2.7%) > 페루(0.4%) > EFTA(0.4%) > 캐나다(0.3%)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73.9%로 집중되어 있다.

〈표 8. 화학공업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2,994	51.3	3,031	51.6
미국	1,309	22.4	1,308	22.3
터키	1,281	22.0	1,141	19.4
칠레	202	3.5	167	2.8
호주	-	-	159	2.7
페루	20	0.3	24	0.4
EFTA	31	0.5	22	0.4
캐나다	-	-	18	0.3
합계	5,836	100.0	5,87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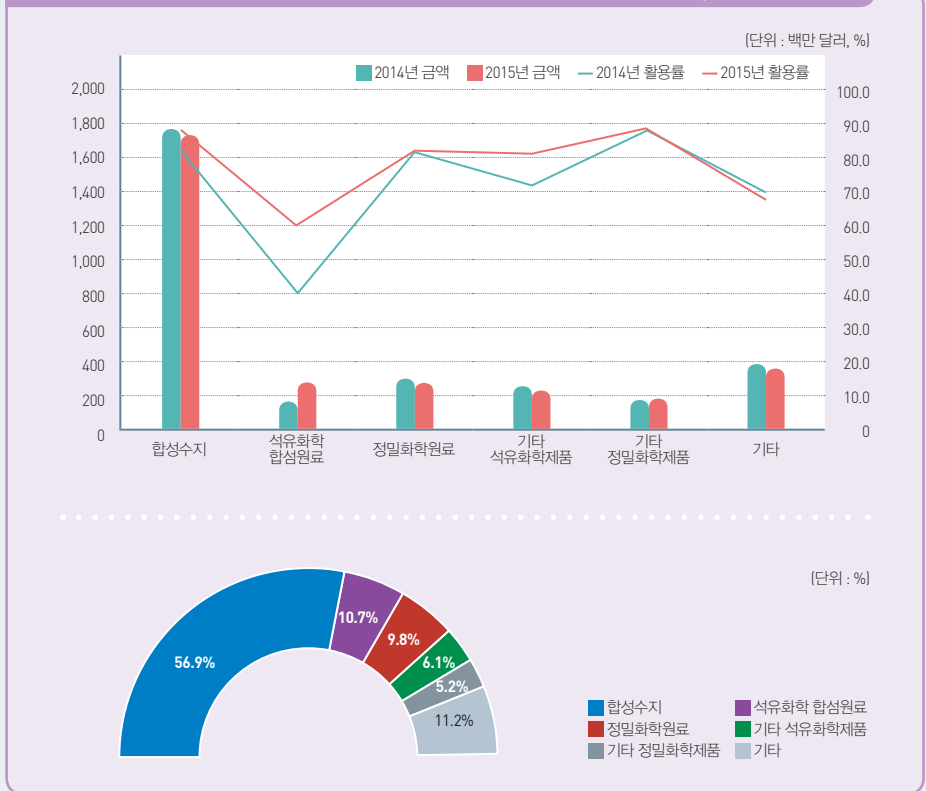
한-EU FTA :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절반 이상이 합성수지

화학공업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51.6%를 점하고 있다. 신규 FTA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2014년 51.3%에서 점유율이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10〉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석유화학합성원료, 정밀화학원료, 기타 석유 화학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56.9%) > 석유화학 합성원료(10.7%) > 정밀화학원료(9.8%) > 기타석유 화학제품(6.1%) > 기타정밀화학제품(5.2%)으로 합성수지가 매우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對EU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0.4%로 전년 대비 3.3%p. 증가하였다. 2015년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합성수지, 석유화학 합성원료, 기타석유 화학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텔레프탈산,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트리에틸렌 글리콜 등 석유화학 합성원료는 전년 대비 114.6% 증가하여 FTA 활용금액과 활용률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그림 10. 對EU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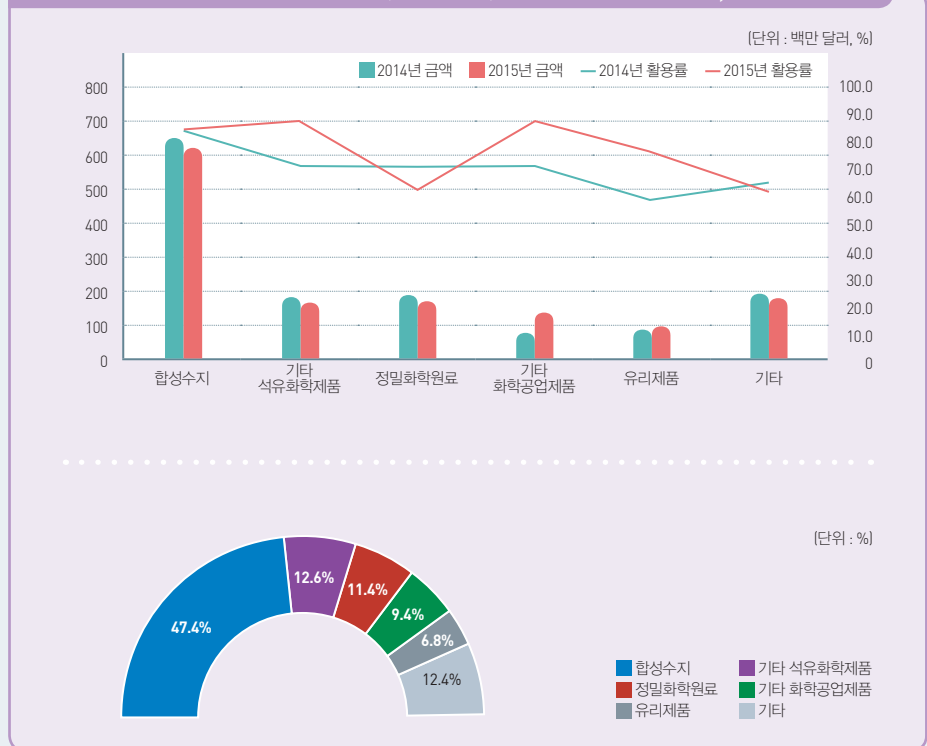
한-미 FTA : 화학공업제품 2015년 활용률 75.4%로 높은 수준 유지

화학공업제품에서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2.3%를 점유하고 있다.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1〉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기타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기타석유 화학공업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47.4%) > 기타석유화학제품(12.6%) > 정밀화학원료(11.4%) > 기타화학공업제품(9.4%) > 유리제품(6.8%) 순으로 EU와 마찬가지로 합성수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對미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5.4%로 전년 대비 1.2%p.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2015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기타 석유화학제품, 기타 화학공업제품, 유리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 미생물, 스테비오사이드 등 기타 화학공업제품은 특혜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 활용률도 19.3%p. 증가한 품목이다.

그림 11. 對미국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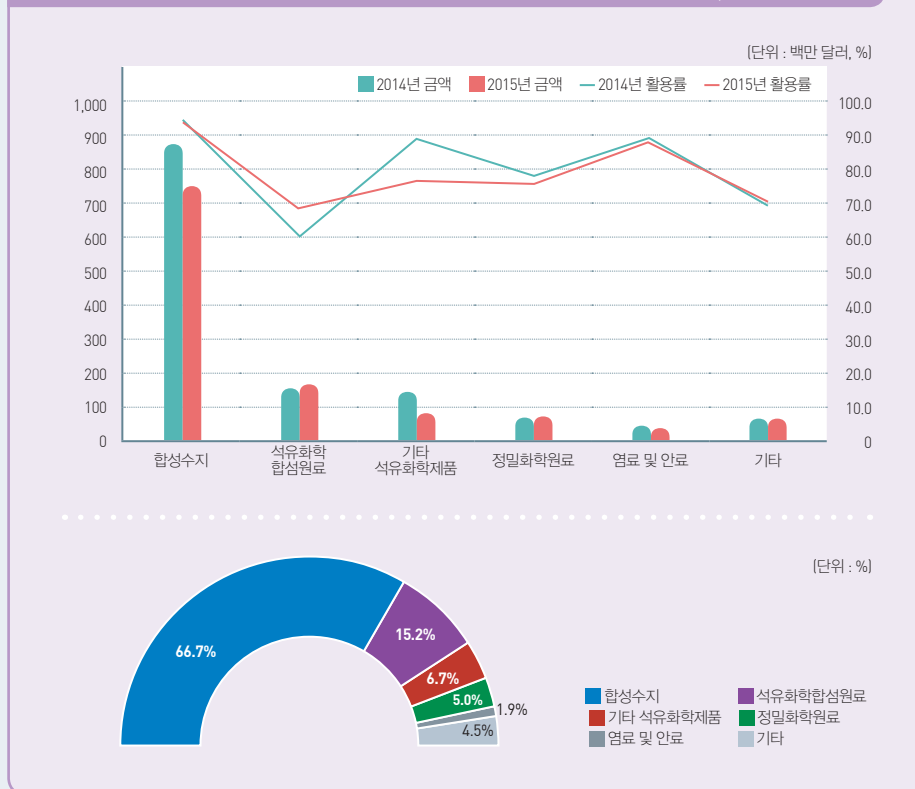
한-터키 FTA :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 평균 83.7%, 증가세 다소 주춤

화학공업제품에서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9.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2014년 22.0%에서 점유율이 2.6%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림 12〉와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석유화학 합성원료, 기타석유 화학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66.7%) > 석유화학 합성원료(15.2%) > 기타석유 화학제품(6.7%) > 정밀화학원료(5.0%) > 염료 및 안료(1.9%) 순으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對터키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3.7%로 이는 전년 대비 4.2%p. 감소한 수준이다. 그리고 2014년 전반적으로 對터키 화학공업제품의 FTA 활용수출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석유화학 합성원료를 제외하고는 2015년에는 대부분 품목에서 감소하였다. 활용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위 5대 품목에서 모두 감소하였다.

그림 12. 對터키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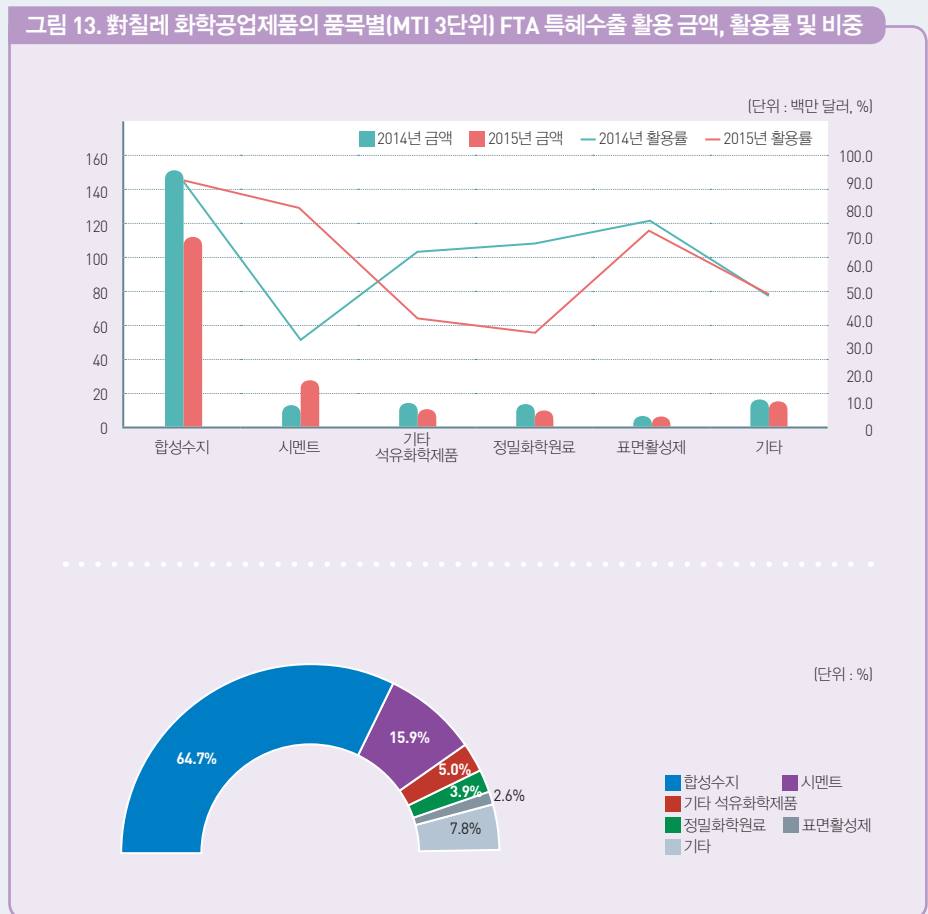
한-칠레 FTA : 합성수지 비중이 압도적, 75%의 안정된 FTA 특혜수출 활용률 유지

화학공업제품에서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8%를 점유하고 있다. 對칠레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은 전년보다 17.1% 감소하였다.

〈그림 13〉과 같이 對칠레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시멘트, 기타석유 화학제품, 정밀화학원료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64.7%) > 시멘트(15.9%) > 기타석유화학제품(5.0%) > 정밀화학원료(3.9%) > 표면활성제(2.6%) 순으로 나타났다.

對칠레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5.1%로 전년 대비 0.4%p. 감소하였으나 7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5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과 활용금액이 동시에 증가한 품목은 시멘트이다.

그림 13. 對칠레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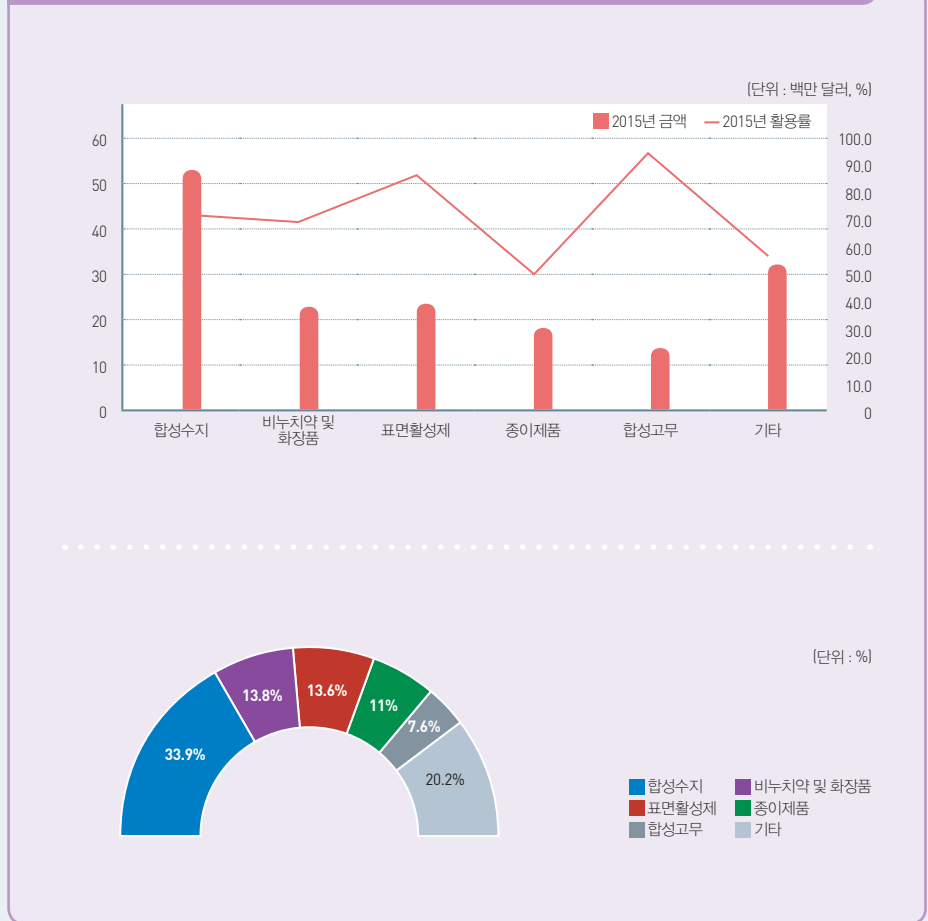
한-호주 FTA : 신규 발효 협정, 화학공업제품 FTA 활용률 66.9%

화학공업제품에서 금액 기준 5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호주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對호주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비누치약 및 화장품, 표면활성제, 종이제품, 합성고무 등이다. 對호주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66.9%로 타 협정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타협정의 경우 특혜수출 상위 5대 물품이 합성수지, 정밀화학제품 등에 집중된 반면, 對호주 FTA 특혜수출은 비누치약 및 화장품, 종이제품 등 생활용품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14. 對호주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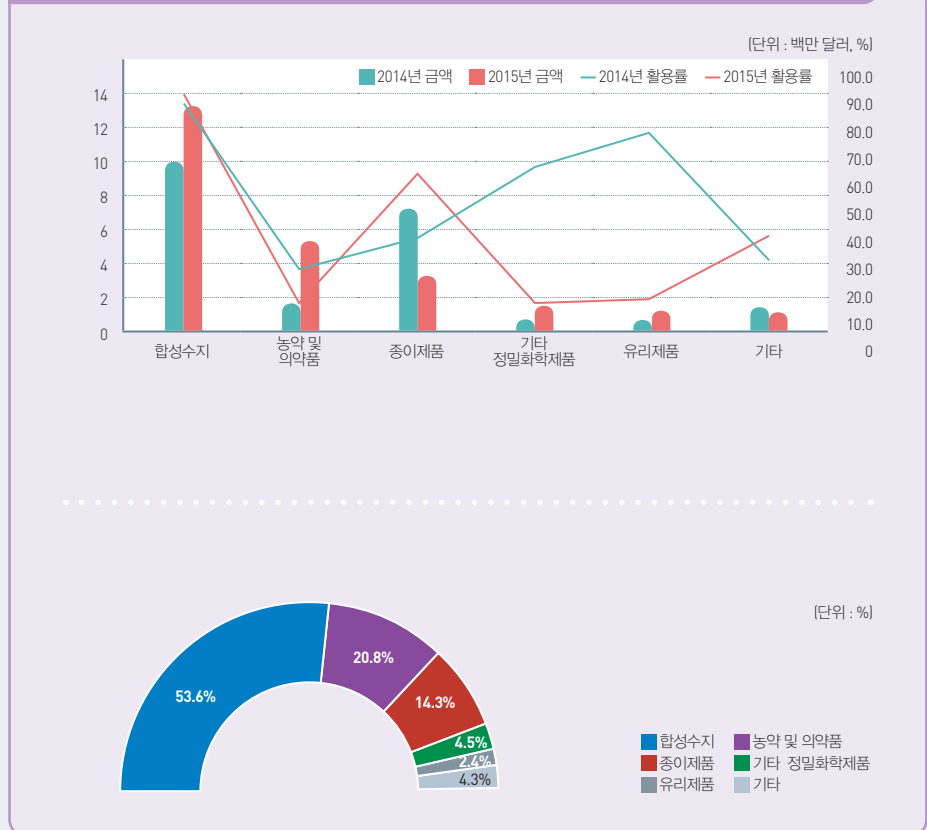
한-페루 FTA : 전반적으로 50% 이하의 낮은 FTA 활용, 합성수지의 수출 증가 고무적

화학공업제품에서 6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페루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4%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신규협정으로 전체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0.3%보다 증가한 수준이다.

〈그림 15〉와 같이 對페루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합성수지, 농약 및 의약품, 종이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합성수지(53.6%) > 농약 및 의약품(20.8%) > 종이제품(14.3%) > 기타정밀화학제품(4.5%) > 유리제품(2.4%) 순으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기타정밀화학제품, 유리제품 등은 2015년에 새로 포함된 품목이다.

對페루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48.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0.7%p. 증가한 수준이나, 타 FTA에 비해서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한편 2015년 화학공업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과 금액이 동시 증가 품목은 농약 및 의약품, 유리제품으로 확인된다.

그림 15. 對페루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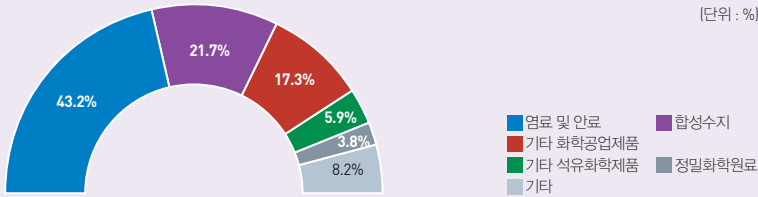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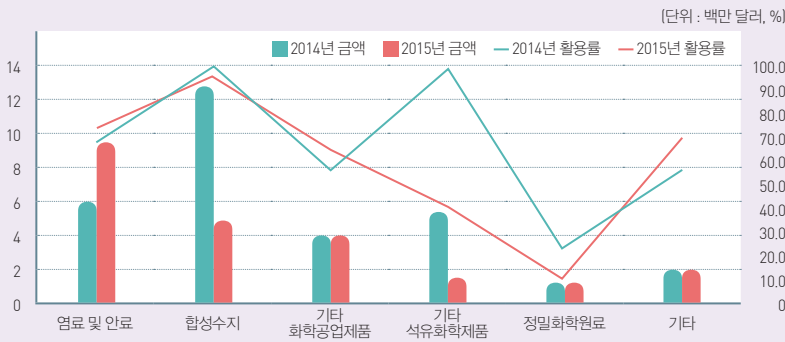
한-EFTA FTA :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5.1%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 지속

화학공업제품에서 금액 기준 7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4% 점유에 불과하다.

〈그림 16〉과 같이 對EFTA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연료 및 안료, 합성수지, 기타화학공업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연료 및 안료(43.2%) > 합성수지(21.7%) > 기타화학 공업제품(17.3%) > 기타석유 화학제품(5.9%) > 정밀화학원료(3.8%) 순으로 합성수지를 1위 품목으로 하고 있는 타FTA에 비해 연료 및 안료 등 이외 품목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對EFTA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5.1%로 전년 대비 18.3%p. 감소하였다. 2015년 화학공업제품의 전체적인 특혜수출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연료 및 안료는 그 규모와 활용률이 동시에 증가한 품목이다. 반대로 특혜수출규모와 활용률이 크게 감소한 품목은 기타 석유화학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對EFTA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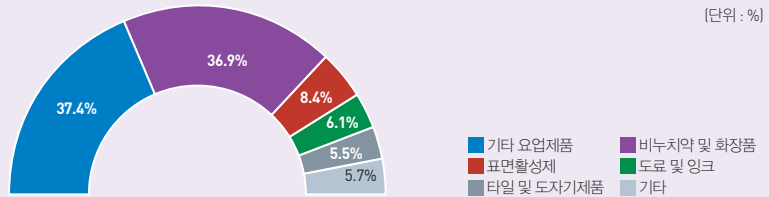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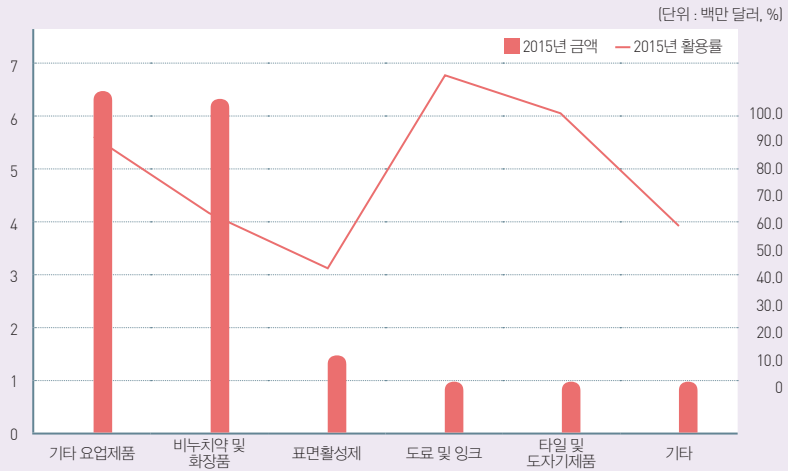


한-캐나다 FTA : 신규 발효 협정, 화학공업제품 FTA 활용률 67.0%

화학공업제품에서 금액 기준 8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화학공업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3%를 점유하고 있다.

對캐나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기타요업제품(37.4%) > 비누 치약 및 화장품(36.9%) > 표면활성제(8.4%) > 도로 및 잉크(6.1%) > 타일 및 도자기 제품(5.5%) 순이다. 對캐나다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67%로 타 협정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17. 對캐나다 화학공업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③ 전자전기제품

2015년 전자전기제품의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EU(45.4%) > 미국(44.3%) > 터키(4.0%) > 호주(2.8%) > 칠레(1.7%) > 캐나다(1.3%) > 페루(0.4%) > EFTA(0.2%) 순으로 나타난다.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9.7%로 집중되어 있다.

〈표 9. 전자전기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2,645	49.6	2,565	45.4
미국	2,197	41.2	2,504	44.3
터키	327	6.1	227	4.0
호주	0	0.0	157	2.8
칠레	113	2.1	97	1.7
캐나다	0	0.0	75	1.3
페루	38	0.7	20	0.4
EFTA	7	0.1	10	0.2
합계	5,327	100.0	5,6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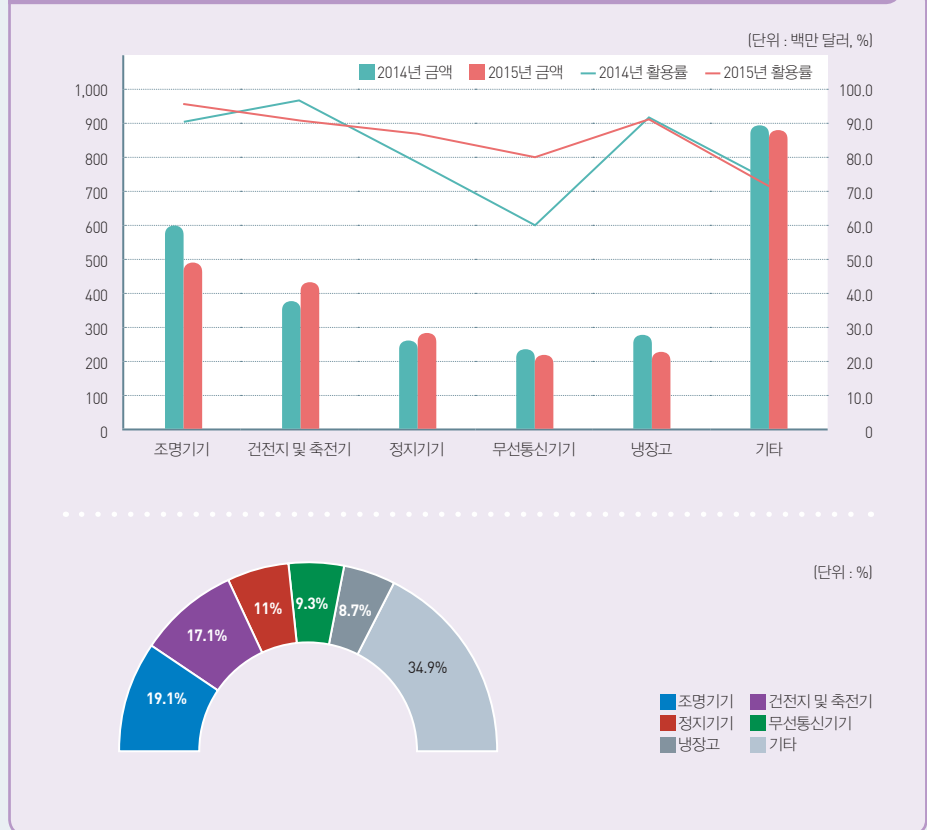
한-EU FTA : 건전지 및 축전지 특혜수출 규모 증가

전자전기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5.4%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18〉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조명기기, 건전지 및 축전지, 정지기기 등이다. 그 비중은 조명기기(19.1%) > 건전지 및 축전지(17.1%) > 정지기기(11.0%) > 무선통신기기(9.3%) > 냉장고(8.7%)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對EU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1.4%로 전년 대비 4.3%p. 증가하였다. 한편 2015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조명기기, 정지기기(기타배전 및 제어기, 유압식 변압기, 자동 제어반 등), 무선통신기기(레이더,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등), 건전지 및 축전지(리튬폴리머 축전지,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등)로 나타났다.

그림 18. 對EU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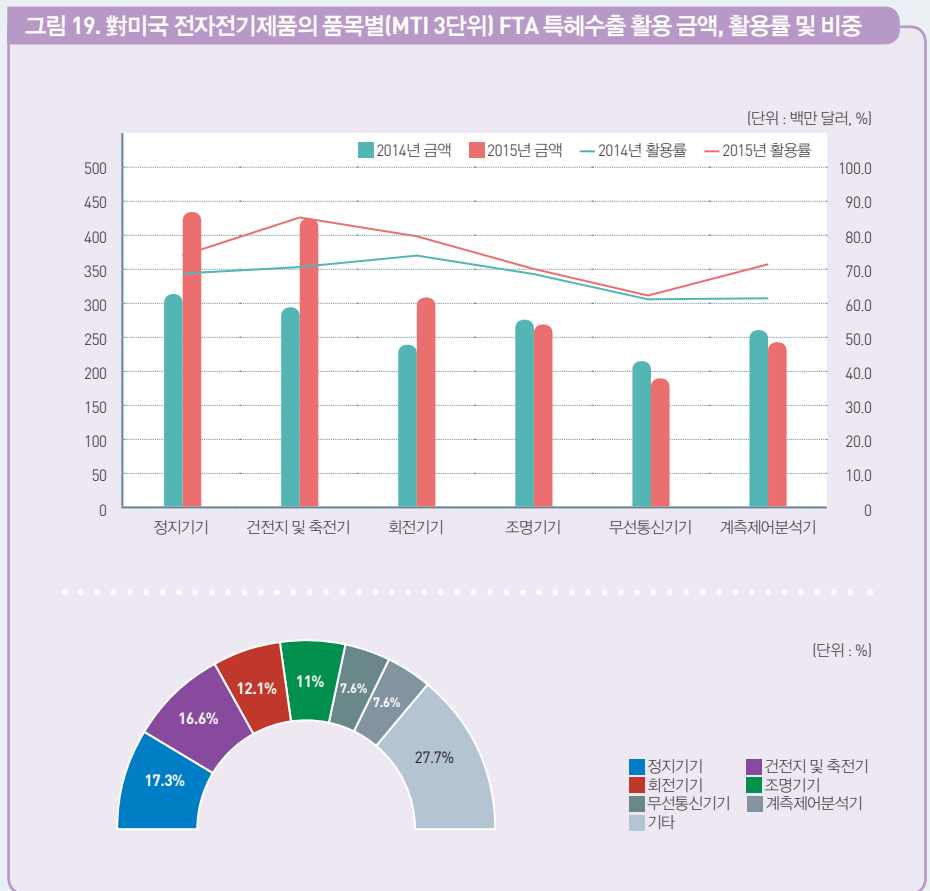
한-미 FTA : 건전지 및 축전지 특혜 수출 규모 및 활용률 증가

전자전기제품에서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5.4%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19〉와 같이 對미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정지기기, 건전지 및 축전지, 회전기기 등이다. 그 비중은 정지기기(17.3%) > 건전지 및 축전지(16.6%) > 회전기기(12.1%) > 조명기기(11.0%) > 무선통신기기(7.6%) > 계측제어분석기(7.6%)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對미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2.8%로 전년 대비 7.8%p. 증가하였으며, 그 규모도 전년 대비 8.1% 증가하였다. 이에 상위 5대 품목 모두에서 FTA 활용률 증가하였다. 특히 건전지 및 축전지는 EU와 마찬가지로 FTA 특혜수출 및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주요 FTA 활용 품목이다.

그림 19. 對미국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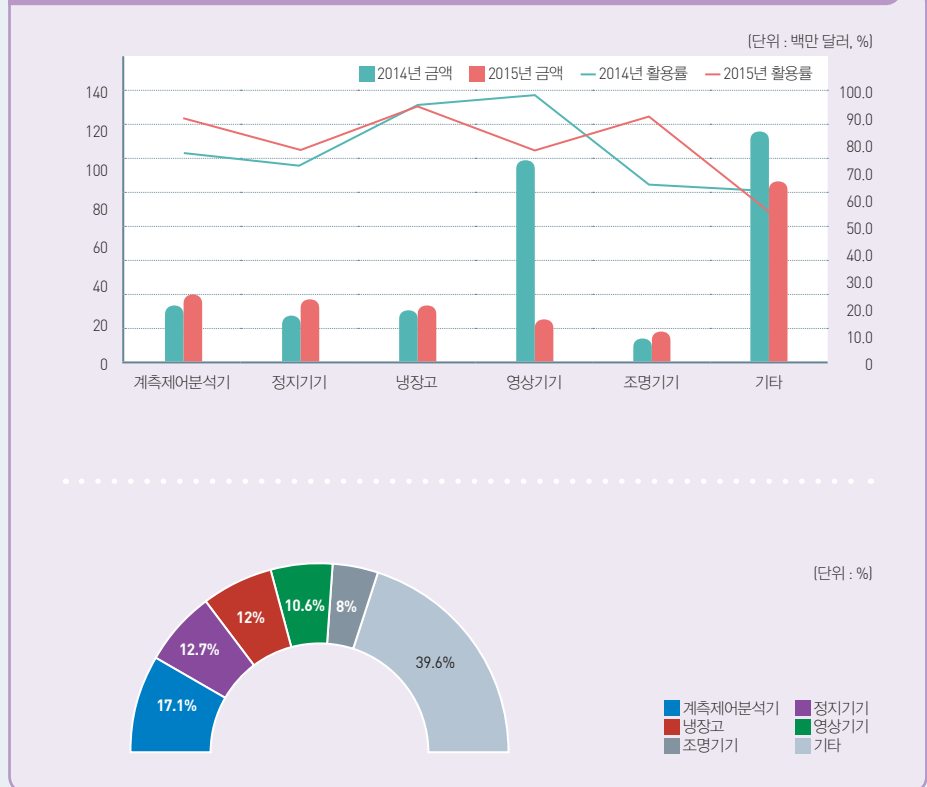
한-터키 FTA :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 평균 73.7%. 전년대비 5.8%p. 감소

전자전기제품에서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전자 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특혜 규모는 전년 대비 -30.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제어계측분석기, 정지기기, 냉장고, 영상기기 등이다. 그 비중은 제어계측분석기(17.1%) > 정지기기(12.7%) > 냉장고(12.0%) > 영상기기(10.6%) > 조명기기(8.0%)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對터키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3.7%로 전년 대비 5.8%p. 감소하였다. 對터키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규모의 감소 원인은 2014년 1위 품목이었던 LCD TV(디지털의 것) 등 영상기기의 부진에 의한 것이다. 한편 2015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과 규모가 동시에 증가 품목은 계측제어분석기, 정지기기, 냉장고, 조명기기 등 영상기기를 제외한 품목이다.

그림 20. 對터키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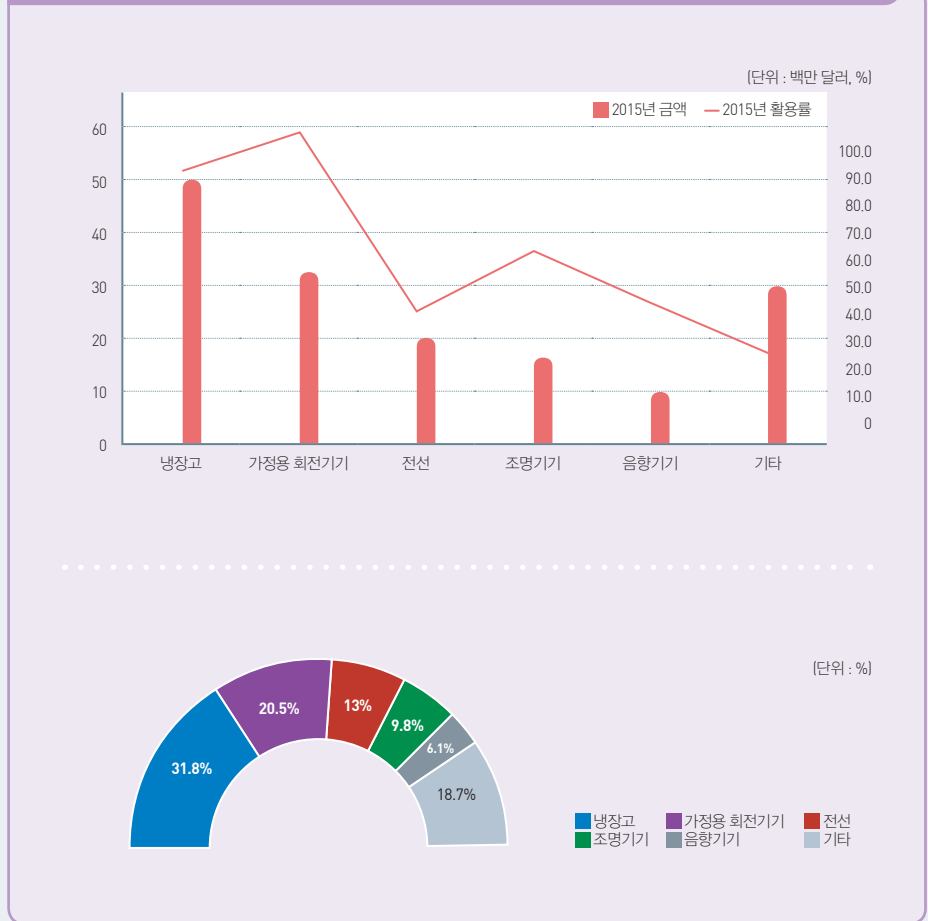
한-호주 FTA : 신규 발효 협정,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가전제품 FTA 활용률 높아

전자전기제품에서 금액 기준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호주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8%를 점유하고 있다.

對호주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냉장고, 가정용 회전기기, 전선, 조명기기 등으로 생활가전 제품이 대부분이다. 그 비중은 냉장고(31.8%) > 가정용 회전기기(20.5%) > 전선(13.0%) > 조명기기(9.8%) > 음향기기(6.1%) 순으로 나타났다.

對호주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1.7%로 타 협정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상위 5개 품목에 냉장고, 가정용 회전기기(세탁기, 에어컨, 접시 세척기)의 활용률은 8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1. 對호주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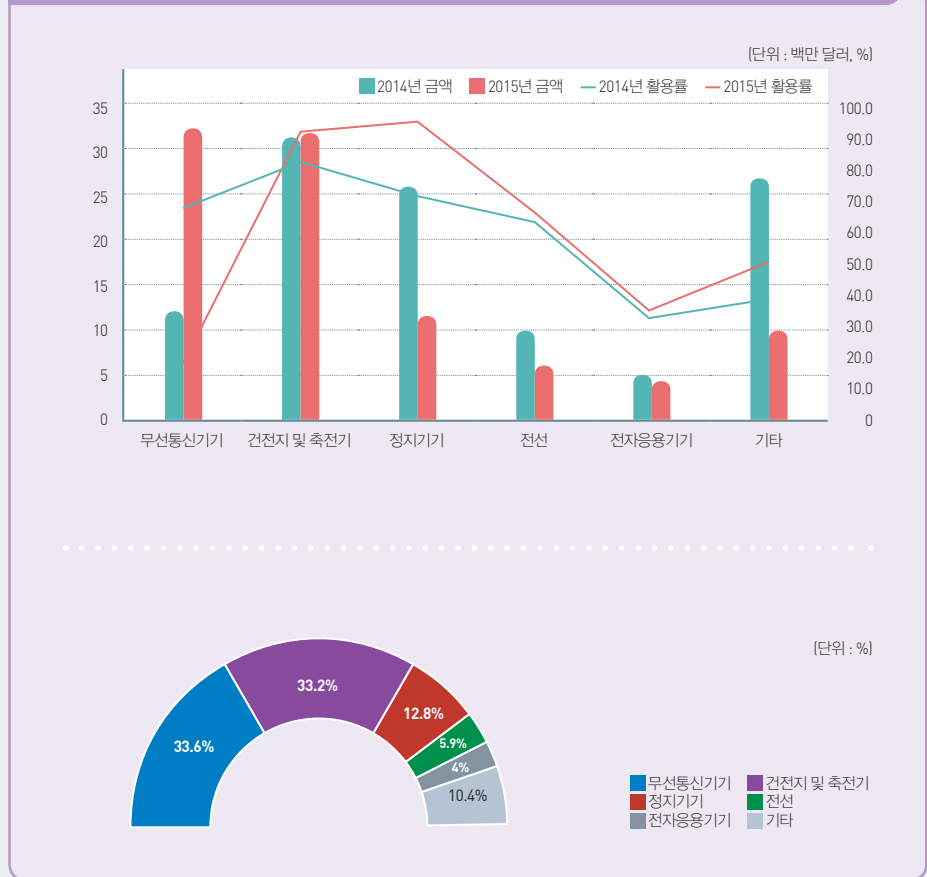
한-칠레 FTA: '무선통신기기'의 특혜 수출 규모 및 활용률 증가

전자전기제품에서 5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칠레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7%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2〉와 같이 對칠레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 건전지 및 축전지, 정지기기 등이다. 그 비중은 무선통신기기(33.6%) > 건전지 및 축전지(33.2%) > 정지기기(12.8%) > 전선(5.9%) > 전자응용기기(4.0%)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對칠레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64.3%로 전년 대비 10.1%p. 증가하였다. 2015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전화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무선통신기기는 FTA특혜수출 활용 규모 기준 2014년 3위 품목에서 2015년 1위 품목으로 순위가 변동되어 2013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림 22. 對칠레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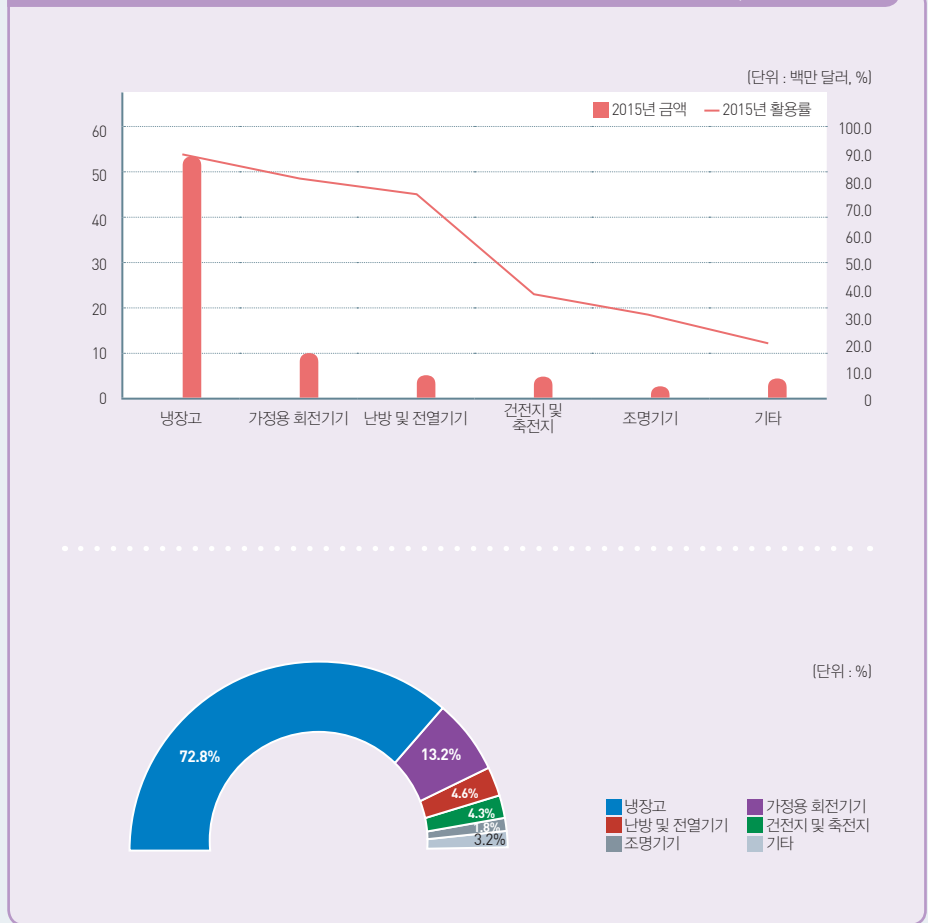
한-캐나다 FTA : 신규 발효 협정, 전자전기제품 FTA 활용률 76.4%

전자전기제품에서 금액 기준 6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對캐나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냉장고, 가정용 회전기기, 난방 및 전열기기 등이다. 그 비중은 냉장고(72.8%) > 가정용 회전기기(13.2%) > 난방 및 전열기기(4.6%) > 건전지 및 축전지(4.3%) > 조명기기(1.8%) 순으로 나타났다.

對캐나다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6.4%로 특히 상위에 냉장고, 가정용 회전기기(접시 세척기, 난방 및 전열기(전기오븐)의 활용률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75%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3. 對캐나다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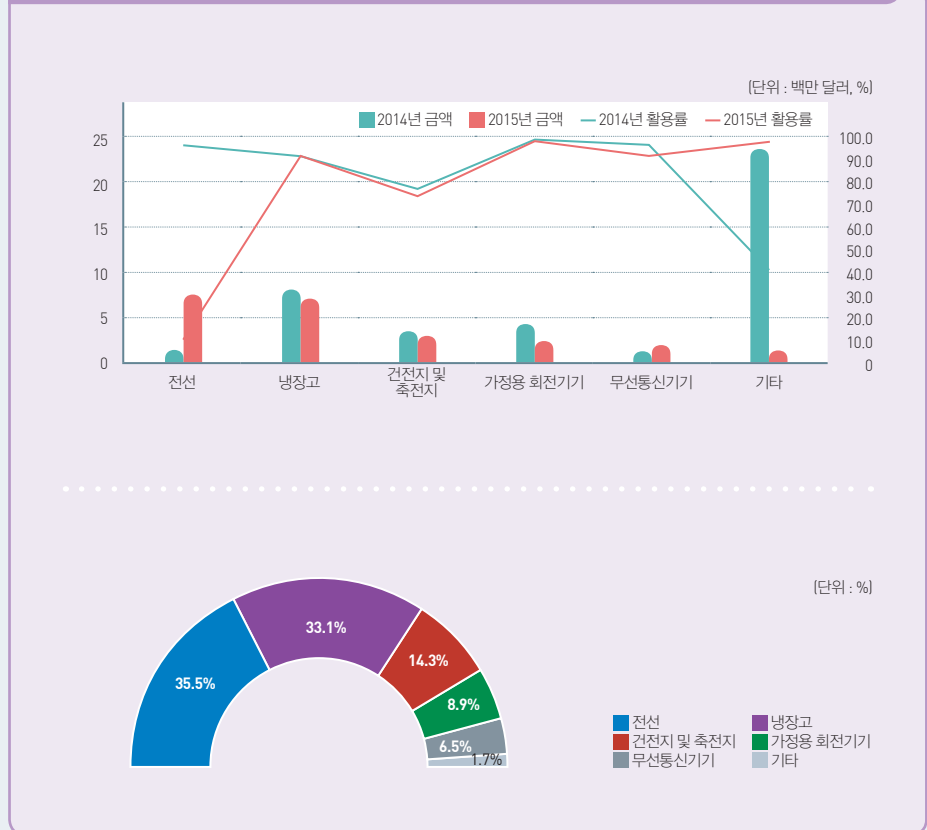
한-페루 FTA : 전자전기제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0.8%로 높은 수준 유지

전자전기제품에서 7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페루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전자 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3%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4>와 같이 對페루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전선, 냉장고, 건전지 및 축전지 등이 다. 그 비중은 전선(35.5%) > 냉장고(33.1%) > 건전지 및 축전지(14.3%) > 가정용 회전기기(8.9%) > 무선통신기기(6.5%) 순으로 나타났다. 전선의 경우 FTA특혜수출 활용 규모 기준 2014년 5위 밖에 위치한 품목이었으나 2015년 1위 품목으로 순위가 변동되었다.

2015년 對페루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0.8%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고,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편 2015년 전자전기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 증가 품목은 전선(플라스틱 절연전선), 무선통신기기(영상모니터)로 특혜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무엇보다 1위 품목인 전선의 경우 특혜 규모는 약 97배, 활용률도 85.2%p. 증가한 주요 FTA 활용 품목이다.

그림 24. 對페루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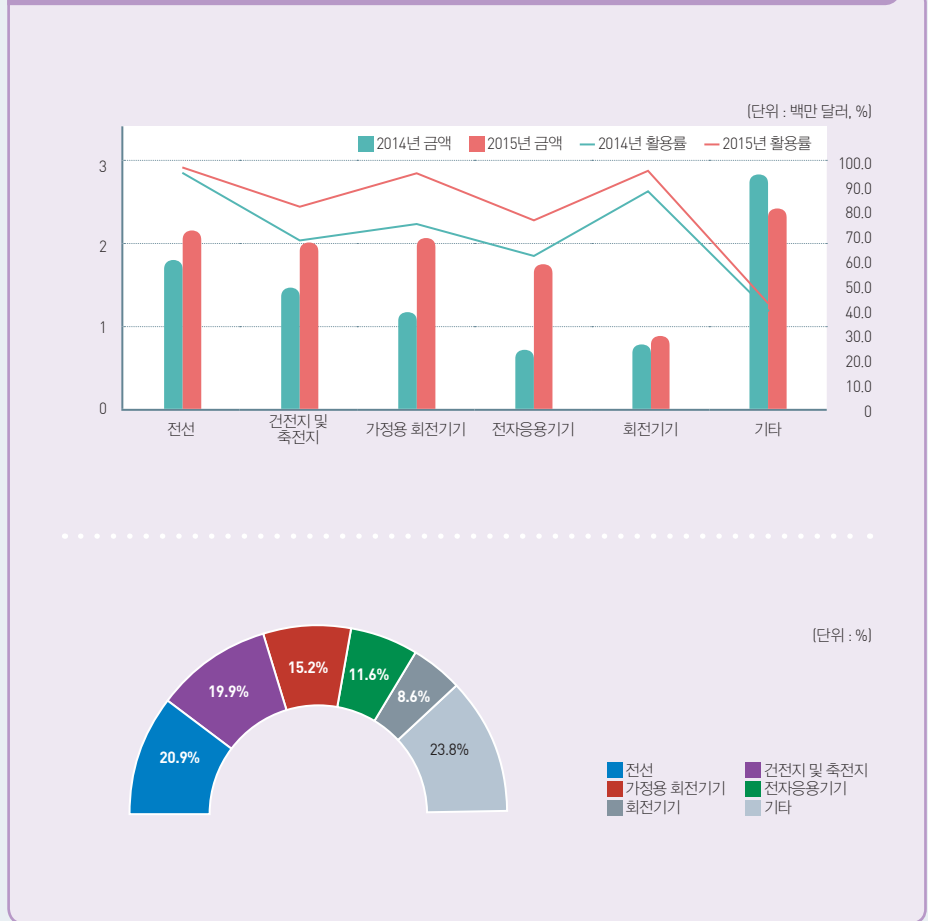
한-EFTA FTA : 전자전기제품 중 FTA 수출 활용률 증가 품목 '가정용 회전기기'

전자전기제품에서 금액 기준 8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전자전기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0.2% 점유에 불과하다.

〈그림 25〉와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전선, 건전지 및 축전지, 가정용 회전기기 등이다. 그 비중은 전선(20.9%) > 건전지 및 축전지(19.9%) > 가정용 회전기기(15.2%) > 전자응용기기(11.6%) > 회전기기(8.6%) 순으로 특혜 수출이 특정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2015년 對EFTA 전자전기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65.4%로 전년 대비 18.5%p. 증가하였다. 한편 2015년 전자전기제품은 상위 5대 품목의 FTA 활용률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림 25. 對EFTA 전자전기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④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015년 제3위 FTA 활용 품목군인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56.8%) > EU(30.4%) > 터키(5.2%) > 캐나다(3.3%) > 호주(2.7%) > 칠레(1.0%) > EFTA(0.4%) > 페루(0.1%)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對미국과 對EU 점유율이 87.2%로 집중되어 있다.

〈표 10.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2,157	53.2	2,327	56.8
EU	1,567	38.6	1,244	30.4
터키	251	6.2	215	5.2
캐나다	0	0.0	134	3.3
호주	0	0.0	112	2.7
칠레	57	1.4	41	1.0
EFTA	16	0.4	18	0.4
페루	6	0.2	4	0.1
합계	4,055	100.0	4,09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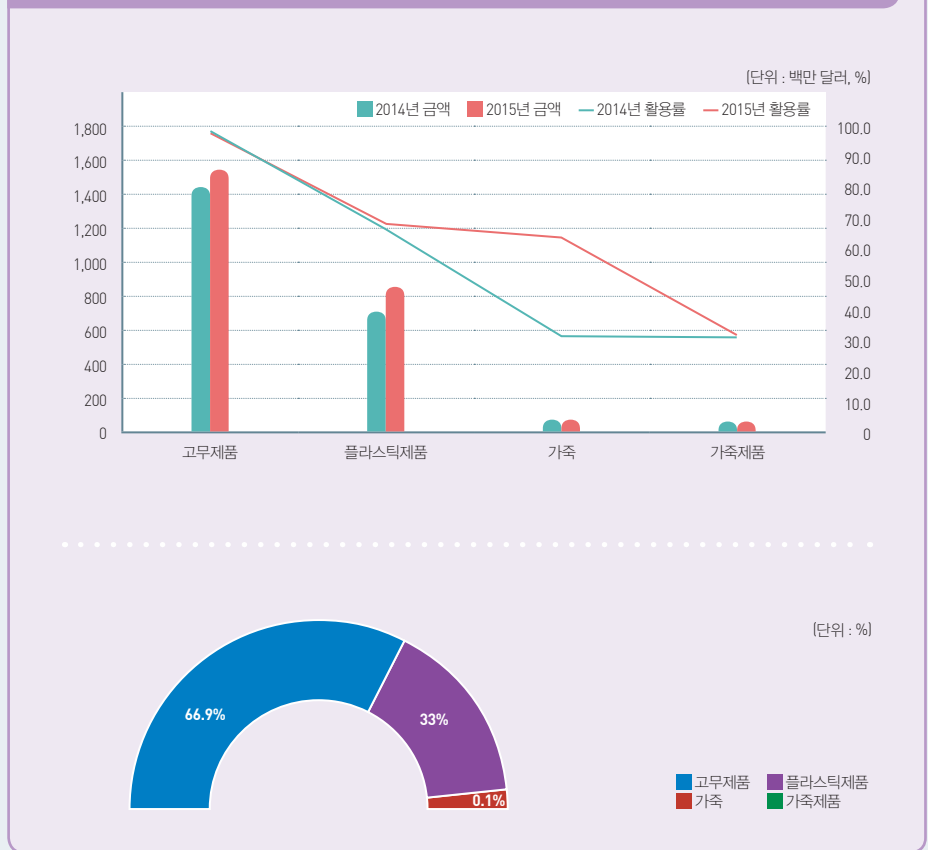
한-미 FTA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2015년 활용률 75.4%로 높은 수준 유지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에서 1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56.8%를 점유하고 있다. FTA 특혜 수출 활용 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6〉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고무제품, 플라스틱제품 등이다. 그 비중은 고무제품(66.9%) > 플라스틱 제품(33.0%) > 가죽(0.1%) 순으로 자동차용 타이어 등이 포함된 고무제품이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 대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4.8%로 전년 대비 3.5%p.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015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가죽제품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對미국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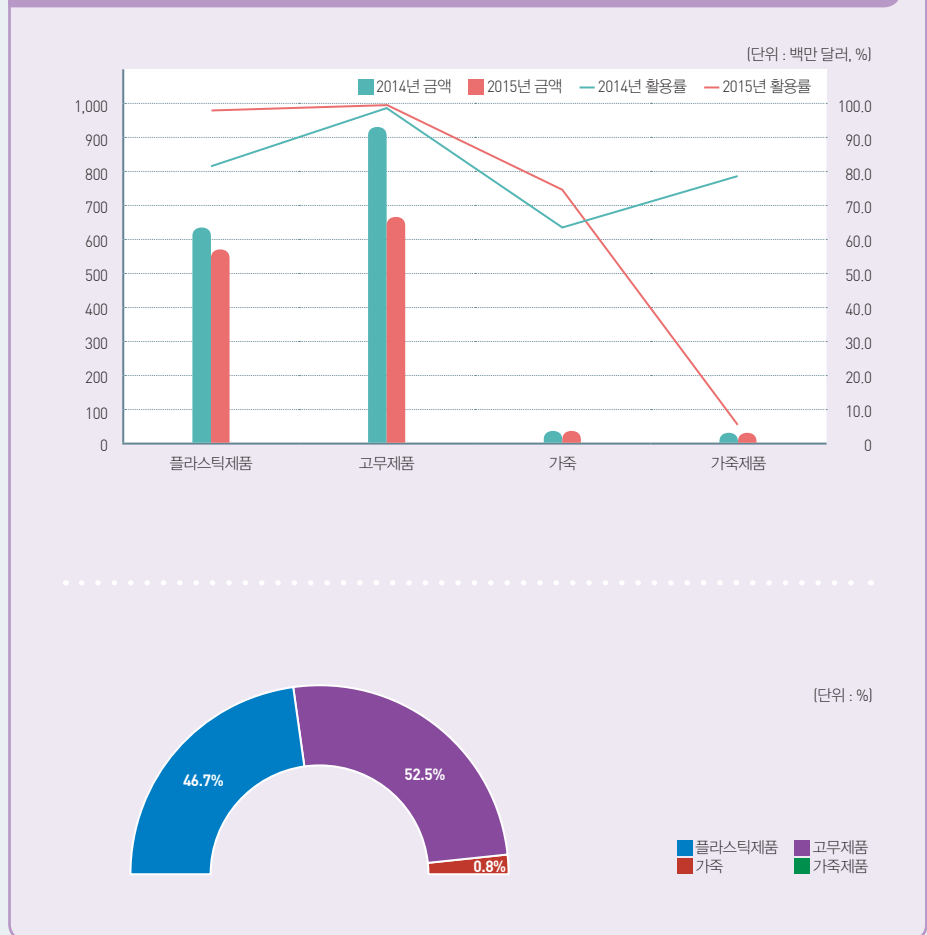
한-EU FTA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출 절반 이상이 고무제품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0.4%를 점하고 있다.

〈그림 27〉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고무제품, 플라스틱 제품이 99%로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비중은 고무제품(52.5%) > 플라스틱 제품(46.7%) > 가죽(0.8%)로 나타났다.

對EU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9.3%로 전년 대비 3.5%p. 감소하였다. FTA 활용률은 주요 품목에서 감소하였으며, 가죽의 경우 3위 품목으로 비중은 적으나 FTA 특혜 규모와 활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7. 對EU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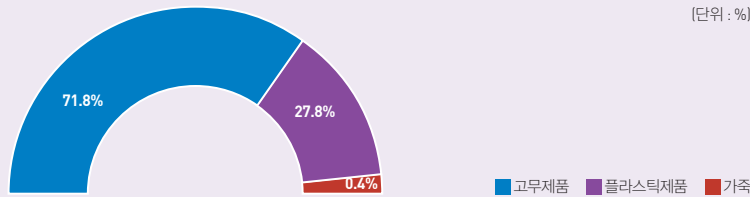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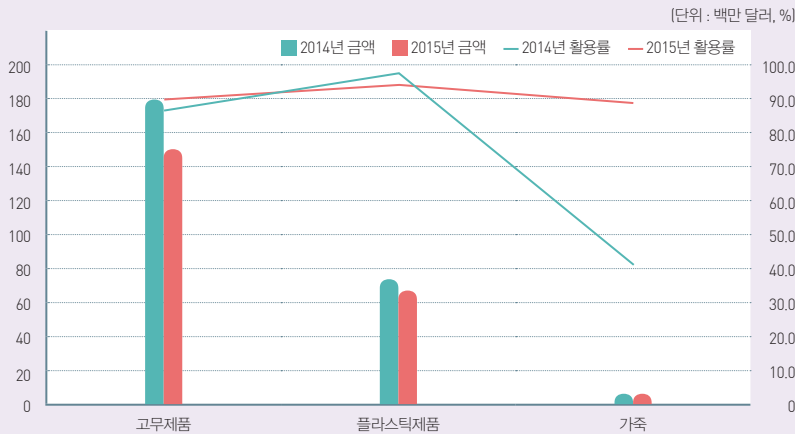
한-터키 FTA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 평균 90.3%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에서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5.2%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28〉과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플라스틱제품(71.8%), 고무제품(27.8%) 등이다.

2015년 對터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0.3%로 이는 전년 대비 2.6%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2014년 전반적으로 對터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FTA 활용수출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가죽의 경우 활용률과 특혜수출액이 동시에 증가하였다.

그림 28. 對터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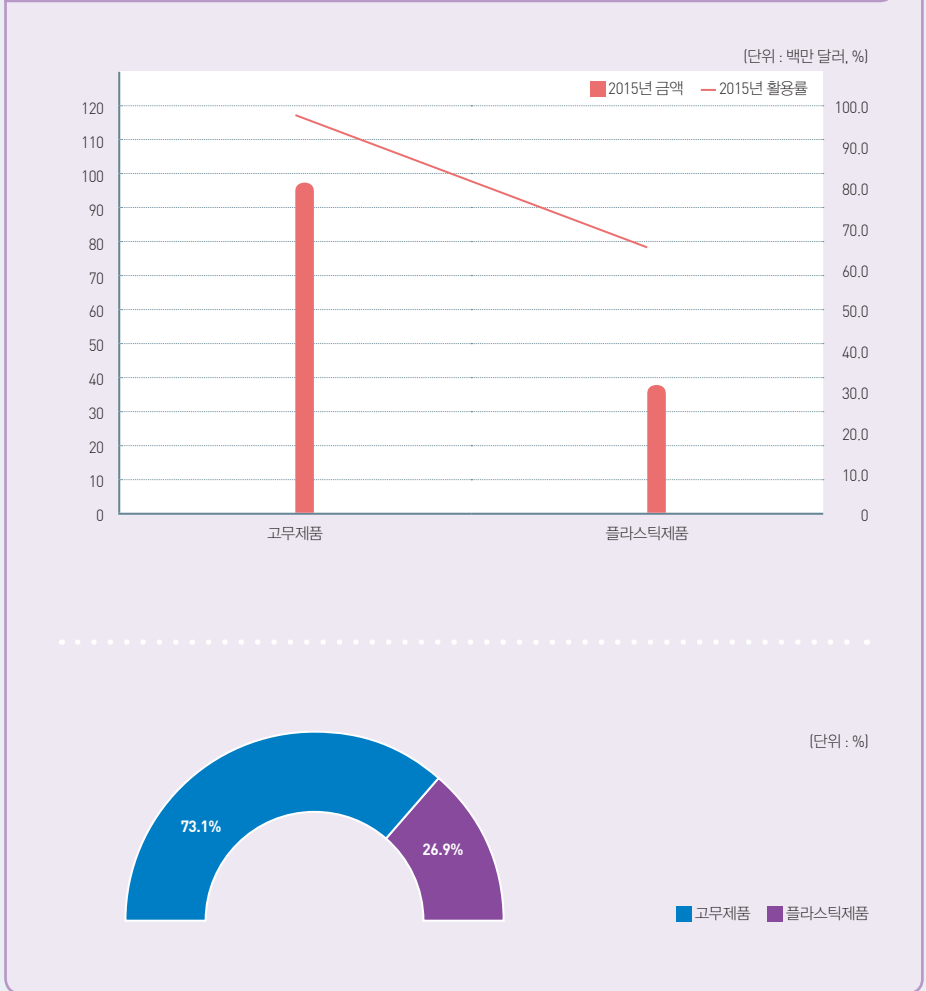


한-캐나다 FTA : 신규 발효 협정,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활용률 83.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에서 금액 기준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3%를 점유하고 있다.

對캐나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타협정과 마찬가지로 고무제품(73.1%)과 플라스틱 제품(26.9%) 두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對캐나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3.5%로 고무제품의 경우 높은 활용률을 시현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61.0%도 다소 부진하다.

그림 29. 對캐나다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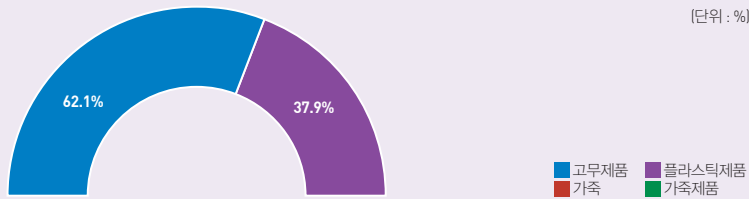


한-호주 FTA : 신규 발효 협정,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활용률 67.4%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에서 금액 기준 5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호주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對호주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고무제품(62.1%), 플라스틱 제품(37.9%) 등이다. FTA 특혜 수출 활용률은 평균 67.4%로 타 협정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0. 對호주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⑤ 광산물

2015년 제3위 FTA 활용 품목군인 광산물의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97.1%) > 칠레(1.6%) > EU(1.0%) > 터키(0.3%) 순으로 나타났다. 對미국 점유율이 97.1%로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표 11. 광산물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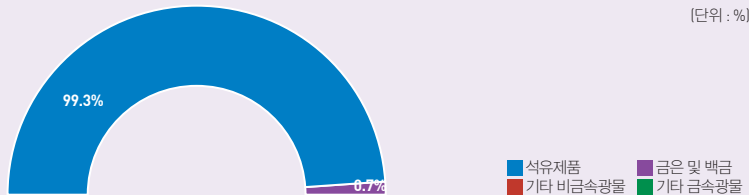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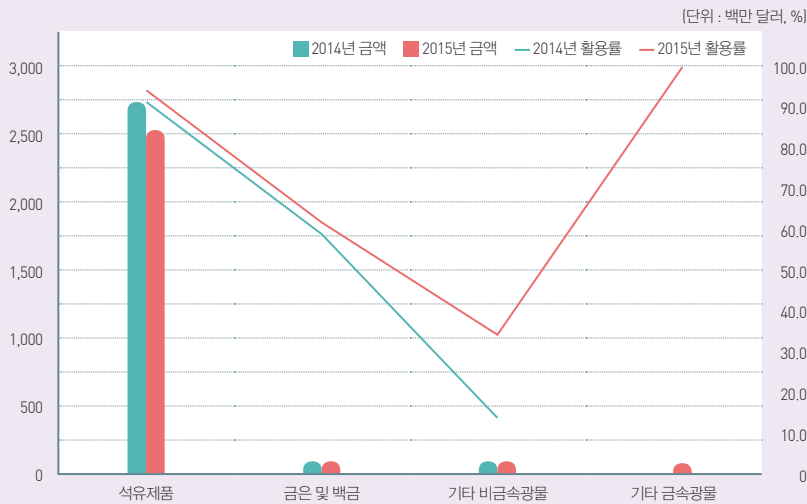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2,759	97.5	2,575	97.1
칠레	35	1.2	42	1.6
EU	25	0.9	26	1.0
터키	11	0.4	7	0.3
캐나다	-	-	0.2	0.0
호주	-	-	0.03	0.0
페루	0.1	0.0	0.02	0.0
EFTA	0.0	0.0	0.00	0.0
합계	2,831	100.0	2,651	100.0

한-미 FTA : 광산물 2015년 활용률 92.9%로 높은 수준 유지

광산물에서 1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광산물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대다수인 97.1%를 점유하고 있다.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1〉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석유제품이 99.3% 이상을 점유한다. 2015년 對 미 광산물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92.9%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하였으며,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31. 對미국 광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⑥ 철강금속제품

2015년 제6위 FTA 활용 품목군인 철강금속제품의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37.3%) > 호주(25.2%) > EU(19.7%) > 터키(14.6%) > 칠레(2.3%) > 캐나다(0.7%) > EFTA(0.1%) > 페루(0.1%) 순으로 나타났다. 對미국과, 對호주, 對EU, 對터키 등 4개 협정 점유율이 96.8%로 집중되어 있다.

〈표 12. 철강금속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986	55.9	988	37.3
호주	-	-	667	25.2
EU	520	29.5	522	19.7
터키	169	9.6	387	14.6
칠레	80	4.5	60	2.3
캐나다	-	-	20	0.7
EFTA	7	0.4	3	0.1
페루	1	0.1	2	0.1
합계	1,763	100.0	2,64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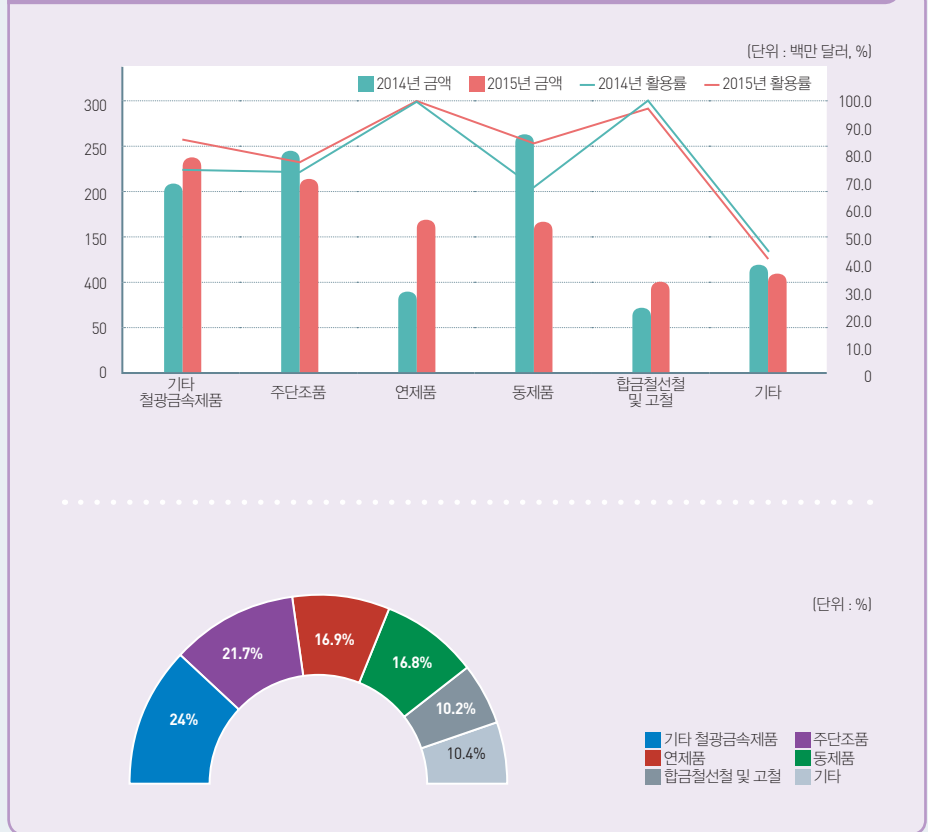
한-미 FTA : 철강금속제품 FTA 활용률·특혜규모 동시 증가

철강금속제품에서 1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철강금속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7.3%를 점유하고 있다.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2〉와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기타 철강금속제품, 주단조품, 연제품, 동제품 등이다. 비중은 기타 철강금속제품(24.0%) > 주단조품(21.7%) > 연제품(16.9%) > 동제품(16.8%) > 합금철 선철 및 고철(10.2%)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7.6%로 전년보다 3.7%p 증가하였다. 2015년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기타 철강금속제품, 주단조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활용금액이 증가한 품목은 연제품, 합금철 선철 및 고철로 각각 전년 대비 94.6%, 46.4% 증가하였다.

그림 32.对美国 철강금속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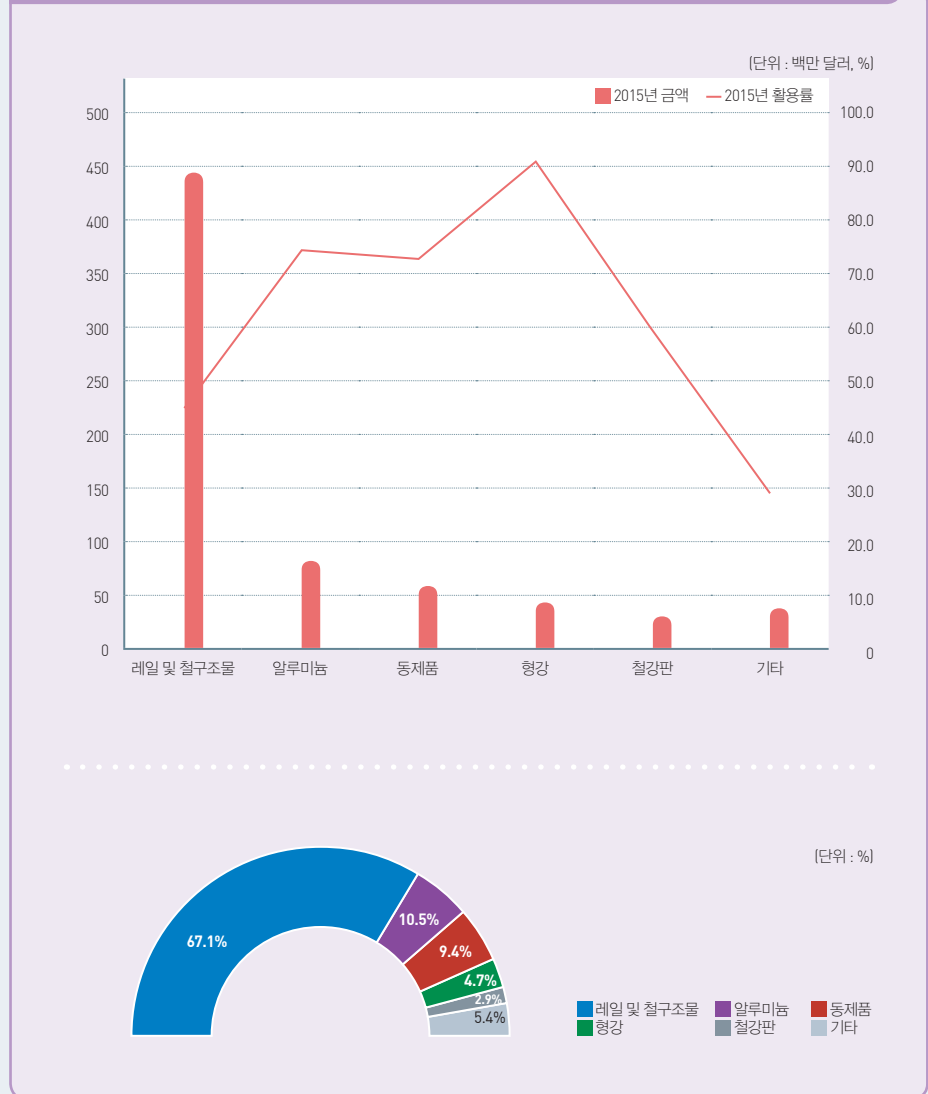


한-호주 FTA : 신규 발효 협정, 철강금속제품 FTA 활용률 48.1% 다소 낮아

철강금속제품에서 금액 기준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호주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철강금속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5.2%를 점유하고 있다.

對호주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레일 및 철구조물(67.1%), 알루미늄(10.5%), 동제품(9.4%), 형강(4.7%), 철강판(2.9%) 순으로 나타났다. 對호주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48.1%로 타 협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對호주 철강금속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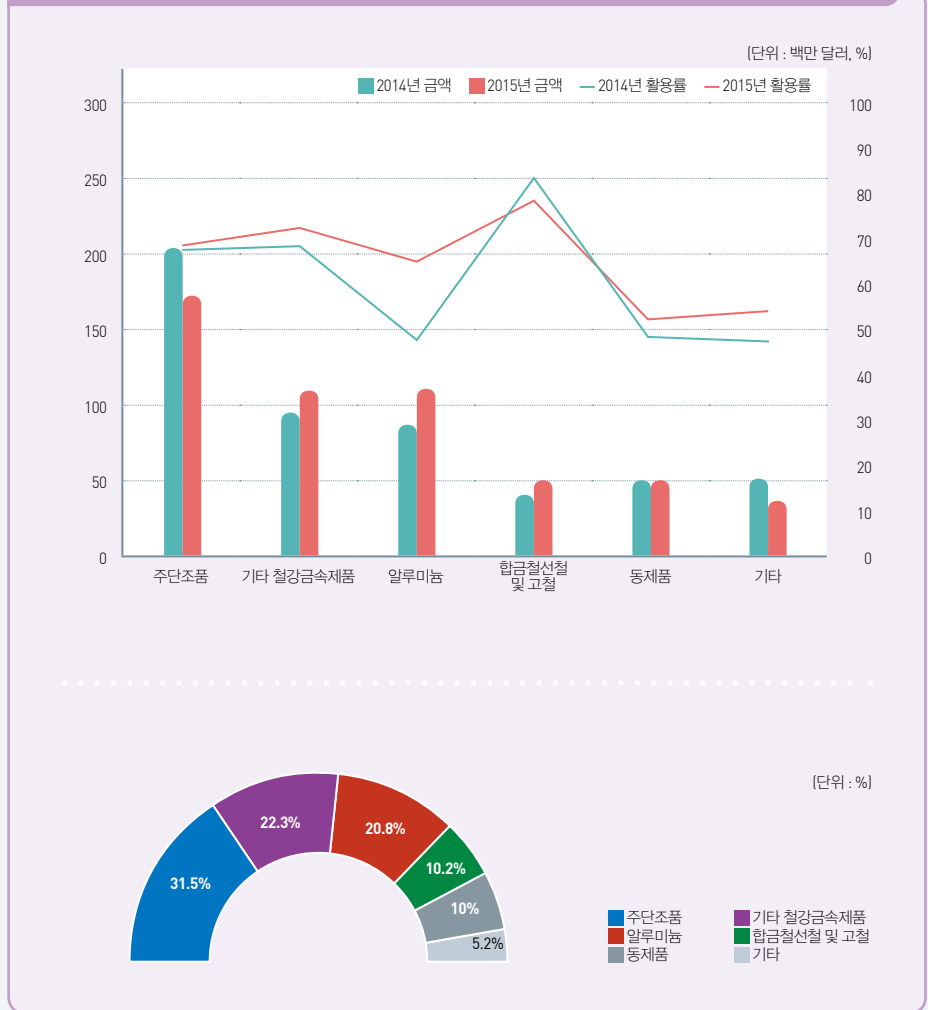


한-EU FTA : 철강금속제품 알루미늄 FTA 활용률 54.1% -> 75.8%로 21.7%p. 증가

철강금속제품의 3위 FTA 활용수출협정은 한-EU FTA로 2015년 우리나라 철강금속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9.7%를 점하고 있다.

〈그림 34〉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주단조품(31.5%), 기타 철강금속제품 (22.3%), 알루미늄(20.8%), 합금철 선철 및 고철(10.2%), 동제품(10.0%)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對EU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9.3%로 전년 대비 6.9%p. 증가하였다. 주요 품목별 FTA 활용률은 합금철 선철 및 고철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알루미늄의 경우 FTA 활용률이 2014년 54.1%에서 2015년 75.8%로 급등한 대표 품목이다.

그림 34. 對EU 철강금속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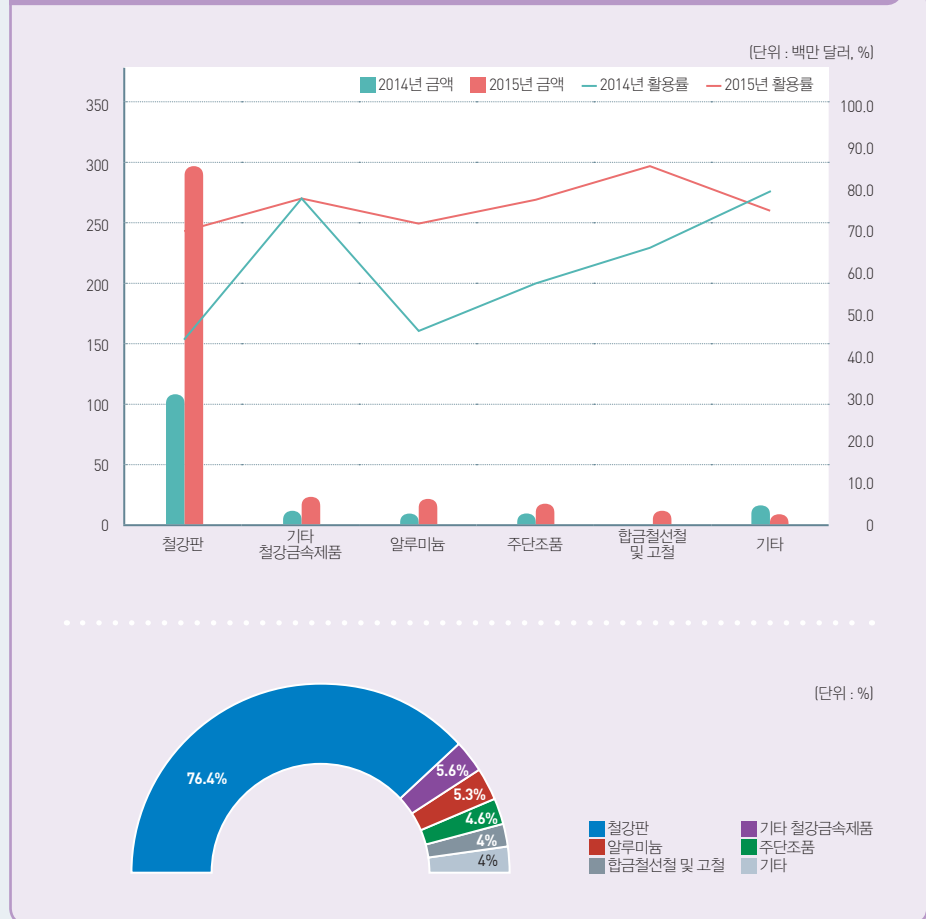
한-터키 FTA :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 70.7% 전년 대비 대폭 증가

철강금속제품에서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철강금속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4.6%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35〉와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철강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품목별 비중은 철강판(76.4%), 기타철강금속제품(5.6%), 알루미늄(5.3%), 주단조품(4.6%), 합금철 선철 및 고철(4.0%)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對터키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0.7%로 이는 전년 대비 20.3%p. 증가한 수준이다. 2015년 FTA 특혜 수출 활용금액과 활용률은 상위 5대 품목 대부분에서 전년과 동일하거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5. 對터키 철강금속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⑦ 섬유제품

2015년 제7위 FTA 활용 품목군인 섬유제품의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46.8%) > EU(35.9%) > 터키(12.4%) > 호주(1.9%) > 칠레(1.2%) > 캐나다(0.8%) > 페루(0.6%) > EFTA(0.4%) 순으로 나타났다. 對미국과 對EU 점유율이 82.7%로 집중되어 있다.

〈표 13. 섬유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947	45.4	898	46.8
EU	818	39.2	689	35.9
터키	270	12.9	238	12.4
호주	0	0.0	37	1.9
칠레	28	1.3	23	1.2
캐나다	0	0.0	15	0.8
페루	15	0.7	11	0.6
EFTA	8	0.4	7	0.4
합계	2,085	100.0	1,9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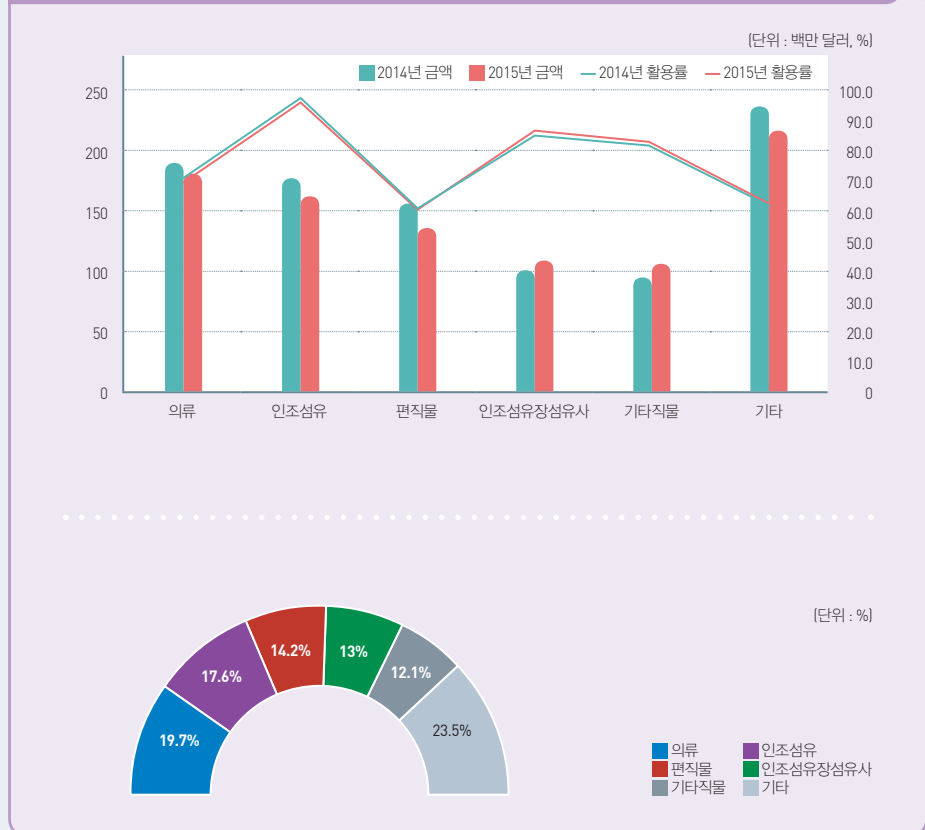
한-미 FTA : 섬유제품 인조섬유 장섬유사 FTA 활용률·특혜규모 증가

섬유제품에서 1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섬유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6.8%를 점유하고 있다.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6〉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의류, 인조섬유, 편직물, 인조섬유 장섬유사 등이다. 비중은 의류(19.7%) > 인조섬유(17.6%) > 편직물(14.2%) > 인조섬유 장섬유사(13.0%) > 기타 직물(12.1%) 순으로 한 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품목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 대비 섬유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3.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5년 섬유제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편직물, 인조섬유장섬유사, 기타 직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조섬유 장섬유사는 특혜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 18.5% 증가, 활용률도 1.2%p. 증가한 주요 품목이다.

그림 36. 對미국 섬유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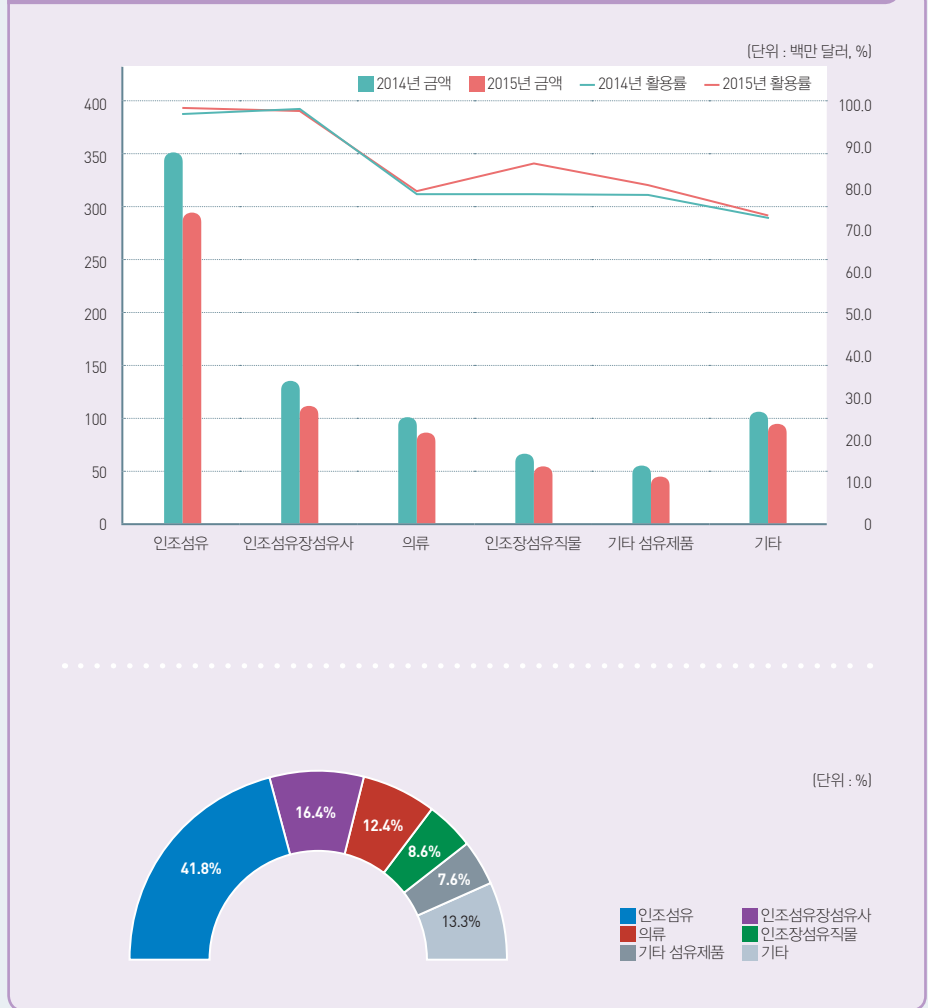


한-EU FTA : 섬유제품 FTA 특혜수출 인조섬유 비중 41.8%

섬유제품의 2위 FTA 활용수출협정은 한-EU FTA로 2015년 우리나라 섬유제품 전체 FTA 활용 수출액의 35.9%를 점하고 있다.

〈그림 37〉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인조섬유(41.8%), 인조섬유 장섬유사(16.4%), 의류(12.4%)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對EU 섬유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6.5%로 전년 대비 1.5%p. 감소하였다. 주요 품목의 FTA 활용률은 대부분 소폭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전년과 유사하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조장섬유직물은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유일하게 활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對EU 섬유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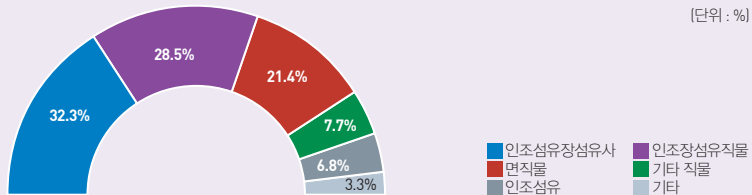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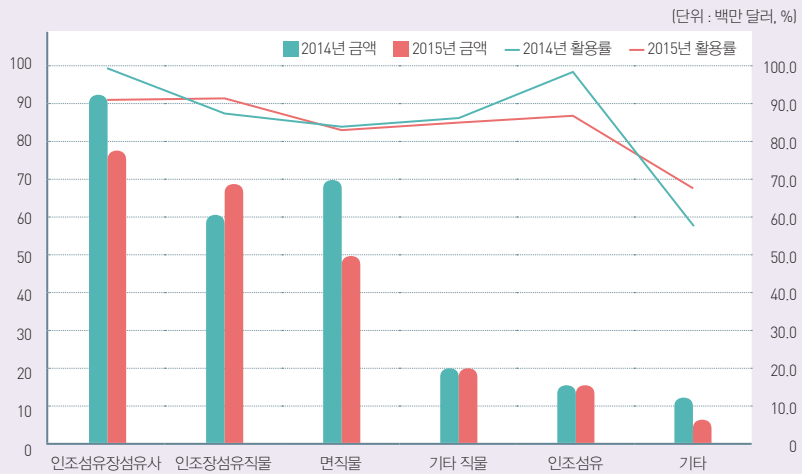
한-터키 FTA : 섬유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 평균 88.9% 안정적 유지

섬유제품에서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섬유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2.4%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38>과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인조섬유와 편직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품목별 비중은 인조섬유 장섬유사(32.3%) > 인조장섬유직물(28.5%) > 편직물(21.4%) > 기타 직물(7.7%) > 인조섬유(6.8%)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對터키 섬유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88.9%로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2015년 FTA 특혜 수출 활용금액과 활용률은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인조장섬유직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하였다.

그림 38. 對터키 섬유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⑧ 생활용품

2015년 제8위 FTA 활용 품목군인 생활용품의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EU(45.7%) > 미국(41.9%) > 호주(5.0%) > 터키(3.1%) > 캐나다(1.7%) 순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품목군과 마찬가지로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7.6%로 집중되어 있다.

〈표 14. 생활용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231	55.6	163	45.7
미국	165	39.7	150	41.9
호주	0	0.0	18	5.0
터키	11	2.6	11	3.1
캐나다	0	0.0	6	1.7
페루	3	0.7	4	1.0
칠레	3	0.6	3	0.9
EFTA	3	0.8	3	0.7
합계	415	100.0	3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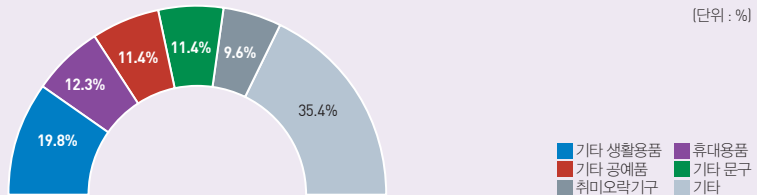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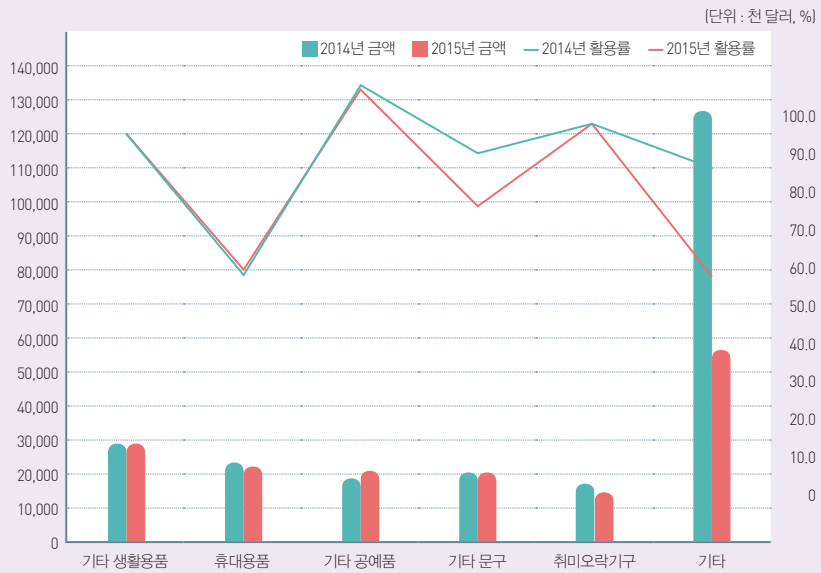
한-EU FTA : 생활용품 FTA 특혜수출 감소 추세

생활용품의 1위 FTA 활용수출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생활용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5.7%를 점하고 있다.

〈그림 39〉와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기타생활용품(안전 면도날, 모자걸이 등), 휴대용품(목걸이, 매니큐어 등), 기타공예품(젤라틴 캡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對EU 생활용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68.4%로 수출 감소 추세와 더불어 전년 대비 29.3%p. 감소하였다.

그림 39. 對EU 생활용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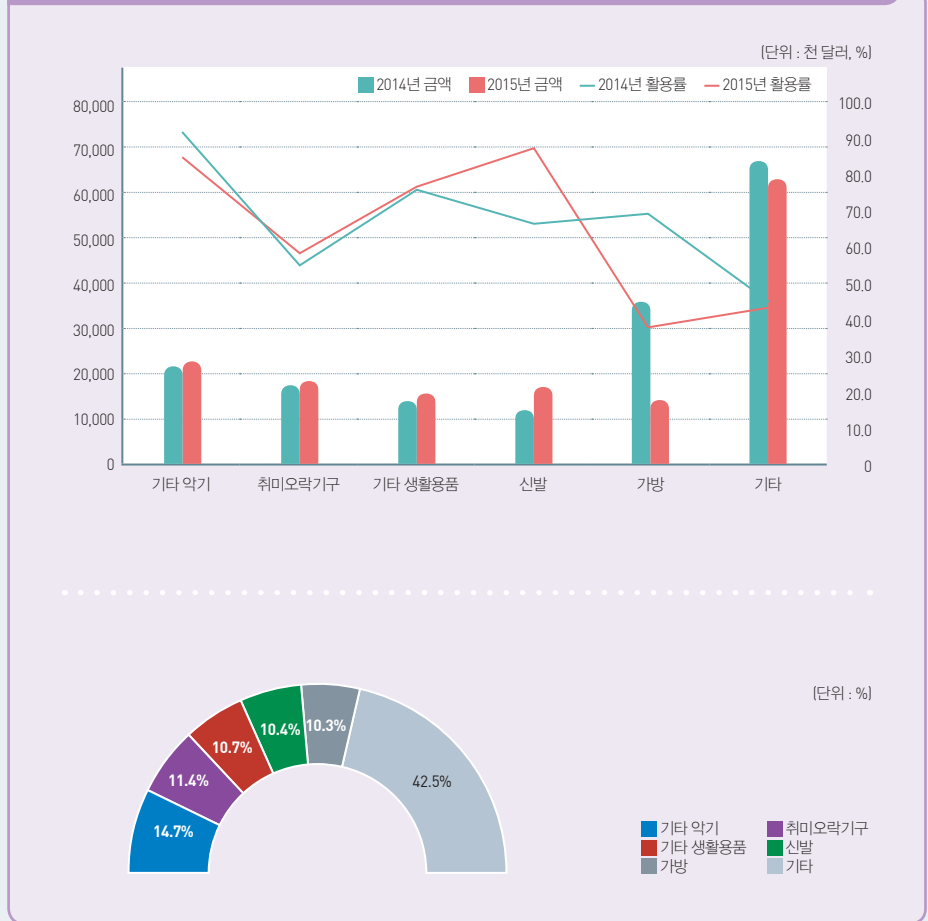
한-미 FTA : 생활용품 2015년 신발 FTA 특혜수출 활용률 급증

생활용품에서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생활용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40>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기타 악기, 취미오락기구(낚시 용품), 기타생활용품(트렁크·슈트 케이스), 신발, 가방 등이다.

2015년 對미 생활용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1.5%로 전년 대비 9.1%p.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5년 생활용품 가운데 FTA 활용률이 증가한 품목은 기타 악기, 신발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방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직후부터 있었던 확장세가 주춤하여, FTA 특혜 수출 활용률과 특혜수출 규모가 동시에 감소하였다.

그림 40. 對미국 생활용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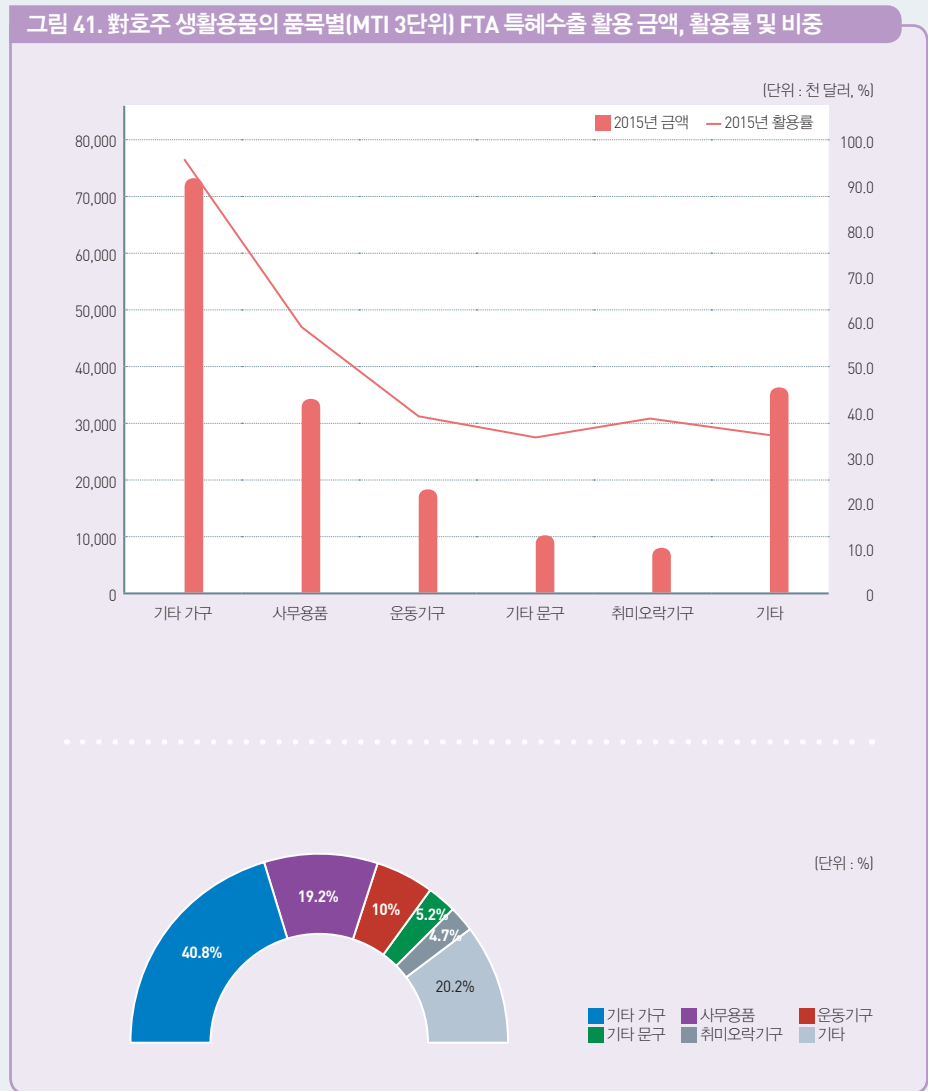


한-호주 FTA : 신규 발효 협정, 생활용품 FTA 활용률 52.1%

생활용품에서 금액 기준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호주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생활용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5.0%를 점유하고 있다.

對호주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기타가구(40.8%), 사무용품(19.2%), 운동기기(10.0%) 등이다. 對호주 생활용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2.1%로 타 협정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상위 FTA 활용 품목은 기타 가구, 장부·회계부 등 사무용품과 골프용품 등 운동기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림 41. 對호주 생활용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⑨ 농림수산물

2015년 제9위 FTA 활용 품목군인 농림수산물의 FTA 활용수출액^④의 협정별 점유율은 미국(53.3%) > EU(31.9%) > 호주(7.3%) > 캐나다(5.7%) > EFTA(0.8%) > 칠레(0.6%) > 터키(0.3%) > 페루(0.1%)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품목군과 동일하게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85.2%로 집중되어 있다.

〈표 15. 농림수산물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미국	275	62.9	300	53.3
EU	155	35.5	180	31.9
호주	0	0.0	41	7.3
캐나다	0	0.0	32	5.7
EFTA	3	0.7	4	0.8
칠레	2	0.5	4	0.6
터키	1	0.3	1	0.3
페루	0	0.0	0	0.1
합계	437	100.0	563	100.0

④ FTA 대상 C/O 발급 금액을 의미. 이하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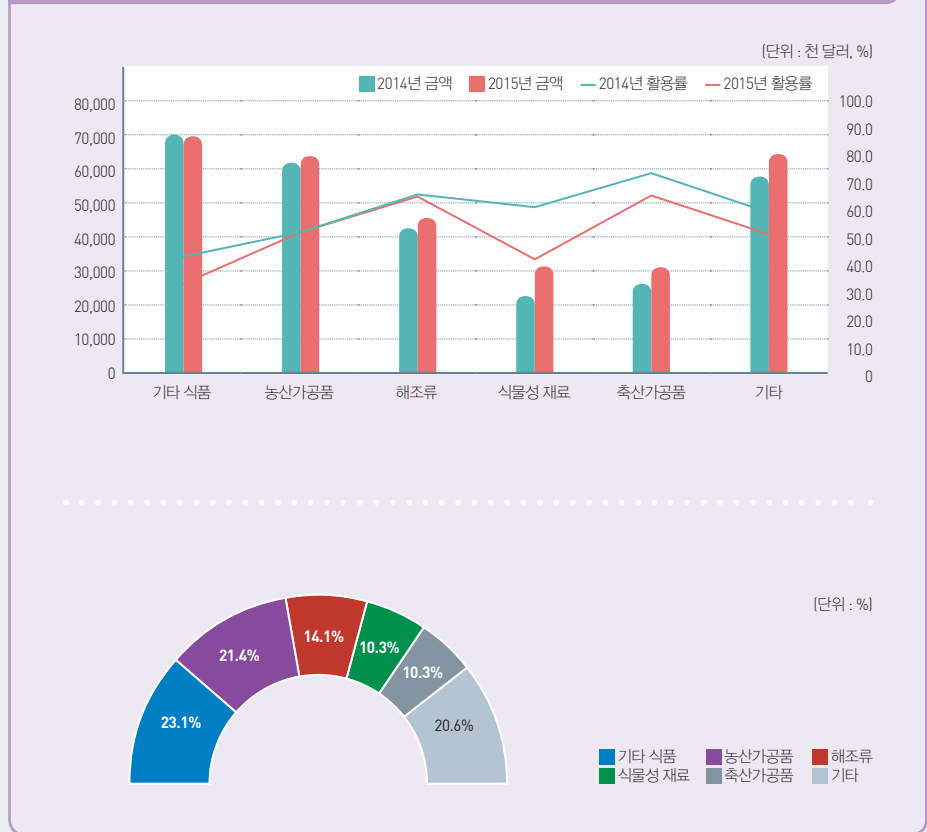
한-미 FTA : 농림수산물 2015년 FTA 활용 수출금액 전년 대비 9.1% 증가

농림수산물에서 1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53.3%를 점유하고 있다.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은 전년보다 9.1% 증가한 300백만 달러이다.

〈그림 42〉와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기타 식품(23.1%), 농산가공품(21.4%), 해조류(14.1%), 식물성 재료(10.3%), 축산가공품(10.3%) 등이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기호식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FTA 특혜수출금액과 활용률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기타 소스류, 고추장 등 식물성 재료와 젤라틴 등 축산가공품의 FTA 특혜수출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15년 대비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0.9%로 전년 대비 0.7%p. 증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42. 對미국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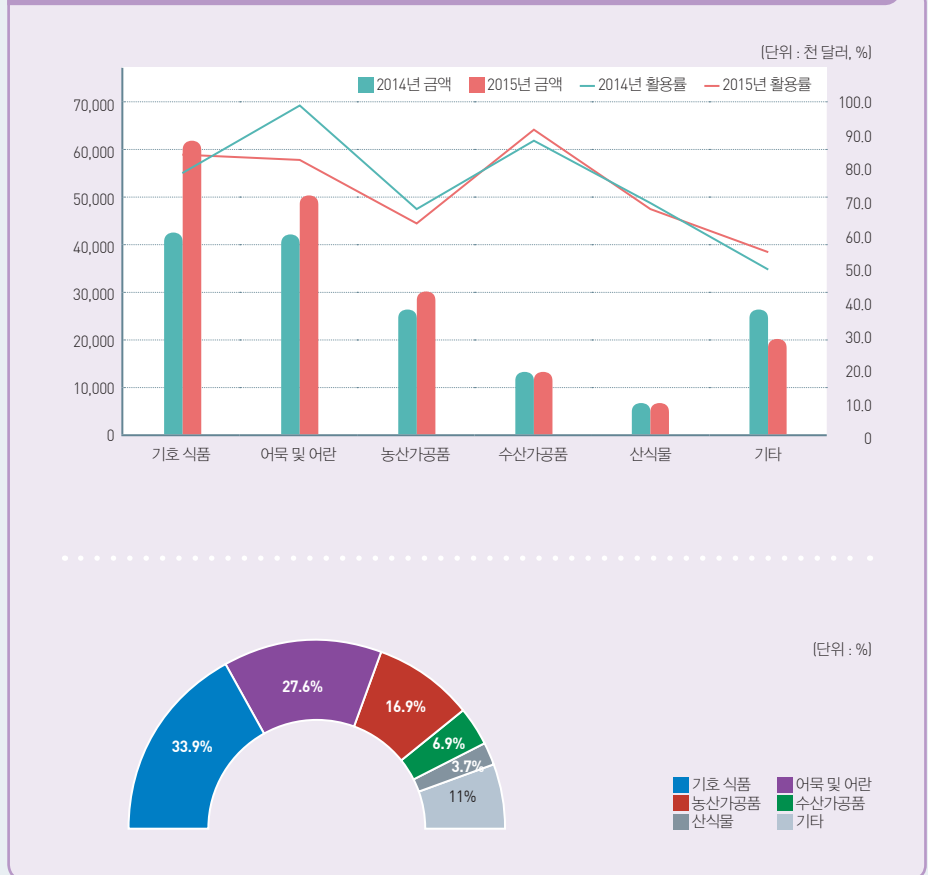
한-EU FTA :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출활용률 73.1%

농림수산물의 2위 FTA 활용수출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31.9%를 점하고 있다.

〈그림 43〉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기호식품, 어육 및 어란, 농산가공품 등이 78.4%로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비중은 기호식품(33.9%) > 어육 및 어란(27.6%) > 농산가공품(16.9%)로 나타났다.

對EU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3.1%로 전년 대비 0.9%p. 감소하였으나, 특혜수출 금액은 전년보다 15.7% 증가한 179.8백만 달러였다. FTA 활용률은 어육 및 어란, 수산가공품 등 수산관련 품목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며, 기타당류·녹차·소주(기호식품), 간장(식물성 재료), 면류(농산가공품) 등의 품목의 FTA 활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對EU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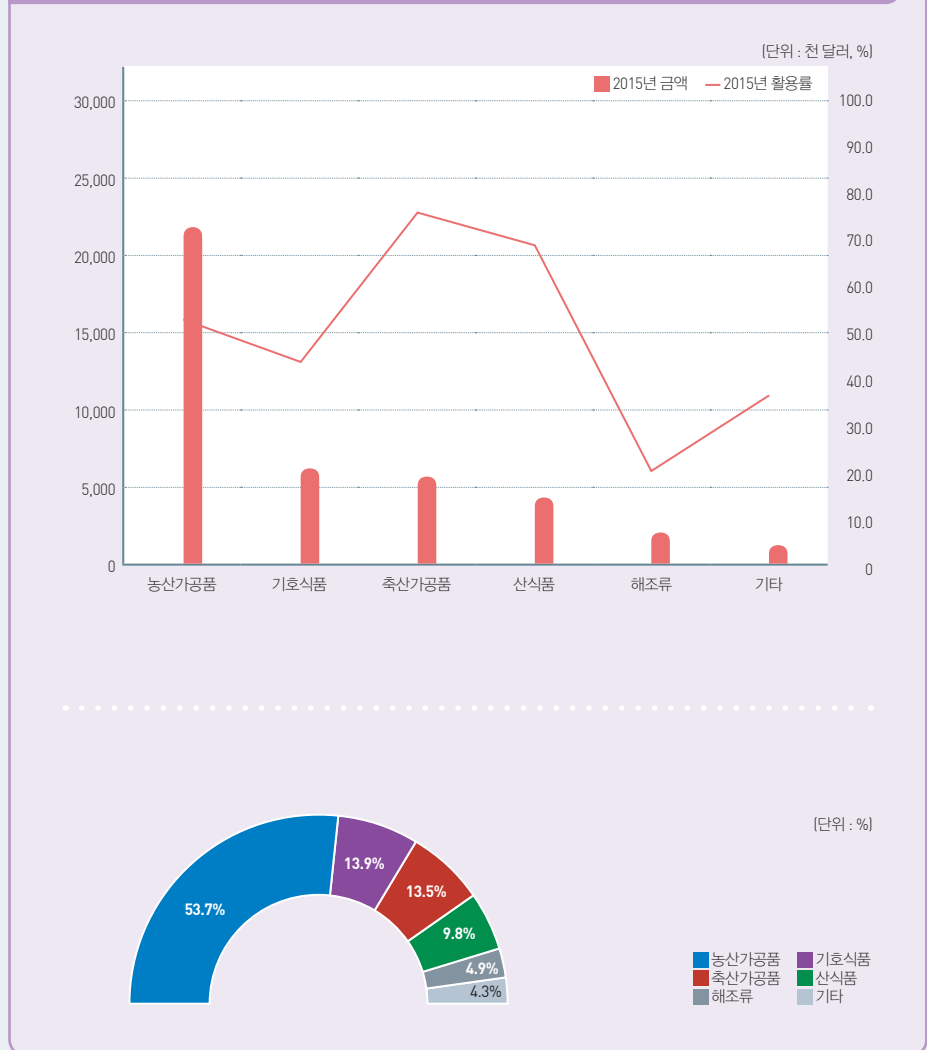


한-호주 FTA : 신규 발효 협정, 농림수산물 FTA 활용률 56.8%

농림수산물에서 금액 기준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호주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7.3%를 점유하고 있다.

對호주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농산가공품(53.7%) 기호식품(13.9%), 축산가공품(13.5%), 산식물(9.8%) 등이다. 對호주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6.8%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혜수출 상위 5대 물품은 면류·콘플레이크·기타 빵(농산가공품), 젤라틴(축산가공품), 기타 음료(기호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對호주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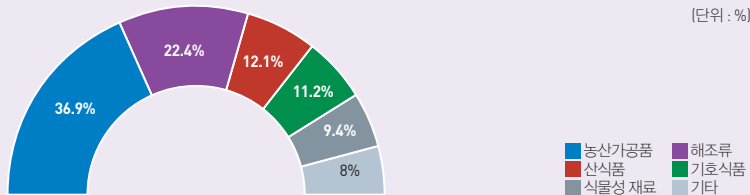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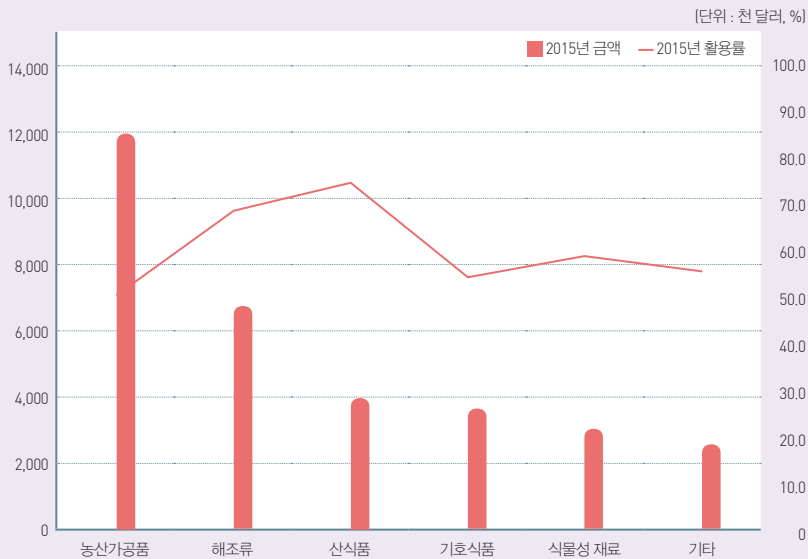


한-캐나다 FTA : 신규 발효 협정, 농림수산물 FTA 활용률 57.8%

농림수산물에서 금액 기준 4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캐나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5.7%를 점유하고 있다.

對캐나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농산가공품(36.9%), 해조류(22.4%), 산식품(12.1%), 기호식품(11.2%), 식물성 재료(9.4%) 순이다. 對캐나다 농림수산물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57.8%로 호주, 미국 등과 유사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혜수출 상위 5대 물품은 김(해조류), 라면·빵(농산가공품), 기타 음료(기호식품), 느타리버섯(산식품)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對캐나다 농림수산물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10. 잡제품

2015년 제10위 FTA 활용 품목군인 잡제품의 FTA 활용수출액의 협정별 점유율은 EU(49.9%) > 미국(26.3%) > 터키(16.9%) > 호주(2.6%) > 캐나다(2.0%) > 페루(1.7%) > EFTA(0.3%) > 칠레(0.2%)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류와 마찬가지로 對EU와 對미국 점유율이 76.2%로 집중되어 있다.

〈표 16. 잡제품 FTA 활용 수출액과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4년		2015년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EU	62	49.0	65	49.9
미국	56	44.3	34	26.3
터키	6	4.9	22	16.9
호주	0.0	0.0	3.4	2.6
캐나다	0.0	0.0	2.6	2.0
페루	1.1	0.9	2.2	1.7
EFTA	0.8	0.6	0.4	0.3
칠레	0.4	0.3	0.3	0.2
합계	126	100.0	1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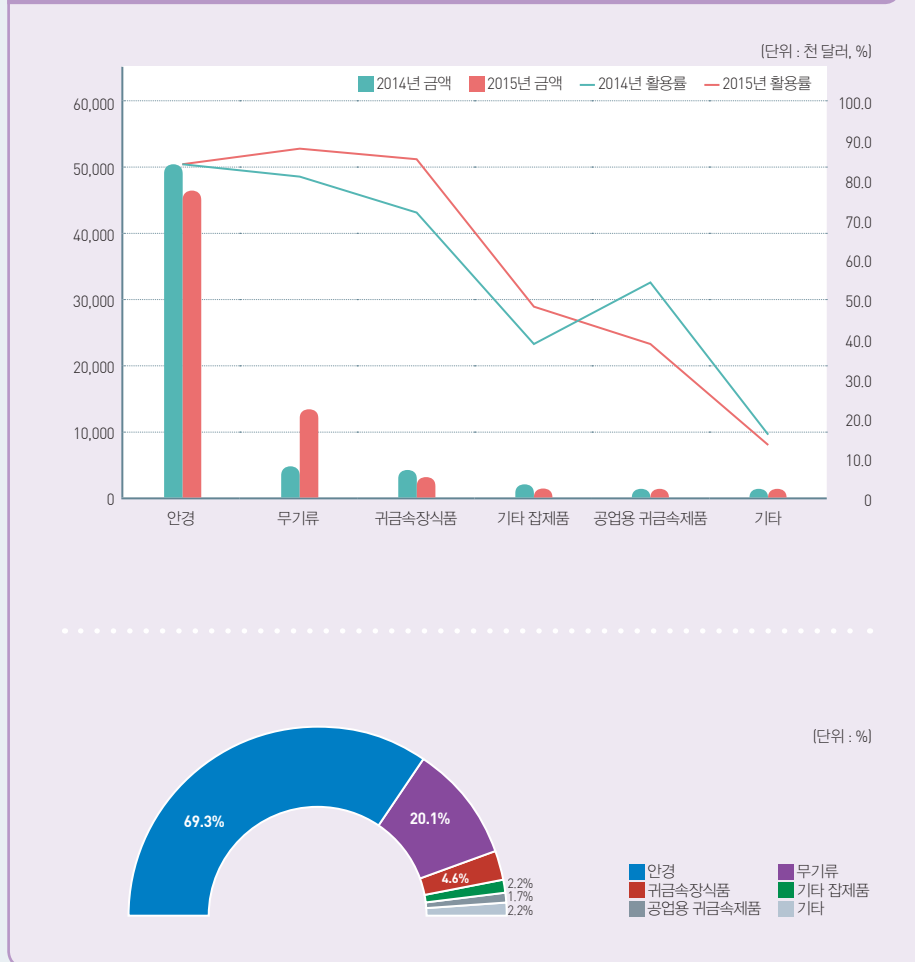
한-EU FTA : 잡제품 FTA 특혜수출 안경류 비중이 69.3% 점유

잡제품의 1위 FTA 활용수출 규모인 한-EU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잡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49.9%를 점하고 있다.

<그림 46>과 같이 對EU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안경(69.3%), 무기류(20.1%), 귀금속장식품(4.6%) 순으로 나타났다.

對EU 잡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69.8%로 전년 대비 3.4%p. 감소하였다. FTA 활용률은 상위 랭크된 대부분의 품목에서 소폭 감소하였으며, 다만 공업용귀금속제품에서 전년보다 1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對EU 잡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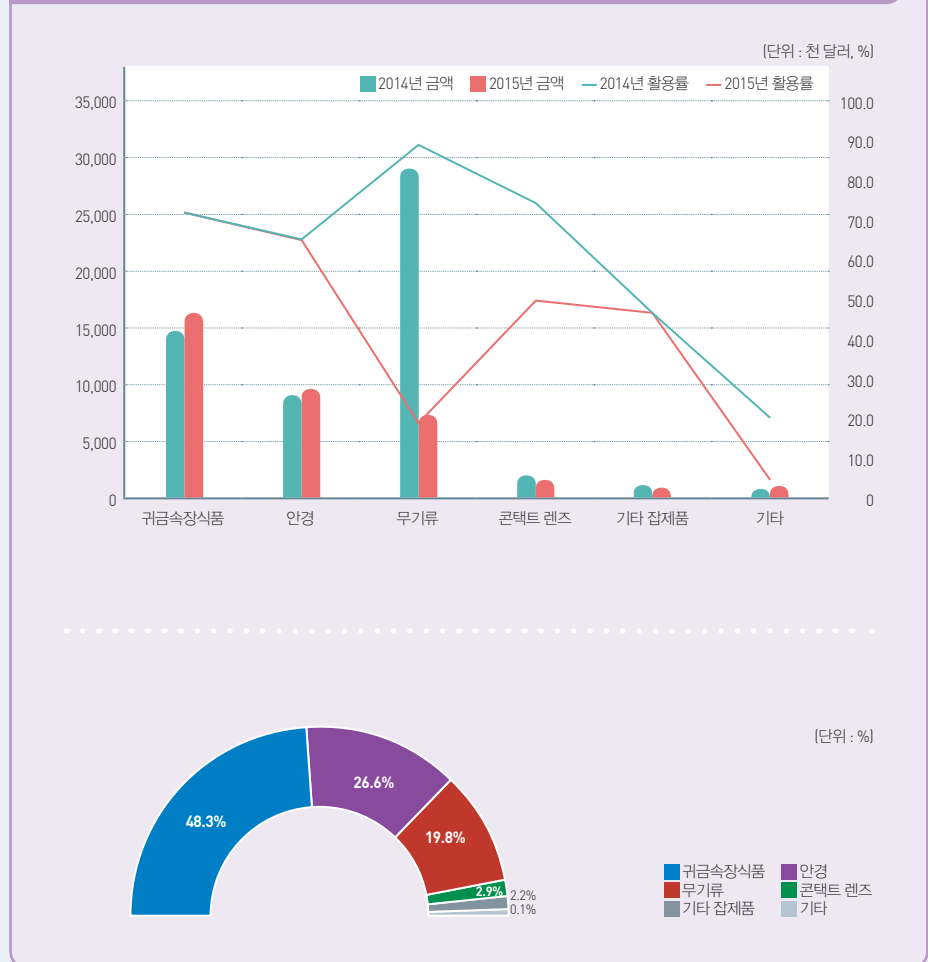
한-미 FTA : 잡제품 2015년 활용률 44.7%로 크게 감소, 무기류 부진에 기인

잡제품에서 2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미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잡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26.3%를 점유하고 있다.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은 전년 대비 38.4% 감소한 34.4백만 달러로 실적이 부진했다.

〈그림 47〉과 같이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귀금속장식품(48.3%), 안경(26.6%), 무기류(19.8%), 콘택트 렌즈(2.9%) 등이다.

2015년 對미 잡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44.7%로 전년 대비 31.0%p. 감소하였는데, 특히 무기류와 콘택트 렌즈 등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47. 對미국 잡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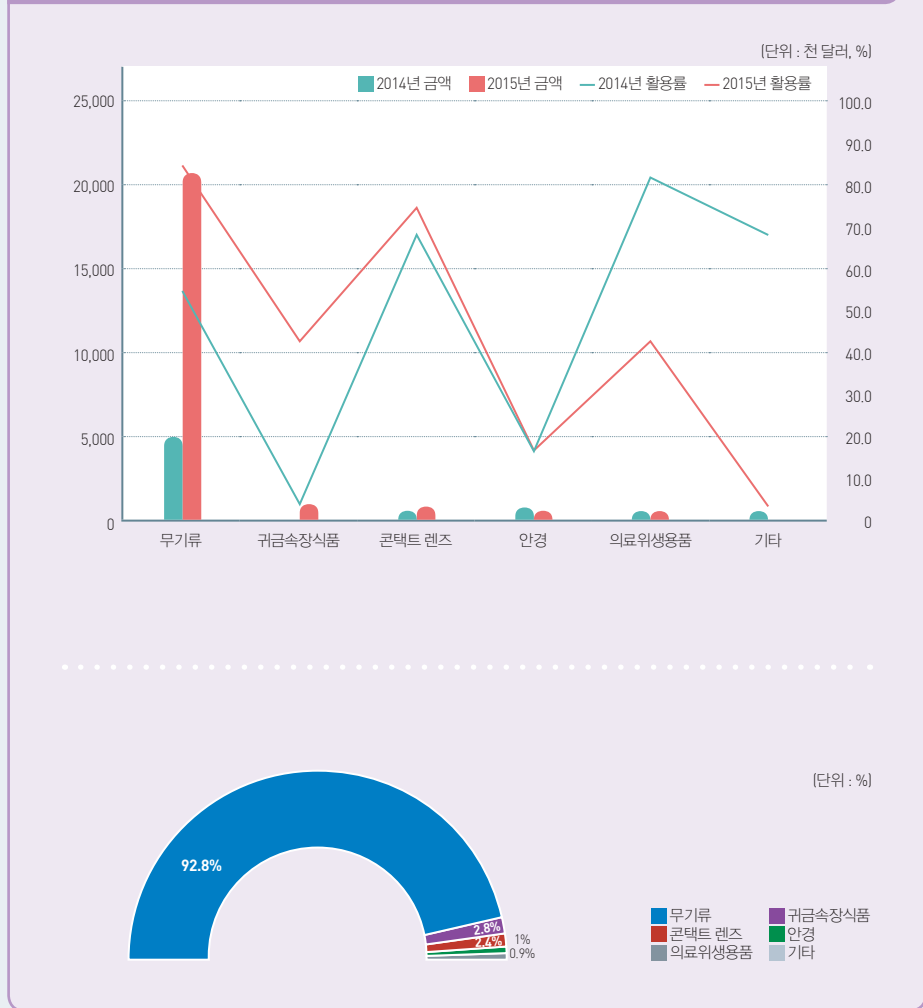
한-터키 FTA : 잡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 평균 76.7%, 전년 대비 크게 상승

잡제품에서 3위 FTA 활용수출을 하고 있는 한-터키 FTA 협정은 2015년 우리나라 잡제품 전체 FTA 활용수출액의 16.9%를 점유하고 있다.

〈그림 48〉과 같이 對터키 주요 FTA 활용수출 품목은 무기류가 92.8%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2015년 對터키 잡제품 FTA 특혜수출 활용률은 평균 76.7%로 이는 전년 대비 33.5%p. 증가한 수준이다. 그리고 2014년 전반적으로 對터키 잡제품의 FTA 활용수출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무기류, 귀금속장식품 등의 활용률 및 특혜수출금액 증가가 이를 견인했다.

그림 48. 對터키 잡제품의 품목별(MTI 3단위) FTA 특혜수출 활용 금액, 활용률 및 비중





IV. 맺음말

FTA 수출이 對세계 수출 부진 만회, 한-중 FTA로 2016년 교역 활성화 기대

2015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對FTA 무역비중은 67.3%로 증가하였다. 이로써 2010년 14.7%에 불과하던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은 최근 5년 동안 4배 이상 확대되었다.

FTA국과의 교역은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 하락의 여파를 만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은 전년 대비 12.3% 감소한 가운데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7.4% 감소, FTA 미발효국과는 15.7% 감소하였다. 특히, FTA 발효국과의 수출입 중에서도 FTA 특혜품목의 수출입(수출 Δ 2.3%, 수입 Δ 6.5%) 감소폭이 비특혜품목(수출 Δ 5.6%, 수입 Δ 16.8%)에 비해 작아, FTA가 수출입 급감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2015년 말에 발효된 한-중 FTA는 향후 우리나라 교역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중 FTA 통관 및 무역 원활화 협정조문에 근거한 통관 절차 개선으로 '48시간 내 통관' 등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되었다. 물류비용 및 통관소요시간 절감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는 등 국내 무역 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터키 자동차부품 등 기계류, 미국·EU 등 전지·축전지 FTA 활용 수출 급증 주목

2015년 FTA활용률이 증가한 협정의 대표적 사례가 기계류에 대한 對터키 FTA 활용률 급증이다. 對터키 기계류 FTA 수출 활용률은 2014년 59.0%에서 2015년 76.2%로 16.8%p. 증가하였다. FTA 활용률 상승을 가져온 주요 품목은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 와 그 부분품 등 자동차 부품이다.



아울러 주요 FTA 대상국인 미국과 EU는 자동차전원, 지게차 등 산업동력용으로 사용되는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축전지 부품, 리튬폴리머 축전지 등 축전지와 관련한 FTA 활용 수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규 FTA인 한-호주 FTA의 경우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FTA 활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계적인 교역 위축에도 협정별, 산업별로 FTA를 활용한 특혜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가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캐나다 호주 등 신규 FTA의 성공적 안착, 활용 지속 모니터링

한-호주, 한-캐나다 등 최근 1년간 발효된 신규 FTA는 수출활용률이 각각 69.7%, 79.9%로 FTA 전체 평균 71.9%에 거의 달성하거나 넘어섰다. 수입활용률은 각각 63.5%, 61.2%로 평균 수준인 70.2%를 미달하였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경기 위축에 의한 수입 수요 감소로 해석된다.

특히 FTA 특혜수출 비중 1위 산업인 기계류 FTA 특혜수출활용률이 호주 87.0%, 캐나다 81.7%로 높은 수준을 시현, 기체결 FTA를 경험한 FTA의 안착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소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는 섬유류, 잡제품, 전자전기제품 등은 이러한 추세가 FTA 장기 이행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지 향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동향과 시사점

임병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선임연구원



01. 화장품 산업 최근 동향

‘립스틱 효과’라는 경제용어가 있다. 1930년 미국 대공황기에 등장한 용어로서, 불황일수록 립스틱이 잘 팔리는 이유로 여성들이 화장품 중에서 저렴한 편인 립스틱을 선호한다는 심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에는 ‘매니큐어 효과’라고 하여, 립스틱보다 더 저렴한 매니큐어가 립스틱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물가 추세가 장기화하고 있으며, 2001~2007년 4.5%이던 성장률이 2011~2014년에는 3.5%로 하락하였다.^① 우리나라는 작년 상반기 메르스 발생으로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중국경기의 둔화로 인한 수출감소로 5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는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2015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만, 부진한 수출 속에서도 화장품 산업만큼은 '15년 큰 성과를 일구었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수출이 급증하면서 중국 내 수입 2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수출을 위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중국의 기초화장품 관세가 5%에서 2%로 인하되며, 우리나라 역시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정비에 착수가 한창이다.

이쯤에서 화장품 산업은 불황 속의 효자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장품 산업의 약진은 우리나라만의 일일까. 세계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서도 다른 국가의 화장품 산업은 과연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까. 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업계에 미치는 시사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02. 품목별 산업동향

화장품(Cosmetics)이란 사람의 매력을 더하고 외모를 밝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다. 주로 얼굴이나 신체 일부분에 바르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 화장품법 제2조에서 화장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화장품법 제2조(정의)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 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이 있다. '남성들의 화장품 분류법'이라고 하여 스킨, 로션, 기타 화장품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 화장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는 화장품의 종류를 '화장품 유형과 사용 시의 주의사항'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종 류	품 목
영·유아용 제품류 (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을 말한다)	영·유아용 샴푸, 린스, 영·유아용 로션, 크림, 영·유아용 오일, 영·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영·유아 목욕용 제품
목욕용 제품류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목욕용 소금류, 버블 배스(bubble baths),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폼 클렌저(foam cleanser), 바디 클렌저(body cleanser), 액체 비누(liquid soaps), 외음부 세정제, 물휴지,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아이 라이너(eye liner), 아이 섀도(eye shadow), 마스카라(mascara),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eye make-up remover),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향수, 분말향, 향낭(香囊), 콜롱(cologne),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두발 염색용 제품류	헤어 틴트(hair tints), 헤어 컬러스프레이(hair color sprays),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불연지,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페이스 케이크(face cakes), 리퀴드(liquid)·크림·케이크 파운데이션(foundation), 메이크업 베이스(make-up bases), 메이크업 픽서티브(make-up fixatives), 립스틱, 립라이너(lip liner), 립글로스(lip gloss), 립밤(lip balm), 바디페인팅(body painting), 페이스페인팅(face painting), 분장용 제품,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헤어 컨디셔너(hair conditioners), 헤어 토닉(hair tonics), 헤어 그루밍 에이드(hair grooming aids), 헤어 크림·로션, 헤어 오일, 포마드(pomade), 헤어 스프레이·무스·왁스·젤, 샴푸, 린스, 퍼머넌트 웨이브(permanent wave), 헤어 스트레이트너(hair straightner),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손발톱용 제품류	베이스코트(basecoats), 언더코트(under coats), 네일폴리시(nail polish), 네일에 나멜(nail enamel), 탑코트(topcoats), 네일 크림·로션·에센스, 네일폴리시·네일에나멜 리무버,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애프터셰이브 로션(aftershave lotions), 남성용 탈컴(talcum), 프리셰이브 로션(preshave lotions), 셰이빙 크림(shaving cream), 셰이빙 폼(shaving foam),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마사지 크림, 에센스, 오일, 파우더, 바디 제품, 팩,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 크림,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체취 방지용 제품류	데오도란트,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그러나, 화장품법상의 화장품 분류는 통계 목적으로 분류된 관세율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동 보고서에서는 관세율표상의化妆품을 중심으로 수입동향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① 향수와 화장수

① 물품 개요

일반적으로 향기나 나는 물질 중에서 고체상태의 것을 향료(香料)라 하며, 액체상태의 것을 향수(香水, perfumes)라고 한다.

〈향수·화장수의 품명 및 관세율〉

HS	품명	관세율 (2015)					
		기본 / MFN ^②	EFTA	EU	미국		
3303	향수와 화장수						
00	1000	향수	8/6.5	0	0	0	
	2000	화장수	8/6.5	0	0	0	

향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크게 천연향료와 합성향료로 구분할 수 있다. 천연향료는 장미나 레몬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향료를 말하며, 합성향료는 화학반응을 통하여 합성시킨 것을 말한다. 이와 별도로 천연향료에서 필요한 향기만 추출한 향료도 있다. 이러한 향료는 주로 화장품으로 사용되나 식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향수는 향료를 알코올 등에 녹여서 만든 것으로 화장품의 일종이다. 향수 원액의 농도에 따라 퍼퓸, 오드퍼퓸, 오드트왈렛, 오드콜로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②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향수의 구분〉

구분	특징	향료 비율
퍼퓸	향료를 알코올 등에 녹여 만들. 지속시간이 가장 길며, 값이 비싸다.	15~20%
오드 퍼퓸	거의 향수에 가까울 정도로 향이 풍부	10~15%
오드 트왈렛	오드퍼퓸과 오드콜로뉴의 중간 타입	5~10%
오드 콜로뉴	향분이 적고, 많은 수분을 함유. 목욕 후 전신에 사용	3~5%

향료나 향수에서 '향기'가 중요하다면, 화장수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거나 매끈하게 하려고 바르는 기능을 중요시하는 액체상의 화장품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오드 콜로뉴(eau de cologne)^③라고도 불린다. 과거에는 과즙 등을 화장수로 이용하였으나 현재에는 다양한 합성 화장수가 사용된다.

화장수(toilet water)는 향수와 같지만, 향료의 양이 향수보다는 적고, 알코올의 양은 향수보다 많다. 따라서 향수와는 달리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피부에 직접 발라도 얼룩이 지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관세율표상 향수는 제3303.00-1000호에 분류하며, 화장수는 제3303.00-2000호에 분류한다.

HS 품목분류 해설서상의 정의

향수 : 보통 정유·플로랄 콘크리트·앵설루트 또는 인조방향성 물질 혼합물을 고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으로서, 보통 경미한 향기가 있는 보조제·보향제 또는 안정제와 혼합되어 있다.

화장수 : 예를 들어 라벤다수·오데콜론 등과 같은 것으로서(제3301호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및 애큐어스 솔루션과 혼동하지 말 것) 앞에서 설명한 향료류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의 정유 등을 비교적 낮은 농도의 알코올에 용해한 것이다.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이란 식물을 수증기 증류로 정유를 추출할 때 만들어지는 수성 부분으로서, 정유를 소량 함유한 잔존물이다. 동 물품은 제3301호에 분류하므로 향수 또는 화장수와 구분된다.^④

③ 콜로뉴는 독일 쾰른의 프랑스명이며, 오드 콜로뉴는 '콜로뉴의 물'이라는 뜻이다.

④ 가장 일반적인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 및 애큐어스 솔루션은 오렌지꽃·장미·메리사·박하·회향·체리로렐·라임블로섬·윙트헤이즐 등이다.

② 수입동향: 수입금액 및 FTA 활용률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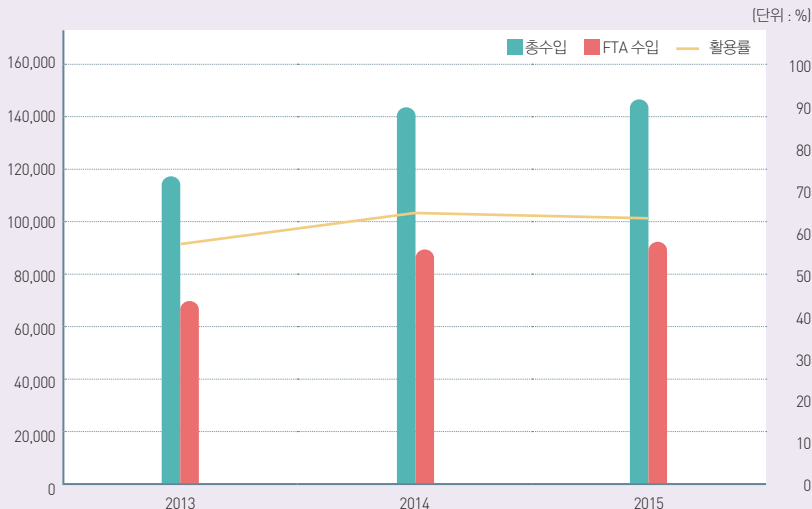
최근 3년간 향수·화장수의 수입은 총수입 및 FTA 수입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총 1억1천만 달러였던 향수·화장수 총수입은 '15년에는 1억4천만 달러로 약 3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FTA를 활용한 특혜수입규모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다만, 특혜수입규모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이 '14년 61.6%에서 '15년에 60.7%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아 특혜대상임에도 특혜적용을 받지 않은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향수·화장수의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15/'14)
총수입	119,206	140,053	143,820	2.7
FTA 수입	65,902	84,947	86,380	1.7
활용률*	57.00	61.60	60.70	-0.9



$$* \text{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③ 협정별 수입 동향 : EU 소폭 감소, 미국 지속 증가

향수 · 화장수 주요 수입국인 EFTA, EU,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년간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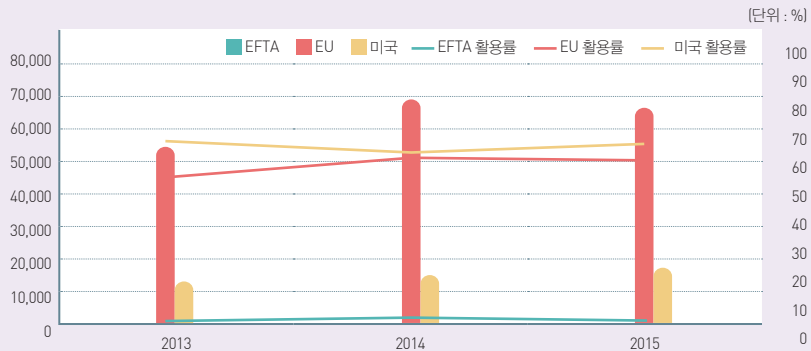
같은 유럽권인 EFTA와 EU의 경우 '13년과 비교하여 '14년에 상승하였으나, '15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인 반면, 미국은 '13년 이후 3년간 지속해서 수입금액이 증가하였다. 특히 향수 · 화장수의 최대 수입국인 EU로부터는 '14년에 비하여 '15년 약 1백만 달러 감소하였으나, 미국은 같은 기간 약 2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FTA 활용률의 경우에도 특혜수입동향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냈다. 유럽권 협정의 경우, '14년에 비하여 '15년에 특혜활용률이 소폭 하락하였으나, 미국은 같은 기간 약 2% 활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수 · 화장수의 협정별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EFTA	EU	미국	EFTA	EU	미국	EFTA	EU	미국
수입금액	11	54,561	11,326	60	69,619	15,267	19	68,648	17,649
활용률*	1.88	55.96	65.01	6.25	61.69	63.25	2.13	60.11	65.16



※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② 입술화장용 제품류(Lip make-up preparations)

① 물품 개요

입술화장용 제품류는 주로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으로서 립스틱, 립밤, 립글로스 및 기타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입술화장용 제품의 품명 및 관세율〉

HS	품명	관세율 (2015)				
		기본/MFN ^⑤	EU	미국	캐나다	
3304	-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	입술화장용 제품류				
	1000	립스틱	8/6.5	0	0	4.3
	9000	기타	8/6.5	0	0	4.3

립스틱(Lipstick)은 제3304.10-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과거에는 루주(Rouge)라고 불렸으며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입술연지라고도 한다. 립스틱을 사용하는 이유는 입술에 아름다운 색을 부여하고 생기와 질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할 때 꼭 필요한 물건이다.

립스틱은 안료와 염료를 적절히 혼합한 것을 사용하는데, 안료는 기름 염료는 물을 기제로 하여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안료는 불투명한 색을 내고 염료는 투명한 빛깔을 만드는 특징이 있다. 스틱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량의 왁스가 사용된다. 이 외에도 보습원료, 오일, 페이스 트 등이 포함된다.

⑤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기타 입술화장용 제품류는 립스틱을 제외한 기타의 입술화장용 제품으로서 제3304.10-9000호에 분류된다. 동 품목번호에는 예를 들면, 립밤(Lip-balm), 립스틱 리무버(Lipstick Remover), 립글로스, lip revitalizer 등이 있다.

립밤은 주로 입술의 보습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수분손실을 막기 위한 용도 외에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기도 한다. (자외선 차단 등) 사용되는 대부분 원료가 보습제다. 립밤과 비슷하지만, 액체형상으로 된 것은 립케어라고도 한다. 립스틱 리무버는 입술에 바른 립스틱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통 립스틱과 함께 세트 포장되어 판매된다.

립글로스는 입술을 촉촉하고 윤기 나게 보이기 위해 바르는 화장품으로서 실제 보습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능보다는 미용의 효과가 더욱 큰 제품이다. 다만, 립글로스와 립스틱의 차이점은 립글로스가 수채화 물감 같은 느낌이지만, 립스틱은 유화처럼 입술 위에 덧칠하는 느낌이 강하다. 이외에도 기타의 입술화장용 제품에는 립 케어, 틴트 밤, 립 타투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 제3304.10-9000호에 분류된다.

② 수입 동향 : 총수입 및 FTA 특혜 수입 모두 지속 증가

입술화장용 제품의 수입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총 5천 9백 달러였던 수입규모는 '15년에는 총 7천5백만 달러로, 약 1천6백만 달러가 증가하였다.

총수입의 증가와 함께, FTA 특혜수입규모 역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다만, FTA 특혜수입 활용률은 3년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3년과 '14년 51.4%였던 특혜수입률은 '15년 1.2% 하락한 50.2%로 나타났다.

특혜수입이 증가하였음에도 활용률이 하락한 것은 특혜적용수입보다 특혜대상품목임에도 특혜적용을 받지 않은 물품의 수입증가가 더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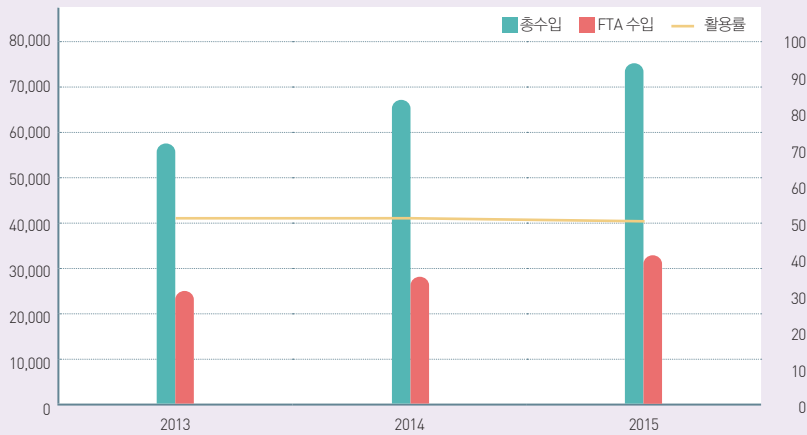


입술화장용 제품의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15/'14)
총수입	59,413	68,556	75,567	10.2
FTA 수입	24,104	28,888	33,541	16.1
활용률*	51.40	51.40	50.20	-1.2

(단위: %)



$$* \text{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③ 협정별 수입동향: EU 증가, 미국 감소, 캐나다 신규

입술화장용 제품의 FTA 수입이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수입국인 EU, 미국, 캐나다도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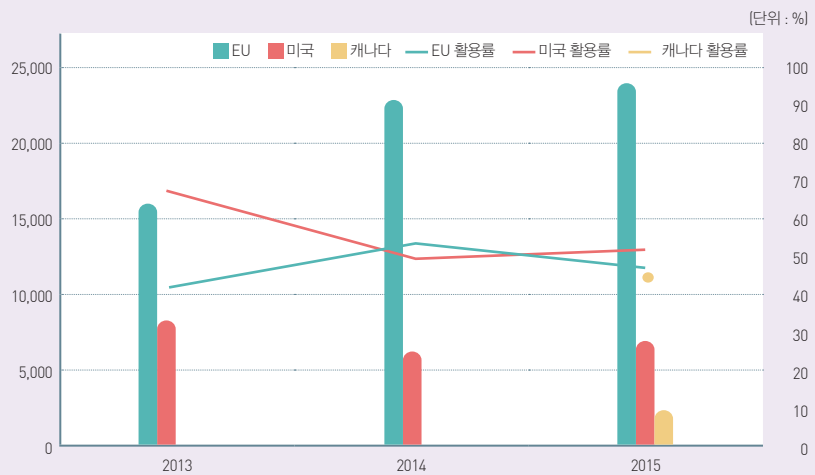
EU의 경우 최대 수입국임과 동시에 증가 폭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13년에 약 1천6백만 달러의 수입금액이 '15년에는 약 2천4백만 달러로 약 8백만 달러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수입금액이 약 1백만 달러 감소하여 EU와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인접국인 캐나다와의 협정이 발효되면서 '15년 미국 수입감소액을 상회하는 수준인 약 1백7십만 달러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률의 경우, 주요 수입국 모두 40% 후반~50% 초반대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EU의 활용률은 3년간 큰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미국의 활용률이 '13년 65.15%에서 '15년 52.98%로 약 13% 하락한 것이 특징이다.

입술화장용 제품의 협정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수입금액	16,181	7,918	-	22,605	6,037	-	24,351	6,856	1,702
활용률*	46.72	65.15	-	51.64	50.39	-	49.29	52.98	45.97



$$\text{※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③ 눈화장용 제품류(Eye make-up preparations)

① 물품 개요

눈화장용 제품은 눈을 아름답고 돋보이게 하는 화장품으로서 대표적으로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마스크라, 아이브로우펜슬 등이 있다.

〈눈화장용 제품의 품명 및 관세율〉

HS	품명	관세율 (2015)				
		기본/MFN [®]	EU	미국	캐나다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20	눈화장용 제품류					
	1000	아이섀도	8/6.5	0	0	4.3
	9000	기타	8/6.5	0	0	4.3

아이섀도(Eye shadow)는 눈썹과 눈 사이에 바르는 눈화장용 제품이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눈을 크게 보이도록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보통 가루나 운모의 형태로 되어 있다.

아이라이너는 눈을 선명하고 또렷하게 보이게 하려고 사용하는 눈화장용 제품이다. 용도에 따라 펜슬, 젤, 액체, 붓 펜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아이섀도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눈 화장용 제품이다.

마스크라는 속눈썹을 길고 짙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눈 화장용 제품이다. 제품에 따라 볼륨감을 좋게 하거나, 길어 보이게 하거나, 컬링을 주거나 하는 제품이 있다. 아이브로우 펜슬(Eyebrow pencil)은 눈썹을 짙고 길어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눈화장용 제품이다.

아이섀도는 제3304.20-1000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눈화장에 사용되는 제품은 제3304.20-9000호에 분류한다.

⑥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② 수입 동향 : 총수입 및 FTA 수입 증가, FTA 활용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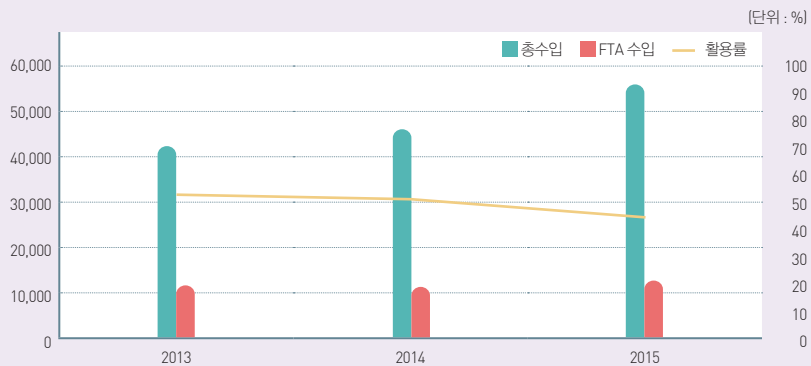
우리나라 눈화장용품의 총 수입금액은 '13년부터 '15년까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3년 4천2백만 달러였던 수입금액은 '15년에는 5천3백만 달러까지 증가하여 3년간 총 1천1백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를 활용한 특혜수입역시 '13년 1천1백만 달러에서 '15년 1천3백만 달러로 약 2백만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FTA 활용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51.3%의 활용률을 나타내어 특혜대상품목의 절반 이상이 실제 특혜수입을 적용받고 수입되었으나, '15년 활용률은 47.7%를 보여 절반 이하의 품목이 특혜수입을 받지 못하고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눈화장용 제품의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15/'14)
총수입	42,483	44,185	53,365	20.8
FTA 수입	11,547	11,036	13,080	18.5
활용률*	51.30	51.20	47.70	-3.5



※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③ 협정별 수입동향 : 최대 수입국 EU의 활용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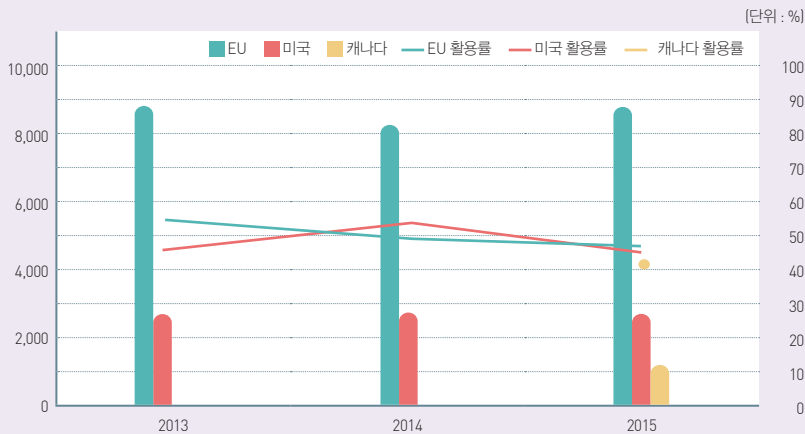
눈화장용품 특혜수입을 협정별로 살펴보면 최대 수입국인 EU와 2위국인 미국 모두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의 특혜수입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년에는 EU가 약 8백8십만 달러, 미국이 약 2백7십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15년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의 눈화장용품을 수입하였다. '15년1월 발효한 캐나다의 수입액은 1백3십만 달러로 미국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이다.

FTA 활용률의 경우 협정별로 상이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EU의 특혜수입활용률이 '13년 52.19%에서 '15년 48.54%로 점차 하락하고 있지만, 미국은 '14년에 53.51%를 나타내어 전년 대비 약 5% 활용률이 상승하였으나, '15년에는 다시 '13년 수준의 활용률을 나타내었다. 캐나다는 발효 1년 차 활용률이 43.17% 수준으로 나타났다.

눈화장용 제품의 협정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수입금액	8,805	2,710	-	8,219	2,792	-	8,837	2,891	1,310
활용률*	52.19	48.78	-	50.57	53.51	-	48.54	47.53	43.17



$$\text{※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④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Manicure or pedicure preparations)

① 물품개요

일반적으로 매니큐어는 손톱, 페디큐어는 발톱에 바르는 화장품을 총칭한다. 매니큐어는 흔히 네일에나멜이라고도 하며, 네일에나멜은 매니큐어의 한 종류이다.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의 품명 및 관세율〉

HS	품명	관세율 (2015)				
		기본/MFN ^⑦	EFTA	EU	미국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 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0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1000	네일에나멜	8/6.5	0	0	0
	9000	기타	8/6.5	0	0	0

매니큐어(페디큐어)의 구체적 종류에는 베이스코트, 네일하드너, 탑코트, 네일에나멜, 및 네일 패치(필름) 등이 있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제품은 네일에나멜과 기타의 제품으로만 구분된다.

네일에나멜이란 일반적으로 매니큐어라고 부르는 제품으로서 손톱에 색상을 부여하는 제품으로 제3304.30-1000호에 분류한다.

기타의 제품에는 에나멜을 바르기 전에 손톱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베이스코트와 네일 하드너, 에나멜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네일리무버, 바르는 형식이 아닌 붙이는 형식의 매니큐어인 네일패치(필름) 등이 있다. 이들 제품은 제3304.30-9000호에 분류한다.

⑦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② 수입 동향: 총수입 감소 및 FTA 수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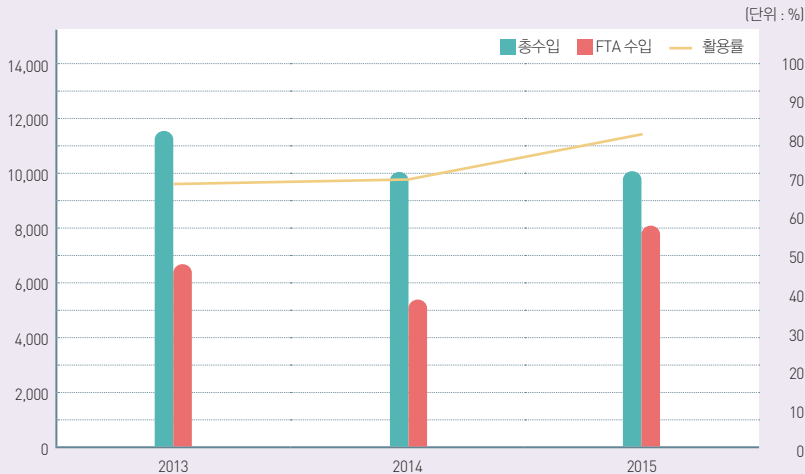
'15년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의 총 수입금액은 '13년과 비교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총수입은 1천1백만 달러였으나 '15년에는 1천만 달러를 소폭 상회하여, 총 수입은 3년간 약 1백만 달러 수준 감소하였다.

이와 반대로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의 FTA 특혜수입 및 특혜활용률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FTA수입은 6백만 달러, 활용률은 68.7%였으나 '15년 FTA 수입은 8백만 달러, 활용률은 84.4%로 수입금액과 활용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의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15/'14)
총수입	11,870	10,002	10,641	6.4
FTA 수입	6,672	5,445	8,003	47.0
활용률*	68.70	69.80	84.40	14.6



$$\text{※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③ 협정별 수입동향(EU 증가, 미국 정체, EFTA 감소)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의 협정별 FTA 수입을 살펴보면, EU로부터의 큰 폭의 수입증가와 미국으로부터 수입의 정체, 그리고 EFTA 수입의 감소로 요약할 수 있다.

매니큐어·페디큐어 최대 수입국인 미국은 '13년 약 5백5십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하였으며 '14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다시 '15년에는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두 번째로 수입규모가 큰 EU의 수입은 '13년 1백만 달러에서 '15년 2백2십만 달러로 2배 이상 수입이 증가하여 정체 상태에 있는 미국과 다른 수입동향을 나타내었다. 세 번째 수입국인 EFTA는 수입규모가 미국이나 EU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점차 감소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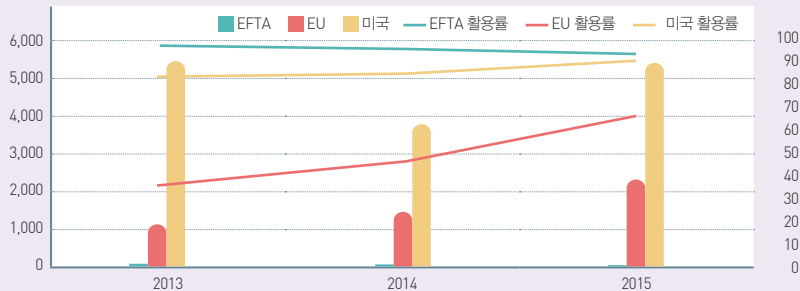
FTA 활용률을 살펴보면 향후 EU의 특혜수입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수입증가세에 있는 EU의 경우 '13년 활용률이 36.09%에 불과하였으나, '15년에는 67.66%를 기록하여 특혜수입규모와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과 EFTA는 '15년 기준 각각 94.64%, 96.37%를 기록하여 대부분의 수입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매니큐어·페디큐어 제품의 협정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EFTA	EU	미국	EFTA	EU	미국	EFTA	EU	미국
수입금액	102	1,047	5,522	94	1,452	3,885	75	2,267	5,589
활용률*	99.94	36.09	82.30	99.92	49.93	82.80	96.37	67.66	94.64

[단위: %]



$$\text{※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⑤ 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s)

① 물품 개요

페이스 파우더는 입자가 일반 화장품에 비하여 훨씬 고운 화장품으로서 피부색을 밝게 하고, 메이크업 분위기를 살리는 데 사용되는 화장품이다.

〈페이스파우더의 품명 및 관세율〉

HS	품명	관세율 (2015)			
		기본/MFN [®]	EU	미국	캐나다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 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9	기타				
91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000	페이스 파우더	8/6.5	2.6 (6.30.까지) 1.3 (7.1 이후)	0	5.2

최근 자연스러운 화장을 선호하는 여성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커버력이 높은 기존의 케익형 파우더 제품보다는 화장이 두껍지 않고 자연스러운 페이스파우더를 사용한다.

제품에 따라 퍼프(Puff)를 이용하거나 브러시를 이용할 수 있다. 퍼프를 이용하면 메이크업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으며 브러시를 이용하면 입자가 가볍게 밀착되어 피부색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해준다.

페이스파우더는 제3304.91-1000호에 분류되며, 기타 가루형상의 것으로서 화장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기타 호인 제3304.91-9000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얼굴의 각질 및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한 분말 상의 것은 화장품으로 보아 제3304.91-9000호에 분류된다.

⑧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② 수입 동향 : 총수입 및 FTA 수입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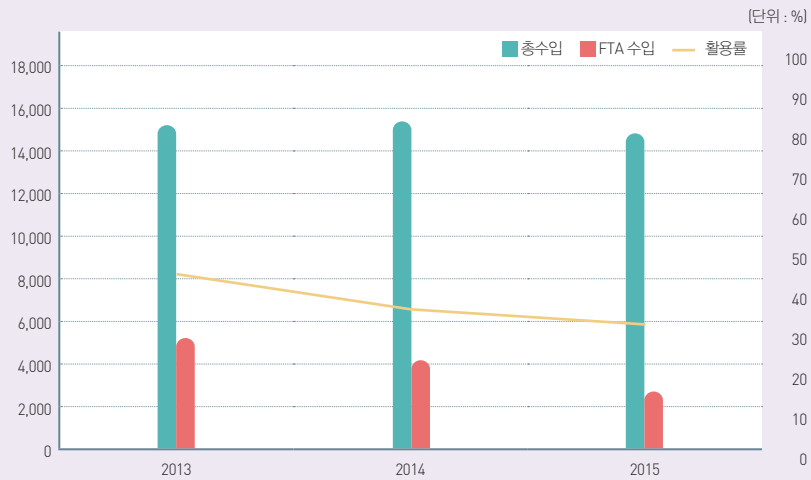
페이스파우더의 총수입은 최근 3년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총수입이 1천5백만 달러였던 페이스파우더의 수입금액은 '14년 소폭 상승하였으나 '15년에는 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여 '13년보다 낮은 수입금액을 기록하였다.

FTA 수입금액 및 활용률은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5백만 달러를 상회하였던 특혜수입금액은 '15년에는 3백5십만 달러 수준에 그쳤으며, FTA 활용률 역시 같은 기간 47.4%에서 32%로 15%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파우더의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15/'14)
총수입	15,643	16,131	14,775	-8.4
FTA 수입	5,336	4,191	3,537	-15.6
활용률*	47.40	38.20	32.00	-5.8



※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③ 협정별 수입 동향 : 협정 불문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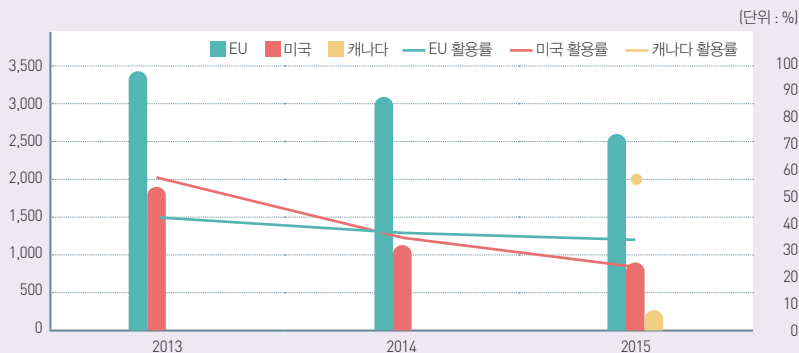
페이스파우더의 협정별 수입을 살펴보면, 주요 수입국 모두 공통으로 수입금액과 활용률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대 페이스파우더 수입국인 EU의 경우에도 '13년 약 3백3십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나 '15년에는 2백6십만 달러를 수입하였으며, 미국 역시 같은 기간 1백9십만 달러에서 8십만 달러로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15년 신규발효국인 캐나다의 특혜수입은 9만 달러로 낮은 수준이다.

FTA 특혜활용률 역시 특혜수입의 동향과 유사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EU와 미국 모두 '13년 가장 높은 활용률을 나타낸 이후 점차 활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간 페이스파우더 수입에서 캐나다의 '15년 FTA 활용률이 가장 높은 57.99%를 나타냈다.

페이스파우더의 협정별 수입동향

[단위: 천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수입금액	3,394	1,941	-	3,032	1,159	-	2,622	820	92
활용률*	43.30	57.06	-	39.19	36.06	-	35.31	23.71	57.99



※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⑥ 기초화장용 제품류(Skin care cosmetics)

① 물품 개요

기초화장품은 메이크업용 화장품과는 달리 피부가 본래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화장품을 말한다. 피부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습 물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없거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피부는 금방 손상될 것이다. 이에 기초화장을 통하여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것이다.

기초화장품은 분류기준에 따라 색조 화장품을 제외한 모든 화장품을 기초화장품이라고 하기도 한다.

〈기초화장용 제품의 품명 및 관세율〉

HS	품명	관세율 (2015)				
		기본/MFN ^⑨	EU	미국	캐나다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99	기타					
	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8/6.5	2.6 [6.30까지] 1.3 [7.10이후]	4.8	5.2

기초화장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대표적으로는 클렌저(세정제), 로션, 에멀전, 크림 및 에센스, 팩과 마스크 등도 기초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화장수도 기초화장품으로 볼 수 있으나, 관세율표상 화장수는 제3303호에 분류되며, 기초화장품은 제3304호에 분류된다.

또한, 피부에 수분을 주고 진정기능을 하도록 하는 알로에베라 수딩겔, 보습 성분을 편물제의 소재에 도포한 마스크, 피부의 각질제거에 사용하는 스킨케어 제품 등도 기초화장품으로서 동호에 분류된다. 화장품법상 기초화장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⑨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화장품법상 기초화장품의 종류〉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렴·유연·영양 화장수(face lotions), 마사지 크림, 에센스, 오일, 파우더, 바디 제품, 팩,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 크림, 손·발의 피부연화 제품,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② 수입 동향 : 총수입, FTA 수입 모두 증가

기초화장용 제품의 총수입은 최근 3년간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5억4천만 달러였던 기초화장용 제품의 총수입은 '14년에 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5년에는 다시 하락하여 5억8천만 달러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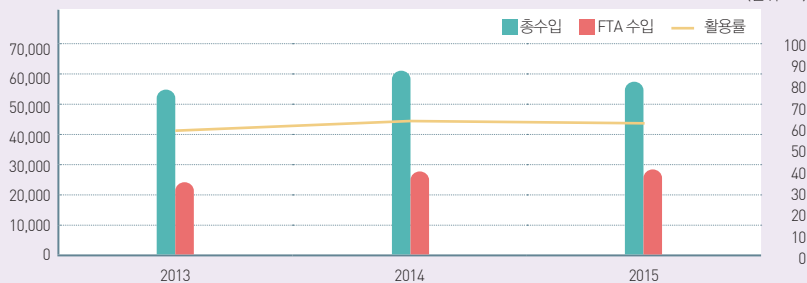
FTA를 활용한 기초화장용 제품의 수입 역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에는 약 2억4천만 달러의 기초화장용 제품이 특혜를 적용받아 수입되었으나, '15년에는 약 2억9천만 달러가 특혜수입되었으며 FTA 활용률은 동 기간 60.5%에서 63.3%로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화장용 제품의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15/'14)
총수입	546,804	600,447	584,088	-2.7
FTA 수입	248,094	287,320	294,261	2.4
활용률*	60.50	63.40	63.30	-0.1

(단위: %)



*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③ 협정별 수입 동향 : 큰 변동 없이 50%~60%대 활용률 유지

기초화장용 제품의 수입을 협정별로 살펴보면, 주요 수입국인 EU, 미국 모두 '15년에는 전년 대비 하락한 수준이나 '13년에 비해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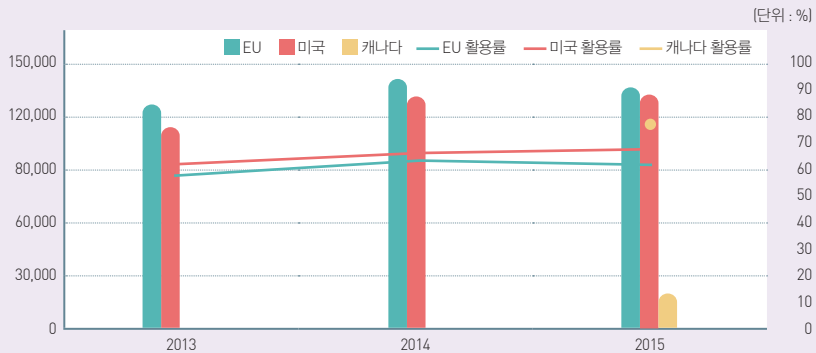
유사한 수입규모를 나타내는 EU와 미국의 '13년 수입금액은 각각 1억2천만 달러, 1억1천만 달러였으며, '15년에는 양 협정 모두 1억3천만 달러를 나타내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년 처음 특혜수입을 적용받은 캐나다의 수입규모는 1천6백만 달러로 EU와 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FTA 활용률 역시 수입금액과 마찬가지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EU와 미국 모두 '13년부터 줄곧 50% 후반에서 60% 중반의 활용률을 나타내었으며, '15년에 캐나다가 가장 높은 활용수준인 75%를 나타냈다.

기초화장용 제품의 협정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수입금액	125,706	115,626	-	141,966	138,922	-	137,096	131,305	16,676
활용률*	58.63	64.07	-	63.05	65.48	-	61.20	66.01	75.11



※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⑦ 메이크업 제품류(Make-up cosmetics)

① 물품 개요

메이크업 화장품은 보통 색조 화장품으로 불린다. 다양한 제품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블러셔, 하이라이트, 쉐이딩 등 색조 화장품이 주를 이룬다.

〈메이크업 제품의 품명 및 관세율〉

HS	품명	관세율 (2015)			
		기본/MFN ^⑩	EU	미국	캐나다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99	기타				
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8/6.5	0	0	4.3

블러셔나, 치크, 볼터치 등 메이크업 제품은 주로 얼굴색을 밝고 건강하게 보이게 하며, 얼굴을 입체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메이크업 화장품은 제3304.99-2000호에 분류되며, 또한 메이크업에 사용하는 색소 등도 동 호에 분류된다. 스포이드 등과 함께 포장된 것으로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등의 반영구 화장에 사용하는 색소도 메이크업 제품으로서 같은 호에 분류된다.

⑩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② 수입 동향 : 총수입 감소, FTA 수입 증가

우리나라의 메이크업 화장품의 총수입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와 반대로 FTA를 적용한 특혜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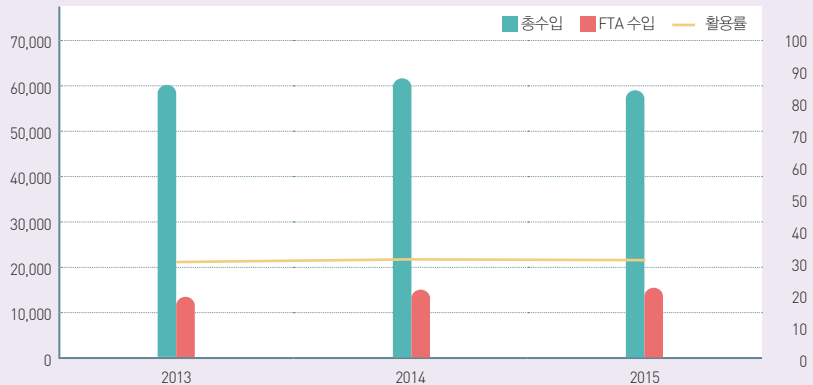
'13년에는 총수입 6천만 달러, FTA 특혜수입 1천3백만 달러 수준이었으나 '15년의 경우 총수입은 5천9백만 달러, 특혜수입 1천5백만 달러를 나타내어 총수입은 1백만 달러 감소하였고, 특혜수입은 2백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활용률도 눈에 띄는 증가라고 할 수는 없으나 '15년 32%의 활용률은 '13년에는 1.6% 증가한 33.6%의 활용률을 보였다.

메이크업 제품의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15/'14)
총수입	60,357	60,891	59,473	-2.3
FTA 수입	13,309	14,414	15,158	5.2
활용률*	32.00	33.50	33.60	0.1

[단위: %]



$$\text{※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③ 협정별 수입 동향 : EU 증가, 미국 감소, 캐나다 신규

메이크업 제품의 협정별 특혜수입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EU의 지속적 증가, 미국의 소폭감소, 캐나다의 신규특혜수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13년 EU와 미국의 특혜수입은 각각 8백9십만 달러, 4백3십만 달러로 약 2배 수준의 격차를 보였으나, '15년에는 각각 1천만 달러, 3백9십만 달러로 수입규모의 격차는 약 2.5배 수준으로 커졌다. 캐나다는 '15년 처음 특혜수입을 적용받았으나 수입규모는 EU와 미국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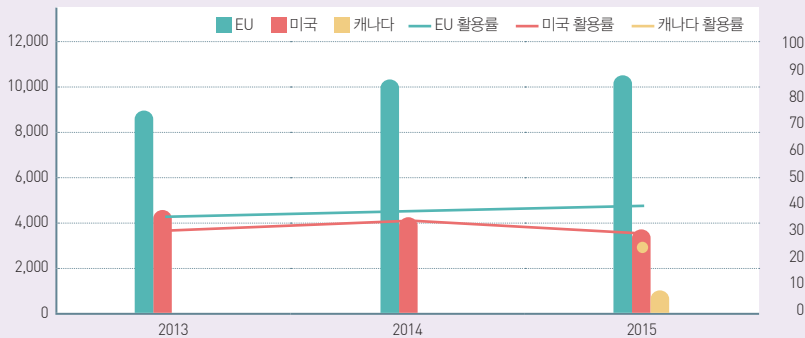
FTA활용률도 수입동향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냈다. EU의 경우 '13년부터 지속적으로 FTA 활용률이 상승했지만, 미국은 이와 반대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로 FTA를 활용한 캐나다는 '15년 23.37%의 활용률을 나타내었다.

메이크업 제품의 협정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EU	미국	캐나다
수입금액	8,907	4,346	-	10,164	4,181	-	10,284	3,910	876
활용률*	33.19	29.67	-	34.57	30.93	-	38.13	27.38	23.37

[단위 : %]



$$* \text{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⑧ 어린이용 제품류(Baby cosmetics)

① 물품 개요

어린이용 제품은 어린이의 피부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어린이 피부는 각질층의 수분보유능력이 성인보다 낮고, 피지 분비가 적으며 저항력 또한 성인보다 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용 화장품은 유분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자극이 적은 제품이어야 한다.

〈어린이용 제품의 품명 및 관세율〉

HS	품명	관세율 (2015)				
		기본/MFN ^⑩	EU	미국	아세안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99	기타				
	3000	어린이용 제품류	8/6.5	0	0	0

어린이용 화장품에는 대표적으로는 베이비 오일이 있으며, 이는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아기 피부의 각질을 제거하고 오염물질을 세정하는 작용을 한다. 최근 아토피 등 어린이들의 피부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제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기타의 화장용 제품으로서 제3304.99-9000호에 분류되나, 최근 어린이용으로 출시된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제3304.99-3000호로 분류된다. 또한, 어린이용 물티슈는 제3307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으로 분류하며, 어린이용 샴푸는 제3305호,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은 제3307호에 분류된다.

⑩ 기본세율 또는 최혜국대우세율 중에서 더 낮은 것을 기준으로 범위로 표시한 것

② 수입 동향: FTA 수입금액의 증가 및 활용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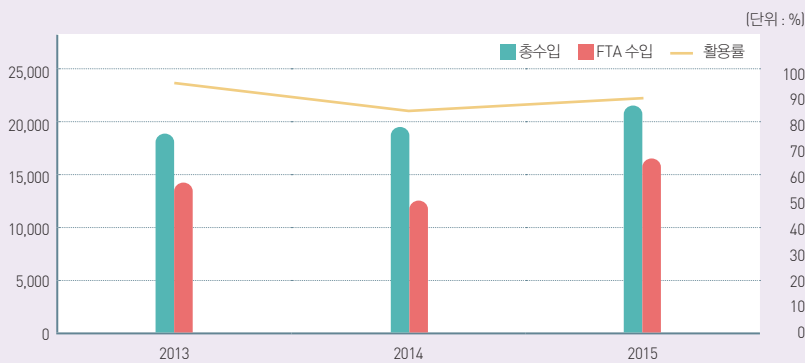
어린이용 화장품의 총수입 및 FTA 수입은 '13년에 비하여 '15년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년 약 1천9백만 달러였던 총수입은 '15년에는 2천1백만 달러로 약 2백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FTA 특혜수입 규모는 약 1백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혜수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FTA 활용률은 소폭하락하였다. '13년에는 93.1%의 FTA 활용률을 나타내었으나, '15년에는 89.9%로 약 3% 하락한 것으로 보아, 특혜수입대상임에도 일반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받고 수입된 품목이 특혜수입금액보다 더 큰 비율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용 제품의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증감률('15/'14)
총수입	19,013	19,170	21,091	10.0
FTA 수입	14,428	12,654	15,720	24.2
활용률*	93.10	86.10	89.90	3.8



$$* \text{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③ 협정별 수입 동향 : 아세안 제3의 수입국

어린이용 화장품의 주요 수입국은 EU, 미국과 아세안이며 이들의 수입규모는 큰 차이가 없이 4백만 달러에서 6백만 달러 수준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3년간 '13년에는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었으나 '15년에는 EU가 큰 폭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미국은 3개 주요 협정 중 가장 낮은 수입금액을 나타내었다. 특히 EU의 수입증가는 '13년 약 4백만 달러에서 '15년 약 6백만 달러로 약 50%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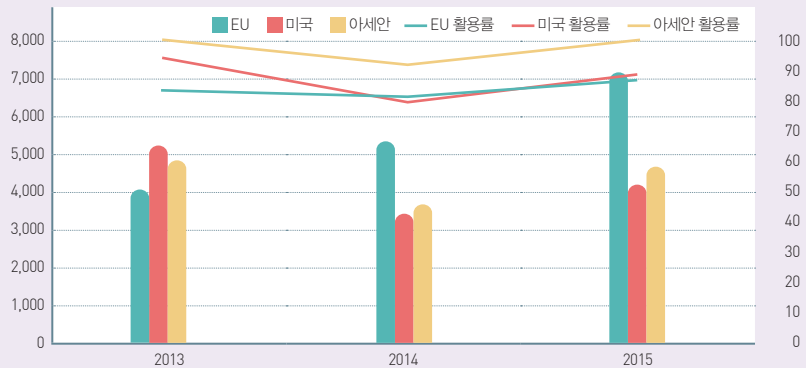
FTA 활용률에 있어 아세안이 '13년과 '15년에 100%의 특혜활용률을 나타낸 것이 특징이며, EU는 소폭의 증가를, 미국은 소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EU는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활용률 증가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어린이용 제품의 협정별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3			2014			2015		
	EU	미국	아세안	EU	미국	아세안	EU	미국	아세안
수입금액	4,121	5,374	4,890	5,235	3,550	3,750	6,060	4,272	4,829
활용률*	84.60	94.97	100.00	84.03	82.28	94.34	87.08	89.20	100.00

[단위: %]



$$* \text{ 활용률} = \frac{\text{FTA 수입}}{\text{FTA 대상수입 (≠ 총수입)}}$$

03.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 시사점

이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동향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품목별 총수입 및 FTA 수입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15년 화장품 제품의 수입금액 및 증감률('15/'14)〉

[단위: 천달러, %]

구분	품명	HS CODE	총 수입		FTA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향수와 화장수	3303	143,820	2.7	86,380	1.7
2	입술화장용 제품류	3304.10	75,567	10.2	33,541	16.1
3	눈화장용 제품류	3304.20	53,365	20.8	13,080	18.5
4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용 제품류	3304.30	10,641	6.4	8,003	47.0
5	페이스파우더	3304.91-1000	14,775	-8.4	3,537	-15.6
6	기초화장용 제품류	3304.99-1000	584,088	-2.7	294,261	2.4
7	메이크업용 제품류	3304.99-2000	59,473	-2.3	15,158	5.2
8	어린이용 제품류	3304.99-3000	21,091	10.0	15,720	24.2
합계			962,820	0.4	469,685	4.6

2015년 화장품 제품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0.4%, FTA 수입은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 수입의 비중은 총수입의 절반 수준이다.

품목별 총수입의 경우 눈화장용 제품과 입술화장용, 어린이용 제품의 수입증가가 눈에 띄며, FTA 수입의 경우 매니큐어용 제품과 어린이용 제품, 눈화장용 제품, 입술화장용 제품의 증가율이 1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니큐어용 제품의 FTA 수입 증가율은 47%로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외 FTA 수입이 증가한 제품은 대부분 총수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우리나라 화장품 총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FTA를 활용한 수입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화장품 수입시장의 확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페이스 파우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화장품 제품의 FTA 수입은 모두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중국, 베트남 등 우리나라 주요 화장품 수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최대 수출국으로서 한-중 FTA를 활용한다면, 보다 큰 중국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중 FTA에 대한 조건 없는 낙관론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중국 수출을 위해서는 위생허가, 라벨링, 원료감독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존재하는데, 단순히 한-중 FTA의 관세 혜택만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화장품수출업계는 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화장품의 기능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는 화장품 임상실험에 대한 사항이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중국 업체들도 하나둘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에 뛰어들면서 언제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결국, 국내 화장품의 제조, 검사, 판매 등 다양한 부분에 걸쳐 기초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화장품 산업의 호황은 언제든 끝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주요 내용과 기업의 활용 방안

금혜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최근 한-미 FTA가 발효 4주년을 맞이하였다. 2012년 3월 15일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은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통해 협정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성공적인 FTA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미 FTA의 주요 협정내용을 되짚어보고, 상품을 중심으로 FTA 발효 전후 교역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우리 기업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1. 한-미 FTA 주요 내용^①

한-미 FTA는 서문, 본문 총 24개 장, 부속서, 부록 및 부속서한으로 이루어진 협정문(2007.6.30. 서명)과 서한 교환(2011.2.10.)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먼저 각 분야의 협정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 분야에서는 협정 발효 시 우리나라의 쌀 품목을 제외한 양국의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 또는 감축되며, 발효 5년 차(2016년)에는 한국 전체 품목의 92%, 미국 92.8%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와 전기자동차는 양국 상호 4년 후 관세가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은 즉시 철폐 품목이다. 농산물의 경우 우리 측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 제외(쌀 및 쌀 관련 품목, 현행관세 유지(식용 대두, 감자 등), 세이프가드(쇠고기, 돼지고기 등), 계절관세(오렌지, 포도 등)와 같은 방식으로 보호하고, 국내 영향이 미미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 위주(냉동 오렌지 주스, 커피 등)로 관세를 철폐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22-나에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 아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같은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표1. 한-미 FTA 상품 양허 결과〉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한국		미국	
	품목 수	수입액	품목 수	수입액
즉시철폐	9,003 (80.0)	21,778 (77.6)	8,623 (82.1)	28,280 (69.2)
2-3년	765 (6.8)	3,362 (12.0)	366 (3.5)	508 (1.2)
3년 이내	9,768 (86.8)	25,140 (89.6)	8,989 (85.6)	28,788 (70.4)
5년	589 (5.2)	842 (3.0)	756 (7.2)	10,346 (25.3)
5년 이내	10,357 (92.0)	25,982 (92.6)	9,745 (92.8)	39,134 (95.7)
6-7년	44 (0.4)	122 (0.4)	92 (0.9)	31 (0.1)
9-10년	667 (5.9)	1,240 (4.4)	586 (5.6)	1,719 (4.2)
10년 이내	11,068 (98.3)	27,344 (97.4)	10,423 (99.2)	40,885 (100)
10년 초과	161 (1.4)	477 (1.7)	82 (0.8)	2 (0.0)
계절/현행관세	16 (0.1)	213 (0.8)	-	-
양허제외	16 (0.1)	26 (0.1)	-	-
합계	11,261 (100)	28,060 (100)	10,505 (100)	40,887 (100)

주 1) 품목 수는 2003년 HS 코드 기준 2) 수입액은 2003-05년 3개년 평균
 자료: 외교통상부(2012), 「한-미 FTA 주요내용」 p.16.

①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12.3.14. "3월 15일 한-미 FTA 발효")와 설명자료인 「한-미 FTA 주요 내용」을 토대로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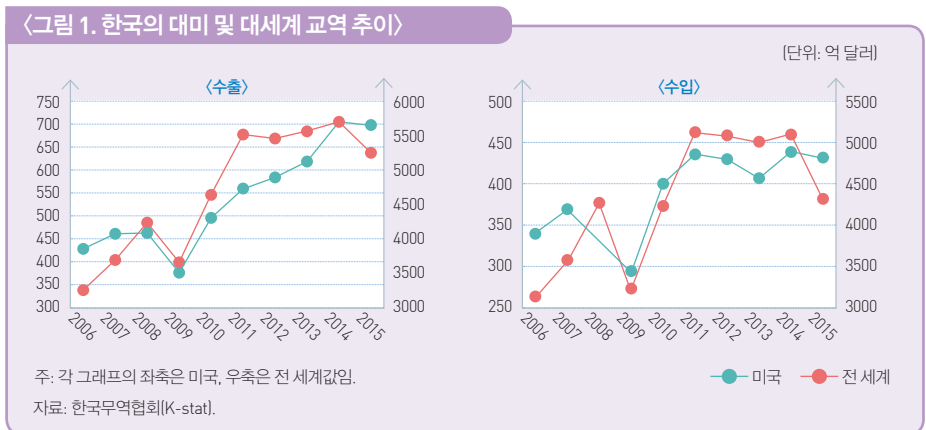
네거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의료·사회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규제 권한은 포괄적으로 유보하는 한편, 방송 및 통신서비스는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최소한 개방하였다. 한편 저작권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보호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노동 및 환경 분야에서는 관련법의 효과적 집행 의무를 규정하고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비롯하여 대중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한, 동 협정에서는 복제 의약품의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우리 국내업계가 이 제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2. 한-미 FTA 발효 전후 교역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규모가 감소했던 2009년 이후 대미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부터는 대세계 교역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FTA 발효 4년 차인 2015년 한국의 대미 교역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1,138.7억 달러로 증가세가 주춤하긴 했으나 대세계 교역이 12.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선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그림 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전 한국의 대미 수출입 증가율은 대세계 증가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이 1.3% 감소한 2012년에 대미 수출은 4.1%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 대미 수출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은 13.3%의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한편 2012~13년 기간 동안 한국의 대미 수입 감소 폭 역시 대세계 수입보다 더 컸으나 2014년에 크게 반등하여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다.



② 2015년 현재 미국은 한국의 제2위 수출국이며, 제3위 수입국임.

2012년 이후 위와 같은 한국의 대미 수출 호조를 주도한 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이었다. HS 코드 6단위 기준으로 한-미 FTA 발효 기간 동안 대미 평균 수출금액이 가장 큰 품목은 중형승용차로 약 98억 달러였고, 무선통신기기의 평균 수출액이 58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대형 및 소형승용차, 타이어와 기어박스를 비롯한 자동차 부분품, 석유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품명	평균 금액	평균 증감률
1	870323	실린더용량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승용차	9,762	1.7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5,811	-0.7
3	271019	기타 석유와 역청유	2,910	2.5
4	870899	자동차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	2,706	0.9
5	870324	실린더용량 3,000cc 초과하는 승용차	2,512	2.4
6	847330	자동차료처리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607	-0.4
7	870322	실린더용량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승용차	1,322	20.6
8	401110	승용자동차용 공기타이어	1,077	-
9	8418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	1,046	0.4
10	870840	기어박스	885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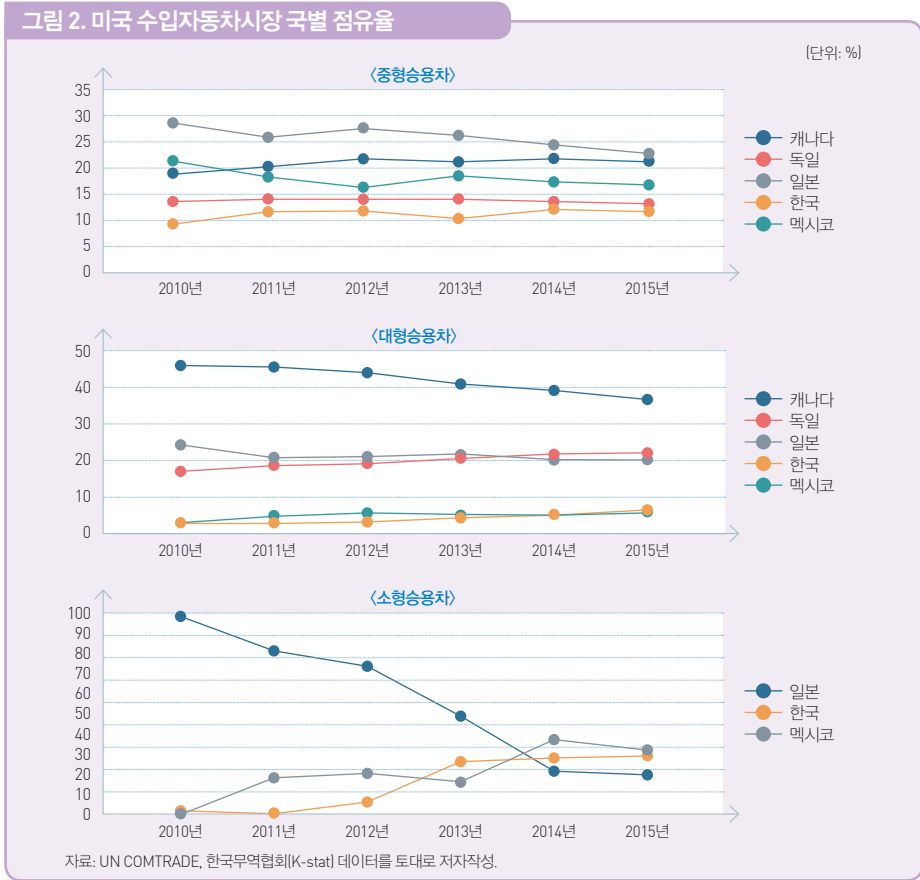
주: 순위는 4년간(2012~15) 평균 수출액 기준, 품목은 HS 코드 6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 증가는 미국 수입자동차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소형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2011년 0.1%에 불과하던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2012년 5.2%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일본을 제쳤으며 2015년 현재 29.6%로 멕시코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수입 관세(2.5%)는 2016년에 완전철폐되므로 한-미 FTA 특혜관세에 따른 효과는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미 2위 수출품목인 무선통신기기의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은 2012년 10.4%에서 2013년 12.2%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이후 정체 상태이다.^③

③ 미국의 무선통신기기시장에서는 중국의 점유율이 80%에 육박하고 있고 2013년 이후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위의 국가에 우리나라의 휴대폰 주요 생산기지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그림 2. 미국 수입자동차시장 국별 점유율



2012~15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주로 수입한 품목은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용 장비, 비행기, 사료 등이나 대체로 감소세였다. 미국 자동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가 인하(8%→4%)되면서 2012년 중형승용차(HS 870323)의 수입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4년 평균 수입액은 약 3억 달러 수준이었다. 냉동 쇠고기의 경우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0.1%로 FTA 발효 이후 급격한 수입 확대는 없었으며, 현재 호주산 제품과 치열한 경쟁 관계를 보인다.^④ 즉 한-미 FTA는 주요 수입품목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참고로 HS 코드 6단위 기준 시 냉동 쇠고기는 HS 020220(뼈째 절단한 제품)과 HS 020230(뼈 없는 제품)으로 분리되어 [표 3]의 10대 수입 품목에 포함되지 못했으나 두 품목을 합한 냉동 쇠고기의 4년 평균 수입액은 약 5억 달러가량임. 그리고 2015년 기준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 호주산과 미국산의 점유율은 각각 49.2%와 44%임.

〈표 3. 한국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품명	평균 금액	평균 증감률
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3,238	0.6
2	848620	반도체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1,504	-1.5
3	880240	자체중량이 15,000kg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1,382	-2.3
4	100590	사료용 등의 옥수수	788	-5.8
5	720449	기타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699	-4.1
6	270112	유연탄	689	-3.1
7	847989	기타 기계류	601	2.3
8	848690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	515	-0.1
9	100199	사료용 등의 메슬린(meslin)	496	-3.1
10	210690	기타 조제 식료품	465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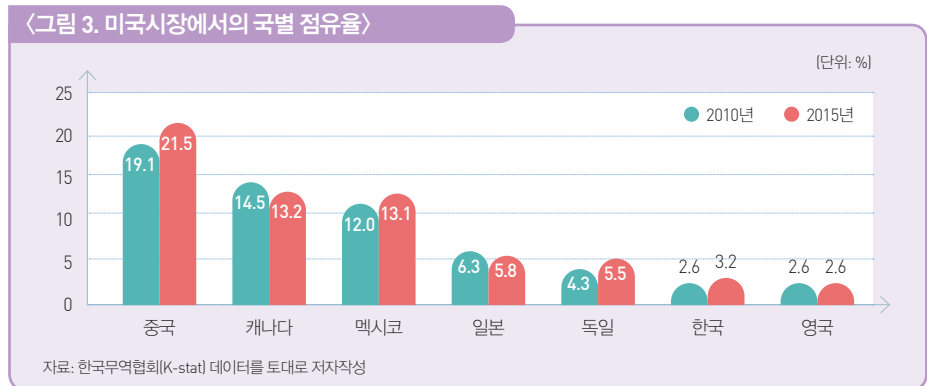
주: 순위는 4년간(2012~15) 평균 수입액 기준, 품목은 HS 코드 6단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3. 기업의 활용방안 및 시사점

미국은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었으나,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3% 내외에 머물러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증가세이긴 하지만 중국이나 NAFTA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와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며 일본, 독일, 영국 등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여 미국과의 교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림 3. 미국시장에서의 국별 점유율〉



우선,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의 대미 수출규모 확대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 양허 일정에 대하여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에 부합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⑤ 교역 확대에 필요한 운송 및 금융서비스산업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적절한 홍보활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고기술 제품에서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만큼 TPP가 발효되기 이전에 한-미 FTA를 활용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⑥

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수출품목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산업별 미국 소비자 취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물론 우리 기업과 미국 기업 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미 FTA를 계기로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우리 기업의 블루오션 개척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는 발효 1년 차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의 활용률을 기록하였고 이후에도 대체로 증가세를 보인다.^⑦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미 FTA의 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세감축에 더하여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R&D 투자 확대와 같은 질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연하면, 우리 기업은 보다 공격적인 전략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미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러한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 2016년의 경우, 자동차, 레디알 타이어, 폴리에스테르, 면직물 등에 대한 미국의 수입관세가 완전철폐

⑥ 현대경제연구원(2016)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시장에서 한일 수출경합도는 61.2로 한독 54.3, 한중 36.8보다 월등히 높음
[주요 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가간 수출경합도 및 점유율 분석, 참고].

⑦ 한-미 FTA 수출활용률 68.9%(2012) → 79.1%(2015), 수입활용률 61.0%(2012) → 67.5%(2015) [관세청 보도자료(2014.2.25. "13년도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 동향", 2016.2.1. "2015년 FTA 발효국과의 교역 동향") 참고].

한-미 FTA 발효 4주년 성과와 시사점

박지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1. 한-미 FTA 수출 평가

세계 경기 부진, 유가 하락 등 악화된 대외 여건 속에서 2015년 한국의 대미 수출은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수입통계를 기준^①으로 한국의 수출 성과를 분석한 결과 발효 4년 차인 2015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2% 증가^②한 718.3억 달러 기록하였다. 한-미 FTA로 관세 혜택이 있는 품목을 살펴보면,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5.1% 증가하여 일본(-7.8%), 중국(4.2%)보다 양호한 수출 성과를 보였으며 이는 FTA 수혜품목의 미국 전체 수입 증가율(-11.9%)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산업별로 전기·전자(12.5%), 기계(12.4%), 고무(11.3%), 농수산물(12.9%) 산업에서 두 자릿수대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주도하였다.

① FTA 수혜품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수입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對美 수출은 미국의 對韓 수입을 의미함

② 한국통계에서 2015년 한국의 對美 수출은 -0.6% 감소하였으나 미 상무성(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對韓 수입은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정 기간에 대해 수출과 수입 통관 시점 차이 등에 따른 수출국(한국)과 수입국(미국) 간 통계 불일치에 기인

〈FTA 혜택별 對美 수출 증가율(미국의 對韓 수입)〉

(단위: 억달러, %)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4년간 연평균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증가율
전체 품목	589.0	3.9	622.3	5.7	696.1	11.9	718.3	3.2	100.0	6.1
- 수혜	208.5	14.6	212.4	1.9	224.1	5.5	235.5	5.1	32.8	6.7
- 비수혜	380.4	-1.1	409.8	7.7	471.9	15.2	482.8	2.3	67.2	5.8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한-미 FTA 이후 주요국별 對美 수출 증가율(미국의 수입 비교)〉

(단위: %)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한국	14.6	-1.1	3.9	1.9	7.7	5.7	5.5	15.2	11.9	5.1	2.3	3.2
일본	15.2	12.7	13.5	-7.6	-4.2	-5.4	-1.6	-4.2	-3.3	-7.8	0.9	-2.1
중국	6.6	6.5	6.6	4.5	2.7	3.5	5.3	6.4	6.0	4.2	2.6	3.3
대만	8.9	-13.1	-6.2	-0.5	-3.5	-2.4	5.8	7.7	7.0	7.3	-3.7	0.3
전 세계	1.4	4.7	3.0	-2.5	1.6	-0.4	0.5	6.1	3.5	-11.9	2.1	-4.4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려나간 결과 한국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증가세를 지속해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3.20%로 2000년(3.31%)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우리의 대표 경쟁국인 일본과의 시장 점유율 격차 역시 최저 수준(2012년 3.85%p → 2013년 3.37%p → 2014년 2.74%p → 2015년 2.65%p)으로 좁혀졌다.

〈한국과 일본의 미국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p)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한국(a)	3.31	2.62	2.29	2.52	2.55	2.57	2.59	2.75	2.97	3.20
일본(b)	12.05	8.26	6.63	6.16	6.30	5.84	6.43	6.11	5.71	5.85
한일격차(b-a)	8.73	5.64	4.34	3.64	3.75	3.27	3.85	3.37	2.74	2.65

자료: 미 상무성(US DOC)

한-미 FTA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FTA 수출 활용률^③(미국 ITC 자료 활용 계산을 분석한 결과, FTA 수출 활용률은 발효 1년 차(2012년)에 52.6%에 그쳤으나 발효 2년 차에 70.7%로 18.1%p 증가하였으며, 이후 발효 4년 차까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2015년의 FTA 수출 활용률은 71.1%로, 전체 수혜 가능 품목의 수출총액 235.5억 달러 중 167.5억 달러가 FTA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별로 수송기계, 화학제품, 가죽/고무/신발 등의 분야에서 평균 활용률을 상회하여 FTA 활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동차 부품(FTA 활용률 84.9%), 고무 타이어(99.5%) 등의 품목에서 활용률이 매우 높아 각각 2.5%, 4%의 관세 철폐가 대미 수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FTA 활용액 및 활용률 (미국의 對韓 수입)〉

(단위 : 억 달러, %)

	2012년(1년차)		2013년(2년차)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활용액	활용률
전체	109.6	52.6	150.2	70.7	160.0	71.4	167.5	71.1
수송기계	22.1	57.0	35.1	81.7	38.2	83.6	39.5	84.9
기계	20.2	50.8	25.6	68.2	25.8	69.5	28.7	68.6
화학제품	11.2	58.8	18.2	80.9	20.9	83.9	22.2	84.2
전기전자	11.9	47.9	16.3	63.7	18.1	67.3	20.3	67.0
가죽/고무/신발	12.9	70.2	15.0	95.4	14.8	95.6	16.5	95.8
금속 및 광물	8.7	55.8	12.1	78.3	14.5	74.3	14.4	73.8
섬유 및 의류	7.2	55.7	9.3	71.1	9.6	72.8	9.7	74.9
석유제품	10.6	35.9	10.7	37.9	9.8	33.9	7.6	27.3
기타 제조업품	2.8	44.7	4.7	66.2	5.0	63.3	5.0	65.1
농수산물	2.1	57.4	3.2	74.8	3.3	72.6	3.6	69.2
목재 및 종이	0.0	52.9	0.0	63.8	0.0	66.0	0.0	69.1

자료: USITC(<http://dataweb.usitc.gov/>)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더욱이 올해부터는 우리의 미국 전체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4년간 유지되었던 승용차의 2.5%의 관세는 2016년 1월 1일부터 0%로 철폐되었다. 2016년 1월 미국 수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소형차 수

③ FTA 수출 활용률은 FTA 수혜가능품목에 대한 미국의 對韓 수입총액에서 실제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은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함

출은 전년 대비 41.1% 증가하였으며, 수입 시장 점유율도 33.7%로 5%p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가 철폐된 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FTA 활용률이 95.5%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 증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형 승용차 역시 1월 중 전년 대비 32.8% 증가한 12.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향후 2.5% 관세 철폐로 인한 승용차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이유이다.

그 외에도 한-미 FTA 관세 혜택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부품, 산업용 보일러, 밸브 등 중소기업 수출 품목에서도 FTA를 통한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2. 한-미 FTA 수입 평가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주요 품목인 곡류(-12.2%), 사료(-32.4%), 의약품(-2.5%) 등의 수입 감소 영향으로 2014년에 비해 2.8% 줄어든 440.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미 FTA 이후 주요 품목별 對美 수입현황〉

(단위: 억달러, %)

품목명	2011년(발효 전)	2015년(4년차)		4년간 연평균
	금액	금액	증가율	증가율
집적회로 반도체	38.4	37.5	-1.6	-0.6
반도체 제조용장비	22.8	19.7	0.2	-3.6
항공기	15.0	19.6	162	6.9
항공기 부품	13.6	13.1	7.0	-1.0
가축육류	11.6	12.6	7.7	2.0
승용차	3.5	12.1	32.6	36.6
사료	18.3	10.2	-32.4	-13.6
의약품	6.1	10.1	-2.5	13.4
합성수지	8.1	9.3	-4.5	3.4
LPG	0.01	7.4	121.5	433.3
곡류	10.3	6.1	-12.2	-12.3
계측기	4.4	5.9	5.4	7.5
기타 화학공업제품	5.3	5.7	-12.6	1.7
원동기	7.2	5.5	-20.2	-6.5
펌프	5.0	5.5	-12.2	2.6

품목명	2011년(발효 전)	2015년(4년차)		4년간연평균
	금액	금액	증가율	증가율
꿀 및 로알제리	3.0	5.3	9.0	14.9
과실류	3.0	4.3	3.2	9.8
광학기기 부품	2.9	4.3	22.6	9.9
화장품	3.1	4.1	-3.4	7.5
소가죽	4.4	4.0	-15.0	-2.0
선박용 부품	1.4	3.9	28.4	28.9
자동차 부품	4.3	3.9	1.0	-2.8
건과류	1.7	3.7	7.6	21.5
의료용 전자기기	4.0	3.7	6.7	-1.7
분석시험기	3.8	3.5	3.1	-1.6
의료용 기기	3.5	3.4	9.2	-0.3
밸브	2.6	3.2	-13.9	5.2
배전 및 제어기	2.4	3.1	-10.8	7.2
발전기	1.8	3.0	10.0	14.2
전체	445.7	440.2	-2.8	-0.3

주: MTI 4단위 기준 상위 주요 수입품(무관세 품목 또는 원자재를 제외한 주요 수입품),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특히 주요 수입 품목인 옥수수는 EU, 러시아 등 다른 생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 단가의 영향으로 수입선 전환이 이뤄지면서 수입량이 54.8% 급감하였다. 여기에 대두(-12.9%) 및 사료(-24.5%)의 수입물량 감소가 더해져 전체 수입 감소를 주도했다.

반면 전반적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LPG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과실류, 견과류 등 일부 농산물은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는 FTA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 자동차 선호 확대로 지난해에만 32.6% 증가하여 발효 직후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산 승용차의 점유율도 확대되어 발효 전과 비교했을 때 금액 기준으로 2.6%p 상승한 12.2%를 기록하며 일본의 점유율을 역전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추세는 관세가 철폐되는 올해부터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미 FTA는 미국으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에 대해 한국의 관세율 8%를 발효 즉시 4%로 인하하고 이를 유지한 후 발효 5년 차인 올해부터 철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승용차의 對美 수입 동향〉

(단위 : 억달러, 천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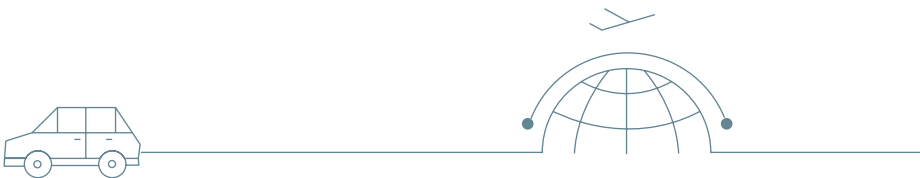
수입국	금액						대수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4년간 변화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4년간 변화	
전 세계	36.3	45.7	55.7	80.9	99.4	28.6	115	151	188	261	327	29.8	
	(25.0)	(25.9)	(22.0)	(45.1)	(22.9)		(13.8)	(30.9)	(24.8)	(38.7)	(25.4)		
미국	3.5	6.9	7.8	9.1	12.1	36.6	13	28	31	34	48	39.4	
	(21.5)	(97.3)	(13.9)	(16.9)	(32.6)		(0.9)	(116.6)	(12.4)	(7.7)	(43.9)		
점 유 율	미국	9.6	15.0	14.0	11.3	12.2	+2.6%p	11.1	18.4	16.6	12.9	14.8	+3.7%p
	EU	74.0	71.2	68.8	73.9	79.3	+5.4%p	65.4	63.3	58.8	63.9	68.7	+3.3%p
	일본	11.7	10.4	13.8	11.8	6.6	-5.1%p	15.3	12.6	19.2	18.3	12.6	-2.7%p
	기타	4.8	3.5	3.4	3.0	1.9	-2.9%p	8.1	5.6	5.5	4.9	3.9	-4.3%p

주: 1. MTI 7411 기준단, 대수 통계는 HS8703.10을 제외한 수치임

주: 2. '4년간 변화'에 대해 금액은 2011년-2015년 연평균 증가율(%), 점유율은 2011년-2015년 변화(%p)를 산출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그 외에도 과실류, 견과류, 주류 수입은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과일인 체리는 지난해 작황 부진의 영향으로 수입량이 소폭 감소했지만, 오렌지, 레몬이 수입을 주도하면서 지난 4년간 과실류 수입액이 연평균 9.8%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국내 생산이 미미한 아보카도 수입도 눈에 띈다. 아보카도는 주로 미국, 멕시코,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으로 한-미 FTA 발효 이후 2013년부터 미국산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2015년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2% 증가한 약 420만 달러가 수입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견과류는 아몬드, 호두를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와인 수입액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미 FTA를 계기로 증가하고 있는 일부 수입 품목들은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 확보, 수입 품목 간 경쟁 심화 등을 통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FTA 이후 주요 농축수산물의 대미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만톤, %)

품목명	금액						중량					
	2011년 (발효 전)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4년간 연평균	2011년 (발효 전)	2014년(3년차)		2015년(4년차)		4년간 연평균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중량	중량	증가율	중량	증가율	증가율
농축수산물	7,329.7	7,611.8	33.7	6,828.6	-10.3	-1.8	1,133.9	1,086.6	101.4	880.6	-19.0	-6.1
농산물	4,988.5	4,911.7	40.5	4,226.9	-13.9	-4.1	1,022.3	995.2	121.7	807.8	-18.8	-5.7
곡류	1,034.3	697.2	11.7	612.1	-12.2	-12.3	262.2	216.4	50.6	175.8	-18.7	-9.5
밀	511.8	385.7	-11.2	357.9	-7.2	-8.6	128.5	111.0	-2.7	113.6	2.3	-3.1
옥수수	396.6	284.3	589.7	112.9	-60.3	-27.0	118.1	102.1	1,066.0	46.2	-54.8	-20.9
대두	326.0	379.0	2.0	287.1	-24.3	-3.1	55.6	61.0	10.1	53.2	-12.9	-1.1
과실류	296.2	418.1	4.2	431.2	3.2	9.8	18.1	16.0	-24.2	17.4	8.2	-1.0
체리	45.5	123.1	40.6	119.9	-2.6	27.4	0.5	1.3	46.4	1.2	-7.7	26.4
오렌지	161.9	156.3	-16.1	163.0	4.3	0.2	13.6	9.1	-37.4	10.3	12.8	-6.7
레몬	8.9	25.5	7.0	33.2	30.3	39.0	0.6	1.1	-15.2	1.3	21.1	19.5
견과류	171.5	346.3	22.8	372.6	7.6	21.4	2.5	3.6	6.7	3.5	-2.8	8.6
호두	81.3	122.7	13.9	129.2	5.3	12.3	0.9	1.1	1.3	1.2	8.6	5.5
아몬드	84.7	208.5	29.5	230.6	10.6	28.4	1.5	2.4	10.2	2.2	-7.1	9.8
사료	1,832.4	1,510.5	257.9	1,020.7	-32.4	-13.6	570.3	544.5	385.6	410.9	-24.5	-7.9
주류	29.3	88.3	107.7	118.7	34.4	41.8	1.7	7.1	253.8	11.8	66.1	63.1
맥주	5.6	7.3	8.7	9.1	24.4	13.0	0.9	0.9	-3.8	1.1	18.7	4.7
포도주	12.3	21.2	7.7	23.1	8.9	16.9	0.3	0.3	-11.9	0.3	-3.8	5.1

주: MTI 전 단위 기준 주요 수입품,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한편 발효 이후 수입 확대가 우려되었던 육류는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량이 각각 3.4%, 24.1%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발효 직전인 2011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효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발효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쇠고기는 수입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우 도축두수가 감소로 인한 한우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하였다. 반면 돼지고기는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이 컸다. 이에 수입량은 24.1%가 증가했지만, 수입액은 12.9%만 증가하였다.

단, 미국산 수입량이 늘었음에도 점유율은 제자리걸음인 모습이다. 국내 수입시장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호주, EU, 칠레,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가 모두 발효되면서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실제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면 쇠고기는 호주, 돼지고기는 EU의 점유율이 확대됐지만, 미국의 점유율은 발효 전에 비해 감소하였다.

닭고기는 지난해 국내 공급이 증가하면서 수입수요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미국산 수입이 일시 중단되어 수입량이 83.4% 감소한 1.1만 톤에 그쳤다.

〈한국의 육류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만 톤, %)

품목	수입국	금액					중량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2011년 (발효 전)	2012년 (1년차)	2013년 (2년차)	2014년 (3년차)	2015년 (4년차)	
쇠고기	전 세계	1,678.0	1,410.1	1,542.7	1,847.5	2,007.8	34.4	29.9	30.1	31.5	33.1	
		(41.5)	[-16.0]	(9.4)	(19.8)	(8.7)	(18.0)	[-13.2]	(0.6)	(4.8)	(5.2)	
	미국	653.0	522.5	578.0	764.4	802.0	12.8	10.6	10.1	11.2	11.5	
		(54.9)	[-20.0]	(10.6)	(32.3)	(4.9)	(38.6)	[-17.6]	[-4.1]	(10.1)	(3.4)	
	점유율	호주	50.6	53.4	54.2	51.1	54.2	49.4	52.1	55.1	54.8	57.1
		미국	38.9	37.0	37.5	41.4	39.9	37.3	35.4	33.7	35.4	34.8
뉴질랜드		9.4	8.4	7.4	6.5	5.0	11.5	11.0	10.1	8.5	7.0	
캐나다	0.0	0.5	0.7	0.8	0.4	0.0	0.5	0.8	0.8	0.4		
돼지고기	전 세계	1,583.4	1,206.6	910.9	1,255.7	1,423.5	52.4	40.3	32.2	39.4	49.4	
		(121.0)	[-23.8]	[-24.5]	(37.9)	(13.4)	(71.5)	[-23.2]	[-20.0]	(22.3)	(25.4)	
	미국	509.9	391.3	313.4	403.3	455.4	16.5	13.1	11.2	12.1	15.1	
		(177.1)	[-23.3]	[-19.9]	(28.7)	(12.9)	(101.2)	[-20.3]	[-14.7]	(8.4)	(24.1)	
	점유율	미국	32.2	32.4	34.4	32.1	32.0	31.4	32.6	34.8	30.8	30.5
		EU	43.8	43.0	43.3	50.9	50.3	41.6	40.2	39.9	50.5	51.3
칠레		7.5	10.4	11.2	7.5	8.7	8.0	9.4	9.5	6.4	6.4	
캐나다		14.1	11.7	8.8	6.6	6.6	16.8	15.5	13.5	9.7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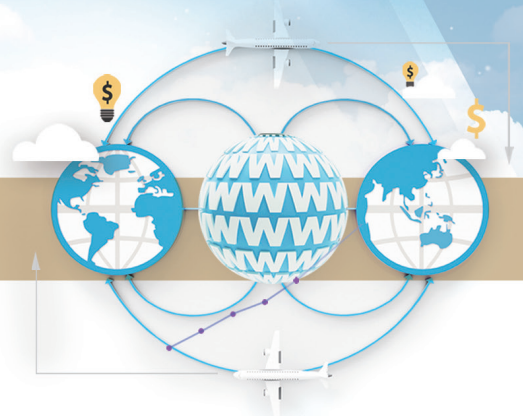
주: MTI 022110, 022120 기준,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3. 결론 및 시사점

한-미 FTA 4주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수출 부진 속에서도 한-미 FTA가 우리 수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는 중국, 일본, 대만 등 미국 내 우리 경쟁국보다 먼저 FTA를 발효하여 그 활용성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이점을 극대화하여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TPP 발효 이전에 미국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미 FTA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업계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시장 개방 등 한-미 FTA 이행 이슈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인한 수출부진 속에 발하는 한-미 FTA

고태진 한림 관세법인 관세사



1. 우리 수출의 버팀목 한-미 FTA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수출은 12.2% 감소한 364억 달러, 수입은 14.6% 감소한 290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49개월 연속 흑자의 기록이지만 실상 내용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 나타난 불황형 흑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무역규모는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출만 놓고 보았을 때도 지난해 1월부터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월간 수출 통계를 집계한 1970년 이후 최장기 감소세다. 월간 기준으로 따져 보았을 때 수출이 최장 연속 감소세를 보인 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의 13개월이었다.

수출물량으로 보면 1월 -5.3%에서 2월 11.2%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기는 했다. 하지만 수출단가 측면으로 보면 증감률이 1월 -14.2%에서 2월 -21%로 낮아졌다. 수출물량은 늘었지만, 환율,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단가가 떨어져 전체 수출액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심각한 수출 부진 속에서 지역별로는 베트남, 미국으로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음 이 고무적이며, EU로의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베트남 수출증감률은 1월 -8.2%에서 2월 17.9%로 전환됐고 미국도 -9.3%에서 4.2%로 개선됐다. 이들 국가는 모두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특히 미국의 경우 2014년 한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액은 696억 달러로 전년보다 11.9% 늘어났다. 미국에 대한 수출은 2010년 489억 달러, 2011년 567억 달러, 2012년 589억 달러, 2013년 622억 달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02.03일 협상을 개시한 한-미 FTA 협상은 이후 8차례의 공식협상과 이에 수반한 많은 대화와 협의 속에 드디어 2007.4 협상이 타결되었고 이어 6.30에 공식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많은 반발 속에 추가협상을 하게 되었고 2010.12.3 타결하게 되었다. 이 또한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로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어 발효가 늦춰지다 결국 2012.3.15에 발효되었다. 한-미 FTA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한마디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당시 미국에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평가되었던 것이 막상 뚜껑을 열어 본 결과 발효 5년 차며 4주년인 지금까지는 우리의 승세라고 평가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한-미 FTA는 이를 활용하는 민간 기업에 모든 책임을 철저히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원산지 조사(검증) 시에도 아직은 우리 정부에 어떠한 언급도 없이 미국 조사관들이 직접 수출기업에 들이닥쳐 원산지 증명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태세가 궁극의 한-미 FTA 성공적 활용에 매우 중차대한 일이 될 것이다.

2. 한-미 FTA 이행 및 성과

한-미 FTA 발효 4주년에 즈음해 한-미 FTA의 이행 및 성과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반성을 통해 앞으로의 활용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도 유의미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총 물량과 금액별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입국인 미국에 전달하는 비율을 각각 따져봐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한-미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FTA 수혜품목, FTA 발효 이전부터 관세가 없거나 일정 기간 관세가 유예된 품

목을 비수해품목으로 분류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관계로 우리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FTA 활용률은 정확히 산출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對미 수출 증감률을 통해 아래와 같이 대략 예측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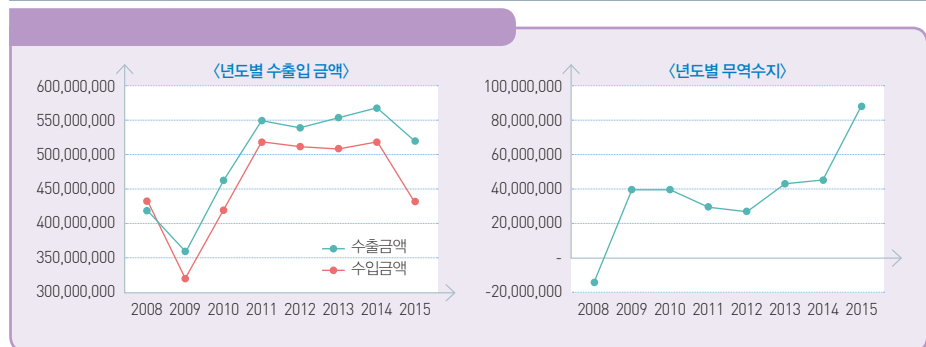
①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현황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을 기준으로 4주년인 현시점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의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무역의 규모는 성장하였으나, 2011년부터 무역 1조 원을 달성하여 이후 꾸준히 이어왔던 무역 실적이 2015년 9천억 달러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무역수지는 2015년 900억 달러로서 이전의 수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5년 전체 수출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8%)한 것도 감소한 것이지만 그에 비해 수입금액은 그보다 훨씬 더 급감(-17%)하여 나온 결과로서 우리의 경제 규모가 그만큼 작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단위:천불(USD1,000)

기간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입건수	수입금액	무역수지
2008	5,234,178	422,007,328	5,850,875	435,274,737	-13,267,409
2009	5,399,939	363,533,561	6,699,545	323,084,521	40,449,040
2010	6,237,860	466,383,762	9,143,039	425,212,160	41,171,601
2011	6,305,365	555,213,656	10,611,272	524,413,090	30,800,566
2012	6,533,596	547,869,792	11,842,076	519,584,473	28,285,319
2013	6,887,279	559,632,434	14,344,341	515,585,515	44,046,919
2014	7,083,325	572,664,607	16,302,570	525,514,506	47,150,101
2015	7,438,562	526,756,503	14,459,780	436,498,973	90,257,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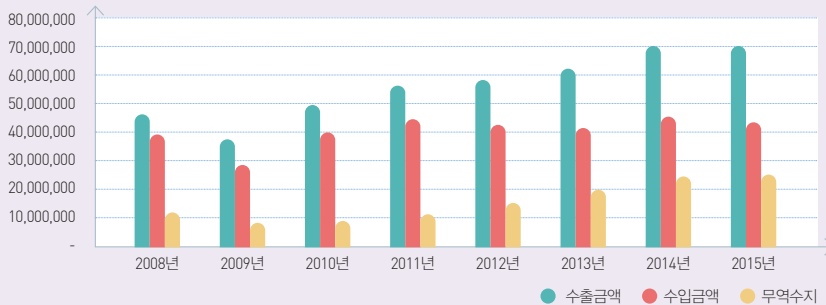
② 對미 수출입 현황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규모가 2011년 1조 원대를 돌파한 이후 2014년까지 유지해오던 것이 2015년 -12.3%로 크게 감소한 것과 대조적으로 미국과의 수출교역과 전체 교역량은 698억 달러와 1,130억 달러로서 전년대비 각각 -0.6%와 -1.5% 감소한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선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6년 올해 들어서는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단위:천불(USD1,000)

기간	수출금액	증감률	수입금액	증감률	무역수지	증감률
2008	46,376,610	-	38,364,783	-	8,011,827	-
2009	37,649,854	-18.8%	29,039,451	-24.3%	8,610,403	7.5%
2010	49,816,058	32.3%	40,402,691	39.1%	9,413,367	9.3%
2011	56,207,703	12.8%	44,569,029	10.3%	11,638,673	23.6%
2012	58,524,559	4.1%	43,340,962	-2.8%	15,183,597	30.5%
2013	62,052,488	6.0%	41,511,916	-4.2%	20,540,572	35.3%
2014	70,284,872	13.3%	45,283,254	9.1%	25,001,618	21.7%
2015	69,832,103	-0.6%	44,024,430	-2.8%	25,807,672	3.2%

<한-미 교역 현황>



③ 對미 수출 주요 품목

한-미 FTA의 대표 수혜 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분품의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목 중 대부분 상위에 있으며, 2014년 대비 그 증가율도 대부분 두 자릿수를 보인다. 특히 수출 1위와 3위, 그리고 6위 품목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2014년 대비 각각 16%와 18%, 45% 증가한 117억 달러와 35억 달러 그리고 21억 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관련하여 자동차 부분품도 4위에 랭크되어 7% 증가한 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회복, 그리고 유가의 하락 등과 더불어 대미 수출 시 일반적으로 2.5% 이상의 관세가 적용되던 기타 자동차와 부품이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의 상당수 자동차 관련 제조 기업들이 수출 증대의 효과를 본 것으로 판단된다.

대미 수출 부진품목으로는 대부분 농수산물로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HS 6단위 기준 대미 수출 상위 10개 품목. 무역협회>

[단위 : 천불]

순번	코드	품목명	2014년		2015년		수출 증감률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하고 3,000cc이하인 것	10,155,167	254,551	11,731,689	473,575	16%
2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6,666,789	8,031	6,257,226	19,197	-6%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2,981,130	185,150	3,530,828	222,760	18%
4	870899	기타	2,837,442	101,818	3,025,339	68,252	7%
5	271019	기타	2,986,509	61,479	2,763,547	52,635	-7%
6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고 1,500cc 이하인 것	1,475,353	500	2,135,236	605	45%
7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1,876,715	68,509	2,011,219	80,173	7%
8	401110	승용자동차용 [스테이션 왜건(stationwagon)과 경주자동차용을 포함한다]	964,706	20,339	1,089,921	41,183	13%
9	841810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028,556	2,116	1,063,430	749	3%
10	870840	기어박스	835,350	38,302	836,866	38,874	0%

④ 미국의 무역 중 한국의 위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대미 교역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미국에 있어 한국의 위치를 아는 것도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여 우리의 미래 전략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교역은 FTA가 발효 전까지는 7번째의 교역국에 해당하였으나 FTA 발효 후 한 단계 상승한 6번째 교역국으로 상승하였으며, 2015년 기준 미국의 전체 교역규모 3,746,261백만 달러 중 115,326백만 달러로서 3.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년월	총무역금액(백만불)	한국무역금액(백만불)	비중(%)	순위
2015년	3,746,261	115,326	3.1	6
2014년	3,968,630	114,150	2.9	6
2013년	3,845,707	103,783	2.7	6
2012년	3,821,028	101,179	2.6	7
2011년	3,688,345	100,061	2.7	7
2010년	3,192,351	87,696	2.7	7
2009년	2,614,808	67,875	2.6	7
2008년	3,400,277	82,883	2.4	7

3. 기업의 시사점

올해 3월 15일이면 기술한 바와 같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한-미 FTA가 발효된 지만 4년이 된다. 당초 한-미 FTA는 대미 무역수지 개선(매년 1.4억 불 흑자), GDP 증가(단기 0.002%, 장기 5.66%), 소비자 후생 확대, 고용창출과 외자 유치를 통한 투자 확대로 우리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농축산업 및 금융, 서비스 등과 같은 부문에서는 우리 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컸다.

그러나 미국 경제 회복과 한-미 FTA의 시너지로 지난해 대미 수출은 발효 전인 2011년 대비 24%나 증가했다.

상품 분야의 교역성과를 살펴보면, 발효 1년 차(2012년 4월~2013년 3월)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수출과 수입이 각각 2.5%, 9.5%씩 감소해 158억 달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발효 2년 차와 2014년은 대미 수출입이 모두 증가해, 각각 199억 달러와 250억 달러라고 하는 큰 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2015년은 전체 우리나라 수출 교역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258억 달러라는 2014년보다 3.2% 증가한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즉, 한-미 FTA의 발효 전보다 대미 무역수지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시작된 유럽발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시장은 중국시장과 함께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對 일본 및 對 EU 교역에서 시현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역할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따졌을 때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철강관, 철강선, 반도체,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고무제품, 컴퓨터, 원동기 및 펌프 등이며, FTA 비혜택품목인 무선통신기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FTA 특혜품목들의 수출이 FTA 발효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편,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항공기,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등이 대미수입을 주도했으나 대부분 수입품목의 수입이 FTA 발효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이는 한-미 FTA가 제조업 제품의 교역에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기회 요인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취약분야로 관심이 집중됐던 무역수지 적자 품목인 농축산물의 경우, 그 적자 폭이 이전과 많이 다르지 않아 FTA 발효 후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우려했던 농축산물의 수입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농축산물이 장기관세 철폐(돼지고기 2016년 1월 1일, 쇠고기 등 15년 철폐) 대상이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6년 올해부터 철폐되는 품목이 있으므로 이러한 농축산물의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발효 후 4년간의 성과를 상품 분야에 한정해서 평가해 볼 때, 한-미 FTA는 당초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보다 한국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축산물 분야는 관세철폐 일정 등에 의해 당초 우려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를 올리는 특용작물 개발 등 우리나라에 맞는 농업 부분의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특화사업 창출 등 대응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로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향후 얼마든지 이 분위기는 반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로 인한 이러한 긍정적 성과는 우리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발 빠르게 FTA를 발효한 선점효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참여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과 EU간의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등 도처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메가 FTA들이 실현되면 미국이나 EU 등에서 FTA를 통해 누려온 한국의 특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TPP 등 메가 FTA가 체결되면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게 되며 그런 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전략적이고 치밀한 준비와 이행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은 이제 우리가 낫 놓고 있다가는 금세 기술추격을 당할 위치에 있다. 또한 달러화, 엔화 및 유로화의 평가절하로 인해 주요 경쟁국과의 환율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제품보다 오히려 값이 싸고 품질 좋은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제품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우리와 체결되어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할 수 있는 한-미 FTA를 지금까지도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업체는 정부사업 등을 통해 전개되는 FTA활용 컨설팅 사업에서라도 우선 도움을 받아 자사에 맞는 도출된 CUSTOMIZED SOLUTION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이미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활용에 따른 마케팅에만 급급하고 평소 원산지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엄격한 미국의 원산지조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그동안 얻은 수익을 모두 잃을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유무형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4. 기업의 FTA 활용 방안 및 유의점

한-미 FTA 발효 5년 차인 올해는 하단의 표와 같이 2.5%의 관세율이 부과되던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없어진다. 또한, 4%, 6%, 6.5% 및 4.9%의 비교적 고세율이 적용되던 타이어, 가죽의류, 폴리에테르와 스피커 등의 관세도 없어지게 되는 등 206가지의 품목이 추가로 관세 혜택을 받게 되므로 관련 수출기업은 이점을 심분 활용해야 한다.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 : 관세율

단계	우리 측	미국 측
즉시	자동차 부품(3-8), 크실렌(5), 통신용 광케이블(8), 항공기 엔진(3), 에어백(8), 전자계측기(8), 백미러(8), 디지털 프로젝트 TV(8) 등	자동차 부품(1.3-10.2), LCD 모니터(5), 캠코더(2.1), 귀금속 장식품(5.5), 폴리스티렌(6.5), 컬러 TV(5), 기타 신발(8.5), 전구(2.6), 전기 앰프(4.9) 등
3년	요소(6.5), 실리콘 오일(6.5), 폴리우레탄(6.5), 치약(8), 향수(8), 골프채(8) 등	DTV(5), 컬러 TV(5), 골프용품(4.9), 상들리에(3.9) 등
5년	승용차(8), 고주파 증폭기(8), 알루미늄 판(8), 안전 면도기(8), 환자 감시장치(8), 면도기(8), 조제세제(6.5), 헤어 린스(8), 바다 가재(20) 등	승용차(2.5), 타이어(4), 가죽의류(6), 폴리에테르(6.5), 스피커(4.9) 등

한-미 FTA는 우리가 맺은 FTA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협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FTA의 활용, 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편할 수 있다. 이러저러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발표하는 한결같은 통계 결과에는 한-미 FTA의 활용률이 타 협정보다 매우 높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연구자들의 한계일 수 있지만 숨겨져 있는 진실까지는 연구 분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원산지의 관리는 등한시한 채 원산지증명서만 포괄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뒤 수입자에게 전달하여 이 부분에 대해선 잊고 지내는 부분도 상당하리라는 것이다.

이에 미국과 교역하는 수출입자들이 FTA를 활용하면서 주의할만한 점을 이하에서 언급해 보겠다.

❶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피하자

한-미 FTA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Article 6.15: Claim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조항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로서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b) the importer's knowledge that the good is an originating good, including reasonable reliance on information in the importer's possession that the good is an originating good.)'라는 내용이 있다. 이에 따라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 놓았다. 여기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라는 것은 당연히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하는 물품임을 증명 가능한 상태'를 인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가능할지도 모르나 실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실례로 본지사간의 거래일지라도 법인격이 다른 이상 회사의 기밀이라 할 수 있는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각종의 주요자료를 오픈하지 않거나 관련 자료가 아예 없어 결국 원산지 증명에 실패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

따라서 어차피 FTA를 활용할 요량이라면 수출자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한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❷ 집적법을 포함한 조합기준이 있을 수 있음에 주의하자

한-미 FTA에서 원산지 기준 중 조합기준, 그중에서도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할 때 집적법을 채택하고 있는 품목이 있다. 예를 들어 HS 6402.99로 분류되는 기타의 신발의 경우 그 원산지 기준은 미국 통합관세율표(HTSUS)에서 제6401.92.90호 · 제6401.99.30호 · 제6401.99.60

호 · 제6401.99.90호 · 제6401.99.10호 · 제6402.91.50호 · 제6402.91.80호 · 제6402.91.90호 · 제6402.91.10호 · 제6402.91.20호 · 제6402.91.26호 · 제6402.99.33호 · 제6402.99.80호 · 제6402.99.90호 · 제6402.99.08호 · 제6402.99.16호 · 제6402.99.19호 · 제6404.11.90호 · 제6404.19.20호에 해당한다면 “제6401호부터 제6405호까지 외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64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정해 있다. 그런데 본 조합기준 중 직접법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동남아 국가에 수출하고 반응이 좋아 미국으로 판로를 개척하고자 했던 모 업체의 경우 판매가에서 차지하는 원재료 가치의 비율이 매우 낮아 결국에는 역외산 판정을 받은 바가 있다. 다시 말해 실제로 한국에서 모든 공정과 재료를 사용하여 당연히 역내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본 경우와 같이 국내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집적법의 원천적 한계로 역내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역울한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다시 협상하는 등의 방법을 거쳐 원산지기준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③ 원산지증명서를 정확히 이해하자

한-미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자유롭게 발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식 자체도 따로 정해 놓고 있지 않다. 다만, 협정문 제6.15조 2항에서 보여주는 다음의 정보만 담겨 있으면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발휘하여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재(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재(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재(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그런데 자율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업체들을 위하여 정부는 권고서식(제6호의9서식)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다. 문제는 권고서식에는 협정에서 요구하지 않는 내용도 들어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결정기준(Preference Criterion) 기입에 신경 쓰자

권고서식에는 협정문에서 요구하지 않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식 하단에 그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거기에는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하는 WO(wholly obtained),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해당하는 PSR(product specific rules), 마지막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사용해 제조했음을 나타내는 PE(produced entirely)가 있다.^①

따라서 다른 협정에서 쓰이는 RVC, CTH 등을 기입할 필요 없이 위의 세가지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기입하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PE는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원재료 구매 시 원산지확인서 등을 공급자로부터 수취해서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는 원재료들만으로 제품을 생산했을 때 사용하는 기준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모든 원재료를 한국에서 구매해서 생산하면 PE를 충족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원재료가 많지 않으면 PE 기준으로 원산지가 충족 판정되는 경우가 있겠으나, 원재료가 많고 BOM 구성이 복잡한 경우에는 PE를 충족하기는 힘들기도 하려니와 혹 원산지확인서 등을 모두 구비하였다라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업체의 원산지관리 능력도 의심되므로 가능하면 "PSR"로 기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가 아니다

제3자 무역 시 한-미 당사국이 아닌 자가 무역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협정 당사국에 소재한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협정 당사국 이외의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종종 결재권이 제3자 무역에 있어 본국인 협정 당사자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본사 담당자의 서명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요건 불비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서명을 할 수 없는 위와 같은 경우라면, 당사국의 원산지증명에 책임 있는 자 즉, 미국 또는 한국소재 작성자만 기재하고 서명은 하지 않아도 됨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① 1) Originating goods [wholly obtained or produc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 WO
 2) Originating goods [undergoes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or regional value content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 PSR
 3) Originating goods [produced exclusively from originating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 PE

④ 협력사 관리를 잘하자(CBP Form 446에 대한 대응)

우리나라의 FTA 역사가 쓰이면서 협력사들의 원산지확인서 유통 진정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됐고 그에 따라 부족하기는 하지만 세관장사전확인제도 등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어느 정도 피로함을 느끼기까지도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왜냐하면, FTA의 실제 관건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업체이며 그런데도 대부분의 협력사가 이의 중요성은 알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원산지 관리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원산지검증에서 자칫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려 회사 존립에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으므로 협력사의 원산지 관리에 상위 업체와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특히 원산지 검증 시 미국 세관 당국이 서면 질의하는 CBP 446은 수출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한 협력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이의 대비는 필수이다.

⑤ 협정세율의 실익이 없더라도 원산지증명서는 의미가 있다

미국의 경우 수입 시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를 송장 금액의 0.21%를 부과하며 최저 25달러에서 최고 485달러까지 부과한다. 그런데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게 되면 이를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유용하다.

그렇다고 원산지 관리도 안 되는(세율의 실익이 원래 없는 품목을 다루는 기업의 경우에는 FTA에 대한 준비가 필요 없었을 것임)로 기업이 마구잡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가는 이후 배보다 배꼽이 큰일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종류	징수근거 및 대상	징수 내역
물품취급수수료 (Merchandise Processing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예산총괄조정법(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증가세) • (1) 미국속령의 제품, (2) 최빈국가의 제품, (3) 카리브연안특혜대상국가의 제품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불 이상 물품 - 수입가격의 0.21%(최대 건당 \$4.85) • 2,000불 이하의 물품 - 자동신고 : \$2 - 수동신고(개인) : \$6 - 수동신고(세관) : \$9

마지막으로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고 그에 가장 적합한 전략은 수출입 기업 당사자가 제일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기업에 맞는 FTA 환경으로 기업 내부 시스템을 OPTIMIZING 하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어 활용은 극대화하고 검증에는 부담 없이 대응하여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어야겠다.

부분품 품목분류 어떻게 하는가?

오수교 관세사 KPMG세정관세법인고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완성품 못지않게 재료나 부분품의 품목 분류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완성품과 재료나 부분품의 품목번호를 비교하여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완성품과 재료나 부분품의 품목번호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나 부분품은 원산지물품이어야만 한다. 당연히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재료나 부분품의 종류와 그에 다른 가격이 정해져야만 한다.

특히 부분품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정의 규정도 명확하지 않아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계와 자동차의 부분품을 중심으로 해당 규정과 각종 사례를 통하여 품목 분류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부분품의 정의

법체계상 해당 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용어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관세율표의 많은 곳에 “부분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에 관한 분류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지는 않다.

부분품(part 또는 부품)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의 기계나 장치, 제품 등의 전체 속에서 이를 이루는 개별적인 구성 부분이 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며, 관세청 예규(수입기계류 부분품 및 부속품 검사에 관한 예규, 2014.3.31. 개정)에서 부분품이란 “물품의 주체를 구성하는 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물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관세청 예규는 수입기계류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전적 정의보다 그 적용 범위가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88년 HS 시행 당시에 미국세관 직원의 교육용으로 만든 “미국신관세율표(H.S)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부분품의 정의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즉, 부분품이란 “일반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특정용도에 사용될 수 없고, 다른 물품에 결합하여 사용되고, 어떤 물품에 이것이 없으면 기능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이며, 그 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용에 필요한 것으로서, 형태나 다른 특성으로 보아 전용되거나 주로 하나의 부분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는 물품”이다.

이와 같은 부분품은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스크루나 스프링과 같이 하나의 재료로만 된 간단한 것부터 액체펌프나 기어박스 또는 전동기와 같이 여러 가지재료와 구성요소(부분품을 포함한다)^①로 된 복잡한 물품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액체펌프나 전동기와 같이 독립적인 기능을 지닌 것이라도 다른 물품에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분품으로 취급되며, 부분품은 사용범위에 따라 전용부분품과 범용부분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1. 부분품의 유형>

스크루(철강) (제7318호)	스프링(철강) (제7320호)	액체펌프 (제8413호)	기어박스 ^②	전동기 (제8501호)
				

① 이 글에서 구성요소에는 부분품이 포함된다. 문맥에 따라 각각 또는 같이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기어박스는 자동차용은 제8708호에, 그 밖의 기계용은 제8483호로 각각 분류된다.

2. 부분품 분류 기준 및 방법

부분품 분류규정 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계류나 전기기기(제16부), 수송기기(제17부), 정밀기구나 측정기기(제90류) 등의 부분품의 분류기준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 1. 중요한 부분품의 분류기준〉

구분	규정
제16부 주2	<p>기계의 부분품(제8484호 · 제8544호 · 제8545호 · 제8546호나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제16부의 주 제1호 · 제84류의 주 제1호와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p> <p>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487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나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p> <p>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p> <p>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나 제8538호로 분류하거나 위의 호로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7호나 제8548호로 분류한다.</p>
제17부 주3	<p>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p>
제90류 주2	<p>제90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p> <p>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 · 제85류 · 제90류나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 · 제8548호와 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p> <p>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 · 제9013호나 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p> <p>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p>

〈표1〉에서 살펴본 부분품의 분류규정과 제외규정(제16부 주 제1호, 제84류 주 제1호, 제85류 주 제1호, 제17부 주 제1호, 제90류 주 제1호 등)^③을 종합하면 부분품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열거된(특정) 호^④로 분류하는 것과 재료에 의한 분류는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구분하는 주된 이유는 열거된(특정) 호로 분류하는 것은 재료나 구성요소에 상관없이 하나의 호로만 분류(그림2)의 하단 물품 참조)되는 것이라면, 재료에 의한 분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라도 재료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호로 분류된다는 것을 설명하려는 목적이 다.(그림3)과 〈그림4〉 참조)

2-1. 열거된(특정) 호로 분류

부분품을 분류할 때는 우선적으로 관세율표의 어느 호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는(specified or included)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물론 실무에서는 열거되어 있는 것보다 포함되는 것 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 다음 〈그림 2〉와 같이 불도저와 화물자동차 또는 헬리콥터에 전용되는 디젤엔진, 축전지, 속도계, 차량용 의자라 하더라도 이들은 불도저나 트럭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열거된 호로 분류한다. 이러한 물품은 불도저나 화물자동차 또는 항공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경우라도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다.

〈그림 2. 열거된(특정) 호로 분류하는 부분품〉

불도저(제8429호)	화물자동차(제8704호)	헬리콥터(제8802호)	
			
디젤엔진(제8408호)	축전지(제8507호)	속도계(제9029호)	의자(제9401호)
			

③ 내용이 많아 지면관계상 기재를 생략하였다.(관세청 품목분류 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특계(特掲) 호(특별하게 기록된 호)라고도 한다.

이렇게 분류하는 근거는 통칙 제1호이다. 즉,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해당 호의 용어와 관련되는 제16부 주 제1호타목^⑤, 제16부 주 제2호가목^⑥, 제17부 주 제2호마목·바목·사목^⑦에서 그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자와 같이 관련 주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해당 호의 용어만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다름이 있다면 통칙 제3호가목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 통칙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즉, 불도저의 부분품(제8431호)이나 화물자동차의 부분품(제8708호) 또는 항공기의 부분품(제8803호)보다는 제9401호의 의자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기 때문이다.

물론 제9401호의 의자에는 항공기용 의자(소호 제9401.10호)나 차량용 의자(소호 제9401.20호)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출입업자나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거래하는 부분품이 관세율표의 특정 호에 열거되어 있거나 포함되는 것인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고적으로 제84류와 제85류의 열거된(특정)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 표2와 같다. 물론 이 표는 대상이 되는 모든 물품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표 2. 제84류와 제85류의 열거된(특정) 호로 분류되는 부분품〉

번호	품명	품목번호
1	펌프·기체 압축기	제8413호·제8414호
2	여과용 기기	제8421호
3	권양용이나 하역용 기계류	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8486호
4	탭·콕·밸브 등	제8481호
5	볼베어링·롤러베어링과 공칭직경의 오차가 1% 이하이거나 0.05mm 이하 (어느 쪽이든 오차가 작은 것인 연마강구)	제8482호
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 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과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폴리와 폴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제8483호
7	개스킷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제8484호

⑤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불도저에 사용하는 속도계는 제84류로 분류할 수 없다.

⑥ 불도저에 사용하는 디젤엔진(제8408호)이나 축전지(제8507호)는 불도저의 부분품(제8431호)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⑦ 이들 각 목에서 제8408호, 전기기기(제85류), 제90류의 물품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화물자동차나 헬리콥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번호	품명	품목번호
8	전동기	제8501호
9	변압기와 그 밖의 기기	제8504호
10	전자 팩에 조립된 축전기	제8507호
11	전열용 저항체	제8516호
12	축전기	제8532호
13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스위치·퓨즈·접속함 등]	제8535호·제8536호
14	보드·패널·콘솔·데스크·캐비닛과 그 밖의 기기로서 전기의 조절용이나 배전용의 것	제8537호
15	램프류	제8539호
16	밸브와 튜브	제8540호
17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등	제8541호·제8542호
18	전기용의 탄소제품(예: 아크 램프용 탄소봉·탄소전극과 탄소브러시)	제8545호
19	각종 재료의 애자	제8546호
20	전기기기용 등의 절연용 물품	제8547호

2-2. 재료에 따른 분류

재료란 어떤 물품이나 부분품을 만들 때 바탕으로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동일한 품명이 나 용도라도 <그림3>과 <그림4>와 같이 구성 재료에 따라 다른 호에 각각 분류한다는 것이다.

이런 분류방법은 일반적으로 제7부(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제8부(가죽이나 모피 제품), 제9부(목재 제품), 제11부(방직용 섬유 제품), 제13부(돌·도자·유리 제품), 제14부(귀금속 제품), 제15부(卑金屬 제품)에 주로 적용된다. 이러한 물품은 특정한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경우라도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이와 같다. 물론 재료에 따라 분류할 때에 전부 한 가지 재료로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플라스틱과 종이로 된 보빈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그림 3. 보빈(bobbin, 실패)의 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플라스틱(제3926호)	목재(제4421호)	종이(제4822호)	철강(제7326호)
			

〈그림 4. 볼트와 너트의 구성 재료에 따른 분류〉

플라스틱(제3926호)	목재(제4421호)	철강(제7318호)	구리(제7415호)
			

이렇게 분류하는 근거도 2.1에서 설명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통칙 제1호에 따라 호의 용어에 해당 물품명이 표기되어 있거나 관련 주(예: 제16부 주 제1호)에 그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16부 주 제1호다목에서 보빈(실패)은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며, 또한 같은 주 제1호사목과 제17부 주 제2호나목 등에서 “볼트와 너트”는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해당 부나 류에서 제외하여 재료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토록 정하고 있다.

반면에 종이로 만든 보빈(실패)의 경우에는 제16부 주 제1호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호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즉, 관련되는 호의 용어가 “종이로 만든 보빈(제4822호)”와 “직기의 부분품(제8448호)”이라고 각각 되어 있으면 “직기의 부분품”보다는 “종이로 만든 보빈”이 그 물품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이기 때문에 통칙 제3호가목을 적용하더라도 제4822호로 분류한다. 목재로 만든 보빈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을 따른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분류한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재료에 따라 분류한 사례의 물품〉

1. 전기밥솥용 실링(실리콘수지)	2. 승강기 균형추(철강 단조물)	3. 자동차 현가스프링용 가황고무(제4016호)
		

[사례1] 실리콘 수지로 만든 링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은 전기밥솥의 압력누수방지용으로 사용하지만 제품의 특성상 전기밥솥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예: 비전기식의 압력밥솥은 제7321호로 분류한다) 전기밥솥의 부분품(제8516.60호)로 분류되지 않으며, 실리콘 수지의 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26.90호로 분류한다.(2009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2] 승강기 균형추(counterweight)는 선철과 고철로 주조한 블록 형태의 주물제품으로 40킬로그램부터 145킬로그램까지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승강기 작동의 필수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승강기의 부분품(제8431.31호)으로 분류하지 않고 철로 만든 단조물(HS 해설서 제7325호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균형추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7325.99호로 분류한다.(2005년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3] 가황한 고무로 만든 링(ring) 모양의 성형물(직경 약 14.7센티미터)로 자동차 현가스프링(제8708.80호)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방지하는 물품이나 제17부 주 제2호가목에서 제4016호의 제품(조인트나 와셔 등)은 제17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함에 따라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4016.99호로 분류한다. (2013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특히 재료에 따라 분류할 때에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특정 재료로 된 제품이 분류되는 마지막 호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 호의 용어가 '~'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라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몇 개의 호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제3926호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
- ▶ 제4016호 :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 ▶ 제4421호 : 그 밖의 목제품
- ▶ 제6914호 :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 ▶ 제7325호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 ▶ 제7326호 :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 ▶ 제7419호 :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따라서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 마지막 호의 적용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사항이다. 재료에 따른 분류는 쉽고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확대하면 본체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 부분품의 분류원칙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당연히 부분품도 호(또는 소호)의 용어이고 또한 제16부의 부분품은 몇 개의 예외적인 경우(예 : 도자로 만든 펌프와 그 밖의 제품 등)를 제외하고 구성 재료에 상관없이 분류된다는 HS 해설서 제16부 총설 규정 등과 상충될 수 있다.

확일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에 우선, 앞의 (사례2)와 같이 HS 해설서에서 구체적으로 예시(균형추는 제7325호 분류한다)하고 있거나 또는 부분품에서 제외한다고 정한 경우에는 재료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앞의 사례1과 같이 비록 그 물품은 특정한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그 용도나 기능으로 보아 다른 제품에도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료에 따라 분류될 여지가 있다.

2-3. 본체와 같이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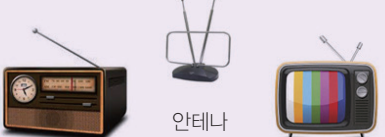
앞에서 설명한 2.1과 2.2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품일 때 비로소 본체 기계와 같은 호로 분류하거나 또는 본체 기계에 속한 부분품만을 일괄하는 호로 분류한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6>과 같이 세탁기에 사용하는 탈수 통과 선풍기용 날개(재료는 플라스틱)는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본체와 같은 호로 분류하는데, 이들 호에는 부분품을 분류하는 특정 소호(예: 제8450.90호와 제8414.90호)가 있다.

<그림 6. 본체와 같은 호로 분류하는 부분품>

세탁기와 탈수 통(제8450호)	선풍기(제8414호)와 날개 및 전동기
	

<그림 7. 일괄 분류하는 부분품>

 <p>피스톤(제8409호)</p>	 <p>안테나 (제8529호)</p>
--	--

<그림7>과 같이 피스톤은 불꽃 점화식엔진(제8407호)이나 디젤엔진(제8408호)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거나 또는 공통으로 사용(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범용성 부분품'이라 한다)되는지에 상관없이 제8409호로 분류한다.

또한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제8527호)나 텔레비전 수신기기용(제8528호) 안테나도 같은 원칙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한다. 제16부에는 이와 같이 부분품만을 별도로 분류하는 호가 총 9개(제8409호 · 제8431호 · 제8448호 · 제8466호 · 제8473호 · 제8503호 · 제8522호 · 제8529호 · 제8538호)가 있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이 분류근거는 제16부 주 제2호나목과 다목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품은 특정한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따라 전기적인 요소나 특성이 없는 부분품은 제8487호로, 그러한 요소나 특성이 있는 것은 제8548호로 분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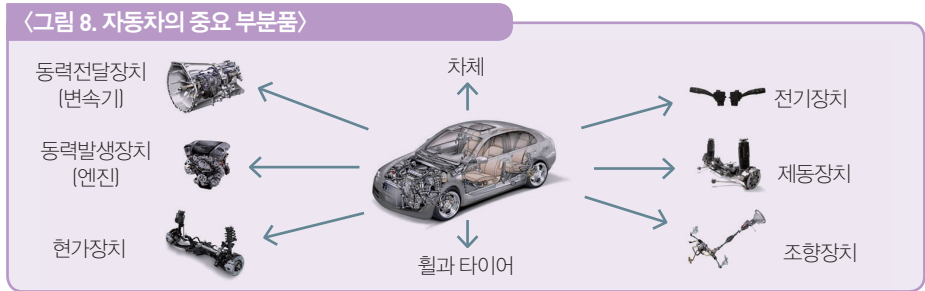
앞의 2.1과 2.2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그림6>의 선풍기용의 전동기는 일반적인 전동기와 달리 선풍기의 날개를 삽입하고 고정시킬 수 있는 축(shaft)이 부착되어 선풍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작되었다(이런 경우에 '전용부분품'이라 한다). 그렇더라도 전동기에 축이 부착되었다하여 선풍기의 부분품(제8414.90호)으로 품목번호를 변경시킬 정도의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HS 해설서 제8501호에서 '폴리 · 기어 · 기어박스나 수동식공구 구동용 플렉시블 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는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선풍기전용의 전동기가 명백하더라도 "열거된 호에 우선하여 분류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8501호로 분류한다.

3. 자동차 등 수송기기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

3-1. 주 용도에 의한 분류

관세율표에서 수송기기는 그 종류에 따라 제86류부터 제89류까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 제89류의 선박과 수상 구조물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원칙적으로 제89류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부속품에 관하여는 다음 4항을 참고하면 된다).

따라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제17부 주 제3호)



이때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첫째,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이 부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그림8>에서 동력발생장치인 엔진(제8407호나 제8408호), 전기장치인 멀티스위치(제8537호)는 제17부에서 제외되는데,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그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3.2항의 제17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을 참고하면 된다.

둘째,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제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앞의 <그림2>를 참고하여 조향장치·제동장치 등과 같은 부분품이 제8429호의 불도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은 제8431호로 분류한다. 따라서 제8704호의 화물자동차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때는 제8708호로 분류하게 된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와 헬리콥터에 사용가능하면 주 용도로 결정한다. 만약 주 용도를 정할 수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셋째, 관세율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는 것에는 가황한 고무로 만든 전동용 벨트(제4010호), 고무타이어(제4011호·제4012호), 예인용 로프(제5609호), 안전유리(제7007호), 백미러(제7009호나 제90류), 카펫(제57류), 속도계나 적산회전계에 사용하는 플렉시블 샤프트(제8483호), 차량용 의자(제9401호) 등이 있다.

이들 류에는 부분품뿐만 아니라 부속품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그 범위와 대상이 넓어진다는 것도 유념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서 기계에 사용되는 기어박스나 트랜스미션은 제8483호로 분류하지만, 엔진동력을 자동차의 축이나 바퀴에 전달하는 기어박스나 트랜스미션은 제8708호로 분류한다. 그럼에도 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은 그 종류에 따라 제8409호나 제8483호로 분류된다.

3-2. 제17부에서 제외하는 물품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㉔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제17부 주 제2호와 HS 해설서 제17부 총설)^㉕

- 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s) · 와셔(washers)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로 분류한다)이나 경질고무가 아닌 가황한 고무로 만든 그 밖의 제품(제4016호)^㉖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
- 다. 제82류의 제품(공구)
- 라. 제8306호의 제품
-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제품, 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제품
 - ㉗ 보일러와 보일러용 장비(제8402호나 제8404호)
 - ㉘ 발생로 가스발생기(예: 자동차용)(제8405호)와 제8406호의 증기터빈
 - ㉙ 제8407호부터 제8412호까지에 해당하는 각종 엔진과 이들의 부분품
 - ㉚ 펌프 · 압축기와 팬(제8413호나 제8414호)
 - ㉛ 공기조절기(제8415호)
 - ㉜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 · 살포용 · 분무용 기기와 소화기(제8424호)
 - ㉝ 권양용 · 취급용 · 적하용이나 양하용 기계(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30호 · 제8431호)
 - ㉞ 차량에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든 제8432호나 제8433호의 농업용 기계(예: 탈곡 · 파종 · 풀베기 등에 사용하는 부착물)^㉟
 - ㉟ 제8474호에서 규정한 기계류
 - ㊱ 제8479호의 windscreen wiping mechanism
 - ㊲ 제8481호와 제8482호에 해당하는 제품
 - ㊳ 제8483호에 해당하는 엔진이나 모터의 내부 부분품(크랭크샤프트 · 캠 샤프트 · 플라이휠 등)

㉔ 어느 호(또는 소호)에는 ‘부분품’만 분류되는 것(예: 제8715호)이 있고, ‘부분품과 부속품’을 함께 분류하는 것(예: 제8708호)이 있어 이와 같이 표시한 것이다. 부분품만 분류하도록 규정한 호(또는 소호)에는 부속품은 분류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㉕ 각 목에서 ㉖, ㉗ 등으로 표시된 부분은 HS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 인용한 것이다.

㉖ 따라서 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품의 종류(예: 흙받이나 바닥용 매트 등)에 따라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㉟ 이들은 주로 제8701호의 트랙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호환성 장치이다. 호환성 장치로서 트랙터에 부착시킨 상태이거나 트랙터와 함께 제시된 경우에도 트랙터와 호환성 장치는 각각 분류한다.(제87류 주 제2호 참조)

바. 전기기기(제85류)

- ㉠ 제8501호나 제8504호의 모터·발전기·변압기 등
- ㉡ 제8505호의 전자석·전자클러치·브레이크 등(제8505호)
- ㉢ 축전지(제8507호)
- ㉣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용 전기식 점화장비나 시동장비(제8511호)
- ㉤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기기·신호기기·윈드스크린 와이퍼·제상기와 제무기(제8512호), 전기식 신호기기(제8531호), 그 밖의 차량·항공기나 선박용의 전기식 제상기·제무기(제8543호)
- ㉥ 자동차나 철도차량·항공기 등에서 사용하는 전열기기(제8516호)
- ㉦ 마이크로폰·확성기와 가청주파증폭기(제8518호) 등
- ㉧ 무선송수신기와 수신기(제8525호나 제8527호)
- ㉨ 전기식 축전기(제8532호)
- ㉩ 제8535호나 제8536호의 전차용 집전기(集電器)와 그 밖의 집전장치와 퓨즈·스위치와 그 밖의 전기장치
- ㉪ 제8539호의 전기식 필라멘트 램프와 전기식 방전램프, 제87류 차량용의 실드빔 램프유닛(헤드램프)
- ㉫ 절연된 전선과 케이블(제8544호), 흑연이나 탄소제품(제8545호), 애자(제8546호), 전기 절연용품(제8547호)

사. 제90류의 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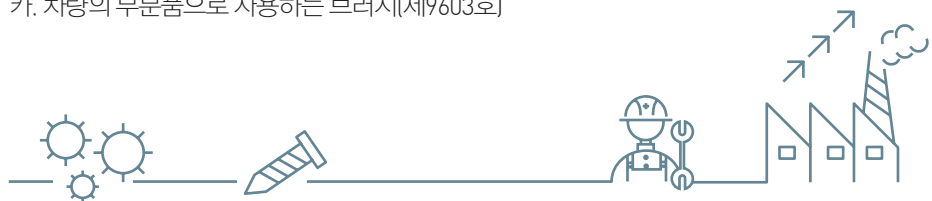
- ㉠ 사진용이나 영화용 카메라(제9006호나 제9007호)
- ㉡ 항행용 기기(제9014호)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이나 수의과용 기기(제9018호)
-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밖의 기기(제9022호)
- ㉤ 온도계(제9025호), 유량계와 압력계(제9026호)
- ㉥ 적산회전계·택시미터·속도계와 회전속도계와 그 밖의 기기(제9029호)
-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31호)

아. 제91류의 물품(예: instruction panel clocks)

자. 무기(제93류)

차. 차량용 의재(제9401호),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

카. 차량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브러시(제9603호)



3-3.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사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분류사례〉



(사례4) 여행 중 스키장비·캠핑장비·짐 등 사유물의 보관과 보호를 위한 적재함(중량 12킬로그램이고 적재중량은 50킬로그램)으로 유선형의 상판과 바닥부분으로 구성되며, 모두 플라스틱 주형으로 만든 것이다.

적재함과 같이 제시되는 특정한 장치를 통해 자동차 외부지붕의 받침대에 장착하도록 설계된 자동차용 부속품이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8.99호로 분류한다(제51차 WCO HS 위원회 결정)

(사례5) 승용차 트렁크의 좌우측면의 덮개로 폴리에스테르부직포, 폴리프로필렌 보드 소재의 원판을 좌우측면의 모양에 맞춰 성형한 후에, 신슬레이트(또는 부직포) 등 흡음재를 이면에 부착하고 테두리 등에 홀 가공한 물품이다.

차체에 전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8.29호로 분류한다(2011년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사례6) 플라스틱(폴리아미드)으로 만든 관(직경 약 8mm, 길이 약 780mm) 양 끝에 플라스틱으로 된 연결구류가 결합된 물품으로 한 쪽 끝은 연료탱크의 Fuel Return Line에 연결되고 다른 한쪽 끝은 Canister(엔진이 정지할 때 연료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한 증발가스를 흡수·저장하는 부분품)에 연결되어 연료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이다.

소호 제3917.3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tube and pipe) 중에서도 연결구류가 결합된 것에 한정하여 분류도록 되어 있어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결합되었다하여 자동차의 부분품(연료탱크는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제8708호로 분류하고,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도 같은 호로 분류한다)으로 분류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3917.33호로 분류한다.

© HS 해설서 제8708호에 luggage compartment(수하물 넣는 곳)은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사례7】 철제 프레임, 알루미늄 바(bar), 모터, 기어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기계적 메커니즘을 갖춘 전동식 블라인드로 자동차 후면 유리창에 설치되어 햇빛이나 뒤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하고 차량 내부의 안락한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

모터와 기어 등 기계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블라인드를 접고 퍼주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1호에 분류한다.

4. 모듈로 된 부분품의 분류

이 글에서 모듈(module)로 된 부분품이란 “완제품을 구성하는 부분조립품으로 연관되는 여러 가지 부분품이 하나로 집약된 것으로 교환 가능한 구성단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립공정의 단순화에 따른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관리비용의 절감 효과 등으로 자동차나 무선통신기기 등 각종 산업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새시 모듈은 서스펜션 시스템(현가장치)(제8708.80호) · 조향장치(제8708.94) · 제동장치(제8708.30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도 진동 모터(Linear Vibration Motor)(제8501호) · 무선수신기(제8517호) · 스피커 · 마이크로폰(제8518호) · 인쇄회로기판(제8434호) 등으로 구성된 물품들이 있다.

이와 같이 모듈로 된 부분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분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10. 각종 모듈로 된 부분품〉



4-1. 구성된 부분품 중에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통칙 제3호나목)

이런 부분품을 명확하게 분류토록 정한 호나 소호는 없기 때문에 통칙 제3호의 각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견해이다. 이 통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통칙 제3호가목에 따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호가 없기 때문에 이 통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면 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통칙 제3호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특성의 결정은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 재료의 역할에 따르도록 HS 해설서 통칙 해설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다.

구성 요소로 된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 결정시에는 용적이나 중량보다는 가격이나 역할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할 수 없으면 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로 결정한다.

4-2. 완성품의 부분품으로 분류

다양한 구성 요소(부분품)로 결합되어 있으며, 완성품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또한 형태나 특성으로 보아 완성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통칙 제1호를 적용하여 분류한다는 견해이다.

물론 이와 같이 복잡하게 구성된 부분품을 통칙 제3호나목에 근거하여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통칙 제3호나목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즉, 완성품으로서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된 복합물품(예: 카메라와 헬리콥터로 구성된 드론, 무선통신기와 시계가 결합된 갤럭시 기어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적합한 호가 없기 때문에 통칙 제3호나목과 다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관련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부분품을 분류토록 정한 경우에는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칙 제3호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 때 “완성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란 2.1에서 설명한 열거된 호로 분류되는 물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디젤엔진이나 액체펌프 또는 전동기와 같은 것은 여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비록 이들이 특정 용도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경우에도 부분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모듈로 된 부분품은 애초부터 특정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듈로 된 부분품을 획일적으로 통칙 제3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분류하려는 것은 올바른 분류방법은 아니라 생각된다.

이미 모듈로 된 부분품에 관하여 전향된 방향으로 품목분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림10>의 3의 물품(Glass window, ITO 센서, Touch IC 및 FPCB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디지털카메라의 LCD 화면 보호, 부품 파손방지, LCD 터치(정전용량 변화 감지)를 통한 카메라 조작 및 촬영된 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을 수행)을 2015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 위원회에서 디지털카메라의 부분품(제8529호)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5. 부속품과 부속기기의 정의 및 분류

관세율표에서 부분품과 비슷한 유형의 물품으로는 부속품과 부속기기를 들 수 있다. 이들의 분류도 중요하므로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5-1. 부속품

부분품과 같이 관세율표에 부속품의 정의가 규정된 것은 없으나, HS 해설서의 몇 곳에 정의된 부분이 있다.(주석 13과 14 참조). 이를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부속품'이란 그 중요성이 이차적이거나 부수적인 것(종속물)으로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이지 않지만 다른 것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더해주는 물품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부속품을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물품의 사용이나 취급을 용이하게 하거나(예: 카메라 삼각대)
- ② 주된 물품의 사용범위를 넓혀 주거나(예: 기계공구용 호환성 공구)[®]
- ③ 주된 물품의 작동을 개선하며(예: 소총용 망원조준기)
- ④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는 아니지만 함께 사용하면 제품이 의도하는 기능을 추가 발휘하게 하는 물품이며(예: 자전거용 짐 선반)[®]
- ⑤ 어떤 특정물품에 전용되거나 본질적으로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예: 자동차 바퀴 덮개)

어느 호나 소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을 같이 분류(예: 제8486호와 제8522호 또는 제8708호)하면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 부분품이나 부속품만을 분류(예: 제8409호와 제8479.90호 또는 제8715호)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당 호나 소호에 부분품만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속품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부분품과 부속품의 구분이 필요하나, 실무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을 명확히 구분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5-2. 부속기기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란 온도계·압력계·액면계나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컨트롤패널·자동조절기와 같이 주 기계에 부착(장착)되어 특정 기능(예: 측정·검사·제어하거나 조절)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증기발생보일러(제8402호)에 부착(장착)된 온도계와 압력계는 보일러용기에 담겨있는 액체나 증기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부속기기가 통상 주 기계에 종속되는 것은 주 기계와 함께 분류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부속기기는 주 기계와 함께 제시(결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라도 상관없다)되어야 하며, 또한 하나의 특정 기계를 측정·검사·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따로 제시되거나 여러 기계를 측정·검사·제어하거나 조절하도록 설계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예: 컨트롤패널은 제8537호, 온도계는 제9025호, 압력계는 제9026호). 즉, 부속기기는 해당 기계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6. 결론

품목분류의 결과에 따라 수입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등이 결정되므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FTA에서 원산지 판정의 핵심은 품목분류라 할 수 있으며, 완성품 못지않게 부분품의 품목분류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부분품은 그 종류도 많고 또한 원재료로부터 다양한 중간재 형태로 거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되는 여러 개의 부분품을 결합시킨 모듈로 된 부분품의 거래도 활발함에 따라 부분품의 품목분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③ HS 해설서 제8466호에 의하면 "공작기계의 부속품"이란 보다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공기계를 변환시킬 수 있는 호환성의 장치·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하여 특수한 작용을 행하는 장치와 같은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보조 장치를 말한다. 또한 HS 해설서 제8473호에 의하면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한 조작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환성의 부분이나 장치를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④ HS 해설서 제8448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부속품이란 장치를 형성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계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호환성이 있으며, 때로는 대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면 급속히 소모되어 버리거나 혹은 상이한 작업을 위하여 상이한 종류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부분품의 정의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것과 그 분류의 한계를 구분함에 있어 특히 어느 물품에 포함되는 것인지와, 재료에 의한 분류인지 아니면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하여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로인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도 과세관청과 수출입업자 또는 국가 간에 달리 분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부분품을 분류할 때에 유념할 사항은 우선 그 부분품으로 구성된 완성품이 속한 부나 류에서 제외되는 물품(관련 주에서 규정하고 있다)인지 또는 특정한 호에 열거되었거나 포함되는 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HS 해설서의 총설이나 해당 호에서 별도로 제외되는 부분품인지 또는 열거되거나 포함되는 부분품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 수출입업자는 이 부분의 확인이 잘 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유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재료에 따라 분류할 때에도 완성품이 속한 부분품의 해당 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물론 재료의 형태가 롤이나 판, 봉이나 선과 같은 반제품(semi-manufacture) 상태이면 원칙적으로 부분품으로는 분류될 수 없다. 완제품에 직접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알맞은 모양과 크기로 된 경우(블랭크를 포함한다)^⑥에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확정 전에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품목분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검색하여 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도 결정이 어려우면 품목분류의 중요도(관세율이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차이)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우리나라나 상대국 정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최근 기능의 다양화와 품질의 고급화 및 모듈로 된 부분품의 거래가 증가되는 추세로 미뤄 볼 때에 앞으로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범위가 더 넓게 적용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 이 글은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필자 소속기관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⑥ “블랭크(blank) 또는 반가공품”이란 직접 사용할 수는 없으나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이나 윤곽을 갖춘 것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전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블랭크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하거나 완성된 물품이나 부분품과 같은 호에 분류한다. 이런 경우에는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FTA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01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FTA-PASS 활용을 통한 원산지관리 모델

개요

- FTA 활용 기업들이 겪는 애로 중 하나는 생산 공정의 복잡성과 협정별 상이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 판정과 원산지증빙서류의 관리에 대한 어려움 발생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관세청이 무료로 배포하는 FTA-PASS를 활용하여, 원재료 관리단계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서류보관에 이르는 FTA 원산지관리 전 과정을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수행 가능한 모델

<FTA-PASS 활용을 통한 원산지관리 모델>



추진효과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의 효율적 판단 가능
- 원산지검증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체제 마련

포장재로 FTA 시장을 포장하다!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V사는 식품포장지 및 필름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인증된 품질관리시스템(ISO 9001/KSA 9001)을 바탕으로 자동화 생산라인을 통해 국내 및 선진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는 중소기업

② FTA 활용 전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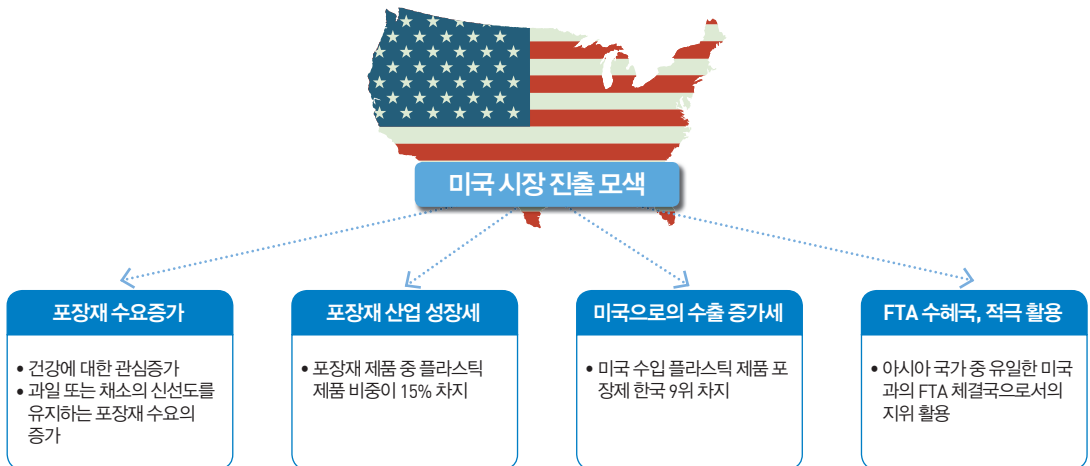
- 소폭의 점진적 관세율 철폐 및 원산지 전담인력 부족

HS CODE	3923.21	3921.90
기준세율(%)	3	6.5
2014년 관세율(%)	2.1(단계적 관세인하)	4.5(단계적 관세인하)

- 제품의 특성상 원재료, 품목, 모델이 다양하여 원산지관리에 어려움 발생

③ 장애요인

- 수출물품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 유가 상승 및 경쟁 심화로 판매가 인상 곤란



포장재로 FTA 시장을 포장하다!

④ 극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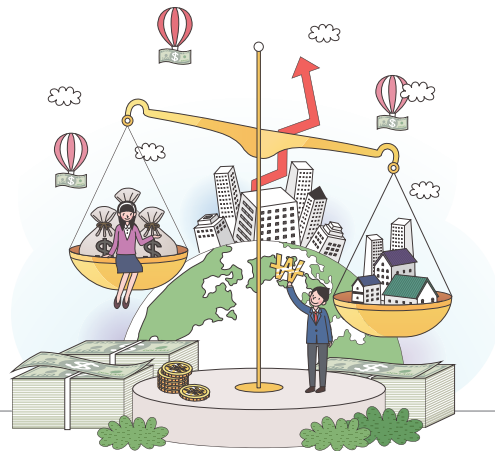
-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을 위한 세관의 예산지원 무료 컨설팅 및 유관기관 통합 지원을 받아 원산지증빙서류 발급

⑤ 활용 효과

- 한-미 FTA 발효 후 수출경쟁력 향상
 - ① 수출금액 127%, 수출 건수 104% 증가 → 미화 2.5만 불 관세절감 효과
 - ② 관세 완전 철폐 시(2016년) 67만 불(805백만 원) 관세 절감 혜택 예상
 - ③ 제2의 주력시장인 인도의 수출 급성장 → 11.8만 불 관세 절감 혜택
- FTA-PASS 시스템 운영으로 원산지관리 전담 인력 2명 절감

⑥ 시사점

- 점진적 관세철폐의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 시 우위 선점 가능
- 원산지판정 및 관리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이용한 시스템적 관리로의 인식 전환 계기



한국산 CCTV로 FTA ZOOM - IN



-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W사는 매출 602억, 종업원 수 104명인 CCTV Camera 제조업체

- ② FTA 활용 전 상황**

 - CCTV Camera 1개의 품목이지만, 다양한 모델에 따른 원재료 종류가 많고,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함

- ③ 장애 요인**

 - 수많은 원재료 사용으로 여러 모델을 생산함에 따라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가 어렵고, 영세한 협력업체의 FTA 활용 능력부족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불가능

- ④ 극복 방법**

 -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과 1:1 현장컨설팅 활용으로 기업지원 및 FTA 관련 설명회, 교육 실시
 -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도움으로 한-EU 및 한-아세안 FTA에 따른 여러 종류의 원재료를 관리
 -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직접 협력업체 담당자에게 원산지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로 원산지(포괄)확인서 제출

- ⑤ 활용 효과**

 - 한-미 FTA(2.1%→0%), 한-EU FTA(4.9%→0%) 적용으로 상대국에서 관세 절감 효과에 따른 거래선 확대 및 수출물량 증가 예상

- ⑥ 시사점**

 - 여러 모델별로 원재료의 종류가 많은 경우, FTA-PASS를 통한 다품종의 원재료를 관리하고,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적극적인 교육이나 컨설팅 실시로 효과적인 원산지관리를 수행 가능

02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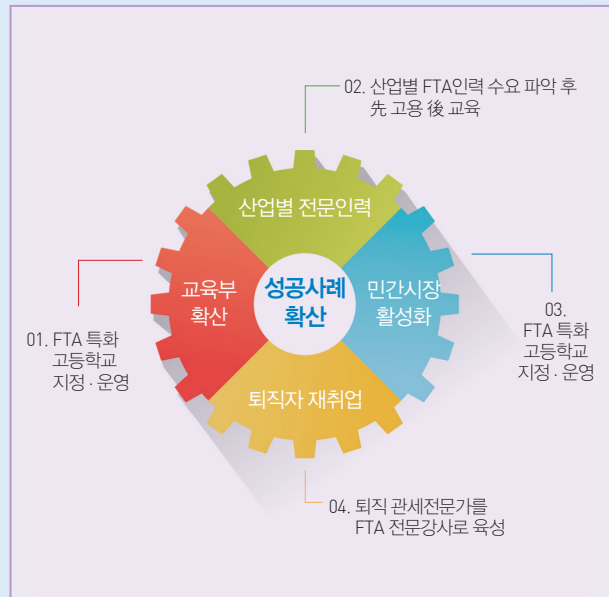
Job Matching 활용 FTA 인재 영입모델

개요

- 원산지관리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세관에서 지원하는 Job Matching사업 활용으로 훈련된 원산지전담자를 확보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세관이 기업의 FTA전문인력 수요를 파악하여 교육·양성한 인재를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FTA활용 일거에 성공



활용효과

- 경력 단절 여성, 특성화고 졸업생, 퇴직 공무원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 FTA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아줌마도 FTA 잘해요, 경단여성 FTA인재 일자리 창출



① 기관 소개

- 서울본부세관이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연계 중심기관인 여성 인력개발센터연합*과 협력하여 추진

② 집매칭 과정

- FTA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에 적합한 센터과정을 선정한 후 세관 FTA교육으로 전문인재를 완성

〈FTA 취업적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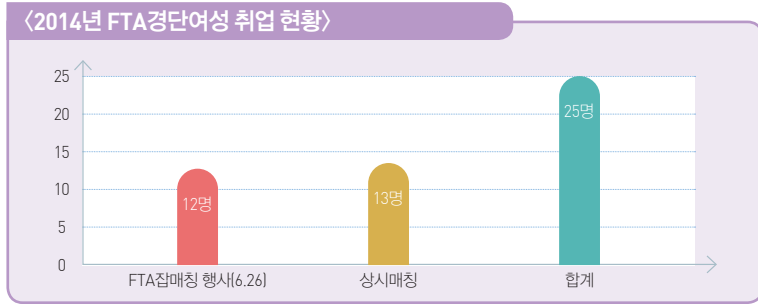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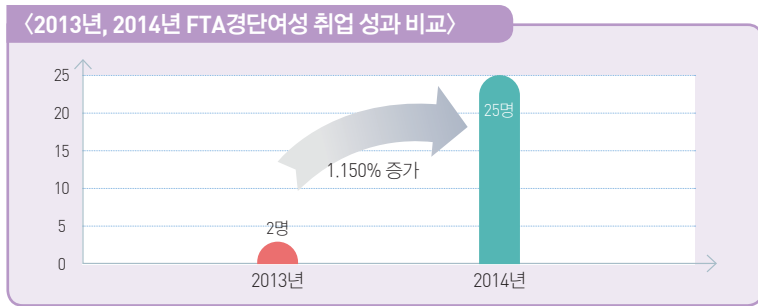
센터명	과정(160~200시간)	FTA 관련 취업적합과정 선정 이유
영○	관세사무원	「무역-FTA-통관」까지 이론 및 실무교육 총괄, FTA 교육내용 다수 포함
영○	세무사무원	통계 추출 및 회사 회계자료 작성에 능숙, BOM 및 부가가치기준에 유리
구○	무역사무원	무역,수출입,FTA 등 FTA 기본 커리큘럼과 과정 동일, 무역기본지식 보유
서○	회계사무원	통계추출 및 회계자료 작성에 능숙, BOM 및 부가가치기준 관련서류 작성에 유리
서○	무역전문가	무역-수출입-FTA 등 FTA 기본 커리큘럼과 과정 동일, 무역 기본지식 다량 보유
중○	중소기업경리	회계장부 및 경리업무에 능숙, BOM 및 부가가치기준 서류 작성에 유리
성○	전산세무회계	통계 추출 및 회사 회계자료 작성 가능, 전산실무에 능함, BOM 작성 및 부가가치기준에 유리

- 인천**센터에서 전산회계과정 30~40대 경단여성(전산회계 1~2급 자격증 획득)을 대상으로 FTA강의를 의뢰
- 서울세관 「제1기 경력단절 여성 FTA 교육」 운영으로 FTA 전문가 14명을 양성하여 既 실시한 '관세사무원 채용수요조사'로 상시매칭에 돌입
- 전국 최초 경단여성 대상 「FTA Job Matching Day」 행사 개최
 - [시소] 2014. 6.26.(목) 09:30~13:00, 서울본부세관 별관 2층
 - [구인·구직자] 약 75명 (구인업체 17개社, 경단여성 FTA 구직자 58명)

아줌마도 FTA 잘해요, 경단여성 FTA인재 일자리 창출

③ **잡매칭 효과**

- 2014년 경력단절 여성 FTA인재 잡매칭으로 도약적인 취업률 달성
 ⇒ 상반기업에도 전년대비 1,150% 증가



- 1인당 매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300만원으로 구인업체에 재정 지원
- 세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FTA 효과 확대 및 FTA **善순환***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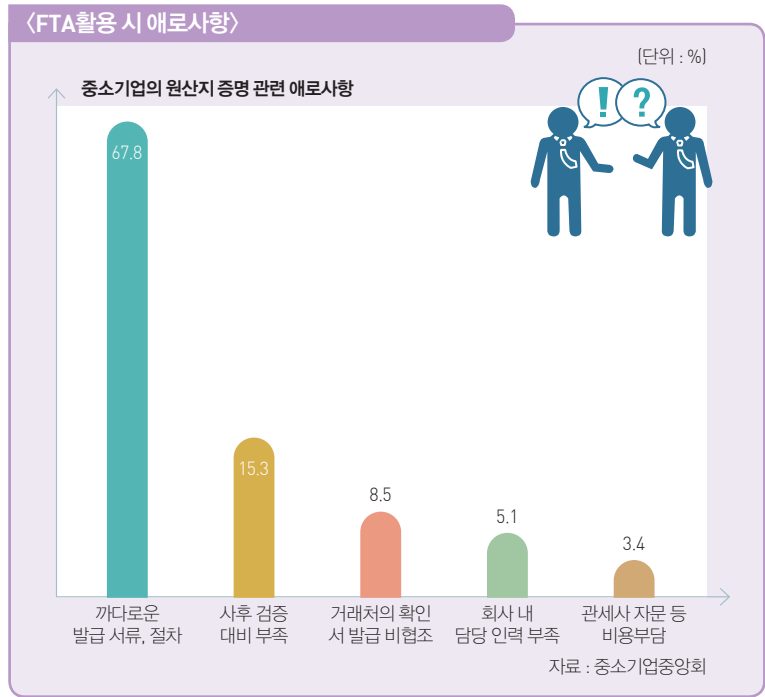
④ **시사점**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전문교육 이수 및 지원금 수여 등으로 양방향 수혜자 발생
- 사회진출 및 재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인재양성교육·취업연계」까지 원스탑 지원으로 건강한 일자리 제공 및 경제활동 참여 도모
- 영세 관세사무소에 지원금을 포함한 FTA인재 연계로 친화적 환경 조성 및 관세업계 활성화 제고

FTA를 만난 학생들, 이건 특급기회야!



- ① 배경
 - 중소기업이 채용가능한 고졸 FTA 전문인력을 세관이 양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FTA활용 강소기업 육성 필요
- ② 잠재칭 과정
 - FTA협정별 상이한 원산지 규정 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중소기업들은 원산지관리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FTA실무에 능통한 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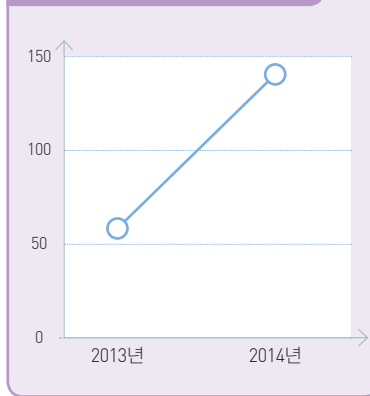
- 서울 유일의 무역업계 특성화고인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매항 여자정보고, 경기상업고 등 FTA전문인력 과정* 운영(총 9개교 433명 수료)
- ※ (커리큘럼) FTA 이론·FTA 원산지관리를 위한 기본역량 함양(3회 24시간)
- 구인기업·구직자 DB를 활용한 수시 매칭과 취업박람회 개최 「전문인력 육성 → 고용 → 중소기업 성장 → 전문인력 고용 확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FTA를 만난 학생들, 이젠 특급기회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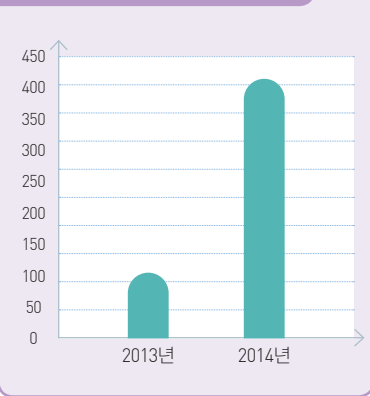
③ **잡매칭 효과**

- 사회경험이 없는 특성화 고교생 등이 다양한 산업의 원산지관리 경험을 쌓아 기업선호인력으로 성장

〈특성화고 FTA교육시간 추이〉



〈특성화고 전문기양성 추이〉



- 특성화 고교생 FTA 전문인력 양성 확대로 신규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환경 마련

④ **시사점**

- 중소기업 FTA활용의 성공모델

〈성공요인〉

 <p>01 중소기업 고용환경 분석을 통한 현장 중심 계획</p>	 <p>02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업</p>	 <p>03 수요자 Needs 적극 반영</p>
--	--	---

- 성공사례를 통해 산업별 FTA전문인력 양성, 민간 FTA시장 활성화 및 퇴직 공무원 재취업 모델로 적용모델 확산

03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자율점검 활용 검증위험 회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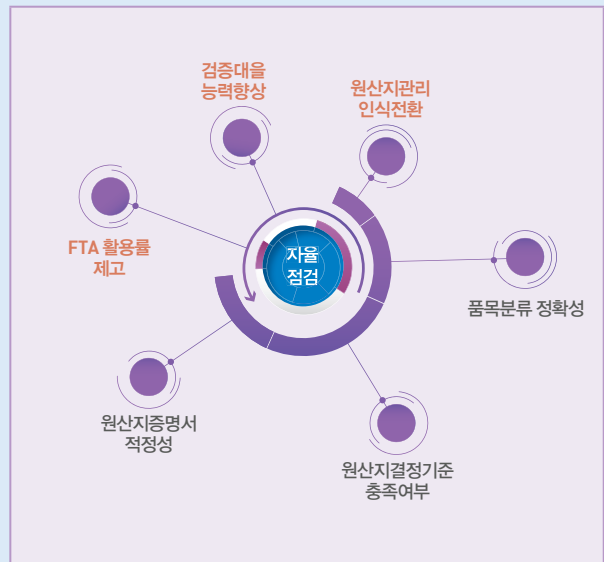


개요

- 기업이 자율점검을 통해 원산지관리의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조치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검증 위험을 사전에 예방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원산지관리에 대한 무지로 발생한 오류사항을 원산지검증 실시 전에 기업 스스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수정하고 관리



활용효과

- 원산지관리의 적정성에 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검증에 대한 과세분쟁 없이 원산지조사를 원활히 마무리
-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학습함으로써 FTA활용과 검증의 대응능력을 향상

자율점검으로 검증의 위험에서 벗어나다



-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X사는 광물 중개업을 목적으로 독일 a사와 한국 b사가 합작으로 2011년 9월 설립한 다국적기업
 - 강한 환원성을 가진 팔라듐으로 자동차 정화용 촉매로 사용되며, 수명이 다한 촉매(폐촉매)에서 고도의 정제작업 후 회수하여 재사용

- ② FTA 활용전 상황**

 - 한-미 FTA 특혜관세 원산지 요건 규정 미숙지로 미국 생산자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만을 근거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팔라듐 수입(3%→0%)

- ③ 장애 요인**

 - 신생기업으로 FTA에 대한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으며, 직원도 4명에 불과하여 원산지를 관리할 여건 부족과 무관심이 원산지 조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만약, 한-미FTA 시행초기가 아니라 상당한 수입이 이루어진 후 검증이 이루어졌다면 많은 오류에 따른 추징으로 업체 존폐의 큰 위험 발생

- ④ 극복 방법**

 - FTA협정이 관세혜택만 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원산지조사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으나,
 - FTA취지에 대한 적극적 안내와 조사과정에서 쟁점*의 설명을 통해 특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이해하고 조사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
 - ※ 미국 생산자가 독일에서 수입하는 원재료의 품목번호
 (미생산자) 독일 수입 원재료는 촉매의 기능이 있는 HS 38류의 물품으로 팔라듐(71류)으로 2단위 세번이 변경되어 원산지요건 충족
 (세관) 독일 수입 원재료는 귀금속 회수용 폐촉매로 71류의 물품이므로 팔라듐(71류)과 류가 동일하여 요건 불충족
 - 세관 안내에 따라 자율점검 후 수입한 팔라듐이 한-미FTA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요건에 충족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수정신고 (5.2억)

- ⑤ 활용 효과**

 - FTA시행 초기단계에서 원산지 조사가 이루어져 기업의 재정 손실을 줄였으며, 원산지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

⑥ 시사점

- 원산지 충족요건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신생기업을 초기에 적절한 안내와 업체의 관심 유도를 통해 원산지 오류를 조기에 수정함으로써 대규모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04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원산지 검증을 활용한 FTA 학습 모델



개요

- 수출물품의 원산지 검증을 통해 원산지관리에 오류가 발견된 업체가 지속적인 FTA수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FTA활용 전 사전검증을 활용하여 정확한 원산지 판정 및 관리 진단
- 사후검증에 따른 원산지관리 오류를 보완하고 학습의 기회로 활용

활용효과

- 수출 전 사전검증을 활용하여 FTA 적용 오류를 최소화
- 추후 이루어지는 FTA활용 오류를 방지하고 추가 검증에 대비 가능

원산지 검증을 통한 원산지관리의 인식 전환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Y사는 1998년에 설립한 기업으로 젤라틴 및 콜라겐을 전문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유럽으로부터 품질인증을 획득하고 연간 1,000만불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

<콜라겐>

동물의 피부, 뼈, 힘줄에 존재하는 섬유성 단백질



② 활용 전 상황

- 유럽, 미국, 태국 등에 연 1,000만불 규모의 수출을 하면서도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품목분류, C/O발행 유의사항 등은 무시
- 원산지관리 인력 부족으로 품질인증 및 기술개발에만 역량을 집중

③ 장애요인

-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물품 콜라겐의 품목분류의 정확성에 대하여 태국 관세당국과 바이어 측이 문제제기
- 서울세관의 원산지 검증으로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출물품 콜라겐의 품목코드를 기업 임의대로 결정한 사실 확인

④ 극복방법

- 세관의 원산지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전체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성, 생산공정,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종합점검
- 검증과정에서 FTA활용 유의사항과 다른 협정들에 대한 검증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병행
- 검증과정에서 준비된 원산지증빙서류와 세관의 도움을 받아 수출물품 HS 확정까지 해결된 점을 100%활용하여 한-EU FTA 인증수출자 취득을 한방에 해결

- ⑤ **활용효과**
 - EU, 미국 수출시 품목분류 오류를 사전 방지하고 한-아세안 검증대응이 미국, EU 원산지 검증대응력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 발생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도 자신 있게 발급하게 되어 對미 수출증대
- ⑥ **시사점**
 - 한번의 검증으로 수출업체 전체의 FTA 활용컨설팅 병행
 - 품목분류의 중요성과 FTA원산지에 대한 기업의 인식전환

원산지 사전 검증을 통한 FTA활용 LISK 제거

-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Z사는 산업용 안전장갑을 제조하여 EU 등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1천만불 수출유공으로 산업훈장을 수상한 우수 수출기업
- ② **활용 전상황**
 - 對EU 수출업체의 C/O 자율발급 지원을 위해 세관주도하에 HS 6단위기준 가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았으나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부재 및 빈번 교체 등 체계적 관리 소홀
- ③ **장애요인**
 - 산업용 안전장갑 제조과정상 편직기를 통해 일시편성(니팅)되는 것으로 절단공정이 수행될 여지가 없음에도 국내 편성수행만으로도 ②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
 - ※ 한-EU FTA 산업용 안전장갑(HS 6116.10, 6116.93)은 선택기준으로 ①방적(방사) + 편성(니팅)공정 OR ②편성 및 절단 포함 공정 충족 필요
 - 인증받은 협정의 HS 6단위 모든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오인

4 극복방법

- FTA 활용 설명회,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은 HS 6단위라 하더라도 소요원재료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개연성 인지 후 세관에 사전검증을 요청
 - (원산지기준) 低단가품목은 국내방사 및 편성공정 수행, 高단가품목은 비원산지사를 이용하여 편성하는 등 원산지기준 불충족
 - (원산지신고서) 비원산지 물품임에도 원산지·비원산지 구분 없이 하나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작성 → 부적정 발급
 - (원산지증빙서류보관) 담당자 부재·이직시 원산지업무 처리 미흡 → 업무 매뉴얼 마련 및 원산지관리팀 구성으로 체계적 관리
- 既발급한 원산지신고서 오류사항 정정발급 및 사전검증 외 품목에 대해서도 자체 자율점검 실시
- 해외 바이어와 지속적 의견 교환으로 비원산지 원재료 대신 역내산 원재료로 소요원재료 리셋팅

5 활용효과

- 무료 사전검증으로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한 FTA환경 안전 확보
- 2013년 동기 대비 수출실적 77% 증가하였고, 지속적 제품개발 및 디자인 혁신을 통한 국제시장 신뢰 회복으로 거래처 추가 확보
- 수출물량 적기 공급을 위해 생산인력 총원 및 노후 장비 교체 등 공장시설 개선

6 시사점

- FTA활용 업체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한 후 사전검증을 통해 이를 수정하여 FTA활용도 증가 및 사후검증 리스크 제거

05

[FTA 활용 성공기업 비즈니스 모델]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활용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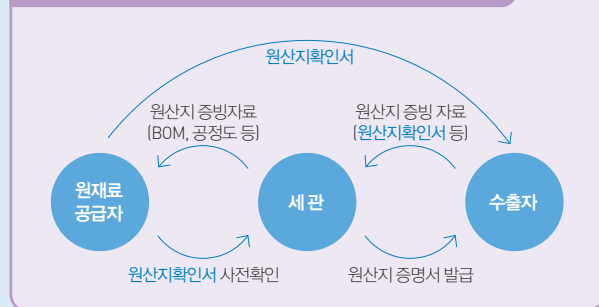
개요

- 원산지확인서 작성 능력이 없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원재료 및 공급처의 개수가 많아 원산지확인서를 확인하는 업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수출자가 활용할 수 있는 모델

비즈니스 모델(체계도)

- 공급자는 원산지 증빙자료를 공신력이 있는 세관에서 직접 제출하여 원산지확인서에 대한 사전확인 받음
- 수출자는 공급자가 제출한 세관장 사전확인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를 신속하게 발급 받음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 제도 활용 모델>



활용효과

공급자	수출자
원산지확인서 신뢰성 향상	[기관]원산지증명서 신속발급
제품정보(원가 등) 노출 위험성 하락*	[자율]원산지증명서 신뢰성향상
원산지 관리 능력 향상	협력사 및 원재료 관리 용이
원산지 검증 사전 대비	원산지 검증 사전 대비

* 세관공무원은 제출된 원산지 증명자료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0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으로 원산지 관리 점검



- ① 기업 및 제품소개**

 - A사는 레버(HS 제8708.99호), 변속기 부품(HS 제8708.40호) 등을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완성차 업계에 수출하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

- ② FTA 활용전 상황**

 - FTA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기로 받기 시작
 - 원산지확인서의 작성방법이나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오류 발생가능성이 상존

- ③ 장애 요인**

 - FTA환경에 적응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해 FTA원산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협력사 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여전히 영세한 규모의 협력사 관리가 문제로 잔존
 - 협력사 관리는 FTA활용을 위한 필수요건이나 다수의 협력사와 거래가 진행되는 기업의 경우 개별 협력사의 원산지관리를 직접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④ 극복 방법**

 - 협력사 중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필수적인 업체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
 - 원산지확인서의 오류 방지를 위해 교육지원과 별도로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인증제'를 활용하여 협력사가 제공한 원산지확인서의 오류를 수정하여 FTA활용 가능성 증진

- ⑤ 활용 효과**

 - 생산품을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의 점검실사에 합격하여 거래처의 신뢰를 확보

- ⑥ 시사점**

 - 협력사 중 원산지확인서 확인 및 관리가 필수적인 기업을 선별하여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인증제'를 활용하여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함으로써 FTA활용 오류 사전 예방

원산지관리사 기출문제 출제경향 분석(2012년~2015년)

국제원산지정보원



1. 원산지관리사 시험 개요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1회 시험은 2010년 6월 치러졌으며, 오래된 자격증은 아니지만 국가공인자격증의 하나인 원산지관리사는 FTA 활용기업에 필수적인 자격증으로 불릴 만큼 인정받는 자격증이 되었다. 2016년에도 총 3회로, 17회(4월 30일), 18회(8월 27일), 19회(11월 26일)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

원산지관리사 시험 과목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출문제를 확인해보고, 개별 시험의 출제경향을 시험을 치르기 전에 대비해보면 시험준비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과목별 시험 출제경향을 속속들이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전략을 확인해 본다. 한편, 2016년 원산지관리사 교재가 개편되어 해당 내용은 기존 교재 내용을 기준으로 출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함을 밝혀둔다.

2. 출제경향 분석

[FTA 협정 및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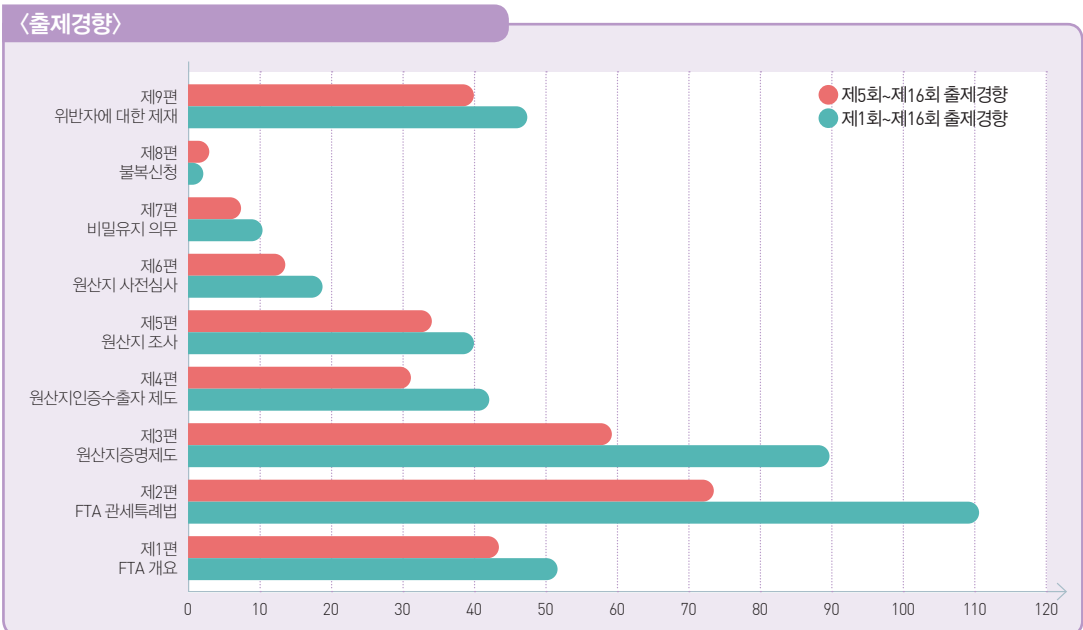
FTA 협정 및 법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출제되었다. 제2편(FTA 관세특례법)에서 24.3%(73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3편(원산지증명제도)에서 19.7%(59문제)가 출제되어 2015년부터 예년보다 출제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제1편(FTA 개요) 14%, 제9편(위반자에 대한 제재) 13.3%, 제5편(원산지조사) 11%, 제4편(인증수출자제도) 10.3% 등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1편의 비중이 예년보다 확대되고 있다.

이 분야들은 FTA 관세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 FTA 활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꼭 숙지하여야 할 내용이 출제되므로 유의하여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제6편(원산지 사전심사) 4.7%, 제7편(비밀유지 의무) 2.3%, 제8편(불복신청) 0.3% 등의 출제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다.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니 주의하여 개념 위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FTA 협정 및 법령”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협정 및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비교하여 학습하고 이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학습전략으로 주효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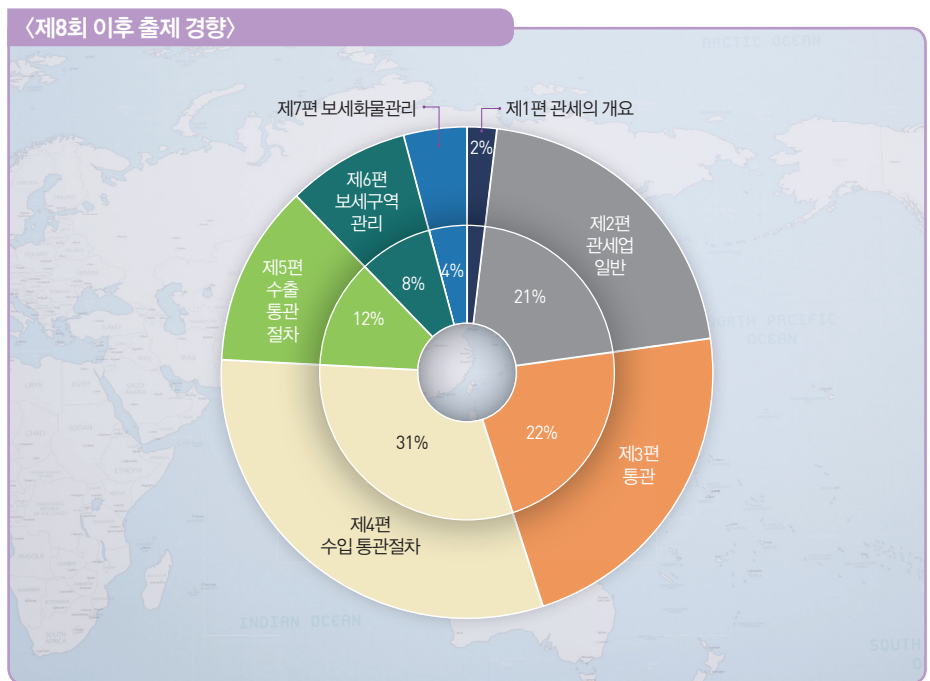
[수출입통관실무]

수출입통관실무는 제4편(수입통관절차)에서 31%(84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제3편(통관)에서 22%(65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들은 실제 수출입통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교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 분야는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제2편(관세법 일반)과 제5편(수출통관절차)의 순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 분야는 각종 FTA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6편(보세구역관리)과 제7편(보세화물관리)는 각각 8%와 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2013년도 수출입통관 교재에 보세제도가 추가되어 2013년도 이전에는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전보다 출제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제8회 이후 출제 경향 참조)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특히 제2편에서는 “과세 및 부과·징수 등”, 제3편에서는 “통관요건”, 제4편에서는 “수입신고”, 제6편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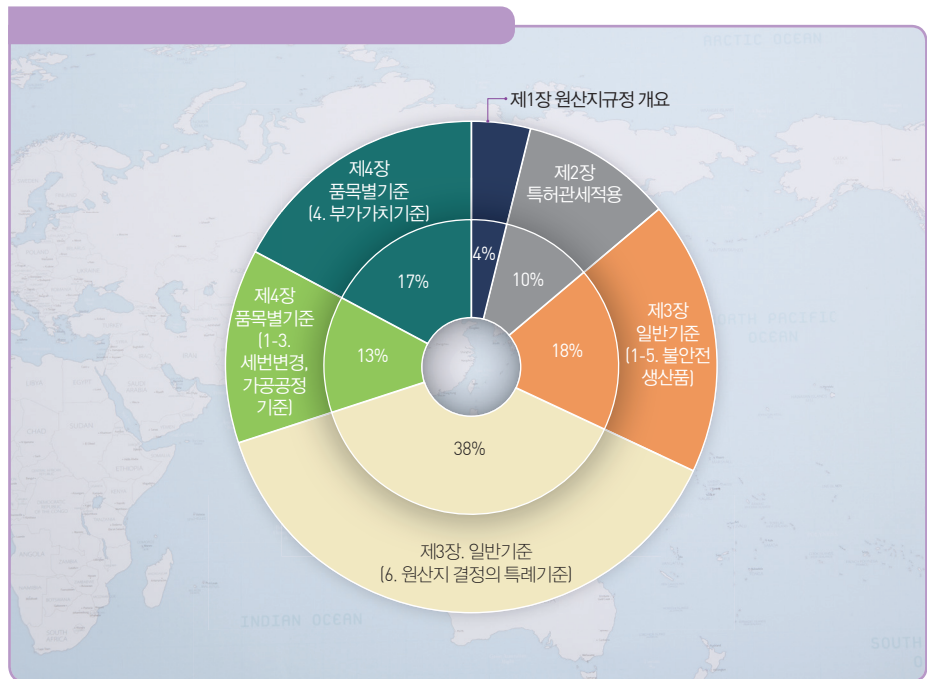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은 제3장 일반 기준 가운데 원산지 결정의 특례(보충)기준에서 38%(114문제)가 출제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제3장 일반기준의 완전생산품·역내생산원칙·충분가공원칙에서 18%(54문제), 제4장 품목별 기준의 부가가치기준에서 17%(51문제), 세번변경기준·가공공정기준에서 13%(41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제2장 특혜관세적용조건 가운데 거래당사자 요건·운송요건 등에서도 매회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이 분야들은 FTA 원산지결정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숙지를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도 높은 출제비율이 지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 과목에서의 고득점을 위해서는 교재와 협정문을 중심으로 전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협정별 차이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숙지와 함께 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본으로 한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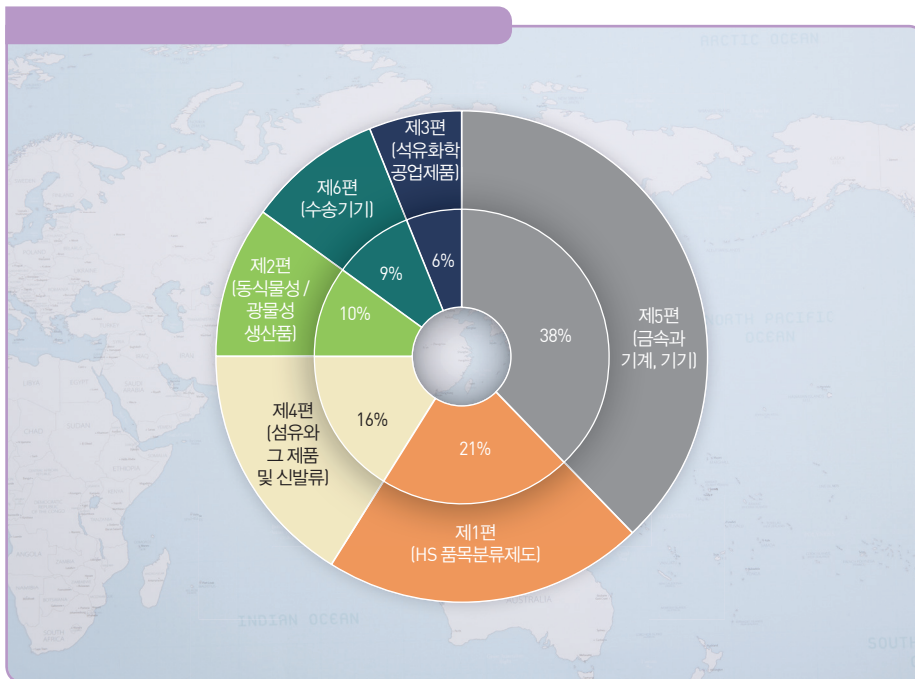
[품목분류]

그간 16회에 걸쳐 출제된 총 400문제의 유형을 분석하면, 제5편(금속과 기계·기기)이 38%(151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다. 다음으로는 제1편(HS 품목분류제도)은 21% (85문제가, 제4편(섬유와 그 제품 및 신발류)은 16%(62문제가, 제2편(동식물성 / 광물성 생산품)은 10%(41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이 분야는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각종 FTA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취급되는 분야이므로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비율이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편(석유화학 공업제품)은 6%(25문제), 제6편(수송기기)은 9%(36문제)로 낮은 비율(6%)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회 꾸준히 출제되고 있으며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향후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특히 제1편에서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편에서는 “동·식물성 생산품과 연관산업 생산품”, 제4편에서는 “섬유와 섬유제품”, 제6편에서는 “자동차”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제5편은 우리나라 수출입규모나 물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므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2016년 원산지관리사·원산지실무사 시험일정 안내

원산지관리사

1. 시험일정

회차	시행 일자	원서접수 기간
17회	4. 30	4. 4 ~ 4. 13
18회	8. 27	8. 1 ~ 8. 10
19회	11. 26	10. 31 ~ 11. 9

2. 주요 내용

- 시험 시기 : 연 3회
- 응시 대상 : 제한 없음
- 출제 형태 : 4 과목별 각각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 기준 : 과목당 100점 기준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실무사

1. 시험일정

회차	시행 일자	원서접수 기간
2회	8. 27	8. 1 ~ 8. 10
3회	11. 26	10. 31 ~ 11. 9

2. 주요 내용

- 시험 시기 : 연 2회
- 응시 대상 : 제한 없음
- 출제 형태 : 2 과목별 각각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 합격 기준 : 과목당 100점 기준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 자격증 발급기준 : 시험합격증 +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이수증*
 - * 국제원산지정보원장이 발행한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교육 이수증
-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전문가로 꿈을 이루게 해준 원산지관리사

“출제경향 파악이 핵심”

윤원채 국제원산지정보원 부산 FTA이행지원팀



“에, 프, 티, 엠, 초, 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원산지관리사 합격자인 윤원채 씨가 품목분류 실무를 공부하면서 사용한 방법이다.
에프티엠초아는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의 HS 4단위 호의 용어인 “에틸렌의 중합제품” /
“프로필렌의 중합체 등” / “스티렌의 중합체” / “염화비닐의 중합체 등” /
“초산비닐의 중합체 등” / “아크릴의 중합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윤원채 씨의 공부비법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원산지관리사 공부비법과
원산지관리사로서 일했던 김미림 씨의 생생한 경험을 들어본다.

서두

안녕하세요? 저는 제15회 원산지관리사 시험 합격자인 윤원채 입니다. 원산지관리사를 공부하면서 FTA에 관한 관심과 관련 기초적인 지식을 쌓았고 이를 기회로 국제원산지정보원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FTA 전문가로서의 꿈을 갖게 되었기에,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정진할 수 있는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더 큰 꿈을 갖게 도와준 원산지관리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제 경향 살펴보기

시험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수록, 우선 기출문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출제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지와 과목마다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산지관리사 시험과목 중 품목분류나 원산지결정기준은 여타 다른 무역 자격증 시험에 출제되지 않기에 무역 관련 학습을 하여왔다 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출제 경향 파악은 더욱 중요합니다.

가령, 많은 분이 생소함으로 인해 학습하기 힘들어하시는 품목분류 실무 과목의 경우에는 주로 제16부 ~ 제18부 부분에서 많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무에서도 기계류 관련 수출입 거래가 활발하기에 이러한 실무적 경향을 시험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7부와 제11부, 최근에는 제1부~제4부 부분에 대한 출제 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출제 경향을 파악한 상태에서 학습하시면 분명 효율적인 학습을 통해 합격에 더 빨리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를 구하는 방법은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구할 수 있지만, 해설이 첨부된 기출문제 모음을 보고, 문제도 풀어보고자 할 시에는 과목별 기출문제집을 FTA 원산지 아카데미 홈페이지(www.ftaedu.or.kr)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별 학습 방법 (총 학습 기간: 약 5주)

- FTA 협정 및 법령 & 수출입통관 실무

이 두 과목을 묶은 이유는 공부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두 과목은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학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FTA 협정 및 법령 과목 공부는 원산지 결정기준 과목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기준 과목 내용을 함께 상기시키며 학습하기 좋습니다. 기체결한 협정 수가 많다고 해서 학습량으로 인해 처음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U, EFTA, 터키의 경우 일부 내용을 제외하곤 거의 비슷하며, 미국, 캐나다 등 페루를 제외한 아메리카 국가들과 맺은 협정 끼리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 협정 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을 우선 정리하시고 숙지하신 뒤, 협정 간의 차이점이나 타 협정과 달리 특이한 내용 부분은 따로 정리하셔서 학습하시면 효율적인 학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출입통관 실무의 경우에는 관세법 부분 중 통관, 보세구역 부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학습을 진행할 시에는 통관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시고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입 신고 → 검색(경우에 따라 사전 심사) → 수리 및 사후 심사”** 이렇게 큰 흐름을 머리에 각인시킨 다음,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보세작업 등 보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관과 연결해 정리하시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흐름을 이해하면서 학습한다면 수출입통관 실무만큼 흥미로운 과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효율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본인만의 학습 방법을 진행하시면 충분히 평균 70점 이상 얻으실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 실무

“에, 프, 티, 엠, 초, 아”

이게 무슨 괴상한 단어냐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의 HS 4단위 호의 용어인 “에틸렌의 중합제품” / “프로필렌의 중합체 등” / “스티렌의 중합체” / “염화비닐의 중합체 등” / “초산비닐의 중합체 등” / “아크릴의 중합체”의 첫 글자를 한자씩 따서 암기한 것입니다.

품목분류 실무는 많은 수험생이 처음 접할 시에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서두에 언급한 “출제 경향 살피기” 학습방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품목분류 실무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제84류, 제85류, 제87류, 제90류 등 기계류, 전자기기, 광학기 기 분야에서 출제빈도가 높습니다. 이후 제11류 의류 부분이나 제39류 플라스틱, 제40류 고무 순으로 출제 빈도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학습하시되, 우선 주 규정이나 호의 용어를 대략 훑어보면서 품목분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중요 주 규정과 호의 용어를 숙지하면서 특히 기계류 관련 류를 학습할 시에는 앞글자를 따서 호의 용어를 암기하시면, 시험장에서도 문제없으리라 생각합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결정기준도 생소함으로 인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특히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한 내용은 여타 무역 자격증 시험에서도 출제되지 않는 부분인 만큼 기존의 무역 관련 전공자들도 처음에는 접하실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처음부터 원산지 결정기준 구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기준안에 기본 원칙과 보충기준이 있고 품목별 기준의 종류인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정의와 더불어 상관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학습하신다면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향한 꿈

앞서 언급한대로 효율적이고 규칙적인 학습을 진행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원산지관리사에 응시하는 상당수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인 걸로 확인된 만큼 미래를 향한 꿈을 안고 본 자격증을 준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격증 하나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의 실무 관련 기본 지식을 쌓는 과정이기에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동차 부품 업체 등 FTA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서는 원산지관리사를 우대해주고 입사 시 가산점도 존재합니다.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이 밝은 미래를 향해 학습에 열심히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수 있도록 선택지를 준 원산지관리사

김미림 원산지관리사 합격자



저는 무역회사 취업을 계획했으나, 비전공자였기 때문에 관련 지식을 먼저 습득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역 관련 교육(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강의한 강사(대학 교수)가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몇 가지 관련 자격증을 추천했는데, 그 중 특별히 추천한 자격증이 바로 '원산지관리사'였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개의 무역 관련 교육을 수강하게 되면서 '관세사'의 꿈을 키웠고, 그 중 알게 된 이 자격증이 관세사와도 꽤 밀접할 것으로 판단하여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 당시 '원산지관리사'는 막 공인 자격증으로 전환 된 시점이었고, 홍보가 지금보다 잘 되어있지 않아 반신반의하며, '국제원산지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습니다. 지금은 원산지관리사 필수 이수교육이 폐지되어 시험응시가 바로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필수요건이던 이수교육(3일, 24시간)을 신청 후 수강했습니다. 그 후 40일간의 독학으로 9회(공인 2회)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원산지관리사로 근무했습니다. '원산지관리사'로서의 업무를 지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 목표는 '관세사'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자격증 공부 중입니다.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원산지관리사'로서 짧은 시간 근무하며, 느꼈던 바를 간단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로 상주관세사와 업무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FTA 관련 업무(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관련 서류 작성 등)를 지원하여 수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있던 곳이 지방이라, 업계종사자들의 인식 부재, 전문 인력 및 정보의 부족으로 FTA 활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A 업체의 담당자는 미국 FTA 원산지증명서(이하 'C/O') 발급을 위해 구매자가 요청한 양식과 비슷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이 담당자는 C/O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 서류가 갖는 중요성과 책임조차 몰랐습니다. 심지어 작성서류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A 업체는 우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수출하였고, 수입상(미국 측)은 수출상(한국 측)이 발급하여 송부한 한-미 FTA C/O를 통해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도 그 해에 1~2차례 정도 한-미 FTA C/O 발급에 관해 문의했고, 해당 C/O를 발급하여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원산지 관리의 체계화(전문화) 및 보편화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산지관리사'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산지 전담인력의 전문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고, 이 밖에도 C/O 발급 및 원산지관리체계 구축뿐 아니라 사후검증도 대비하기 위해서 원산지관리사의 필요성 및 인지도 보급화 역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격증 취득 후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는 취업 관련 정보를 꾸준히 메일을 통해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근무하며 작은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특성화고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사업’을 진행하면서였습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뛰어난 실력은 아니었지만 우연한 기회에 ‘모의고사반’을 운영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학습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기회였습니다.

더욱이 지역적 특성상 무역 관련 직업이 생소할 수밖에 없던 학생들이 이를 통해 원산지관리사, 관세사라는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고, 졸업 후 진로선택에 있어 무역업 종사자로서의 또 하나의 진로 선택지를 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들이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로 기억됩니다.

이렇게 짧지만,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원산지관리사’로서 근무하면서, 절대적인 큰 도움은 주지 못했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체와 학생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비록 시작은 무역 관련 지식이 전무 했던 취업준비생이었지만,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하였고, 자격증취득을 위해 공부했던 부분은 취업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통해 본 목표인 관세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

원산지관리 대행서비스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 관리 토탈 시스템인 FTA-PASS 기능 중 새로운 기능이 신설되었다. 이는 원산지 위탁관리 기능으로 기업의 본점이나 전문개(관세사 등)가 위탁기업의 FTA 원산지 관리 대행업무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다. 해당 기능은 전문개(본사 담당자, 관세사)가 전문가들을 FTA-PASS 상 기업지원메뉴에 등록하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하다. 위탁기업 역시 기업지원 메뉴에서 위탁관리 신청 후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원산지 위탁관리 기능에서는 위탁기업 관리현황, 정보등록, 원산지 판정, 서류발급, 문서유통까지 대행이 가능하며, 서류발급 시 서명권자는 위탁기업에 등록된 사용자뿐 아니라 전문가도 등록이 가능하다.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 FTA-PASS 사후관리팀은 3월에도 서울과 광주에서 FTA-PASS 사용자 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였다. '16년에도 FTA-PASS 사용자 교육은 매월마다 개최될(1월, 12월 제외)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이해, 데이터 작성 실무, 자료 등록 및 원산지 판정, FTA-PASS 실습문제 풀이 등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관련한 접수방법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사후관리팀(☎ 031-600-0770)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미국 통관행정과 우리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이진섭 다함관세법인 관세사

본 글은 관세청에서 발표한 “2014년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자료와 미국 CBP 홈페이지 공표 자료를 기초로 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무역용어집(2008)” 및 KOTRA 등 유관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이 99.5%, 수출의존도는 50%로 상당히 높다(통계청, 2014). 결국, 무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국가인 중국(수출입액의 22%), 미국(수출입액의 11%) 등과 FTA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FTA 발효 5년 차인 미국과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997억 불(2011년) → 116억 불(2014년), 통계청)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 효과에 부수하여 우리 기업들의 미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미국의 통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이와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 미국의 통관행정제도

① 통관관련 주요사항

① Informed Compliance / Shared Responsibility / Reasonable Care

미국 관세법은 1930년대 제정된 “The Tariff Act of 1930”을 기본으로 하여 개정 발전되어 오다가, 1993년 「세관현대화법」^①(the Customs Modernization)의 발효로, 미국 통관제도의 근간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법에는 “informed compliance”과 “shared responsibility” 그리고 “reasonable care”라는 새로운 세 가지 핵심개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CBP(Customs Border Protection)에는 관세행정 규정을 관련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informed compliance)할 의무를 부여하고, 수입 관계자들에게는 합리적 주의(reasonable care)를 통해 미국 법규 준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CBP와 수입관련자들과 책임을 공유(Shared Responsibility)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CBP는 관세행정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Publication)하고 수입자는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준수하며, CBP의 자료요구에 보관 중인 자료를 제출한다. 만약 수입자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다면,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처벌을 완화해 주고 있는데, 합리적 주의의무 이행 여부는 정기적인 컨설팅, 전문가 의견서 보관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② PTIs(Priority Trade Issues)

관세수입이 많거나, 경제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높은 품목을 미리 선정해 놓고, 이들 품목 위주로 CBP 인력과 장비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투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략 감시항목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물품, Import Safety, 지적 재산권(IPR), Textile / Wearing Apparel, 무역협정 적용 물품 등이 있다.

③ Focused Assessment

통관 이후,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 관세평가 · 특혜관세 · 원산지 · 수입요건 등에 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심사를 수입금액이 큰 기업(연간 1천만 불 이상)을 위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① 「북미자유무역협정이행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제6장

④ ISA(Importer Self Assessment) 프로그램

무역법규 준수 기업들을 위한 '자발적 무역촉진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써 CBP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해 스스로가 법규준수도 제고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검증을 받은 기업에는 통관 등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들 기업은 FA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Trade Secu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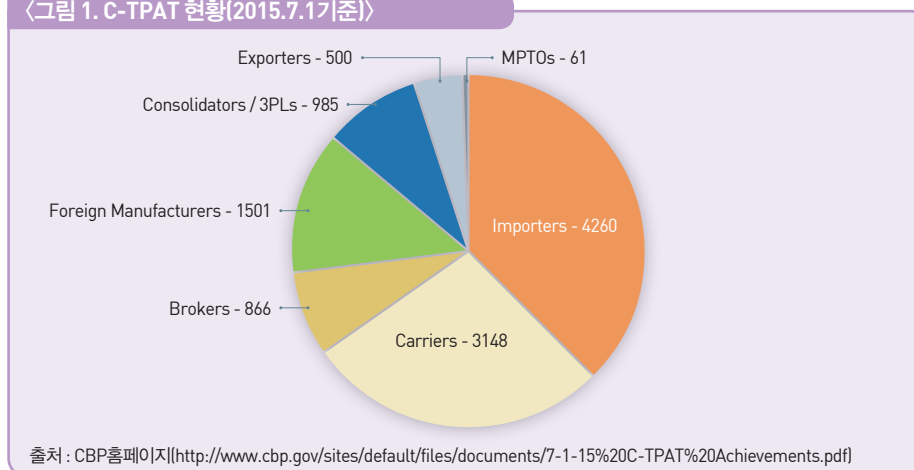
①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9.11사건 이후, 테러 방지를 위해 선사·화물운송주선업자·관세사·수입자·화물터미널 운영업체 등 무역공급망(Supply Chain) 상 당사자들의 법규준수도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업을 법규준수도에 따라 Tier3(최우수등급), Tier2(우수등급), Tier1(보통등급) 3단계로 분류하고, 검사 완화·면제, 우선 화물반출, 검사비용 절감, 벌금경감, 전담관(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을 통한 상담 및 CEE 가입자격 부여 등 혜택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상대적으로 C-TPAT 미 인증업체의 화물은 세관검사 빈도가 높아져 추가비용과 통관지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도 이에 대비해서 국내 AEO 인증이나 미국의 C-TPAT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미국 CBP 발표 자료(2015.7.1.)에 따르면 11,321개의 무역공급망상 업체가 C-TPAT 인증을 받았다.

〈그림 1. C-TPAT 현황(2015.7.1기준)〉



② ISF(Import Security Filing) 또는 “10+2”

2009.1.26. 발효된 미 연방항만보안법(the SAFE Port Act of 2006)에 따라 미국으로 출항하는 화물의 정보를 CBP Form 3461을 사용하여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가 CBP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위험 관리를 실시한다. 위반한 경우, 건당 최대 미화 \$5,000의 벌금과 통관보류 및 검사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표 1. Importer Security Filing and Additional Carrier Requirements(10+2)〉

수입자 신고 항목		운송인 신고 항목
미국행 화물(US-bound Cargo)	환적화물(Transit Cargo)	
<p>▶ 선적 24시간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mporter of Record Number 2. Consignee Number 3. Seller (Owner) name/address 4. Buyer (Owner) name/address 5. Ship to Party 6. Manufacturer (Supplier) name / address 7. Country of Origin 8. Commodity HTS-6 <p>▶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단, 도착 24시간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Container Stuffing Location 10. Consolidator(Stuffer) name / address 	<p>▶ 선적 24시간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Booking Party name / address 2. Ship to Party 3. Commodity HTS-6 4. Foreign Port of Unloading 5. Place of Delivery 	<p>▶ 컨테이너 출항 후 48시간 내에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Vessel Stow Plan(컨테이너 적재계획) <p>▶ 메시지 생성 또는 접수 24시간 내에 신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Container Status Message Data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출처 : CBP홈페이지[<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10%2B2%20presentation.pdf>]

③ 24 Hour Manifest Rule

무역법(Trade of Act of 2002)에 따라 모든 선사는 출항 24시간 전까지 미국 CBP에 적하목록을 송부해야 하고, 이를 통해 CBP는 우범 화물을 선별(Cargo Selectivity)한다.

〈표 2. 미국행 화물 - 미국 CBP(AMS) 적하목록 전송〉

Vessel	24 hours (before lading in foreign) non-bulk; 24 hours before arrival bulk
Air	4 hours prior to arrival. "Wheels up" from NAFTA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above the equator
Rail	2 hours prior to arrival at 1st US port
Truck	1 hour non-Free and Secure Trade (FAST) 30 minutes FAST prior to arrival at 1st US port

출처: 미국 CBP "FREQUENTLY ASKED QUESTIONS" Inbound - Transmission Received By CBP in AMS

④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해외 Port에서 미국으로 운송되는 선적화물에 대해, 출발 전 CBP에서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고 위험 화물에 대해서는 미리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부산항을 포함하여 전세계 50여 개 항구에서 CSI가 시행 중에 있으며 미국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약 80% 이상이 점검되고 있다.

③ 안전과 무역촉진의 조화

①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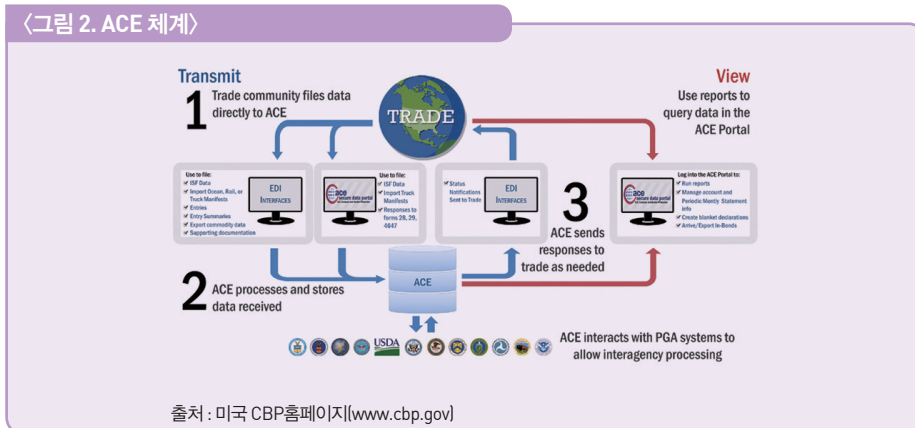
미국의 통관절차는 약 47개 연방기관과 약 200여 개의 수출입 관련 종이 서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었다. 따라서 절차도 복잡하고 각종 서식도 통일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미 CBP는 비효율을 제거하고자 수출입 관련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ACE)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였고, 미 대통령 행정명령(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에 따라 2016년 12월에는 ACE의 Single Window를 통해 수출입화물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업무체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ACE는 세관의 기존 업무처리시스템(ACS: Automated Commercial System)을 변화된 무역환경에 적합하도록 재설계한 것으로서, CBP 이외에 수출입에 관련된 다른 정부기관(PGAs: Partner Government Agencies) 및 무역업계(Trade Community)를 포함하는 단일의 창구(Single Window)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2. ACE 체계>



② **CE&E(Centers of Excellence and Expertise)**

미국 CBP가 “21st Century Trade” 전략 중 “Trade Transformation Initiatives”로써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통관지 세관별 수입물품을 심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들의 불편과 증복을 줄이기 위해, 산업 분야별로 심사전담 창구를 지정하였다. 전자·의약·자동차·석유 등 주요 품목별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신뢰프로그램(Trusted Trader Program)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는 수입검사·사후심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표 3. CE&E 산업분야 및 소재지〉

산업분야	센터 소재지
IT & Consumer Electronics	Los Angeles
Pharmaceutical, Health & Chemicals	New York
Automotive& Aerospace	Detroit
Petroleum, Natural gas & Minerals	Houston
Agriculture & Prepared Products	Miami
Apparel, Footwear & Textiles	San Francisco
Base Metals	Chicago
Consumer Products & Mass Merchandising	Atlanta
Industrial & Manufacturing Materials	Buffalo
Machinery	Laredo

II. 미국의 통관 절차

① 정보 전송 및 화물반입

수입자는 화물이 미국 내에 도착하기 전까지 선사/항공사를 통해 적하목록(Manifest) 및 ISF(Import Security Filing) 정보를 CBP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통관절차(Entry Process)

화물도착 후 수입자 등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Entry(화물반출신고)와 Entry Summary(납세신고)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두 신고가 분리되어 진행되나, 수량할당(Quarter)품목 등의 경우에는 Entry와 Entry Summary가 결합하여 진행된다.

분리방식의 경우에는 'Entry → 화물검사 → 화물 반출'의 과정을 거친 후 반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세 납부와 함께 Entry Summary를 하나, 결합방식의 경우에는 Entry와 Entry Summary를 동시에 진행한 후 세관의 검토를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필요한 경우 물품검사를 거쳐 화물이 반출된다.

이후 본 글에서는 일반적 경우인 분리신고방법을 전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① 화물반출신고(Entry)

① 화물반출 절차

화물이 도착하면 15일 이내에 CBP Form 3461(Entry /Immediate Delivery)을 통해 화물 반출신고를 한다. 신고 시에 적하목록(Entry Manifest, CBP Form 7533), 상업 송장, 포장명세서(필요시), 상품 수입허가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Entry와 Entry Summary는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를 통해 가능하다. ACE는 국내 Uni-pass와 같이 인터넷방식으로 화주들이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② 수수료

H.M.F (Harbor Maintenance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두사용 요금으로 FOB 가격에 0.125%를 부과 • Ocean Shipment 해당, Air Shipment 해당하지 않음. • 동 수수료는 모든 국가에 적용
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에서 부과하는 Processing Fee로 통관 · 화물반출에 소요되는 인건비,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 • Ocean/Air Shipment 모두 해당 • 수입가격의 0.3464 % 부과 : 최소 \$25, 최대 \$485 • 한-미 FTA에서 수수료 면제를 규정
화물검사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P의 화물검사에 대한 수수료로서 수입자 부담원칙 · 검사수수료는 다양하게 적용

③ Custom Bond

수입자는 반출허가를 받으려면, 통관 후 수입 제세 및 수입요건 불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을 담보할 수 있는 Custom Bond를 CBP에 제출하여야 한다. Bond에는 Single Transaction Bond와 Continuous Bond가 있다.

Single Transaction Bond	Continuous Bo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건별로 제공하는 Bond로 빈도가 낮은 수입자가 사용 (담보액)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관세, 제세 및 각종 수수료를 합한 가격, 타 기관 요건확인 필요 물품은 신고가격의 3배 Bond 가액 대비 약 3.5%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번 구입으로 1년 동안 해당 수입자의 모든 수입 물품에 적용 가능한 Bond (담보액) 최소 \$50,000 또는 직전 12개월간 납부한 관세, 제세 및 각종 수수료 합계액 10% 담보 Bond 가액 대비 약 1% 수수료

② **물품검사 등(EXAMINATION, SAMPLING AND TESTING OF MERCHANDISE)**

CBP에서는 ISF 정보, 적하목록정보, 수입자의 Entry 정보, 수출자 등 정보를 분석(Cargo Selectivity Module)하여 물품의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물품검사(examination)는 화물반출신고(Entry)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세관장(Port director)은 관세법 등 관련 법령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관세 목적상 물품의 가치 및 물품의 과세 여부
- 적정한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 특별표지 또는 Labelling 여부 확인
- 수입 금지품목, 불법 마약 여부 확인
- 상업 송장과 물품의 정확성 여부, 수량의 과부족 여부 확인

〈표 4. Examination 유형〉

검사유형	주요기능
VACIS(Vehicle and Cargo Inspection Syste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 개장 없이 컨테이너 내부를 투시하여 화물검사 • 통상 24 - 72시간 소요
CET(Contraband Enforcement Tea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화물, 밀수, 대량파괴무기 및 금지품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 • Customs Examination Station에 화물이 운송된 후 육안 검사
MET(Merchandise Examination Team)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전문관(Import Specialist)에 의해 실시되는 검사 • random에 기초하여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를 점검 • 세액·수입요건·원산지·품목분류 및 IPR 등을 심사
USDA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해충, 목재 포장재 · 팔레트 포장의 적정 여부 등을 검사 • 종류 : Tailgate exam, Intensive exam, X-ray exam 등
FDA Ex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의약품 등에 대해 FDA의 검사

③ 납세신고(Entry Summary)

납세신고는 CBP의 관세액 결정, 요건사항 충족 여부 확인 및 통계 목적상 필요한 서류를, 수입자가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입자 등이 물품 반출 후 10일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HS코드, 과세가격, 관세액 등을 결정하고 추정된 관세를 납부함과 동시에 CBP Form 7501(Consumption Entry)/7502(Warehouse Entry) 등을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사후세액심사(Post Entry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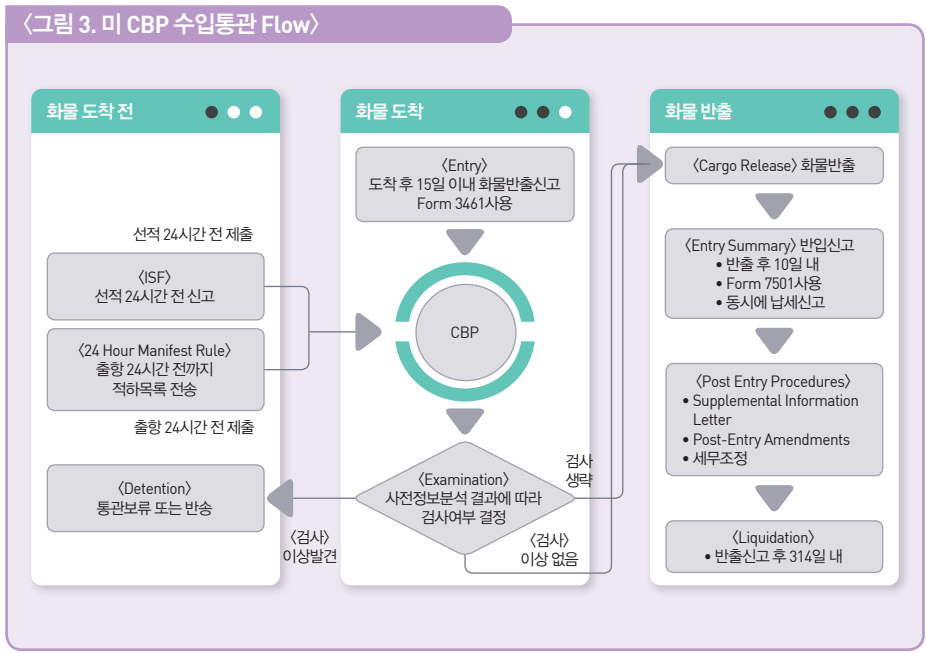
CBP의 수입전문관(Import Specialist)은 신고된 품목분류, 과세가격, 납부세액, FTA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 등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산(Liquidation)

CBP는 심사결과 납부세액과 수입자가 계산하여 납부한 관세를 비교하여 Entry로부터 1년 이내에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 부족세액은 추가징수 한다.

③ 서류보관(Record Keeping)

수입신고와 관련된 모든 서류, 운송서류, 환급 관련 서류 및 관세, 제세 및 수수료 납부 서류 등을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Ⅲ. 주요 수입물품 요건확인 기관(PGAs)

① 개요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통관과 관련하여서 한-미 FTA 발효로 관세율은 낮아졌지만, 부처별로 규정된 통관 요건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Security와 Safety를 명분으로 미국 내에서 비관세장벽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는 수산물·식품·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써 가장 수입안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기관이다.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강력한 식품안전단속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해외소재 식품제조시설은 매 짝수년도 마다 FDA에 등록하고 식품의 선적정보를 FDA에 사전에 전송해야 하며, 또한 해외에서 제조되는 식품은 식품안전지율기준(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FDA는 식품수입자들로 하여금 해외생산시설이 미국의 위생 및 식품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에서 생산을 수행하는지 검증하도록 하는 FSVP에 대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고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외국 정부·민간기관 및 개인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해외생산시설에 대해 제3자 검증을 할 수 있는 해외식품 안전 제3자 인증제도(ATPA)도 시행될 예정이다.

수입식품 안전검증제도(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 미국 식품 수입업체의 해외공급자 검증을 의무화하였고, 검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 미국 식품수입자의 주요의무
 - ① 위험요소 분석(Hazard Analysis) :
 - ② 식품 위험 및 해외공급자 위생활동평가(Evaluate Food Risk and Supplier Performance)
 - ③ 해외공급자 검증(Supplier Verification)
 - ④ 시정조치(Corrective Action)
- 예외 수입식품 : HACCP(위험요소 중점관리기준)대상 식품, 타 규제대상 식품, 연구용 또는 개인 섭취용 식품, 가공 후 재수출 예정 식품 등

출처: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www.globalwindow.org) / 해외시장뉴스

또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공공보건안전 및 바이오테러 대응법」(The 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에 따라 FDA에 제조시설 등록하고, 수입식품 선적 전에 생산지, 선적국가, 반입예정항구명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화물은 4시간 전, 해상화물은 8시간 전에 FDA에 보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통관이 보류되거나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

〈표 5. 미국 내 농수산 식품류 수입요건 확인 기관〉

구분	FDA	APHIS	FSIS
소속	보건부	농무부	농무부
업무	가공식품 및 농산물	동물성제품, 식물성제품	육류, 가금육류

③ USDA APHIS / FSIS

농수산식품 검역은 품목별로 농림부 소속의 APHIS와 FSIS에서 진행한다.

미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의 동식물검역소(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는 검역을 통해 브루셀라, 광우병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은 수입된 육류, 사육조류 및 육류가공품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을 한다.

수입통관 시 동물성 제품에 대해서는 Sanitary Certificate, 식물성 제품에 대해서는 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요구하며 육류, 사육조류 등은 FSIS Health Certificate를 요구한다.

④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②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부적절한 소비자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제품이라 하더라도 FDA에서 관리하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과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에서 관리하는 항공기, 해안경비대의 선박, EPA의 살충제 등 다른 연방기관에서 규제하는 품목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CPSC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7가지 기본법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소비자제품 안전법 (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 2) 연방유해물질법 (FHSA; Federal Hazardous Substances Act)
- 3) 인화성 직물법 (FFA; Flammable Fabrics Act)
- 4) 중독방지 포장법 (PPPA;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 5) 냉장고 안전법 (RSA; Refrigerator Safety Act)
- 6) 수영장 및 스파 안전법(VGBA; Virginia Graeme Baker Pool and Spa Safety Act)
- 7) 아동 휘발유 화상 예방법 (CGBPA; Children's Gasoline Burn Prevention Act)

② 출처 : 해외인증정보시스템(<http://www.certinfo.or.kr/viewCert.do?certNo=128#dt21>)

특히 CPSIA에서는 수입업자 등에 미국 내 유통 중인 상품에 대한 안전성 및 유해성을 사전에 인증을 받거나 등록한 후 유통시키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주요 규제 및 시험항목은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함유된 납, 3세 이하 유아용품에 대한 small part, 8세 이하 용품 중 끝이 날카로운 물품, 어린이용 완구 등이 있다.

⑤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는 미국 통신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주요 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파 발생장치,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이들의 부품 등은 FCC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표 6. FCC 인증 구분〉

Cert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도적으로 전자파 에너지를 사용하는 송신기 및 일부 수신기 등과 같이 전자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 대상 FCC 등록 지정 시험소 발행 성적서와 제반서류를 갖추어 FCC 확인 반드시 FCC ID를 제품에 부착, 사용자 설명서에 해당 문구 삽입
Declaration of Conformity(D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적용 NIST(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에서 운영하는 NVLAP(National Voluntary Laboratory Accreditation Program)에 의하여 인정된 시험소 또는 MRA에 의해 인정된 시험소에서 FCC 규정에 따른 적합성 시험을 한 후,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에 의해서, 별도 승인 없이 제품에 FCC ID가 아닌 FCC 마크 부착, 설명서에 해당 문구 삽입
Verif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EMI 발생 제품 중 전반적으로 제품 Noise Level이 안정되어 통신기거나 타제품의 동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품이 대상 FCC 규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제조자가 직접 FCC 문구 부착, 설명서에 해당 문구 삽입
Reg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교환 회신망 등에 직접 접속되는 제품 대상 접속에 의한 위해로 공중망 등의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된 시험소에서 시험 후 발행된 성적서와 제반서류를 갖추어 FCC의 확인을 받는 인증제도 FCC 부여 등록번호를 절차에 따라 제품에 부착, 설명서에 해당 문구 삽입

출처: 국제공인시험기관 코스텍(<http://www.kostec.org/foreign/fcc.php>)

⑥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환경안전기준을 정하고 독성물질 및 폐기물질을 관리하고,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규제한다.

특히 자동차 또는 엔진, 살충제, 자원보존 및 재생법(RCRA: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따른 폐기물, 독성물질통제법(TSCA: 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에 따라 규율되는 화학물질 등의 수출입은 EPA의 규제대상이다.

IV. 미국 내 통관 보류 현황 및 사례별 시사점

① 한국 농수산물 미 FDA 통관보류현황^③

한국산 식품의 미국 FDA 통관보류가 2010년 이후 식품안전현대화법의 개정에 따른 검역강화로 보류 건수가 증가하였다가 2013년 일시 감소하였으나 2014년도에는 FDA의 검사강화로 보류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표 7. 미 FDA 한국 농수산물 통관보류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196	403	450	249	309

출처 : aT center Los Angeles, "2014년도 한국 농수산물 미국 FDA 통관보류현황" 2015

2014년 통관보류 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료(85건), 멸치(54건), 수산물(58건), 기타 농산물(52건), 과자류(42건) 순이고 위반사유별로 보면 표기누락(271건), 유해물질 함유(79건), 비위생적 제조(68건), Labelling 표기 불량 또는 허위표기(62건), 저산성 식품 미등록(26건) 순이다.

미 FDA는 주요 통관제한 대상품목 및 위반 수출업체 명단을 FDA 홈페이지 'Import Alert'에 공개한다. 또한, Red List에 등재된 기업은 리스트에서 빠지기 어렵고 통관 시마다 정밀검사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례별 시사점

① 멸치·조기

미 FDA는 2011년 수입경보(Import Alert) 16-74에서 염장·건조·훈제·숙성·절임 등의 가공 전에 내장을 제거할 것을 공표했고, 내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생선에 대해서는 검역 없이 자동억류하였다. 다만, 길이가 5인치 미만인 생선에 대해서는 자동억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2월부터는 수입 위생 기준을 강화하여 크기와 관계없이 내장을 전부 제거하거나 HACCP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하였다.

2014년 한국 수출업자와 LA지역 한인 수입업체가 미역과 김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똥을 제거하지 않은 마른 멸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가 있다.

또한, 한국산 조기에 대해 HACCP 증명을 받아 수입 신고하였으나 검사결과 위생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결국 반송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 수입경보(IA: Import Alert) : FDA가 수입물품 중 안전성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시장에 해당 사실을 경보. 대상 물품은 통관 시 자동 억류

③ aT center Los Angeles, "2014년도 한국 농수산물 미국 FDA 통관보류현황" 2015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2 인삼엑기스

캔으로 포장된 인삼엑기스 제품은 LACF(Low Acid Canned Food: 저산성 식품) 해당 물품임에도 HACCP증명서 없이 수입하려다 적발되었다. 저산성식품은 pH4.6 이상 수분활성도 0.85 이상의 식품으로써, 미국으로 선적되기 전에 밀봉 포장 식품 제조시설 및 공정 과정을 등록해야 한다.

3 아이스크림

식품 내 알레르기(allergy)를 유발하는 물질(major food allergen)이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 알레르기 Labelling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콩가루가 포함된 아이스크림에 표기를 누락하여 수입하였다가, FDA에서 이를 적발, 회수·폐기 처분하였다. 주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조개류, 견과류, 밀, 땅콩, 대두 등이다. 또한, FDA에서는 제품에 땅콩 자체가 함유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제품을 생산한 공장에서 땅콩을 원료로 다른 제품을 생산한 경우 그 내용도 표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4 자외선 차단제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입 전에 제조업체는 미리 FDA에 일반의약품(NDC)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한국의 제조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되었다. 따라서 국가별로 분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국 수출기획 단계에서 이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

5 과자류

미국으로 과자류를 수출 시 품명을 한국 상품명 그대로 영어식으로 표기하거나 뜻을 알 수 없는 영어로 번역하여 표기함에 따라 FDA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빵튀기를 Rice Cracker 또는 Rice Snack이라고 표기하는 잘못된 표기이다. 이는 Rice Crispy 또는 Korean Style Rice Crispy라고 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6 의약품 및 의료기

한국에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 관련 기관의 인증 없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Labelling이나 전단지에 효능 또는 치료 효과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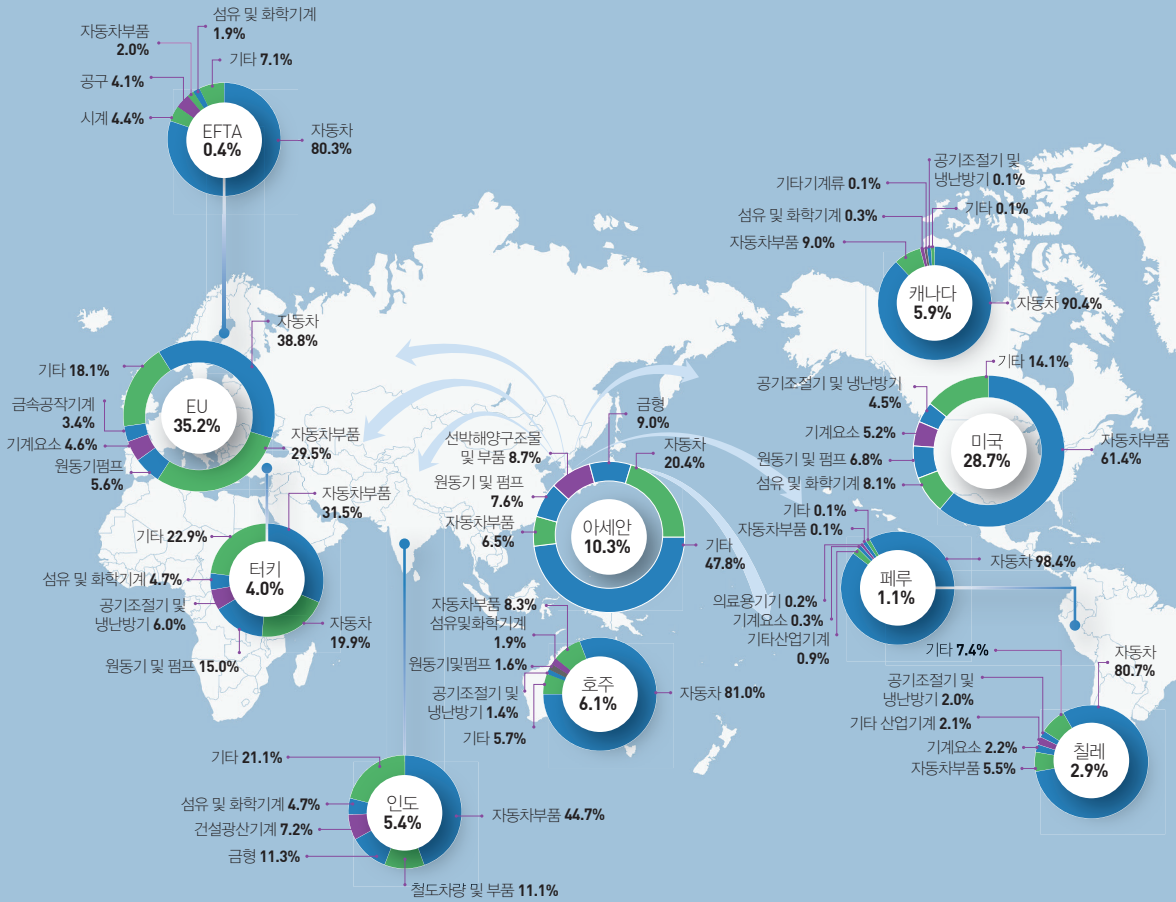


FTA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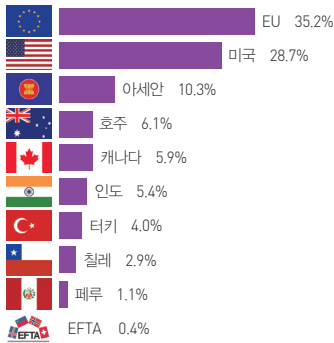
지도로 보는 2015 FTA 특혜대상수출입실적(1~12월)

수출 기계류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43.3%	56.7%	100%



협정별 기계류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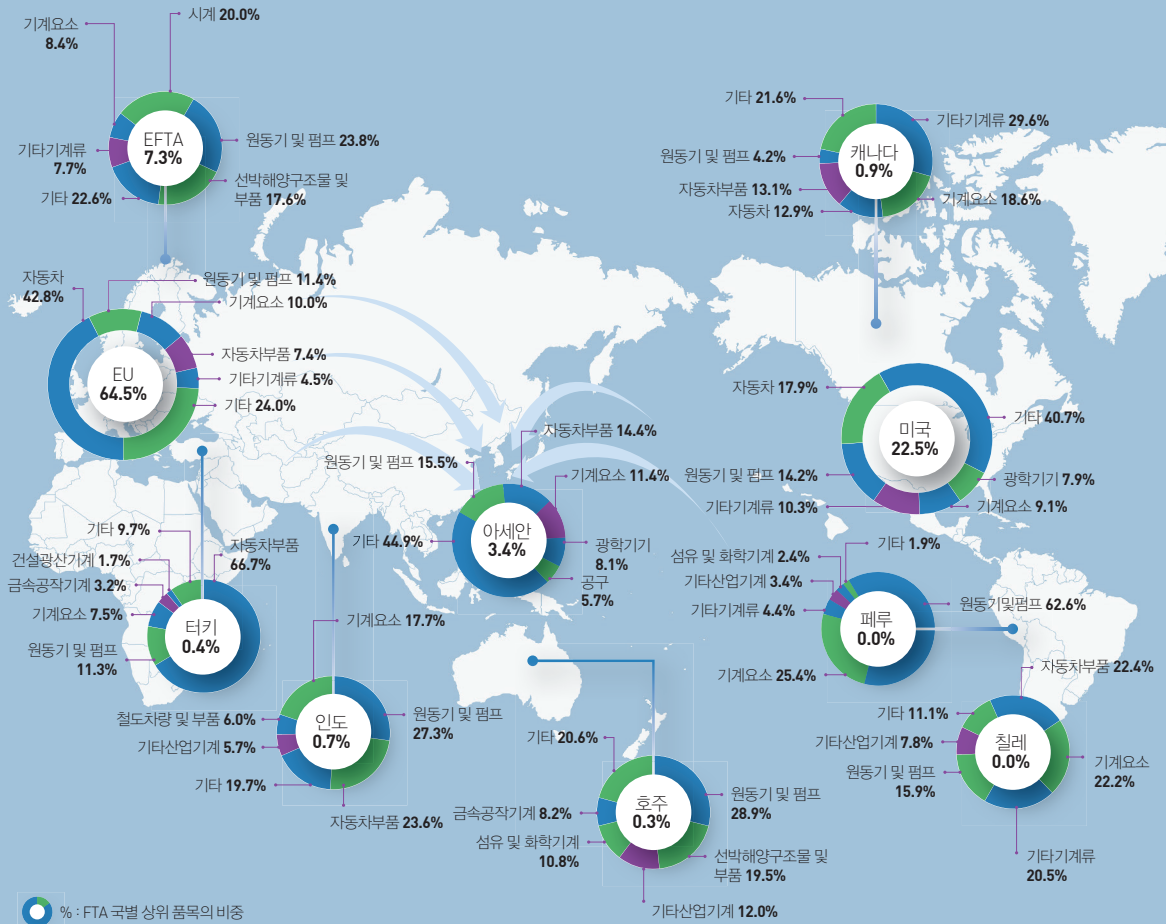
기계류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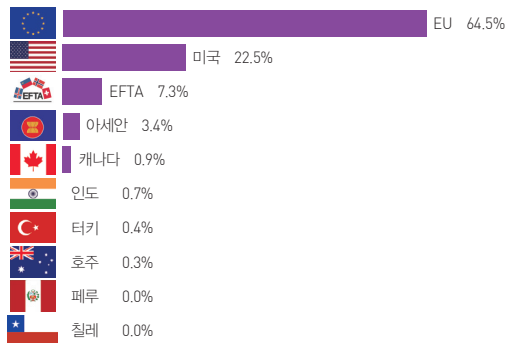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부품	33.6
2	자동차	31.0
3	원동기 및 펌프	5.5
4	기계요소	4.1
5	섬유 및 화학기계	3.6
6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3.3
7	금형	3.2
8	금속공작기계	3.0
9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2
10	기타 기계류	2.0

수입 기계류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71.0%	29.0%	100%



협정별 기계류 특혜대상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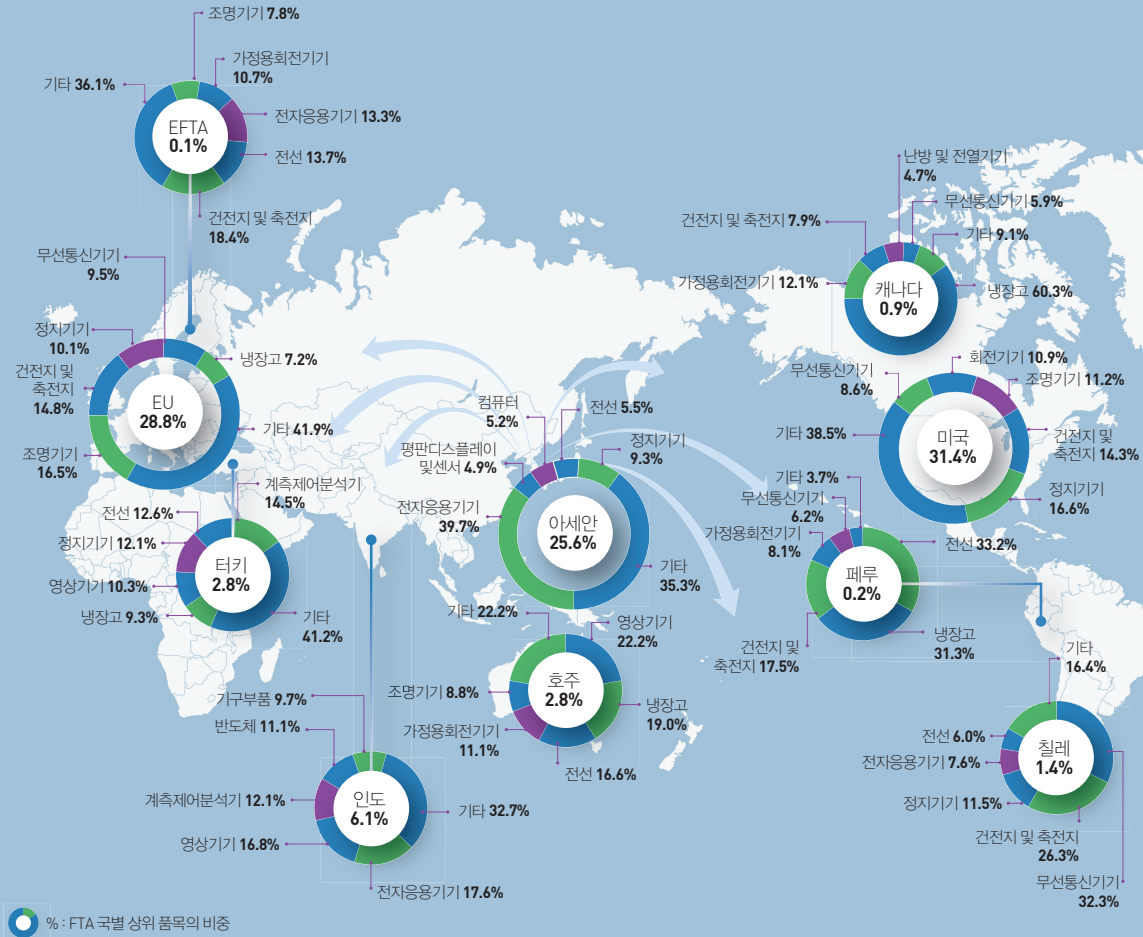
기계류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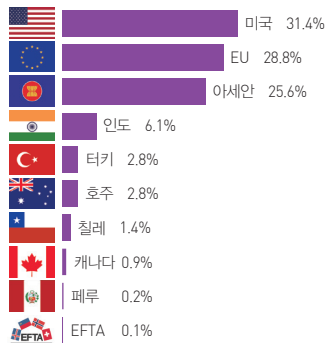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자동차	31.8
2	원동기 및 펌프	13.2
3	기계요소	9.8
4	자동차부품	7.0
5	기타기계류	6.2
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4
7	광학기계	3.5
8	기타 산업기계	3.1
9	섬유 및 화학기계	2.8
10	금속공작기계	2.1

수출 전기전자제품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22.1%	77.9%	100%



협정별 전기전자제품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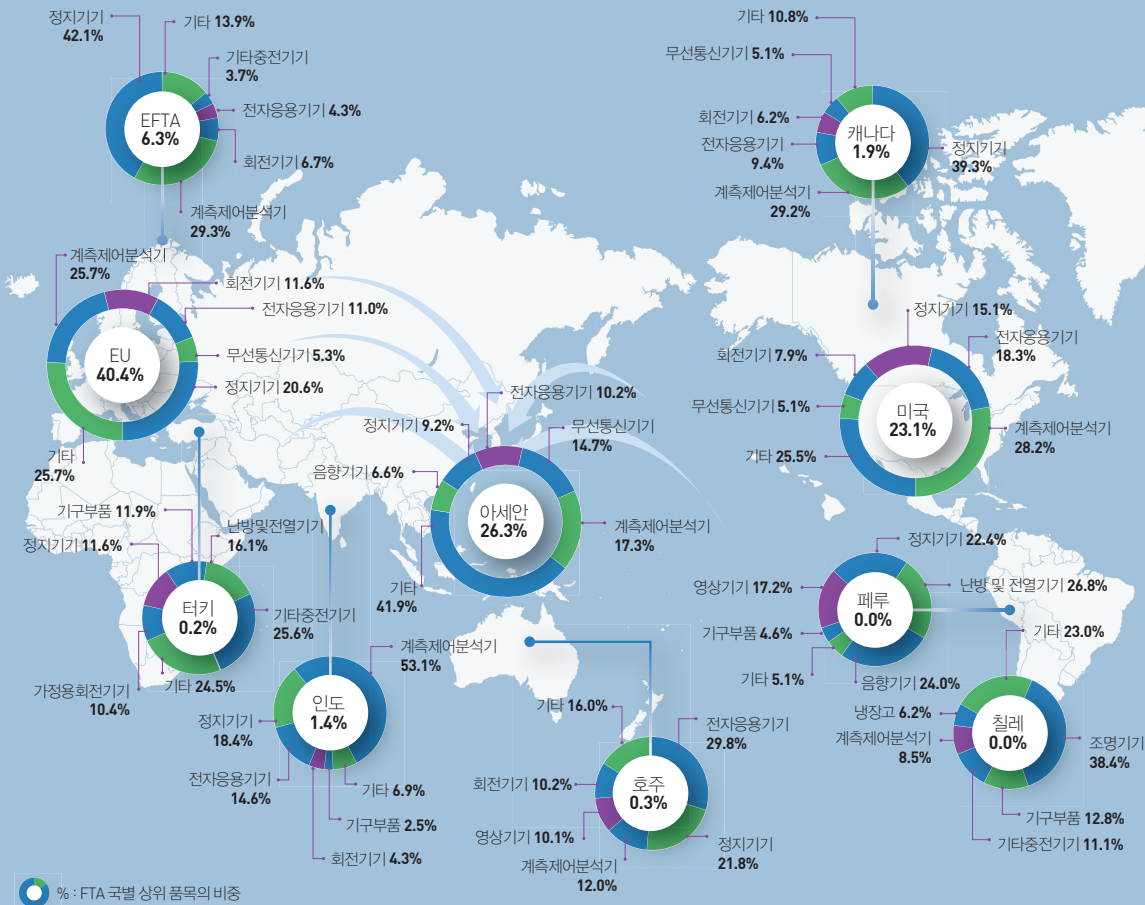
전기전자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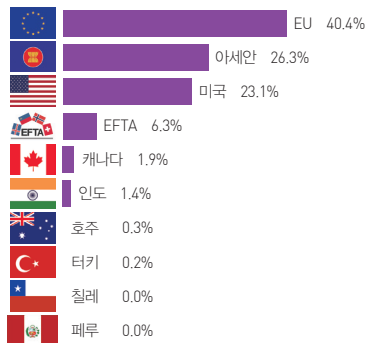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전자응용기기	13.3
2	정지기기	11.3
3	건전지 및 축전지	10.2
4	조명기기	9.6
5	무선통신기기	7.5
6	계측제어분석기	6.1
7	회전기기	6.0
8	전선	4.3
9	가정용회전기기	4.3
10	음향기기	4.2

수입 전기전자제품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39.2%	60.8%	100%



협정별 전기전자제품 특혜대상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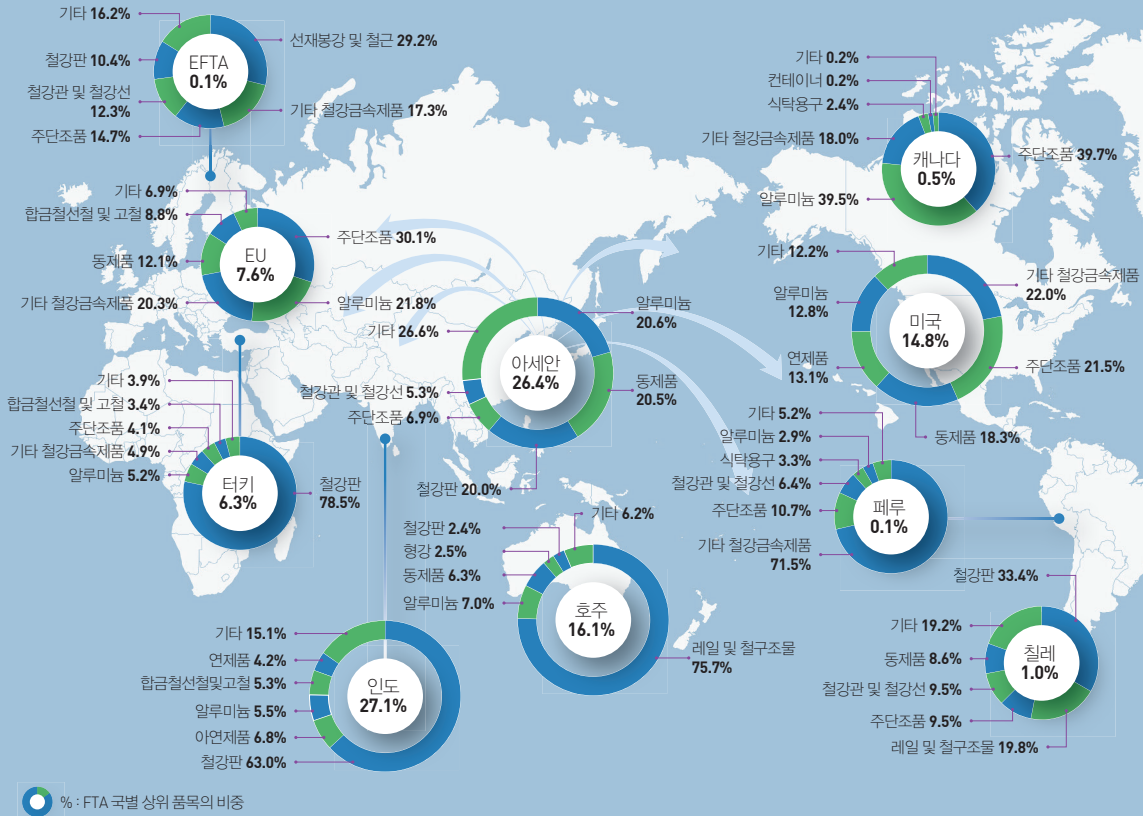
전기전자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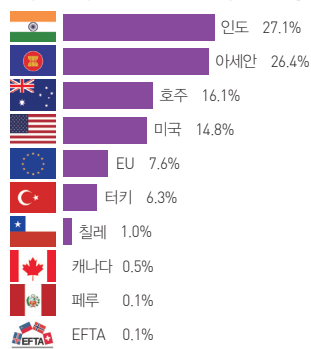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계측제어분석기	24.7
2	정지기기	18.0
3	전자응용기기	12.1
4	회전기기	8.0
5	무선통신기기	7.5
6	기타중전기기	3.9
7	기구부품	3.4
8	전선	3.3
9	음향기기	2.7
10	조명기기	2.4

수출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39.9%	60.1%	100%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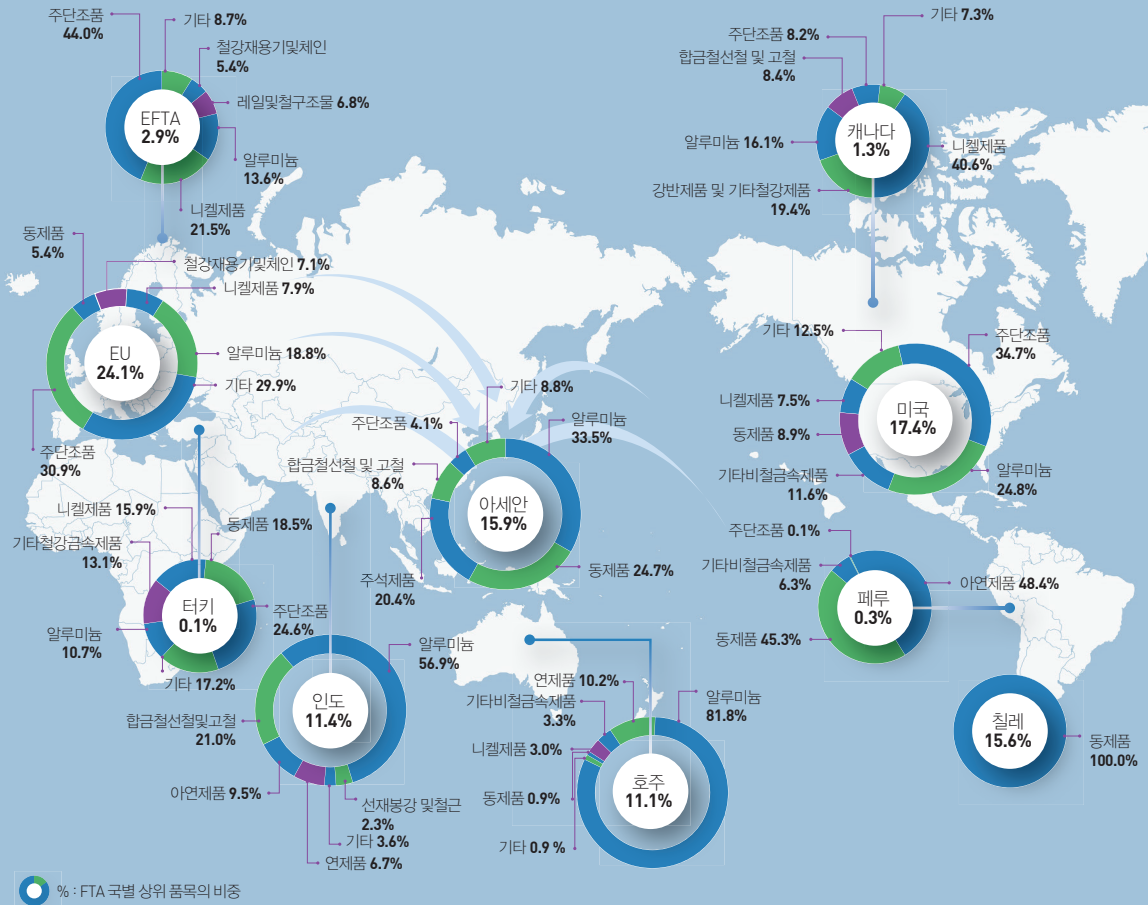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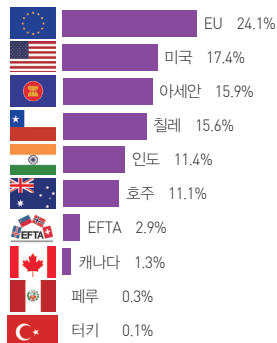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철강판	28.1
2	레일 및 철구조물	13.4
3	알루미늄	12.2
4	동제품	10.6
5	주단조품	9.0
6	기타철강금속제품	7.3
7	연제품	4.0
8	합금철선철 및 고철	3.7
9	아연제품	2.7
10	철강관 및 철강선	2.6

수입 철강금속제품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62.9%	37.1%	100%



협정별 철강금속제품 특혜대상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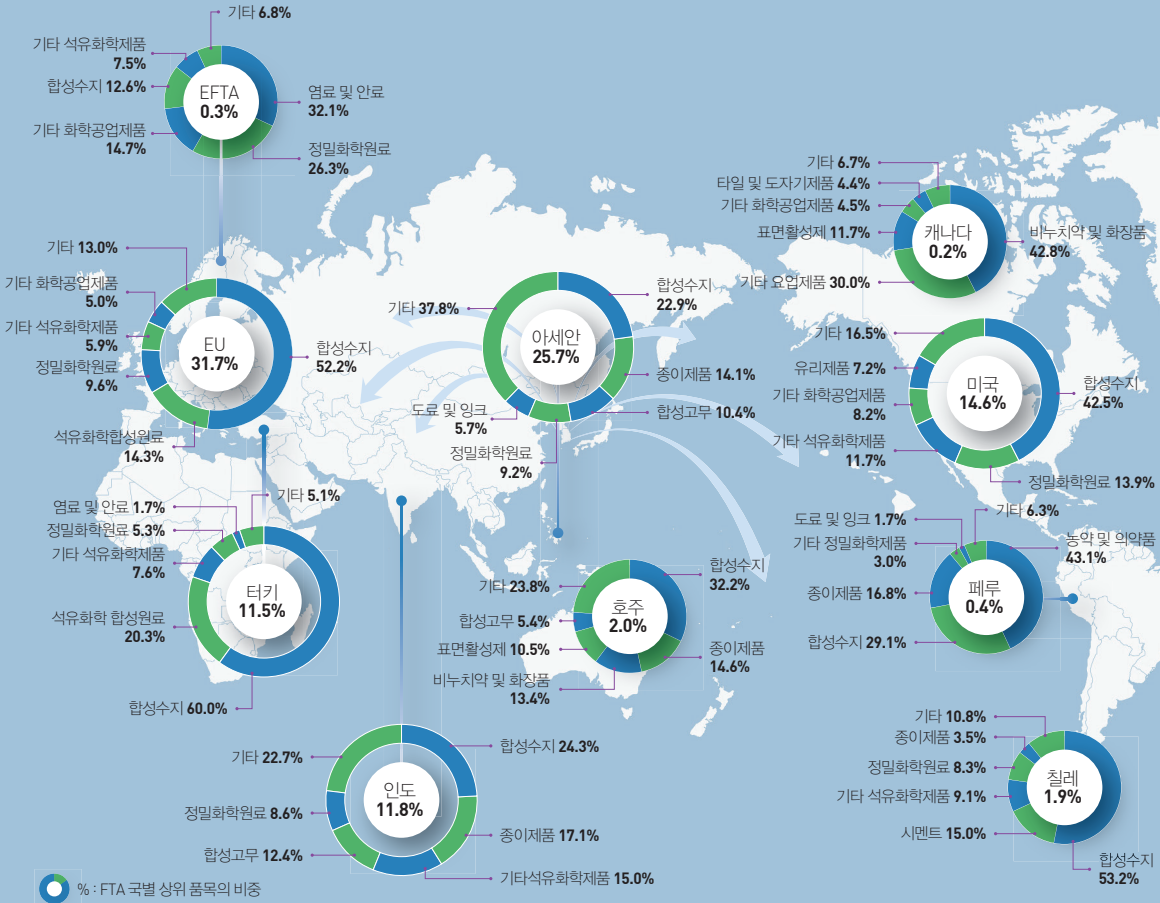
철강금속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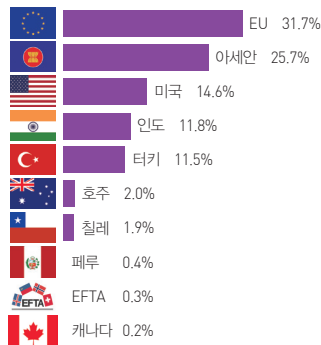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알루미늄	30.3
2	동제품	22.7
3	주단조품	15.7
4	니켈제품	4.7
5	합금철선철 및 고철	4.6
6	기타비철금속제품	3.6
7	주석제품	3.4
8	철강재용기 및 체인	2.5
9	연제품	2.3
10	기타철강금속제품	2.2

수출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55.7%	44.3%	100%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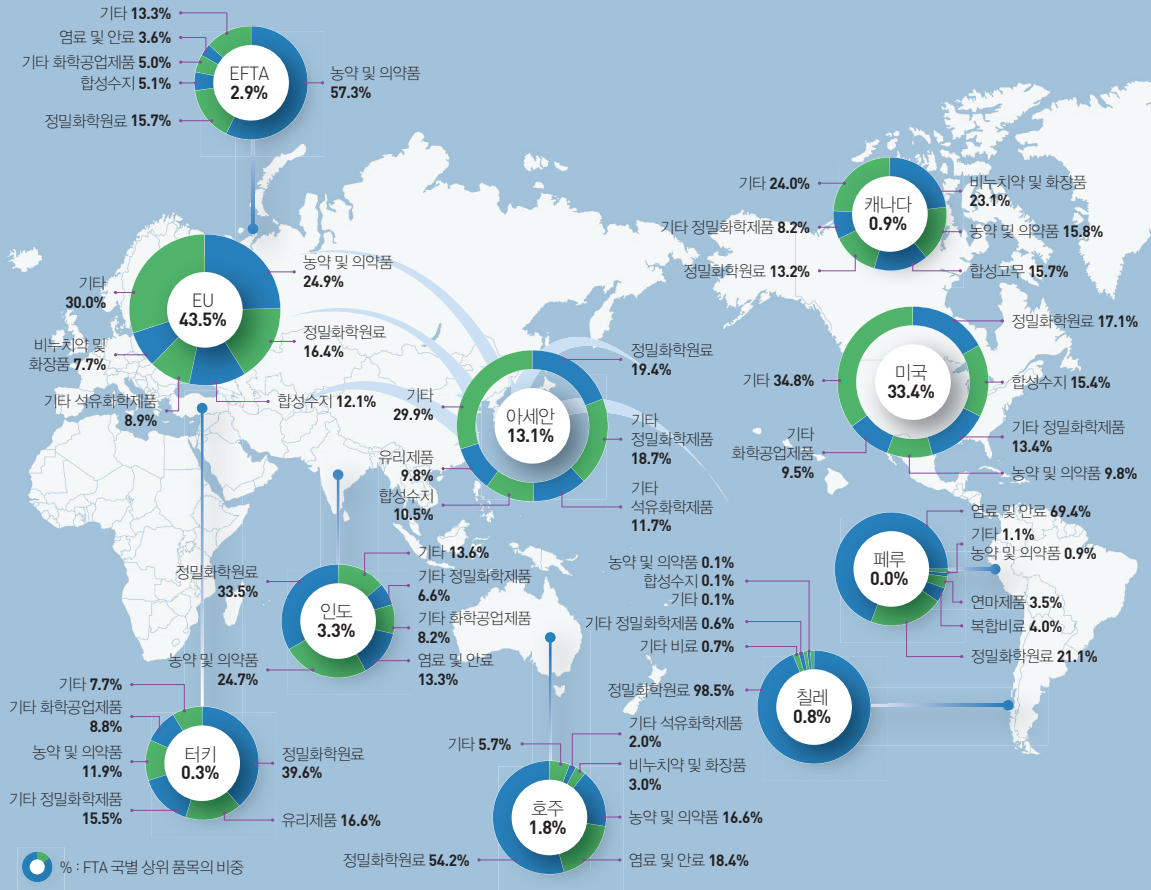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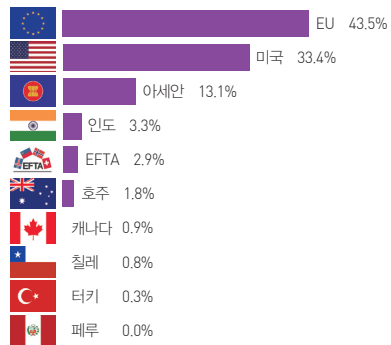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합성수지	40.1
2	정밀화학원료	9.4
3	기타석유화학제품	7.4
4	석유화학합성원료	7.1
5	중이제품	6.1
6	합성고무	4.3
7	기타화학공업제품	4.2
8	기타정밀화학제품	3.5
9	농약 및 의약품	3.0
10	유리제품	2.4

수입 화학공업제품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76.4%	23.6%	100%



협정별 화학공업제품 특혜대상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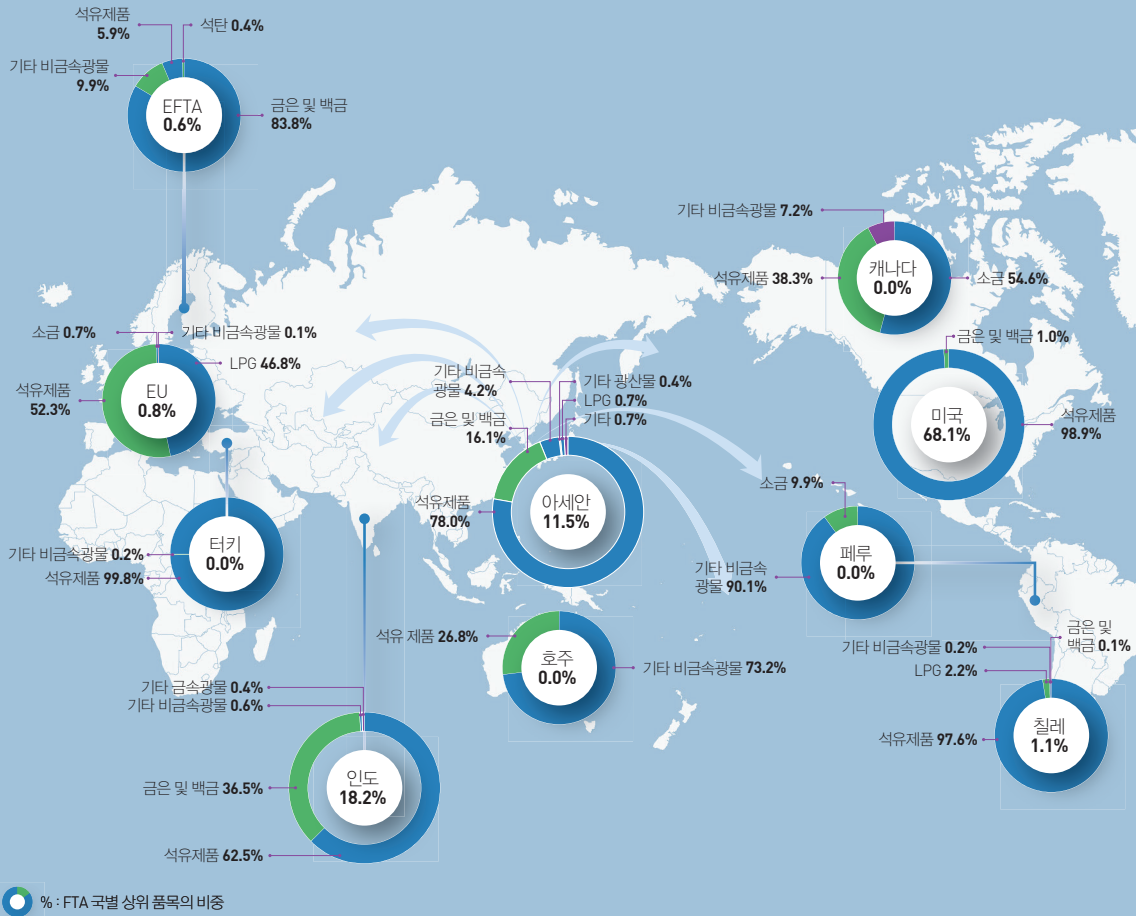


화학공업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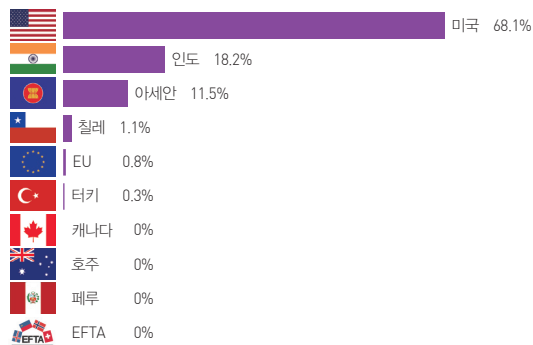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정밀화학원료	19.0
2	농약 및 의약품	17.7
3	합성수지	12.1
4	기타정밀화학제품	10.6
5	기타석유화학제품	7.4
6	기타화학공업제품	7.0
7	비누치약 및 화장품	6.7
8	염료 및 안료	3.7
9	유리제품	3.5
10	타일 및 도자기제품	1.9

수출 광산물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27.0%	73.0%	100%



협정별 광산물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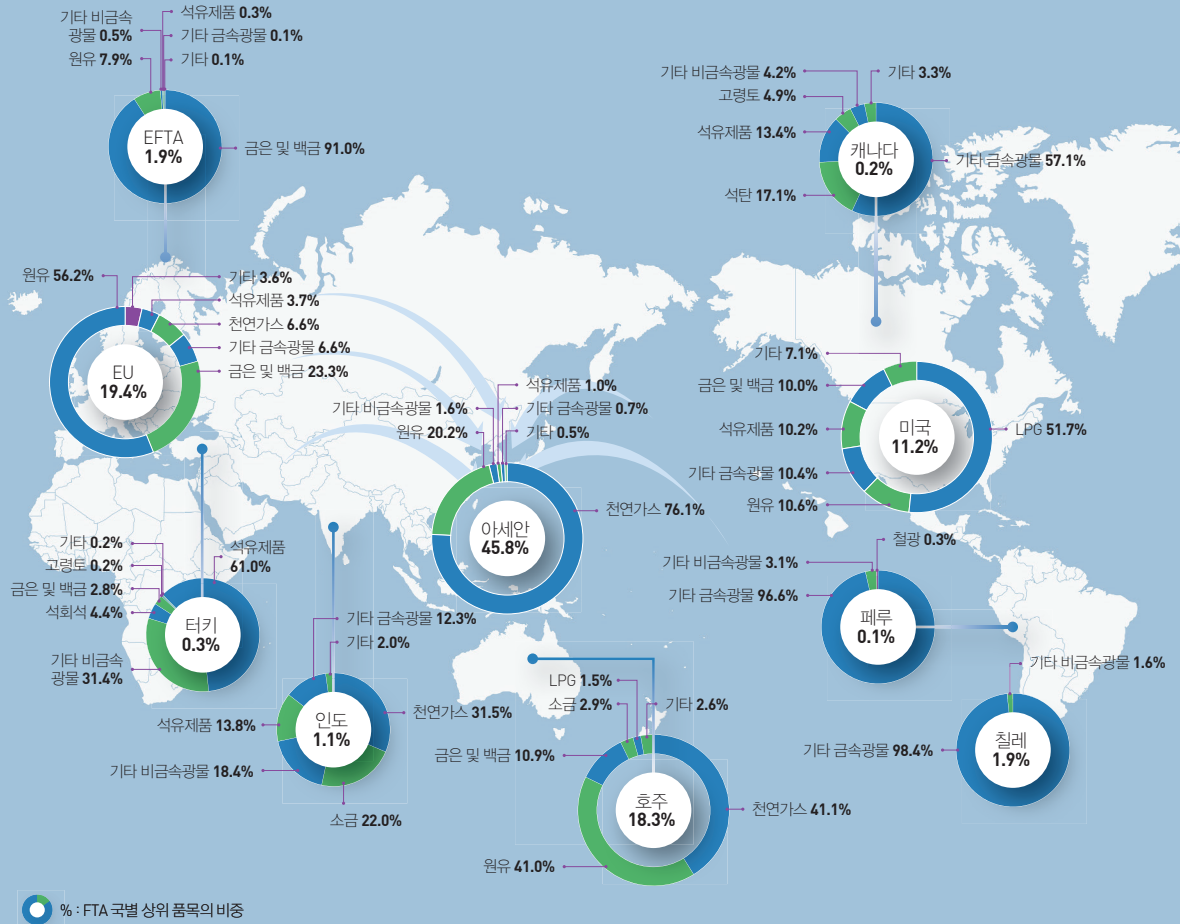


광산물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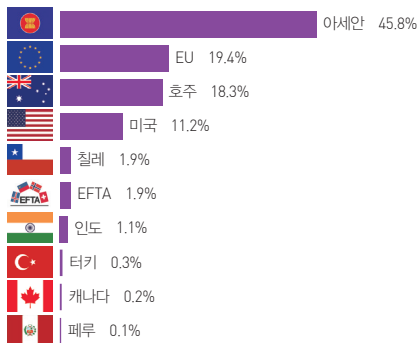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석유제품	89.5
2	금은 및 백금	9.2
3	기타 비금속광물	0.6
4	LPG	0.5
5	기타 금속광물	0.1
6	기타 광산물	0.0
7	소금	0.0
8	동광	0.0
9	고령토	0.0
10	석회석	0.0

수입 광산물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37.5%	62.5%	100%



협정별 광산물 특혜대상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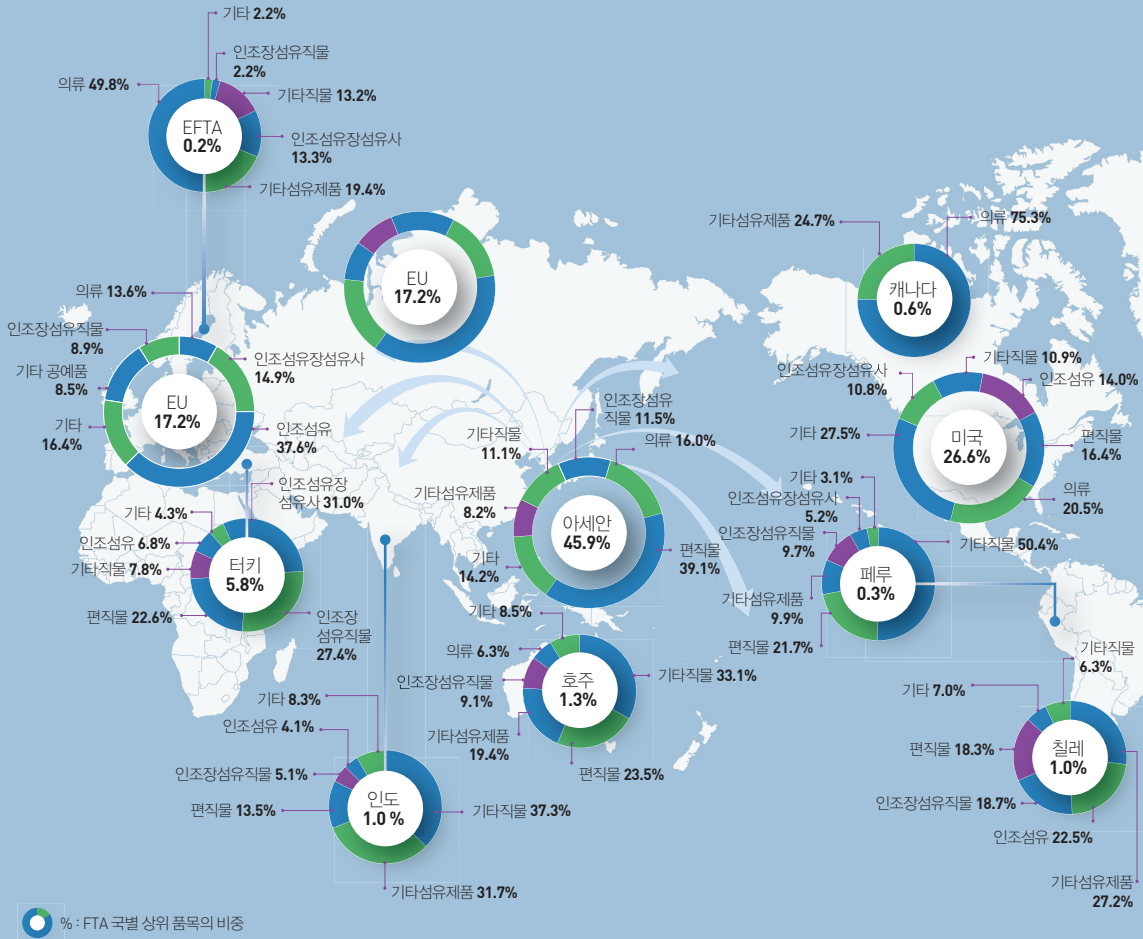
광산물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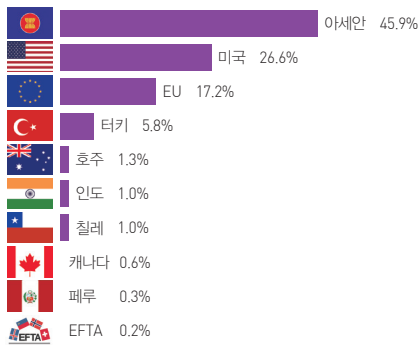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천연가스	44.0
2	원유	29.0
3	금은 및 백금	9.4
4	LPG	6.3
5	기타 금속광물	5.1
6	석유제품	2.7
7	기타 비금속광물	2.2
8	소금	0.8
9	고령토	0.3
10	석탄	0.1

수출 섬유류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56.8%	43.2%	100%



협정별 섬유류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섬유류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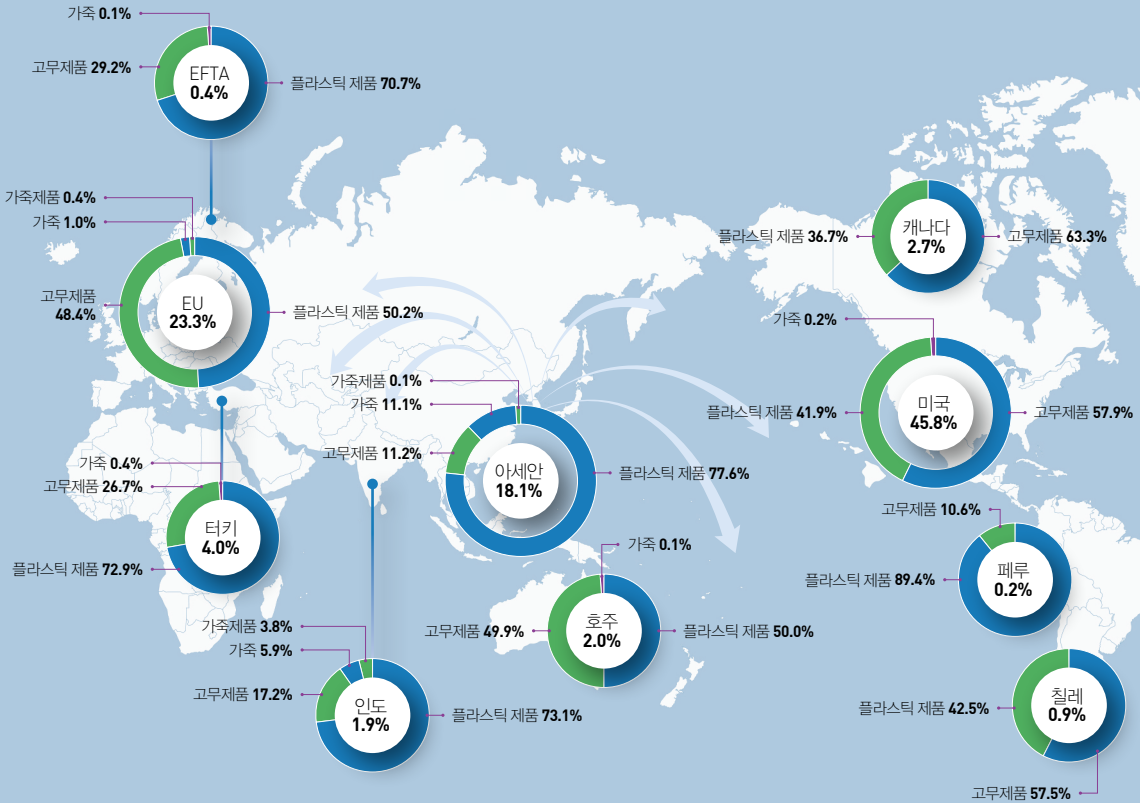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편직물	25.6
2	의류	15.8
3	인조섬유	11.8
4	기타직물	10.5
5	인조장섬유직물	10.4
6	인조섬유장섬유사	8.7
7	기타섬유제품	8.3
8	면직물	4.2
9	인조단섬유직물	1.5
10	재생섬유	1.3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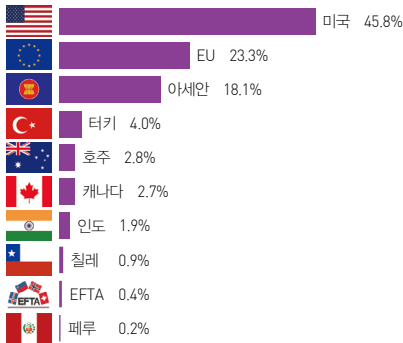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84.5%	15.5%	100%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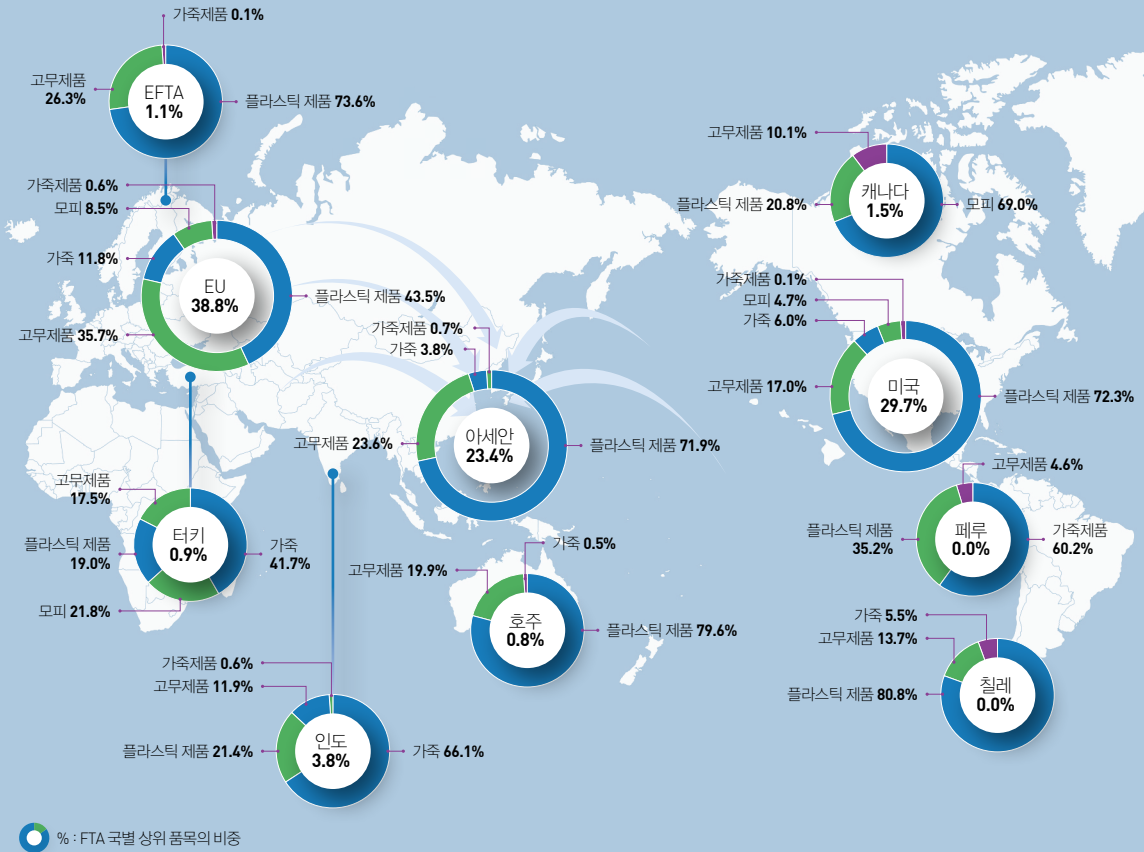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52.5
2	고무제품	44.9
3	가죽	2.4
4	가죽제품	0.2
5	모피	0.0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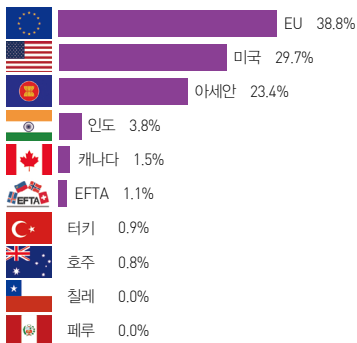
수입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81.6%	18.4%	100%



협정별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대상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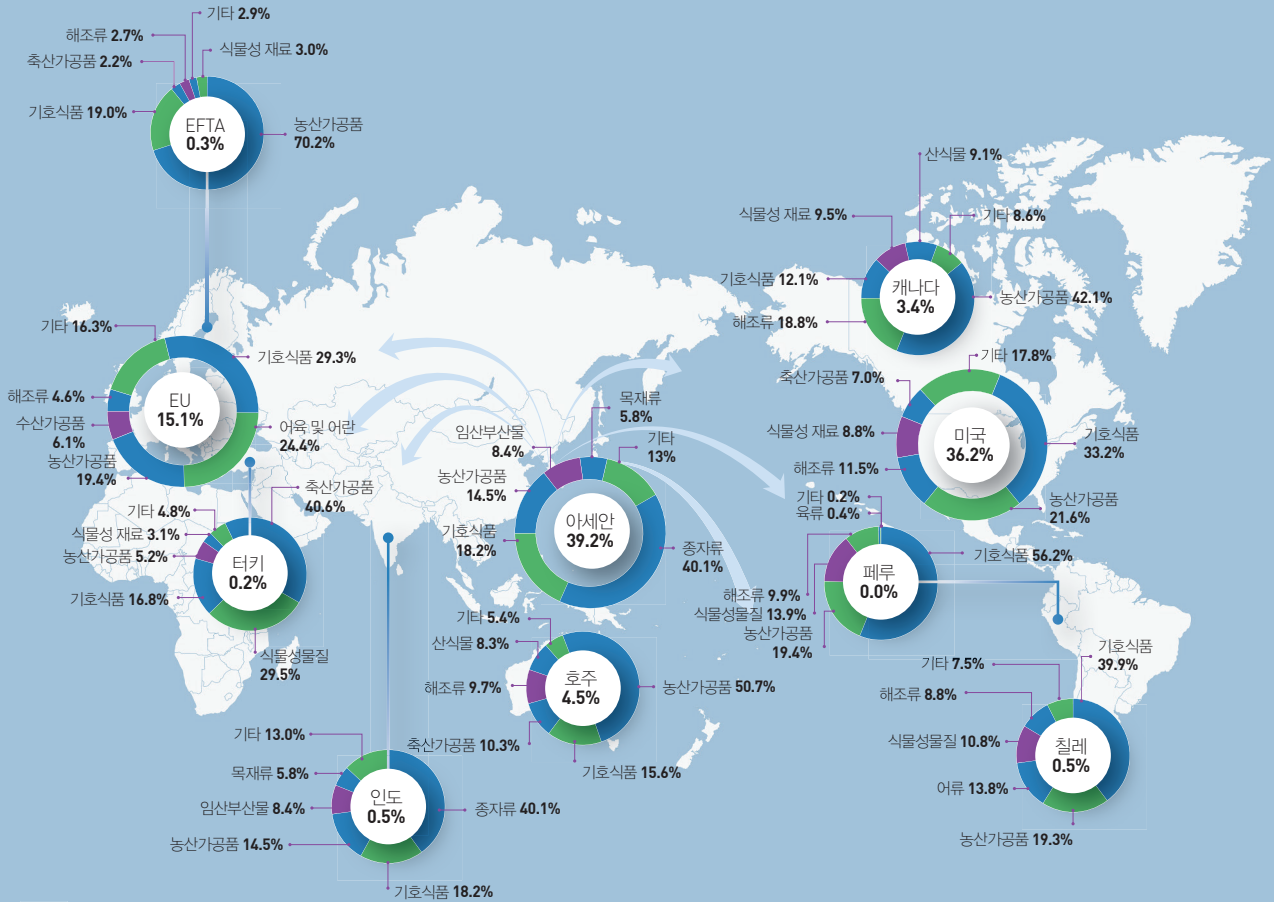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플라스틱 제품	57.9
2	고무제품	25.6
3	가죽	10.1
4	모피	5.9
5	가죽제품	0.4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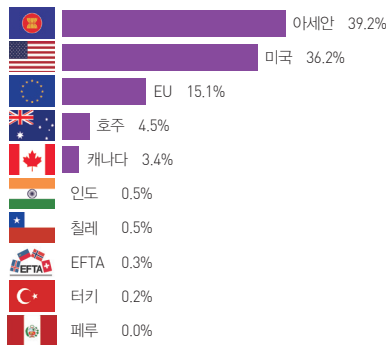
수출 농림수산물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70.7%	29.3%	100%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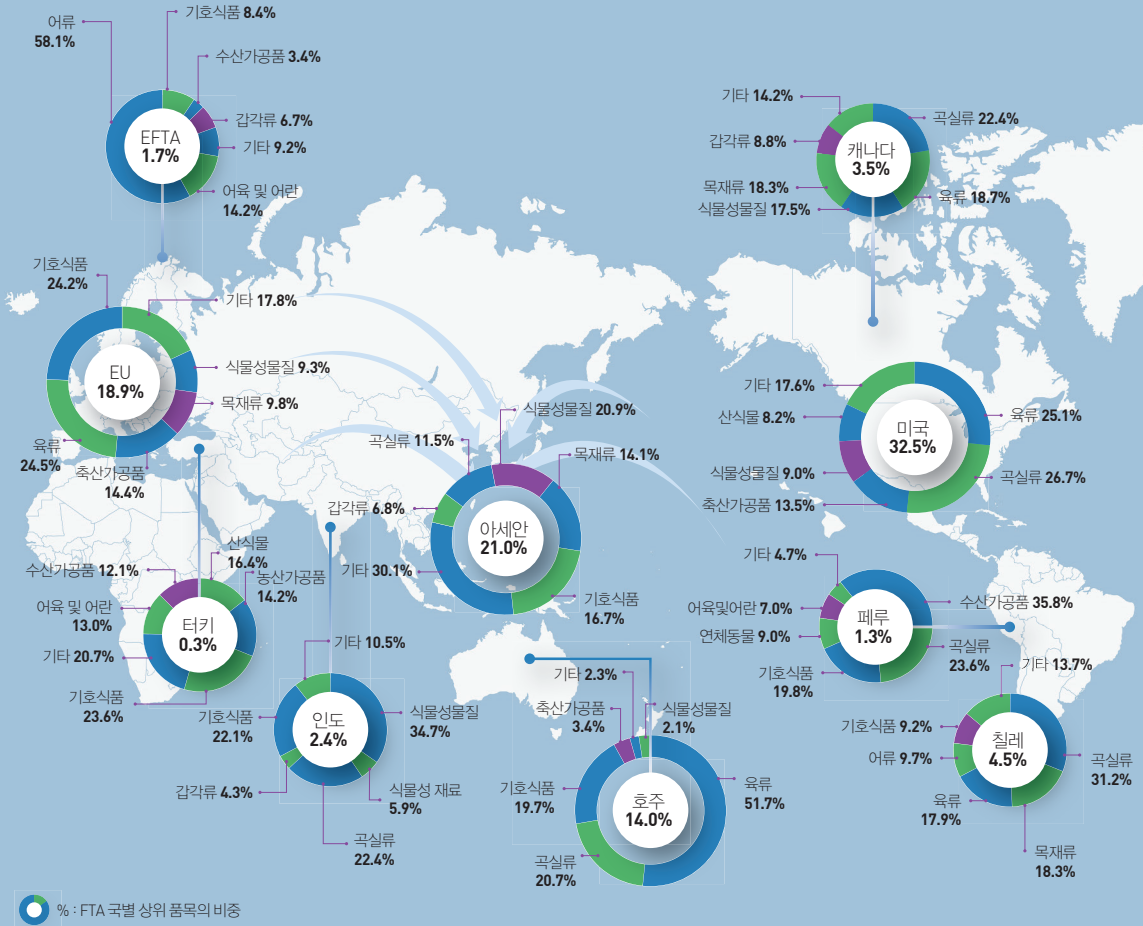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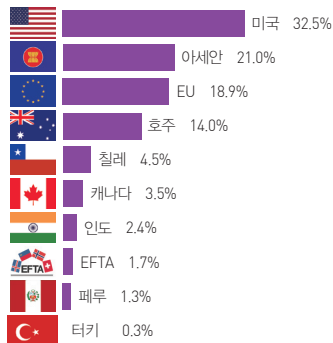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호식품	30.5
2	농산가공품	20.0
3	해조류	9.1
4	어류	8.1
5	식물성 재료	5.4
6	축산가공품	4.7
7	식물성물질	4.2
8	어육 및 어란	3.8
9	곡실류	3.6
10	수산가공품	3.3

수입 농림수산물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78.5%	21.5%	100%



협정별 농림수산물 특혜대상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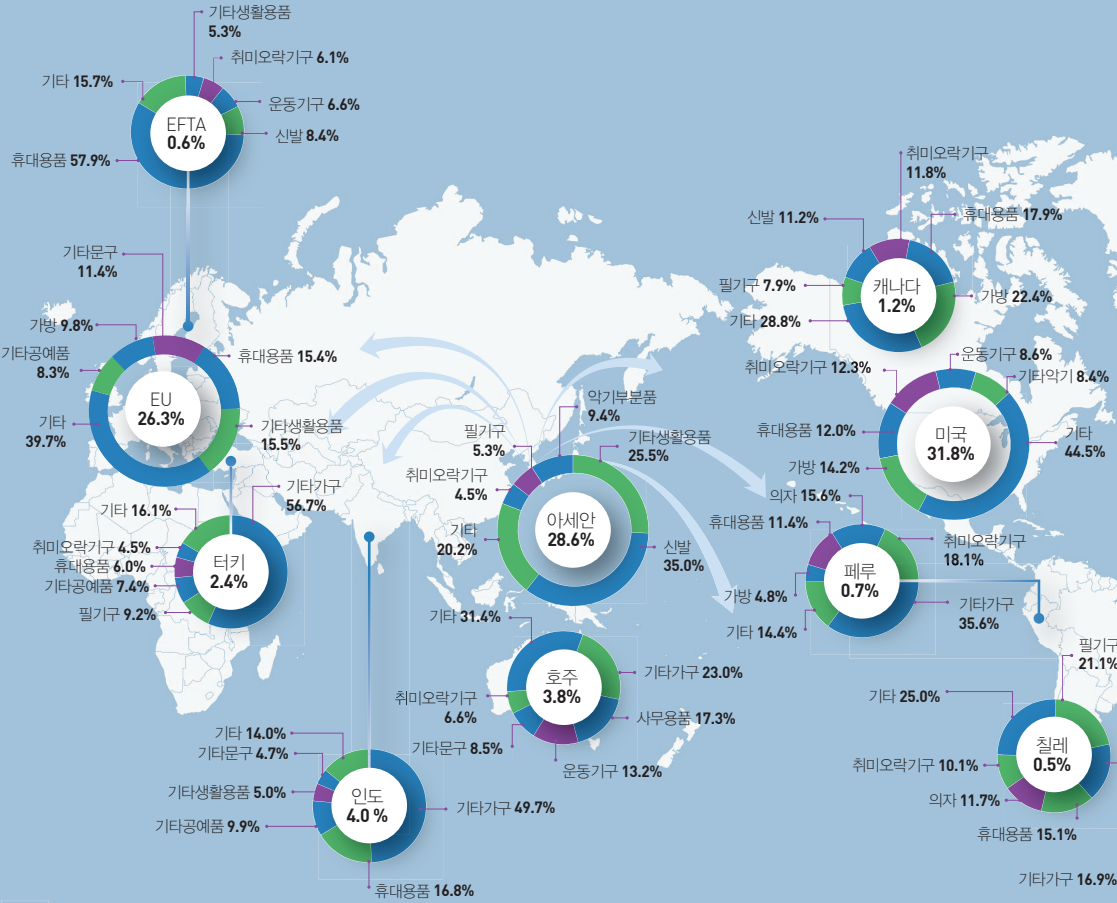
농림수산물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육류	21.9
2	곡식류	17.4
3	기호식품	14.7
4	식물성물질	10.9
5	축산가공품	8.2
6	목재류	6.7
7	농산가공품	3.9
8	산식물	3.6
9	수산가공품	2.9
10	어류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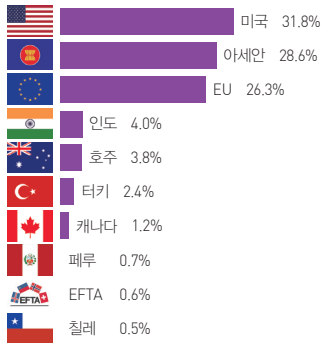
수출 생활용품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59.7%	40.3%	100%



● : FTA 국별 상위 품목의 비중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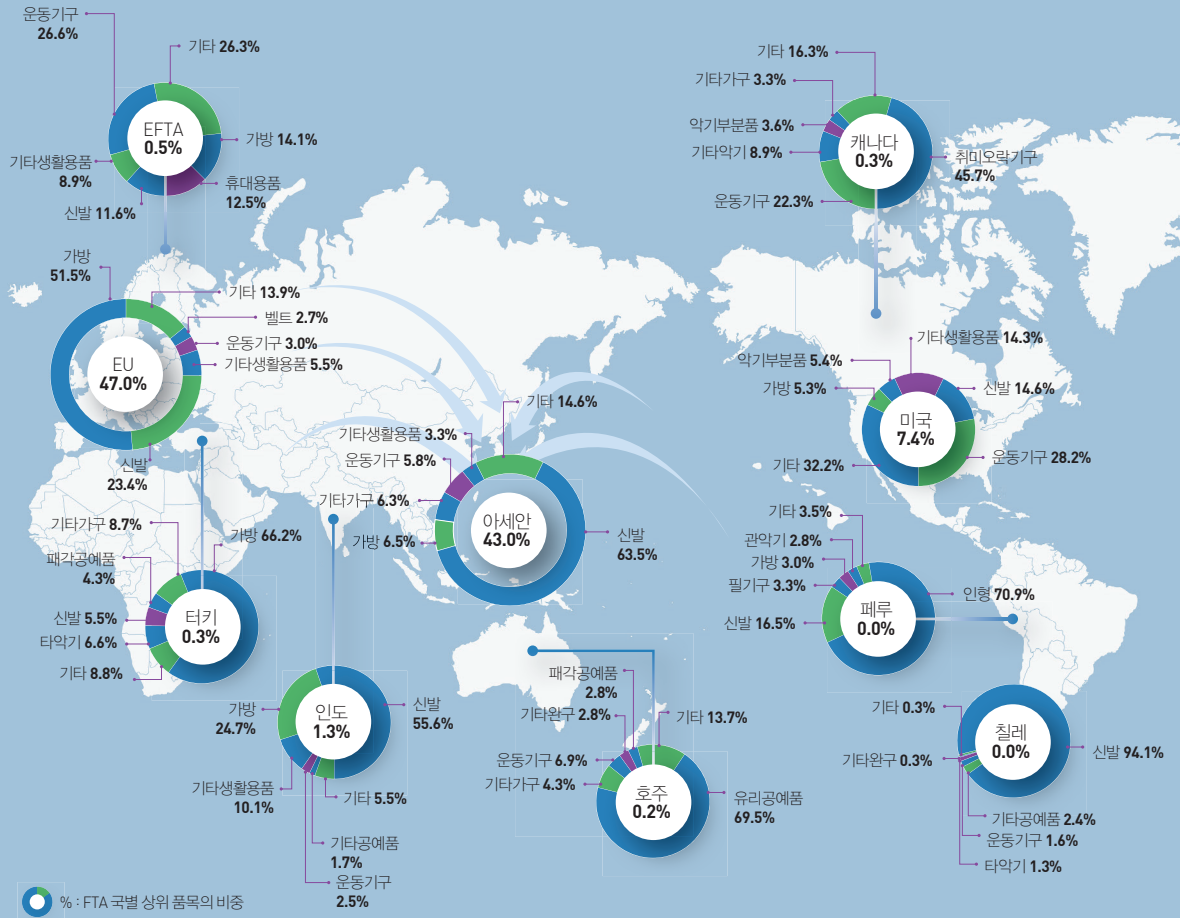
생활용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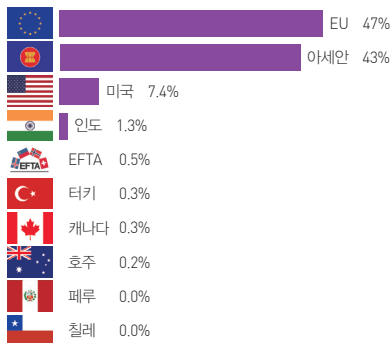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기타생활용품	14.3
2	신발	13.9
3	휴대용품	10.6
4	가방	8.2
5	취미오락기구	8.1
6	기타문구	5.9
7	필기구	5.8
8	기타가구	5.7
9	기타공예품	5.4
10	운동기구	5.3

수입 생활용품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84.3%	15.7%	100%



협정별 생활용품 특혜대상수입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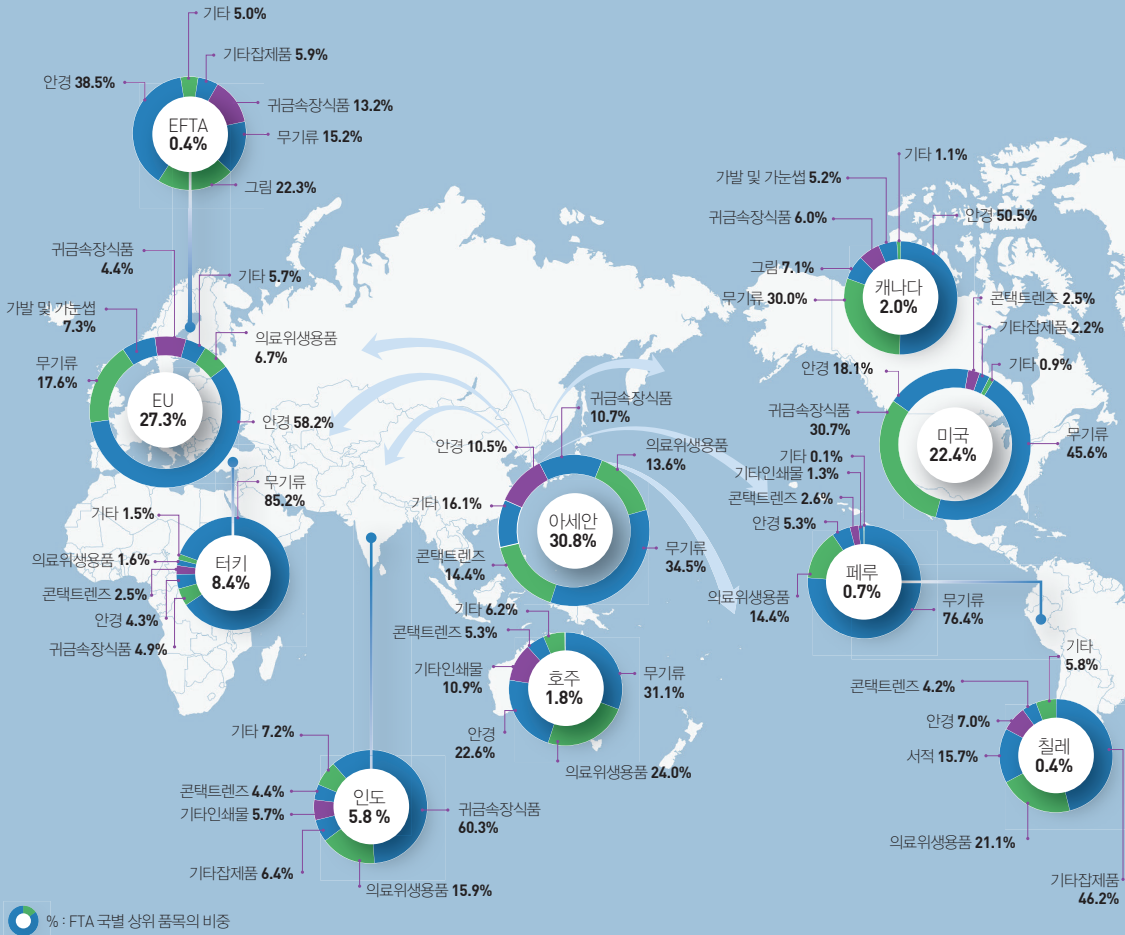
생활용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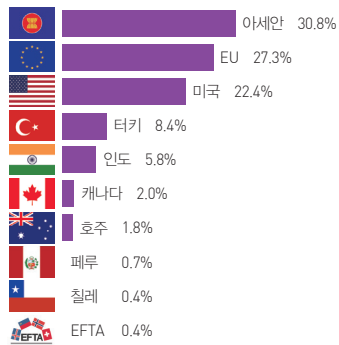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신발	40.2
2	가방	28.0
3	운동기구	6.2
4	기타생활용품	5.3
5	기타가구	4.3
6	휴대용품	2.1
7	기타원구	1.5
8	필기구	1.5
9	벨트	1.3
10	식탁	1.3

수출 잡제품

FTA 특혜대상수출	일반수출	총계
50.5%	49.5%	100%



협정별 잡제품 특혜대상수출비중 (총계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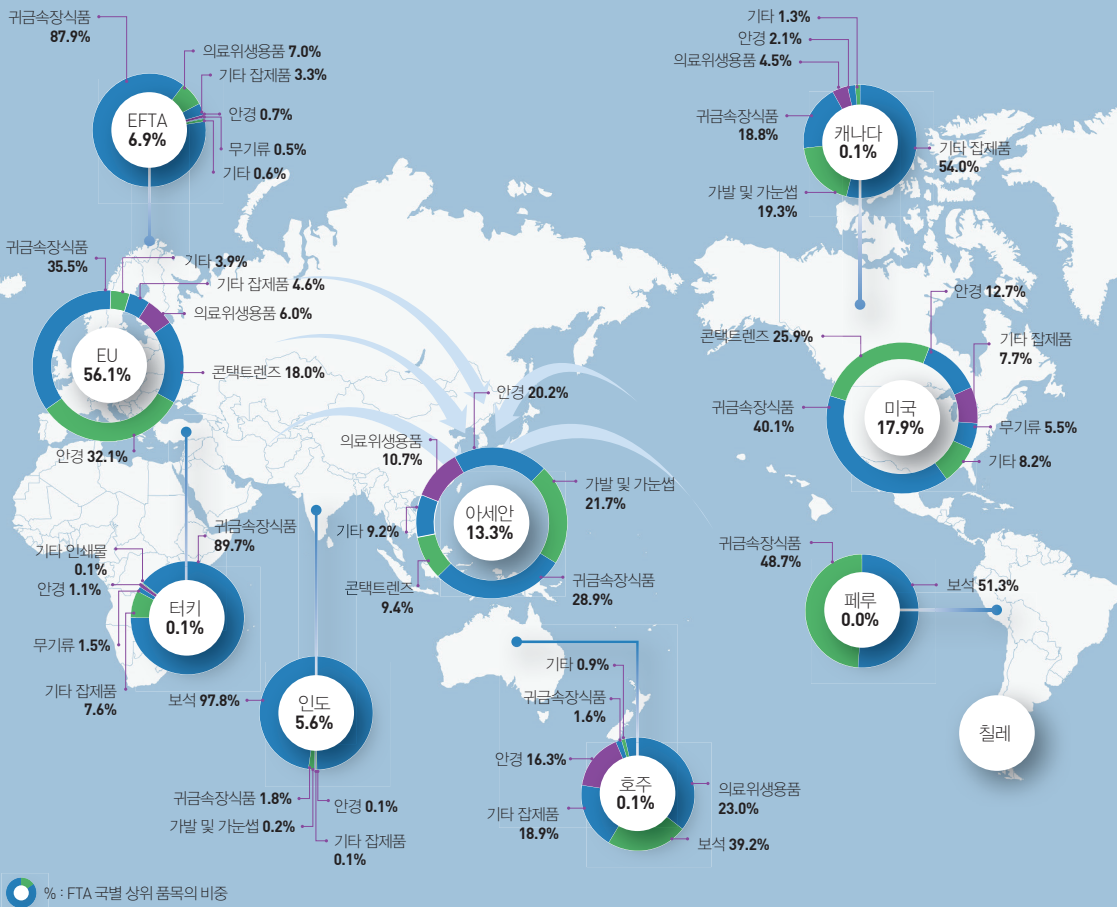


잡제품 특혜대상수출 상위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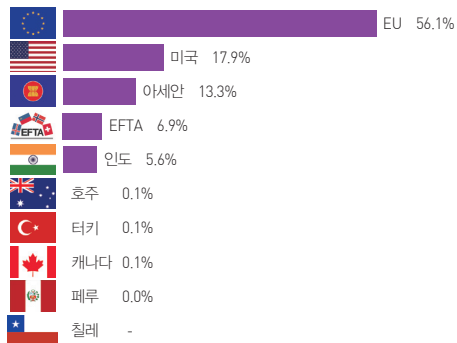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
1	무기류	34.6
2	안경	25.3
3	귀금속장식품	15.5
4	의료위생용품	7.7
5	콘택트렌즈	5.6
6	기타잡제품	4.8
7	가발 및 가늌셋	2.3
8	기타인쇄물	1.6
9	공업용귀금속제품	0.9
10	서적	0.9

수입 잡제품

FTA 특혜대상수입	일반수입	총계
49.7%	50.3%	100%



협정별 잡제품 특혜대상수입비중 (총계 : 100%)



잡제품 특혜대상수입 상위 품목

단위 : %

순위	구분	전체대비 구성비중
1	귀금속장식품	37.1
2	안경	23.0
3	콘택트렌즈	16.0
4	보석	7.6
5	의료위생용품	6.2
6	기타잡제품	4.5
7	가발 및 가늌셋	2.9
8	무기류	1.2
9	공업용귀금속제품	0.9
10	기타 인쇄물	0.5

FTA 활용 UP!!

국내유일의 원산지 전문기관, 국제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은 FTA 시대의 핵심과제인 “국내외 원산지 정보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내유일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FTA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



FTA 무역 리포트

Vol.01 March 2016

〈비매품〉

발행일 2016년 3월

발행처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2-1304호

TEL 042)481-3282 / FAX 042)481-7753

<http://www.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05번길 8

TEL 031)6000-701~3 / FAX 031)6000-704

<http://www.origin.or.kr>

편집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국제원산지정보원 연구개발본부

디자인·인쇄 아미고디자인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42-08

「FTA 무역리포트」에 게재된 글은 저자의 견해로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청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Tel. 042-481-3282 Fax. 042-481-7753

국제원산지정보원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Tel. 031-600-0701~3 Fax. 031-600-0704



FTA 무역리포트에 관한 독자엽서를
 fta-report@origin.or.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시는 분 이름, 주소, 연락처,
 엽서의 질문답변 포함)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 _____

이름 _____

연락처 _____ E-mail _____

□ □ □ □ □



받는 사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205번길 8 성남세관
 5층 국제원산지정보원
 FTA 무역리포트 담당자 앞

1 3 5 0 3

독자의소리

〈FTA 무역리포트〉독자의 소리를 6월 20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FTA 무역리포트〉를 보신 소감을 적어주세요.

▶▶ 〈FTA 무역리포트〉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 〈FTA 무역리포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